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569-01

2014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 12.

연구수행기관 한중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 구 책 임 자 이병렬(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 구 원 김연주(재단법인 동천)
박정형(한국이주인권센터)
윤명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이혜진(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홍세영(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연구 요약

1. 연구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예술흥행(E-6)비자 소지 이주민의 인권상황을 객관적·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을 고찰하고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적 정책방안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접, 기관방문 및 파견업체 근무자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인권침해라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이주민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소재파악과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에 적합한 비확률 표집방법인 눈덩이표집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E-6-1비자 소지 이주민의 인권침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테마파크에서 공연하는 이주노동자와, E-6-2비자 소지 이주민은 업태를 망라해서 조사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 결과 총 156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효한 설문지는 151매였다. 그리고 설문조사가 가지는 양적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3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한편 기관방문과 담당자의 면접조사를 통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도입과 고용에 관련된 기관들의 역할이 현실에서 구현 되는 방식, 인권의식, 역할수행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대안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와 일본·미국의 예술흥행비자 관련 제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연구진이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보고회를 통한 전문가의 의견조사를 종합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연구를 하였지만 표집방법에서 연유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2.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관련제도와 현황

외국연예인의 국내유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허가제로 운영되었으나 1999년 규제개혁차원으로 신고제로 완화되어 외국연예인 고용업체와 입국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1년에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외국연예인의 수가 8,586명으로 최고점에 이르렀으며 그 후 줄어들어 2013년 말 현재 4,368명이 입국해있다. 국적별로는 2003년까지는 구소련계 국가에서 입국한 E-6비자 소지자가 가장 많았으나 2004년부터는 필리핀 출신이 가장 많아지

게 되었다. 2013년 12월말 현재 E-6비자로 입국한 연예인이 4,368명이며, 이 중 필리핀 출신은 2,609명으로 60%에 이르고 있다.

한편 늘어난 외국연예인의 상당수가 원래 입국한 목적과는 달리 유흥업소의 접객원으로 이동되면서 성매매 강요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결과 2001년에 발간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에 한국이 3등급 국가로 분류되면서 외국연예인 도입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때 예술흥행사증 신청 서류 심사와 외국연예인이 고용되어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무용수에 대한 사증발급을 중단하였다.

또 다른 방안은 E-6비자를 크게 예술·연예(E-6-1), 호텔·유흥(E-6-2), 운동·경기(E-6-3)로 세분화하자는 것이었으며 2004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는 특히 문제가 되던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고급예술인에게는 E-6-1비자를 부여하여 출입국 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그 외의 예술인들은 E-6-2비자를 부여하여 통제와 관리의 관점에서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E-6-1비자와 E-6-2비자 소지 이주민의 입국과정은 거의 유사하다. 즉,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각국 주재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여 공연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점은 E-6-1비자 소지 이주민은 공연기획사나 해당 기업의 사용자가 현지에 있는 공연단이나 예술인의 오디션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며 E-6-2비자는 현지 에이전시와 한국의 파견업체가 이 과정을 주도하고, 전자는 입국 후 이들을 초청한 해당 공연장에서만 공연을 하고 후자는 파견업체가 계약을 맺은 사업장에서 공연 및 근무를 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E-6-1비자 소지 이주민은 처음부터 공연장소가 정해져 있어 사업주체에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공연장의 이동은 거의 없으며 E-6-2비자 소지 이주민은 이들의 근무지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그리고 공연장의 성격도 E-6-1비자 소지 공연노동자는 공연 외에 다른 일이 수반되지 않는 전용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며 E-6-2비자 소지 공연 노동자는 음식판매나 광고 등이 수반되는 공연장, 주로 관광업소나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술흥행비자 제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되었다. 테마파크에서 공연하는 E-6-1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간헐적으로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 밝혀졌고, 그 대부분이 관광업소나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E-6-2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시민단체의 활동과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이들에게 공통된 인권침해는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인권침해였다. 특히 E-6-2비자 소지 공연노동자의 경우는 유흥업소에서 이들의 체류자격과 다른, 즉 유흥접객원의 역할을 강요당하였고 심지어는 성매매 등을 강요당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예술흥행비자 발급, 이들의 입국 후 활동이나 인권침해 등을 감독하는데 관여하는 기관은 법무부, 문화관광체육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각 기관 간의 연

계가 중요하나 이것이 이루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 기관들의 역할만 규정되어 있은 뿐 기관 간의 일관되고 통합적인 제도와 지침이 없어서 각 부처 간에 협조와 책임성 있는 정책 운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비자발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들의 입국 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들의 이탈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는데, 2011~2013년 사이의 외국인의 미등록 체류율은 11.6~12.3%이나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미등록 체류율은 30.4~34.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실태조사 분석결과

1) 이주과정에서의 실태

(1) 비종사자와 청소년의 취업

예술흥행분야 이주노동자들은 놀이공원 공연자들을 제외하고, 예술흥행분야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비율이 높았다. 국가별로는 필리핀의 경우 36.2%(116명 중 42명), 몽골의 경우는 80%(15명 중 12명)가 본국에서 예술흥행 관련 일을 하지 않은 이주민이 입국을 하고 있었다. 업태별로 보면 몽골 이주민들이 종사하는 테마파크(80%), 필리핀 이주민들이 종사하는 업태 중에서는 카페 및 7080클럽(57.1%), 시멘스클럽(46.2%)이 비종사자들의 이주가 많았고, 단란주점(37.5%), 나이트클럽(35.4%), 외국인전용클럽(33.3%), 호텔공연(25%) 순이었다.

특히 몽골과 필리핀의 경우 미성년의 나이에 입국을 하여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테마파크에 종사하는 몽골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15명의 응답자 중에서 8명(53.3%)으로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 필리핀의 경우는 114명의 응답자 중 5명으로 4.4%였다. 이들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학업이 중단된 상황이므로, 청소년에 대한 돌봄을 전혀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정보 습득 및 계약 과정

예술흥행분야 이주노동자들은 대체로 초기 정보를 친구 및 아는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응답하였다. 필리핀과 몽골의 경우는 동료나 매니저 등 지인을 통해서 한국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에이전시 및 관리자를 소개를 받았다는 경로가 대부분이었다. 놀이공원에서 종사하는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현재 취업 중인 놀이공원에서 예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 학교 선배나 친구들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고 취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은 차이를 보이는데,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한국 프로모터와 연계된 현지 에이전시가 오디션, 여권 및 비자 발급 등 필리핀 현지에서 해야 하는 수속을 대신해서 해 주고 있다. 테마파크의 경우는 업체 책임자가 직접 현지로 와서 오디션을 보고 사람들을 선발하는데 몽골의 경우는 한국 작업장 사장과 계약을 맺은 몽골 관리인이 몽골에서 노동자들을 선발하고 한국으로 데려와 공연 및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놀이공원의 경우에는 프로모션 사장과 놀이공원 담당자가 현지로 가서 오디션을 본 후 계약하거나, 노동자들이 본국에서 직접 테이프를 만들어서 프로모션에 보내서 합격하면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는 특정 국가의 쇼를 통째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입국비용 및 입국비용의 공제

입국비용의 경우 놀이공원에서 근무하는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입국비용을 프로모션에서 대신 내 주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는 평균 1,010,306원의 입국비용이 들었는데, 최대는 480만원의 입국비용이 들었다는 응답자가 있었다. 몽골의 경우는 평균 2,647,000원의 입국비용이 들었다. 몽골의 경우는 최소는 70만원, 최대는 500만원의 입국비용이 들었다는 응답자가 있었다.

여기서 문제는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필리핀 이주노동자와 테마파크에서 종사하는 몽골 이주노동자의 경우 입국비용을 프로모션 및 업체 관리자가 대신 내준 후 한국에서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갚아야 하는 점이다.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경우 대행 및 관리업체가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전체의 84.5%(116명 중 98명)였다. 필리핀 공연 이주자 117명 중 100명(85.4%)는 입국비용을 한국에 와서 갚아야 했다고 응답하였다. 그 중 19%는 지급받은 월급에서 환급해야 했지만, 입국비용이 월급에서 미리 공제되는 경우가 81%였는데, 1달~3달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임금을 공제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입국비용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하고 에이전시 및 프로모션의 말만 듣고 임금을 공제당해야 했다.

(4) OEC(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 발급과 입국과정

필리핀에서 해외 취업을 원하는 노동자는 OEC를 발급받아야 한다. 본 조사에서 112명의 응답자 중 62명(55.4%)이 OEC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업태들 가운데는 외국인전용클럽(71.4%)과 나이트클럽(66.6%)이 OEC를 발급 받지 않고 종사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OEC를 제대로 발급받지 않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OEC를 발급해 주는 POEA(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에서 발급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현지 에이전시와 POEA 직원의 커넥션으로 OEC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었고 둘째, OEC 없이 현지 에이전시와 공항 직원의 커넥션으로 공항 검사대를 통과하

는 경우와 셋째, 필리핀을 출국할 때 여권에 붙은 비자를 떼었다가 해외를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할 때 다시 부착하는 경우가 있었다.

2) 근로계약 체결 및 노동실태

(1) 근로계약의 작성

예술흥행분야 이주노동자들 중 96.7%(150명 중 145명)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입국 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필리핀 이주민의 경우 11.6%(112명 중 13명)가 있었으며, 입국 전과 후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역시 필리핀 이주민이 경우 8.9%(10명), 몽골 이주민의 경우 21.4%(3명)가 있었다. 러시아 이주민의 경우는 입국 전과 후에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내용은 같았다고 이야기하였다.

근로계약서는 한국어로만 작성된 경우가 필리핀 응답자의 23.9%(109명 중 26명)에 달했다. 70%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이주민 중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반응들이 있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있었지만 제대로 읽지 못하고 사인하도록 했고, 이미 본인의 사인이 들어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테마파크에 종사하는 몽골과 놀이공원에 종사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대부분이 자국어로 된 계약서가 있었으나, 놀이공원의 경우 2명은 계약서가 한국어로만 되어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마저도,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필리핀 이주노동자 중 68.7%(112명 중 77명)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으며, 테마파크에 종사하는 몽골 이주노동자들은 61.5%(13명 중 8명)가 교부받지 못하였다. 업태별로는 카페 및 7080클럽(83.3%), 나이트클럽(77.3%), 시멘스클럽(76.9%)이 특히 교부받지 못한 비율이 높았다.

(2) 계약서와 다른 노동조건

예술흥행분야 이주노동자들은 놀이공원을 제외하고 특히 임금과 근무시간, 휴일, 업무 내용에서 계약서와 실제 노동조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50.4%(129명 중 65명)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업태별로 가장 많이 차이가 나는 곳은 나이트클럽의 경우는 평균 1,095,625원에 계약했으나 551,613원을 지급받았다. 시멘스클럽의 경우는 평균 1,266,667원에 계약했지만 645,000원을 지급받았고, 단란주점으로 계약서 평균이 110만원인데 비해 실제 받는 임금은 평균 575,000원을 받고 있었다. 계약서 자체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도 있었는데 카페 및 7080클럽의 경우는 평균 730,000원으로 계약했으나 실제로 441,666원을 지급받았고, 테마파크의 경우는 880,000원으로 계약하여 평균 712,717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임금이 저하되는 원인 중 하나는 프로모션이 임금을 공제해서 가져가기 때문이다. 평균

적으로 임금의 53%를 프로모션이 가져간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많은 공제 비율은 임금의 80%이다. 60만원을 월급으로 받던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장이 프로모션에게 월 130만원을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프로모션이 70만원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근무시간의 경우는 전체의 49.6%(129명 중 64명)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모든 업태가 8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모든 그보다 더 늘어났다. 특히나 시멘스클럽의 경우는 보통 12시간을 일하여 평균 근무시간이 가장 높았고, 테마파크의 경우는 10.2시간이었다. 카페 및 7080클럽의 경우는 길게는 15시간을 일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놀이공원은 평균 8시간이고 길게는 12시간을 근무하지만 그에 해당하는 연장근무수당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였다. 다른 업태들은 연장 근무에 따르는 근무수당을 받지 않았다.

휴일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45.0%(129명 중 58명)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그마저도 계약한 휴일은 평균 한 달에 4.1번 정도로 일주일에 한번 꼴이었다. 실제 휴일은 한 달 평균 2.2일이었고,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는 응답들도 있었다. 가장 휴일이 적었던 업태는 카페 및 7080클럽으로 한 달에 1번 정도였고, 나이트클럽은 한 달 평균 1.4일, 시멘스클럽은 한 달 평균 1.6일로 나타났다.

계약한 내용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계약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27.9%(129명 중 36명)였다. 호텔 공연장과 놀이공원의 경우에는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특히 시멘스클럽(69.3%), 외국인전용클럽(40.0%)에서 계약서와 업무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고, 나이트클럽의 경우 계약서의 해당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39.5%, 단란주점의 경우는 25.0%로 높았다.

계약서와 실제 공연 횟수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계약은 평균 3.2회였으나 실제는 2.7회로 줄었다. 단란주점의 경우 계약서상에는 평균 3회 공연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8회 공연하고 있었으며, 외국인전용클럽의 경우 평균 2.8회 공연에서 1.8회 공연으로, 시멘스클럽의 경우 평균 4회 공연에서 2.8회 공연으로 확연히 낮아졌는데, 심층면접에 따르면 가수를 하기로 하고 한국으로 왔지만 실제 업무는 고객 접대 및 주스를 파는 '주시걸' 역할을 해야 했고 심지어는 성매매를 해야 했었다고 응답하였다.

(3) 임금 지급 및 급여 형태

전체적으로 한국프로모터에게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응답이 127명 중 66명인 52.0%였고, 41명(32.3%)은 근무지 사장에게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했다.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17명(13.4%)이 있었다. 근무지 사장과 프로모션이 둘 다 지급한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는데, 이런 경우 프로모션은 월급을 지급하고 근무지 사장은 주스 판매와 팁 등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카페 및 7080클럽에서는 프로모션(28.6%)보다 근무지 사장(57.1%)이 월급을 지급한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급여 지급 방법은 호텔공연과 테마파크, 놀이공원을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필리핀 이주민들의 경우 현금 지급율이 75.2%였고, 그 중 단란주점에서는 93.3%가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었다. 강제적립을 해야 하거나, 고용주가 본국으로 송금을 한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현금 지급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임금 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130명 중 101명(77.7%)이었다. 특히, 카페 및 7080클럽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교부받은 경험이 없었고, 단란주점에서는 93.3%, 나이트클럽에서는 91.5% 시멘스클럽에서는 83.3%가 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한편,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 116명 중 43명(37.1%)는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3) 노동 과정에서의 인권 실태

(1)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소지 여부

많은 수의 예술흥행비자 노동자들이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못했다. 여권의 경우 46%(137명 중 63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본인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호텔과 놀이공원의 경우 응답자 전원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테마파크의 경우는 아무도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이트클럽, 카페 및 7080클럽, 시멘스클럽에서 절반 이상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못했고, 한국 프로모터나 업소 매니저나 마마상이 여권을 가져갔다고 응답하였다.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41%(134명 중 55명)의 응답자들이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놀이공원과 호텔공연의 경우 모두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지만 테마파크의 경우는 아무도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한국 프로모션 및 업소 매니저나 마마상이 소지하고 있었다. 그 외 나이트클럽에서 52.2%가 본인이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외국인등록증을 한국에서 발급조차 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2) 서비스 제공 및 강요 여부

예술흥행분야 종사자들 가운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필리핀 이주민의 경우, 고객에게 말벗을 하거나 춤을 추면서 주스나 음료 및 주류를 판매해야 하는 경험에 대하여 117명 중 76명인 65.0%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업태별로는 나이트클럽(70.8%), 카페 및 7080클럽(85.7%), 단란주점(68.8%), 외국인전용클럽(53.3%), 시멘스클럽(69.2%)에서 특히 높았다. 성매매 또는 출장 데이트를 경험한 경우도 각각 23.1%와 17.9%에게서 나타났다. 성매매를 제공하는 비율이 높았던 업태는 나이트클럽(25%)과 외국인전용클럽(20.0%)이었다. 출장데이트를 해야 했던 업태는 나이트클럽(25.0%), 외국인전용클럽(20.0%), 시멘스클럽(23.1%)이 있었고, 성매매 및 출장데이트는 대부분이 강요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응답했다.

억지로 제공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 근무지 사장의 강요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득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주스를 팔거나 성매매를 해서 소득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다른 업체로 보내버리겠다는 위협을 하는 업소도 있었다.

4) 폭력실태

(1) 언어폭력

전체적으로 언어폭력을 경험한 이주민은 53%(151명 중 80명)에 달했다. 특히 시멘스클럽(92.3%)과 나이트클럽(75.0%)에서 언어폭력 비율이 높았고, 단란주점(62.5%)과 외국인전용클럽(60.0%)에서도 절반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언어폭력을 경험하였다. 가해자로는 손님이 언어폭력을 가한 경험이 57.5%로 가장 높았고 근무지 사장 및 관리자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도 40%가 있었다. 한국인 프로모션 관리자 및 한국인 동료에게 언어폭력을 당하거나 외국인 동료에게 당한 경험도 있었다. 언어폭력을 당한 이유로는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고,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36.3%), 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서(30%)라는 응답이 많았다. 언어폭력을 당하면 응답자 중 75%는 그냥 참고 일을 했어야 했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경험은 업체에서 나와서 미등록이 되는 것이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2.6%), 인권단체에 상담(10.5%)경우는 매우 낮아서 외부에 사건을 알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응 결과가 어땠냐는 질문에는 미등록이 되었다는 비율이 52.6%로 높게 나타나,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업체를 나와야 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 물리적 폭력

물리적 폭력은 46.4%(151명 중 70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업태별로는 시멘스클럽(84.6%)과 나이트클럽(62.5%), 단란주점(50%)에서 물리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물리적 폭력의 가해자로는 물리적 폭력 경험자 중 손님이 60%였고, 일하는 근무지 사장 및 관리자의 경우가 41.4%로 많았다. 물리적 폭력의 이유로는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가 39.1%로 많았고,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31.9%, 일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0.3%로 높았다. 물리적 폭력의 대응으로는 72.9%는 그냥 참고 일을 해야 했다고 응답하였고, 25.7%는 말로 항의했다고 응답하였으며 18.6%가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인권단체에 상담(5.7%)하거나 경찰에 신고(2.9%)하는 등 외부에 사건을 알린 경우는 매우 낮았다. 대응 결과로는 업체에서 나와서 미등록이 되었다는 결과가 45.7%로 크게 늘어나서, 결국 업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이 크게 늘어났다. 50%는 그냥 참고 일해야 했다고 응답하였다.

(3) 성폭력

성폭력의 경우, 55%(151명 중 83명)가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전체 여성 120명 가운데 69.1%의 여성이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업태별로는 시멘스클럽(92.3%), 나이트클럽(79.2%), 외국인전용클럽(73.3%), 단란주점(62.5%)에서 절반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성폭력 경험자 중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 행위(88.0%)나, 성적인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80.7%) 또는 가슴, 엉덩이, 성기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75.9%)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고, 성적 관계를 강요 및 회유하거나(30.1%), 성매매를 요구하는 행위(28.9%)도 있었으며, 성폭행 행위도 4명이 응답하였다.

성적 관계를 강요 및 회유하거나 성매매를 요구하는 행위가 있었던 업태로는 나이트클럽과 외국인전용클럽에서 그 비율이 높았으며, 시멘스클럽과 단란주점에서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 가해자로는 손님이 30.5%로 가장 높았고 일하는 근무지 사장 및 관리자가 52.4%, 한국 프로모션 관리자가 26.8%였다. 성폭력을 당한 이유로는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가 25.3%,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가 26.5%로 높았으나, 잘 모르겠다(13.3%)와 기타에 응답한 비율이 20.5%로 높았는데, 업소에서 고객을 접대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유형을 항목에서 고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에 대한 대응으로는 업체에서 그냥 참고 일한 경우가 34.9%로 높았고,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된 경우는 30.1%였다. 대응 결과로는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된 경우가 56.6%로 매우 높아져서 업체에서 나오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폭력의 유형을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성폭력으로 나누기는 하였지만, 심층면접 결과 성폭력에 항의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이 함께 가해지는 등, 위의 폭력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5) 감시 강요 등 기타 인권실태

응답자들은 감시 및 강요를 당한 경우가 많았는데,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강제 노동을 당한 경우는 49.7%,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외출이 금지된 경우는 44.4%,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개인 활동이 감시된 경우는 51.7%,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제지된 경우는 46.4%, 근무지를 이동시키겠다며 협박을 당한 경우는 37.7%, 해고나 이탈에 대한 협박을 당한 경우는 28.5%가 있었고, 폐쇄된 공간에 감금을 당한 경우도 10.6%가 있었으며, 노동을 강요하거나 개인 활동을 감시하고, 개인 활동을 감시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전 업태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단란주점, 외국인전용클럽, 시멘스클럽에서는 폐쇄된 공간에 감금된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외부에 사건을 알리기보다 도망을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을 일정 부분 설명해 준다.

6) OEC 발급 여부와 노동 인권실태

필리핀의 경우 OEC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에이전시와 POEA의 커넥션에 의해서 허위로 발급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OEC를 발급 받은 경우는 계약서의 임금, 시간, 업무 내용이 준수되었는지의 여부에서 발급 받지 않은 경우보다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폭행 및 성폭력의 경험에서도 전체적인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가운데 OEC를 취득한 이주노동자들이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보다는 폭력을 경험한 비율이 다소 낮았다.

7) 의료

예술흥행이주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54.4%)가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 가지 못한 노동자들은 22.3%였다. 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한 사유는 병원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비용이 없고, 시간이 없으며, 의사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치료를 받은 경우 병원비 해결방법은 본인이 해결, 지인의 도움, 고용주의 지불 순서로 나타났다.

8) 생활환경

(1)숙소

숙소의 경우 욕실이나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실내에 없고 숙소에 직장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드는 문제들이 있었다.

(2)식사

놀이공원 이주노동자들의 식사 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 시맨스클럽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유엔 마약범죄국(UNODC)의 인신매매 일반적 지표 적용에 따른 인신매매 가능성

UNODC의 인신매매 관련 일반적 지표 전체 35개 중 19개(성적 착취지표 2개 포함)의 부분에서 한국의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이 인신매매의 상황에 놓여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해당되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

- 노동환경에서 떠날 수 없는 상황
- 움직임이 통제 당하는 징후
- 떠날 수 없다는 느낌
- 공포감 또는 근심 징후
- 폭행의 결과로 나타난 상해 고통
- 일정 직업상의 손상 혹은 통제수단으로 받은 상해 고통
- 여권 또는 여행문서 또는 신분증의 박탈(인신매매 관련자의 보관)
- 위조 신분증 또는 위조 여행증명서
- 익숙지 못한 지역 언어
- 일정 조건 하에서 강제 노동하는 경우
-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을 못하는 경우
- 임금을 적게 받거나 혹은 못 받는 경우
- 수입에 대해 접근을 못하는 경우
- 오랜 기간 극단적으로 장시간 노동 상황
- 휴일이 없는 경우
- 빈곤하게 사는 경우 또는 표준 이하의 숙박시설
-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사회적 상호관계가 제한되거나 차단 된 경우
- 가족 또는 외부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되는 경우
- 자유롭게 제3자와 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 종속적 지위
- 정착국까지 운송에 관련된 제비용이 든 사람
- 거짓 약속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행위

한국의 인신매매에 대한 기준과는 달리 팔레르모 의정서와 이를 토대로 구체화한 UNODC의 인신매매에 규정은 그 개념이 확장되어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규정과 지표에 의하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상당수가 인신매매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신매매가 인정되어 가해자가 처벌된 예는 한 건도 없었다.

4. 일본과 미국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1) 일본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한국의 예술흥행비자제도는 각국의 외국연예인 관련 비자제도와 연관되어 운용되고 있

다. 일본의 흥행비자(興業ビザ)는 '연극, 연예, 연주, 스포츠 등의 흥행에 관계되는 활동 또는 기타 예능활동'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비자이며, 배우, 가수, 댄서, 프로 스포츠선수 등이 이 비자를 통해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흥행비자제도는 한국의 예술흥행비자제도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며 '인신매매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2004년에 미국 국무성의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일본을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하며, 흥행비자를 통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젊은 외국인여성의 일본입국을 '성 착취에 의한 인신매매이며, 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일본의 외교정책의 최우선 전략에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바로 흥행비자 운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4년 일본정부가 책정한 '인신매매대책행동계획'의 제1단계 대책(2005년 시행)에 따라, 흥행비자의 취득조건의 하나였던 '외국의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것들에 준하는 공적 · 사적기관이 인정한 자격을 가질 것'이라는 항목을 삭제하게 되어, 실제적으로 이 항목으로 흥행비자를 취득하고 있던 필리핀 엔터테이너의 수가 격감했다. 제2단계 대책(2006년 시행)에서는 일본 측의 초청업자 가운데 인신매매 관련자가 있다면 초청할 수 없다는 탈락조항을 만듦으로서 더욱 흥행비자의 신청 요건이 엄격해졌다. 흥행비자 대상이 되는 엔터테이너의 과거 실적요건, 계약금액의 엄중 적용, 과거 입국 시의 위법행위 유무, 초청기관(프로모터)과 출연기관(영업소)의 합법성과 적절성을 요건으로 삼아 비자발급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흥행비자 발급 엄중조치는 외국연예인을 노동자로 인정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에 흥행비자 발급을 규제하는 방식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실제로,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접객 목적의 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의 유입은 거의 사라졌다.

한편, 일본에서 2005년에 개정된 인신매매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은 '인신매매죄' 신설을 포함한 형법 개정으로 단속 측면이 강조되고 있을 뿐 피해자 구제와 인권옹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그다지 보강되지 않았다. 인신매매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제를 요청한 이주여성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피해자 인정 여부는 대부분 경찰 소관이며, 피해자 인정 지침이 없어서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수가 없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 당국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이 적용되어 해당 이주여성은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다. 다만, 입관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가 인정되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귀국 또는 일시적인 체류를 선택할 수 있다. 피해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통역지원서비스 및 교통비 지원, 일시보호시설 개방, 귀국 지원 등의 지원이 있지만, 일본에 계속해서 체류하고자하는 인신매매 피해 이주민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 및 안정적인 체류자격 보장 등 적극적 구제조치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로 남겨져 있다.

2) 미국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미국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는 O, P, H비자이다. 한편, 취업 혹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연예 활동일 경우는 B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1990년 11월 미국은 전문, 기술 인력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민법을 개정(Immigration Act of 1990)하여, 전문직 이주노동자의 비자신청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여기에서 누락된 외국연예인을 위해 새로이 O비자와 P비자를 신설했다. 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 명성이 있는 특기자나 영화, 텔레비전 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외국인, 그리고 이들의 보조 인력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그리고 P비자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 혹은 그룹으로 공연하는 연예인,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술가나 연예인,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할 예술가나 연예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한편, H-2B비자는 원래 연예인을 위한 비자 범주가 아니라 비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예술흥행 관련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면 H-2B비자를 통해 해당 이주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H-2B비자는 O비자와 P비자의 발급 절차보다 까다롭다. 또한 각 비자 소지자들은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B비자의 경우는 가족동반이 안 되는 한정적인 체류비자로, 미국에서 수익을 얻지 않는 연예 활동만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9·11이후 외국연예인 도입이 한층 엄격해졌다.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연예인의 경우, 그 사람의 고유성이나 명성이 체류자격에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은 비자 심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한편, 단기취업비자를 통한 연예인의 도입은 외국인의 예술이나 예능으로서의 특이성 보다는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인력수급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민국에 비자 청원을 넣기 전에, 고용주는 미국 노동자의 고용을 위해 구인노력을 해야 하며, 노동부에서 해당 분야의 국내노동자 고용 가능성 여부 및 고용주의 구인활동을 엄격히 평가하여, 노동허가를 발급하거나 기각한다. 미등록 노동자를 포함하여 어떤 경우에서든 외국연예인이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노동자성이 인정되며, 고용주는 노동부의 임금근로시간과(Wage and Hour Division)의 관리 및 감독의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집행까지 받게 된다. 미국정부는 외국연예인의 도입 전부터 도입 후까지 각 정부기관과의 협업 하에 외국연예인을 철저히 관리 및 보호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1998년 3월,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행정 각서(Executive Memorandum)가 공포된 이래로 기존 '3D(detention, deportation, disempowerment; 구류, 추방, 권한박탈)' 패러다임에서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방영한 '3+1P(prosecution, protection, prevention and partnership; 기소, 보호, 예방 그리고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00년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2000)을 제정하여, 인신매매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다양한 인신매매 가해자에게는 효과적인 처벌이 확립되도록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3P' 중심의 정책을 법 개정을 거치면서 발전시켜왔다

더욱이, 미국에서는 이주민이 인신매매 혹은 기타 범죄의 피해자로 판명될 경우, T비자나 U비자와 같은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생활을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해당 피해자의 가족들까지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확장시키고 있다.

5. 한국의 예술흥행비자정책 제도개선 방향

1) E-6비자정책에 대한 대안의 제시

(1) 공연법상 공연의 정의규정 개정

현행 예술흥행비자 정책은 이른바 고급예술인에게는 E-6-1비자를 부여하여 출입국 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그 외의 예술인들은 E-6-2비자를 부여하여 통제와 관리의 관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어 예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내포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현행 공연법상 공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 역시 공연법상 공연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단,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사용하는 경우 위 유흥주점에서의 공연은 「공연법」상 공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 현행 E-6-1과 E-6-2비자를 단기공연비자와 장기공연비자로 전환

나아가 예술흥행비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E-6-1비자와 E-6-2비자를 단기공연비자와 장기공연비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기공연의 경우는 몇 차례의 공연만으로도 비용과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유명예술인들이 대다수이며 이들의 예술가로서의 경력 증명, 무대 확인 등은 간소하게 진행해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30일 이상 체류하면서 장기공연을 할 경우는 좀 더 서류제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예술인 경력이나 교육 경험에 대한 확실한 증명서가 제출되어 비예술인이 이 비자로 입국하는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장기공연의 경우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2) 근로기준법의 위반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1) 30일 이상 장기 공연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30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공연자의 경우 공연의 반복성, 지속성 등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30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공연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계약 시 표준계약서 마련

자국어로 번역된 표준(근로, 공연)계약서를 E-6비자 소지 이주민의 공연계약에도 사용하도록 하여 표준적이고 공정한 공연 계약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3) 파견사업주의 소개비 상한선 설정

파견사업주의 과도한 소개비 갈취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최저 생계 마저도 위협하고, 이 때문에 이들로 하여금 체류활동 외 업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의 과도한 소개비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을 두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입국비용 명세서 지급 및 입국비용 초청업체 부담 원칙 설정

입국비용의 과도한 설정과 초청업체의 대납 방식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을 입국초기부터 부채에 얽매이게 하여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 등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비용을 초청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국비용에 관한 명세서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5)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아동의 보호기준 마련

일부 테마파크에서의 공연에는 상당수의 아동이 공연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아동에 대한 연령 기준, 아동 공연에 대한 안전 기준, 아동에 대한 교육 등 아동에 대한 보호 기준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직장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공연장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직장건강보험의 가입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관리 · 감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표준(근로, 공연)계약서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등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술흥행(E-6)비자 업무와 관련된 부처 간 연계 강화

(1) 영상물등급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예술인 추천의 문지기역할(gate-keeper)을 하는 곳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일차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추천신청을 걸러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출서류와 현장에 대한 확인을 강화해야 한다. 즉, 현지의 활동경력 내지는

관련 분야의 학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파견 근로자 사용에 관한 계약서 내지 약정서, 자국어로 번역된 공연표준계약서 등의 서류요구로 추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공연 현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연 외의 활동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2) 법무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 및 고용노동부의 파견사업 허가, 사용사업주(공연업소 등)의 과거 성매매 알선 등 법 위반의 전력, 파견사업주(기획사)의 인신매매, 근로기준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고용노동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공연기획사의 파견 사업을 허가할 때 기획사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자산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과거의 인신매매·성매매·불법취업 활동 관여·문서 위변조 등에 대해 범죄경력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권한에 근로기준법 위반 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

관광업소 등의 인허가 때 공연장, 무대 등 공연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관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단체의 관광과와 위생과, 그리고 지방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주한 자국 대사관

공연추천 심사시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1) 팔레르모 의정서에 부합하도록 형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의 국내법적 이행으로 형법규정에 인신매매에 관하여 신설하였으나, 인신매매에 대한 자세한 정의 규정이 없이 “사람을

매매한 자"라고만 하고 있어, "매매"라는 행위 유형만을 제시해 놓은 것은 오히려 인신매매의 범위를 좁힐 우려가 있다. 또한 아동(만 18세 미만의 사람) 인신매매의 경우 형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의 비준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는 바,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에 부합하는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형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2) 인신매매 지표 개발 및 적용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서 제시한 인신매매 지표를 통해 "인신매매 가능성"에 대해 제시한 바와 같이, 인신매매에 관한 지표(해석기준)를 개발하여 수사 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의 인신매매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해야 한다.

5) 인권침해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1) 피해자 중심의 구제절차와 매뉴얼 마련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비율은 다른 비자유형의 이주민들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인권침해를 당한 이들을 구제하는 절차는 명확하지 않다.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경우 강요에 의해 유흥접객원 등의 체류자격외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례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처럼 인권침해가 있었을 때는 이들의 체류자격과 체류자격외 활동 등을 문제시하기 보다는 인권침해 상황에만 집중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피해자 관련 체류자격의 세분화

수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E-6비자 소지 이주민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자격에 놓여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피해자 보호의지와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6비자 소지 이주민이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 체류자격의 안정을 위하여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피해자 관련 비자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3) 피해자 생계보장 방안 마련

수사절차 및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취업허가를 부여하고, 취업이 어려운 경우 보완적으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4) 피해자 의료보장방안 강화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보장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5) 피해자 가족결합 권리보장 방안 마련

인권침해로 인한 수사 및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여 보살핌을 받을 가족결합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선행연구 ····· 4
3. 연구내용 ····· 8
4. 연구대상 ····· 11
5. 연구방법 ····· 12
   1) 문헌 조사 ····· 12
   2) 설문조사 ····· 12
   3) 심층 면접 ····· 16
   4) 기관 방문 및 업체조사 ····· 18
   5) 전문가 자문 ····· 18
6. 연구의 추진일정과 참여 연구진 ····· 20
   1) 연구추진일정 ····· 20
   2) 참여연구진의 역할 ····· 20
7. 보고서의 구성 ····· 21
8.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22

Ⅱ.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관련제도와 현황 ····· 23

1. 예술흥행(E-6)비자제도와 고용관련제도 ····· 25
   1) 예술흥행비자제도의 변화 ····· 25
   2) 현행 예술흥행비자제도의 유형 ····· 26
   3)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입국 및 고용관련제도와 문제점 ····· 28
2.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현황 ····· 34

Ⅲ. 실태조사 분석결과 ····· 41

1. 기본적인 인적사항 ····· 43
2. 업태별 분류 ····· 44
3. 이주 과정에서의 실태 ····· 45

1) 본국 직업 ····· 45
2) 한국 입국 시 나이와 미성년 이주민 입국 ····· 47
3) 이주에 관한 정보 습득 및 계약 과정 ····· 48
(1) 친구 및 지인을 통한 초기 정보 습득 ····· 48
(2) 계약 과정 ····· 50
(3) 입국비용 및 임금으로부터 입국비용 공제 ····· 51
(4) OEC 발급과 경유 여부 및 위명여권 사용
: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 57
(5) OEC 발급 여부와 인권 및 노동권 실태 ····· 60
4. 근로계약 체결 및 노동실태 ····· 61
1) 근로계약서의 작성 ····· 62
2) 준수되지 않는 계약서와 실제 노동 조건 ····· 65
(1) 임금 ····· 65
(2) 근무시간 ····· 67
(3) 휴일 ····· 70
3) 업태별 노동조건 ····· 76
(1) 유흥업소 ····· 76
(2) 놀이공원 ····· 77
(3) 테마파크 ····· 77
4) 임금 지급 및 급여 형태 ····· 78
(1) 임금 지급자 ····· 78
(2) 급여 지급방법 ····· 79
5) 기타 공제 여부 ····· 81
5. 노동 과정에서의 인권 실태 ····· 83
1)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압류 ····· 83
2) 서비스 제공 및 강요 여부 ····· 86
3) 언어폭력 실태 ····· 91
(1) 언어폭력에 대한 경험 ····· 91
(2) 언어폭력의 가해자 ····· 92
(3) 언어폭력을 당한 이유 ····· 93
(4)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 ····· 9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5) 대응 결과 ····· 96
4) 물리적 폭력 실태 ····· 98
(1) 물리적 폭력 경험 ····· 98
(2) 물리적 폭력의 가해자 ····· 99
(3) 물리적 폭력의 이유 ····· 100
(4)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응 ····· 102
(5)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응 결과 ····· 103
5) 성폭력 실태 ····· 105
(1) 성폭력 유형과 경험 ····· 105
(2) 성폭력 가해자 ····· 108
(3) 성폭력을 경험한 이유 ····· 109
(4) 성폭력에 대한 대응 ····· 111
(5) 성폭력에 대한 대응결과 ····· 113
6) 감시·강요 등 기타 인권실태 ····· 114
7. 의료 ····· 117
1)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 ····· 117
2) 병원에서 치료 여부 ····· 118
3) 병원비 해결 방법 ····· 119
8. 생활환경 ····· 120
1) 숙소 ····· 120
2) 식사 ····· 124
9. 유엔마약범죄국(UNODC)의 인신매매 일반적 지표 적용에 따른 인신 매매 가능성 ····· 127
1) 인신매매지표 해당 항목 ····· 129
2) 인신매매 일반지표 해당 가능성 항목 ····· 134

IV. 일본과 미국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 137
1. 일본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 139
1) 일본 흥행비자와 필리핀 엔터테이너 ····· 139
2) 흥행비자 개요 ····· 141
(1) 흥행비자 ····· 141

(2) 흥행비자 취득 기준 ····· 142
(3) 흥행비자 취득요건 ····· 142
(4) 흥행비자 필요서류 ····· 146
3) 일본 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 현황 ····· 147
4) 흥행비자의 개선과 문제점 ····· 148
5) 흥행비자 소지 범죄피해자 구제 제도 ····· 151
2. 미국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 154
1) 미국의 이민 관리제도 ····· 154
2)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개요 ····· 155
(1) 예술흥행 관련 비자유형 ····· 155
(2) 외국연예인 도입 절차 ····· 156
3) 미국 예술흥행 관련 비자 소지 이주민 현황 ····· 162
4)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시스템 ····· 163
(1) 인신매매 범죄자 기소 및 처벌(Prosecution) ····· 164
(2)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조치(Protection) ····· 166
(3) 인신매매 범죄 예방 활동(Prevention) ····· 171

Ⅴ. 한국의 예술흥행비자정책 제도개선 방향 ····· 175
1. 예술흥행비자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 177
1) 공연법의 개정 ····· 177
(1) 공연에 대한 정의규정의 문제점 ····· 177
(2) 제언 : 「공연법」상 정의규정의 개정 ····· 178
2) 예술흥행비자를 단기공연비자와 장기공연비자로 개편 ····· 180
(1) 예술·흥행(E-6) 비자유형 세분화와 문제점 ····· 180
(2) 제언
: 예술흥행비자를 단기공연비자와 장기공연비자로 개편 ····· 182
2. 근로기준법의 위반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 182
1) 장기공연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 182
(1)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근로실태 ····· 182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 184
(3)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 준수 의무 ····· 186

2) 파견근로자의 보호 ····· 188
3) 연소자의 노동에 대한 보호 ····· 190
4) 근로감독관의 기능 강화 ····· 191
5) 사회보험 보장 ····· 192
3. 예술흥행비자 관련 부처 역할 및 부처 간 연계 강화 ····· 192
1) 각 부처별 관리·감독 및 부처 간 연계의 미비 ····· 192
2) 영상물등급위원회 : 사전 제출서류 및 공연현장 심사 강화 ····· 193
3) 법무부 : 사증 발급시 실질적 심사의 필요 ····· 195
4) 고용노동부
: 파견사업 허가 심사 강화 및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후 심사 강화 ···· 195
5) 지방자치단체
: 공연장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및 공연장 운영 관리감독의 강화 ···· 196
6) 송출국 대사관과의 협력
: 관련 부처 연계 현장 관리·감독 및 자국민 보호 강화 ····· 198
4.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 198
1)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인신매매의 가능성 ····· 199
2)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규범의 준수 ····· 199
(1)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 규범 ····· 199
(2) 협약에 기초한 권고 사항 ····· 200
3)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이행 ····· 201
(1) 국제규범의 이행 필요성 및 방법 ····· 201
(2) 형법상 “인신매매죄” 신설 및 한계 ····· 202
4) 인신매매에 관한 지표의 개발 필요성
- UNODC 인신매매 지표의 활용 ····· 204
5. 인권침해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 205
1)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권리구제수단의 미비 ····· 205
2) 인권침해 피해 외국인의 체류자격 보장 및 세분화 ····· 206
3) 피해자의 생활보장 대책 마련 : 취업·생활·의료·교육의 보장 ····· 208
4) 가족결합 권리의 보장 ····· 208
5)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절차와 매뉴얼 마련 ····· 209

Ⅵ. 결론 ····· 211

■ 부록 ····· 223
<설문지> ····· 225
<유엔마약범죄국(UNODC)의 인신매매지표 한글번역> ····· 241
<영문요약> ····· 24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목 차

<표 1-1> 성매매피해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유형 및 내용 ····· 7
<표 1-2> 공연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유형 ····· 9
<표 1-3> 설문조사 진행과정 ····· 13
<표 1-4>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실태 설문조사 구성 ····· 14
<표 1-5> 심층면접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특성 ····· 17
<표 1-6>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19
<표 1-7> 연구 추진일정 ····· 20
<표 1-8> 연구진과 역할 분담 ····· 20
<표 2-1> 예술흥행비자의 분류와 활동 분야 ····· 26
<표 2-2> 예술흥행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 27
<표 2-3> E-6-1 공연 이주노동자 도입과정 ····· 28
<표 2-4> E-6-2(호텔·유흥) 공연 이주노동자 도입과정 ····· 29
<표 2-5> POLO 승인·POEA 승인·E-6 비자 발급에 따른 연도별 비교 ··· 31
<표 2-6> 공연 이주노동자 도입 및 고용 관련 기관과 역할 ····· 32
<표 2-7> 예술흥행비자 입국자수 : 1992-2013년 ····· 34
<표 2-8> 지역 및 국적별 예술흥행비자 이주민 체류현황 ····· 35
<표 2-9> 출신국별 예술흥행비자 입국자수: 1999-2013년 ····· 37
<표 2-7> 이주민 미등록 체류율 ····· 37
<표 2-8> 예술흥행 이주민의 미등록 체류율 ····· 38
<표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43
<표 3-2> 업태별 분류 ····· 44
<표 3-3> 본국에서의 직업_국가별 ····· 45
<표 3-4> 본국에서 예술 및 연예분야 관련자 여부_ 업태별 ····· 46
<표 3-5> 한국에 입국할 때의 나이_국가 ····· 47
<표 3-6> 이주에 관한 정보 습득_국가별 ····· 48
<표 3-7> 이주에 관한 정보 습득_업태별 ····· 49
<표 3-8> 입국비용 ····· 51
<표 3-9> 입국비용_ 업태별 ····· 52

<표 3-10> 입국비용 지불자_국가별 ····· 53
<표 3-11> 지불인_업태별 ····· 54
<표 3-12> 입국비용 갚는 과정 ····· 55
<표 3-13> 입국비용 갚는 과정_업태별 ····· 56
<표 3-14> OEC 발급 여부 ····· 57
<표 3-15> OEC 발급 여부_업태별 ····· 57
<표 3-16> OEC 발급 여부 ····· 58
<표 3-17> OEC 발급 여부와 계약서 준수 여부 ····· 60
<표 3-18> OEC 취득 여부와 폭언, 폭행, 성폭력 경험 ····· 61
<표 3-19> 근로계약서 작성 장소_국가별 ····· 62
<표 3-20> 근로계약서 작성 장소_업태별 ····· 63
<표 3-21> 근로계약서 작성(복수응답) ····· 63
<표 3-22> 근로계약서 교부 ····· 64
<표 3-23> 근로계약서 작성 장소_업태별 ····· 65
<표 3-24> 근로계약서 인지 및 준수여부_ 임금 ····· 66
<표 3-25> 계약서 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이 ····· 66
<표 3-26> 근로계약서 인지 준수여부_ 근무시간 ····· 68
<표 3-27> 계약서와 실제 노동조건_근무시간 ····· 69
<표 3-28> 근로계약서 인지 준수여부_ 휴일 ····· 70
<표 3-29> 계약서와 실제 노동조건 차이_휴일 ····· 71
<표 3-30> 근로계약서 인지 준수여부_ 숙박 및 식사 ····· 71
<표 3-31> 근로계약서 인지 준수여부_ 업종 및 업무내용 ····· 72
<표 3-32> 계약서와 실제 노동조건 차이_ 공연 횟수 ····· 73
<표 3-33> 근로계약서 인지 준수여부_ 업체명 ····· 74
<표 3-34> 근로계약서 인지 준수여부_ 근무지역 ····· 75
<표 3-35> 유흥업소 업태별 실제 노동조건과 계약서비교 ····· 76
<표 3-36> 임금 지급자 ····· 78
<표 3-37> 임금 수령 방법 ····· 79
<표 3-38> 명세서 및 증빙서 교부 여부 _업태별 ····· 80
<표 3-39> 공제여부_건강보험·국민연금 ····· 81
<표 3-40> 공제여부_숙박비·식대 ····· 8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41> 벌금여부 ····· 83
<표 3-42> 여권 소지 여부 ····· 84
<표 3-43> 외국인 등록증 소지 여부 ····· 85
<표 3-44> 업소에서 제공하는 쇼와 서비스 ····· 86
<표 3-45> 업소에서 제공하는 쇼와 서비스_업태별 ····· 88
<표 3-46> 억지로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 _ 업태별 ····· 90
<표 3-47> 언어폭력 경험_ 전체 ····· 91
<표 3-48> 언어폭력 경험_업태별 ····· 92
<표 3-49> 언어폭력 가해자 ····· 92
<표 3-50> 언어폭력 가해자 ····· 93
<표 3-51> 언어폭력 이유 ····· 94
<표 3-52> 언어폭력 이유_업태별 ····· 94
<표 3-53>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_전체 ····· 95
<표 3-54> 언어폭력 대응_업태별 ····· 96
<표 3-55> 대응 결과_ 전체 ····· 97
<표-3-56> 언어폭력 대응결과_업태별 ····· 97
<표 3-57> 물리적 폭력 경험 ····· 98
<표 3-58> 물리적 폭력 경험 ····· 98
<표 3-59> 물리적 폭력 가해자_전체 ····· 99
<표 3-60> 물리적 폭력 가해자_업태별 ····· 99
<표 3-61> 물리적 폭력 이유 ····· 100
<표 3-62> 물리적 폭력 이유 ····· 101
<표 3-63>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응_전체 ····· 102
<표 3-64> 물리적 폭력 대응_업체별 ····· 103
<표 3-65> 대응 결과_전체 ····· 104
<표 3-66> 물리적 폭력 대응결과_업태별 ····· 104
<표 3-67> 성폭력 경험 ····· 105
<표 3-68> 성폭력 경험_업태 ····· 105
<표 3-69> 성폭력의 유형과 경험 ····· 106
<표 3-70> 성폭력의 유형과 경험_업태별 ····· 107
<표 3-71> 성폭력 가해자 ····· 108

<표 3-72>성폭력 가해자_업태별 ····· 108
<표 3-73> 성폭력 이유 ····· 109
<표 3-74> 성폭력 이유_업태별 ····· 110
<표 3-75> 성폭력에 대한 대응_전체 ····· 111
<표 3-76> 성폭력에 대한 대응_업체별 ····· 112
<표 3-77> 성폭력 대응결과_전체 ····· 113
<표 3-78> 성폭력 대응결과_업태별 ····· 113
<표 3-79> 감시·강요 등 기타 인권실태_전체 ····· 115
<표 3-80> 감시·강요 등 기타 인권실태_업태별 ····· 116
<표 3-81> 아팠거나 다쳤던 경험 ····· 117
<표 3-82> 아팠거나 다쳤던 경험_업태별 ····· 118
<표 3-83>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던 경우 ····· 118
<표 3-84>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던 경우_업태별 ····· 118
<표 3-85>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 119
<표 3-86>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_업태별 ····· 119
<표 3-87> 병원비 지불 방법 ····· 120
<표 3-88> 병원비 지불방법_업태별 ····· 120
<표 3-89> 숙소환경 ····· 121
<표 3-90> 숙소환경_업태별 ····· 123
<표 3-91> 식사해결 방법 ····· 124
<표 3-92> 식사해결 방법_업태별 ····· 126
<표 3-93> UNODC 인신매매 일반적 지표 ····· 128
<표 4-1> 흥행비자 취득 기준 ····· 142
<표 4-2> 흥행비자 필요 서류 ····· 146
<표 4-3> 흥행비자 소지 신규입국자수 추이(1998 - 2012년) ····· 147
<표 4-4> 정부기관별 해당업무 ····· 154
<표 4-5> 미국 외국연예인 도입 관련 비자유형 ····· 156
<표 4-6> 비자유형에 따른 외국연예인의 도입 절차 ····· 161
<표 4-7> 이주노동자 입국 허가, 2003년, 2008년, 2013년 회계연도 ····· 162
<표 4-8> 비이민비자, 2013 회계연도 ····· 162
<표 4-9> T비자, 2013 회계연도 ····· 169

<표 4-10> U비자, 2013 회계연도 ····· 170
<표 4-11> 인도주의에 입각한 이민 구제 방식 비교표 ····· 171
<표 5-1> 공연법상의 공연 정의 제언 ····· 179
<표 5-2> 청소년의 한국 취업 ····· 190
<표 5-3> E-6 자격자의 G-1 체류자격 변경 현황 ····· 207
<표 6-1>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개선책 ····· 217

그 림 목 차

<그림 2-1> 필리핀 해외이주노동자 송출시스템 ····· 31
<그림 4-1> 흥행비자 소지 신규입국자수 추이(1998~2012년) ····· 140
<그림 4-2> 인신매매대책행동계획 2009의 개요 ····· 153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선행연구 ····· 4
3. 연구내용 ····· 8
4. 연구대상 ····· 11
5. 연구방법 ····· 12
6. 연구의 추진일정과 참여 연구진 ····· 20
7. 보고서의 구성 ····· 21
8.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22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실증적으로 밝히고,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여,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이 제도에 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예술흥행비자제도는, 2011년 7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제7차 정기보고서 최종논평에서 한국의 E-6사증발급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하였으며, 2012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표명한 우려와 권고에 동의를 하며 한국의 예술흥행비자 제도를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된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통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할 정도로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들의 인권실태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최근까지 실태조사는 주로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피해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들의 또 다른 축은 공연노동자들이다. 하지만 공연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술흥행비자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매매피해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가 같이 조사되어야 정확한 개선방향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011년 7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2012년 8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의 예술흥행비자제도에 대한 권고 이후 과연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는 연예기획사의 현행 초기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예술흥행비자 소지 여성들이 성매매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일하는 업소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감시체계를 확립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한 권고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주민에 대한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주요대상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들이라는 점이다. 인신매매는 인권침해 사례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형태임에도 현재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한국

의 평균적인 이주민의 인권수준, 나아가서는 한국인의 인권수준이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권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2. 선행연구

예술흥행비자 관련 연구보고서는 크게 제도에 대한 연구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제도에 대한 연구는 2002년 한국문화정책연구원의 「외국연예인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과 2006년 문화관광부의 「외국인 연예인도입 실태조사 및 정책비교연구」가 있다. 전자는 외국 연예인의 공연이 40여 년 동안 허가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1999년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추천제로 바뀌면서 외국 연예인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술흥행비자제도의 개선을 제안하는 보고서이다. 여기서는 예술흥행 체류자격을 '고급예술'과 '흥행' 사증으로 분리하는 것을 제안하며 고급예술인에 대해서는 출입국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고, 특별한 기능을 갖지 못한 일반 외국 연예인에 대해서는 훨씬 효율적으로 출입국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1]. 한편 2006년 문화관광부의 「2006 외국인 연예인도입 실태조사 및 정책비교」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 한국 및 필리핀 관련 공무원, 한국 및 필리핀 현지 기획사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E-6비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는 예술흥행비자 취득 관련 심사 기준의 강화, 예술흥행비자 소지 입국자 권리보호와 공연 관리 감독 강화, 국제 및 국내 관련 기관의 협력 강화 등을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인권실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즉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상당수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들인 것이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E-6비자 소지 이주노동자 중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는 1999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2002년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의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3년 여성부의 「외국여성 성매매 실태조사」, 2007년 두레방의 「2007년도 경기도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보고서」, 2011년 여성가족부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2년 경기도 북부청의 「경기도 기지촌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 실태분석」 등이 있다. 외국인 여성 성매매에 대한 실태조사는 주로 경기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대규모 미군기지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고 미군

1) 예술흥행비자는 2003년부터 예술・연예(E-6-1), 호텔・유흥(E-6-2), 운동(E-6-3)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캠프를 중심으로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다. 이들의 분석은 주로 외국인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입국과정, 유흥업소로의 배치과정, 유흥업소에서의 노동조건, 건강권, 일상생활 등에서의 인권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두레방과 공감의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는 필리핀 출신 성매매피해 여성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성매매피해 이주여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분석하고 있다.

위의 성매매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2]에서 분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이다. 인신매매는 '착취를 목적으로 부당한 수단을 써서 사람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성산업에 갇힌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가수나 무희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에 입국한 후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배치되어 성매매 등을 강요받았다고 한다. 여기서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항의를 하는 경우에는 가장 열악한 장소로 알려진 거제도 옥포나 동두천 텍거리 등에 보내져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강제로 일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는 전형적인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 노동권 침해이다. 우선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 또는 입국한 후에도 자국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한글로 된 계약서에 내용도 모른 채 서명하도록 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계약과 다른 업무, 예를 들면 가수로서 계약하였으나 술 접대, 성적인 춤, 성매매 등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임금은 계약서상의 임금이 지켜지지 않았고 지불 또는 체불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휴일 일수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의 계약서상에는 월 4회 또는 2회의 휴무로 기재되어 있지만,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고 월 1회의 휴무가 일반적이었다.

셋째, 성적 학대이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의 성추행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항의하거나 저항할 수단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소 주인이나 매니저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성폭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아래의 성매매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안태윤(2012), 「경기도 기지촌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 실태분석」, 설동훈 외(2011),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살림(2011), 「성산업 이주여성 인권침해 그 실태와 대책」, 두레방, 공익변호사그룹 공감(2010),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등을 참고한 것이다.

넷째, 폭언, 협박 등의 정서적 학대이다. 여성들이 노동조건이나 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업주나 매니저(마마상)들은 폭언이나 욕설, 혹은 본국이나 더 나쁜 업소로 보내버린다는 협박을 가하여 이주여성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이동권 박탈이다. 이주여성들은 자유시간에도 행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부분 업소에 딸린 숙소에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숙식을 하고 있는데, 업주들은 이주여성들에게 그 지역 밖을 외출을 금하고, 외출 시에는 여러 명이 같이 다니도록 하고 목적지를 알리게 하는 등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또 다른 통제수단으로 이들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압류하여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여섯째, 신체권 침해이다. 미군은 자국의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시하지 않는 유흥업소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미군 헌병이 정기적으로 업소에 들어가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갖고 있지 않은 여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따라서 업주들은 자진해서 정기적으로 업소 여성들을 보건소에 데리고 가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검진은 과거 기지촌 성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던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이주여성의 위치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업소에서 매일 장시간 일해야 하는데 이들의 환경은 담배연기, 과음, 다량의 주스 섭취, 성매매 등으로 인해 쉽게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곳이다. 그러나 이들의 대다수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3], 이들의 병원이용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그 비용이 오히려 이들에게 채무로 부과되어 월급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다.

3) 설동훈 외(2011)의 조사보고서에서는 이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29.1%로 나와 있다.

<표 1-1> 성매매피해 이주여성의 인권침해 유형 및 내용

인권침해유형	인권침해내용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	가수나 무희로 입국 후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국인전용 유흥업소에 배치하여 성매매 등 강요
노동권침해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 및 서명 강요,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일(예를 들면 성접대, 술시중 등) 강요, 계약서보다 낮은 임금, 임금 지불 및 체불, 휴일일수 불이행
성적 학대	업소내의 일상적인 성추행, 일부는 성폭행
정서적 학대	노동조건이나 계약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업주나 매니저(마마상)들은 폭언이나 욕설, 혹은 본국이나 더 나쁜 업소로 보내버린다는 협박을 함
이동권 박탈	외출금지, 외출시 단체로 행동하도록 강요,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압류
신체권 침해	미군출입 외국인전용유흥업소의 건강검진 강제, 건강보험 등 미가입

이상에서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을 살펴보았다. 과거 연구에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밝혀진 것은 주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예술흥행지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것이었으며, 공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대부분 간헐적으로 알려진 사건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들이 근무하는 영역은 너무도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침해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이 근무하는 모든 업태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영역, 예를 들면 성매매가 주로 발생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나 한국인 출입 유흥업소 등에서만 발생하는 것인지가 밝혀져 있지 않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권실태는 주로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으며 예술흥행비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한편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의 주요축인 공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제시하는 주요 예술흥행비자제도에 대한 정책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E-6-2 비자 소지 이주민의 공연추천에서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을 삭제하자는 주장으로 대표적인 보고서가 2012년 경기도 북부청의 「경기도 기지촌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

해 실태분석」이다.

둘째, 외국인 연예인을 유흥시설로 파견하는 것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2011년 여성가족부의 「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가 대표적인 보고서이다.

마지막으로 E-6-2 비자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성매매피해 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와 변호사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안이다.

3. 연구내용

사회현상이 단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거의 없다. 만일 하나의 원인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현상의 원인과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인권침해 현상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이것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에 접근하는 과학적 방법 중의 하나는 인권침해 현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진행된 조사와 사전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크게 두 집단으로 분류가 된다. 하나는 예술흥행비자로 들어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다른 하나는 공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전자의 경우는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공연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한 번도 이루진 적이 없다. 다만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언론을 통해 일부가 간략하게 알려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02년 아프리카 빌리지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2007년 에버랜드 외국인 무용수에 대한 인권침해, 2014년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에서의 인권침해 등이다. 그러나 공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임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잘 감추어져있어 인권침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이미 알려진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위의 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인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권에 대한 침해이다.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여권을 강제로 압류하는[4] 행위를 너무도 쉽게 하였다.

---

4) 아프리카 박물관에서는 부르키나파소 노동자 4명이 이탈하자 짐바브웨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여권을 요구하여 압류하였다.

둘째, 노동권침해이다. 우선 근로계약 위반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애초에 계약한 내용보다 더 많은 노동을 하였으며[5]. 휴일에 대한 계약도 지켜지지 않았다. 임금에서 다양한 명목의 벌금을 삭감하여[6]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 그 마저도 일시에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강제로 적립당하였다고 한다.

셋째, 일상생활에서의 인권침해이다. 이들의 기숙사는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키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식사문제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7]. 그리고 언어적 폭력이 다반사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아프리카 예술단에게는 인종차별적인 행위[8]를 하였다.

넷째, 건강권 침해이다. 이들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공연의 특성상 공간이나 시설의 문제로 부상을 당하기도 하였으나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을 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었다[9].

이상의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유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2> 공연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유형5

인권침해유형	내용
이동권 침해	여권 압류
노동권침해	근로계약위반, 계약보다 긴 노동시간,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지불 및 체불, 휴게, 휴일 위반
일상생활에서의 인권침해	열악한 기숙사 문제, 식사 문제, 언어적 폭력, 인종차별적 행위
건강권 침해	건강보험·산재 보험 미가입, 공연 중 부상을 당하여도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

5) 아프리카 빌리지에서는 계약보다 초과된 공연횟수 외에 입장료받기, 청소, 공원조성 등 모든 잡일을 다 하였으며 아프리카박물관에서는 계약된 공연횟수가 3회였으나 4-6회의 공연을 하였다.
6) 아프리카 빌리지에서는 월 20만원, 아프리카 박물관에서는 월 6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7) 아프리카 빌리지에서는 밥과 닭고기를 넣은 음식만 제공되었으며 아프리카 박물관에서는 하루 식대가 2,500원이었다가 항의를 하자 4,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한다.
8) 아프리카박물관에서는 부상을 당하여 춤을 출 수 없는 무용수에게 아프리카 여인 조각상 밑에서 살아있는 거북이를 안고 서있도록 업무지시를 하여 당사자가 동물원의 동물처럼 느껴지는 모욕감을 주었으며 아프리카 빌리지에서는 이들이 냄새가 난다고 식당에서 식사를 못하게 하였으며 이들의 임금대장에는 흑인임금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오마이뉴스(2014년 2월 17일), <월급 20만원에 각종 공제 기록한 '흑인 임금 대장'>.
9) 2007년 에버랜드의 한 무용수가 5kg의 나비 옷을 입고 공연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디스크 수술이 필요하였으나 계약서에 "배우가 계약기간 중 다쳐도 에버랜드와 파견업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배우가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 집으로 가야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

이상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을 살펴보았다. 과거 연구에서 인권침해 관련해서 밝혀진 것은 주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에서 근무하는 예술흥행지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것이었으며, 공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주로 간헐적으로 알려진 사건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들이 근무하는 영역은 너무도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침해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이 근무하는 모든 업태에서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영역, 예를 들면 성매매가 주로 발생하는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이나 한국인 출입 유흥업소 등에서만 발생하는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최소한의 관리가 제공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과는 달리 기획사가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입국하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들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여도 외부 지원기관과 접촉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은 채 은폐된 인권침해 사례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들의 입국과정, 노동, 생활환경, 건강권, 인신매매의 가능성 등을 포함한 인권상황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조사를 통해 업태별 비교를 진행하였다. 특히 공연 이주노동자의 대다수인 필리핀 공연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해외취업사증(OEC: 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을 소지한 사람과 소지하지 않은 사람간의 인권침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인신매매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s, 이하 UNODC)에서 팔레르모 의정서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시한 인신매매 지표를 설문조사결과에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의 도입과 고용에 관련된 공식적・비공식적 기관, 예를 들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출신국 대사관 노동사무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인권의식, 각자의 역할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방식과 과정, 역할수행과정에서의 고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셋째,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특성, 도입역사, 현행 법・제도・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넷째, 관련 국제인권기준 및 미국과 일본의 정책사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사와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 연구대상

본 실태조사의 주요 대상은 예술흥행을 매개로 입국한 이주민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근무하는 업태는 너무도 다양하여 이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주어진 연구기간을 고려하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선정하는데 전략적 선택을 하여야 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영역은 제외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연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은 E-6-3비자를 소지한 이주민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프로스포츠에 종사하는 이주민들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으며 아직까지는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난 바가 없었다. 한편 E-6-1비자는 주로 소위 '고급예술'이나 '방송연예'에 종사하는 이주민에게 발급되는데 '고급예술'이나 '방송연예'에 종사하는 이주민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물론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른 업태에 종사하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보다 우선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에서 포함되는 주요 연구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이주민을 제외한 공연 이주노동자들이다. 본 연구에서 공연 이주노동자라고 함은 주로 장기 공연을 목적으로 예술흥행비자를 통해 입국한 모든 이주민을 말하며 입국 후 입국목적과는 전혀 다른 일, 예를 들어 유흥접객원의 일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에는 우선 E-6-1비자 소지 공연노동자 중에서는 아프리카 박물관처럼 인권침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난 테마파크에 근무하는 이주민이 포함된다. 그리고 E-6-2비자 소지 공연노동자는 이들이 근무하는 업태를 모두 포괄하고자 하였다.

출신국별로는 우선 E-6사증 발급 국가별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들이 주요 연구대상자들이다. 필리핀은 E-6 사증 발급건수에서 2011년 58.4%, 2012년 63.2%, 2013년 36.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31일 현재 예술흥행비자 소지 총 체류자 4,940명중 필리핀인은 3,494명이며 비율로는 70.5%이다[10]. 그 외 연구대상자는 몽골,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출신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들이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는 중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제외되었다. 주로 테마파크에 종사하는 중국인 기예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중국 기예단의 경우는 이들과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완전히 막혀 있었다. 이는 이들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중국공동체 등에 접촉하는 것이 완전히 차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의 생활이 폐쇄적인 감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결과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지 못하였다.

---

10)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4),「2013 출입국·외국인정책연보」

5. 연구방법

본 실태조사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권상황에 대한 것이다. 이들의 인권상황이라는 사회현상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한・두 가지의 연구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인권상황이라는 복합적 현상의 총체적 실체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구성된 개선안은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 및 대안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다차원적인 연구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문헌 조사

문헌 분석은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기존에 수행된 자료를 재분석하고 연구 주제에 맞게 해석하고 보완하는데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문헌조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문헌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대한 현황과 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우선 언론과 민간지원기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인권 침해 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예술 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도입현황과 체류현황, 국적별・성별・지역별・업종별 고용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국내 법적・제도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설문조사, 심층면접, 그리고 결과분석을 하는데 문헌조사를 통해 그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연구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합리적으로 절약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사회과학 방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탐색, 기술, 설명의 목적에 모두 가능하며, 다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정보로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대한 현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히 파악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설문지를 통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설문지 구성과 면접조사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1-3> 설문조사 진행과정

일시	내용
2014.06.28	설문지 초안 작성, 수정 논의
2014.07.04	설문지 수정을 위한 사전 인터뷰
2014.07.10 ~ 7.21	설문지 수정 및 재검토 및 E-6-2 설문지 최종안 완성
2014.07.22 ~ 8.05	영어, 따갈로그어 번역
2014.08.05 ~ 8.08	예비설문조사(인천, 제주) 및 E-6-1 설문지 수정
2014.08.10	영어, 따갈로그어 설문조사
2014.08.15 ~ 8.24	E-6-1 설문지 최종안 완성 및 몽골어, 중국어 번역
2014.08.25	몽골어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시작
2014.09.1~9.16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번역
2014.09.17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시작

설문지는 한국에서의 예술흥행비자 이주민들의 체류 비율을 고려해 영어, 따갈로그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 중국어 총 여섯 개 언어로 번역하였다. 설문지 구성에 대한 논의 및 검토가 예상보다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일단 연구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필리핀 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E-6-2 비자의 분야에 대한 설문지를 먼저 완성하고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 후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어권 이주민들이 주로 종사하는 공연 이주노동자에 대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기본 인적사항, 이주 과정, 근로계약과 노동조건, 예술 및 노동활동, 인권실태, 산업재해 및 의료, 생활환경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구성 내용은 <표1-4>와 같다.

<표 1-4>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실태 설문조사 구성

구분	문항내용
기본 인적사항	출신국가, 성별, 출생년도, 입국날짜, 입국횟수, 비자종류, 현재 업무
이주 과정	송입과정 및 경로, 소요비용
근로계약과 노동조건	근로계약 체결 및 내용, 실제 노동 조건, 소득원 및 임금지급방법
예술 및 노동활동	근무지, 근무 내용, 사업장 이동 경험 및 이유
인권실태	욕설,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 경험
아프거나 다친 경험 및 의료	건강과 관련한 의료실태
생활환경	숙소 환경 및 식사 환경
인신매매의 가능성	UNODC의 인신매매 일반적 지표
기타	설문지에서 다루지 못한 어려움이나 불만, 인권을 위한 건의사항

설문조사는 120부를 목표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이다. 그 이유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들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모집단을 확정할 수 없었다는 점, 이들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확률표집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비확률표집이 모집단의 속성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표본을 통해서 그 집단을 이해하고,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향후 정책이나 연구 자료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비확률표집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헌 조사, 연구진들과 전문가들의 검토 등을 통해 보완하였다. 표집방법은 눈덩이표집을 주로 사용하였다. 눈덩이 표집은 연구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하는 표집방법이다.

설문조사의 출발은 연구진 및 통역진과의 네트워크가 있던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이들의 소개와 SNS를 통해 설문대상자를 확장해 가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많은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이들과 SNS를 통해 근무가 없는 낮 시간에 만날 약속을 했더라도 이들과의 접촉은 쉽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매니저나 업소 사장이 이들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외출을 하지 않았다. 또한 업소 밖에서 한국인을 만나는 것

을 극도로 꺼리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아침 시간에 이들과 식당에서 만나 설문조사를 하던 중 옆 업소 사장을 우연히 만나 이 사람의 “여기서 뭐하냐”라는 한마디에 매우 놀라서 설문조사 도중 급하게 자리를 피하는 이주민도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어려움은 이주민 공동체, 두레방, 사랑마을 이주민센터의 도움을 통해 완화되었다. 그리고 등록 이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더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한 신규입국 E-6-2비자 소지 이주민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참가하여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조사를 일부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조사는 응답의 솔직성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여성이 면접 당시에 솔직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SNS에 밝혔다. 이 여성은 당시 교육받으러 올 때 업주와 업소의 중간매니저와 같이 왔으며, 업소 사장은 교육장 입구에서 대기 하고 있었고 또 자국민 출신인 중간매니저는 자신과 같이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전하였다.

한편 몽골출신 이주민에 대한 조사는 자국출신 유학생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들에 대한 조사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과의 설문조사를 위해 이들의 휴일에 약속을 하였으나 느닷없이 외출금지를 당하여 번번이 설문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 이주민에 대한 설문은 인권위를 통해 모 놀이공원 1곳에 협조요청을 진행하였다. 공연 중간 쉬는 시간에 대상자들을 모이게 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의문이 나는 점은 다시 방문하여 심층면접의 방식으로 2명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였다.

모든 설문조사에는 통역인이 참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통역인에게 설문지 내용을 숙지시키고 조사의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통역인의 자의에 의해 설문지가 해석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였다. 대다수의 설문조사에는 연구진이 주도하여 진행하였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교육을 한 통역인이 단독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설문지 작성과정에서 최대한 답변을 확인하였으며 설문지 수거 후 재확인과정에서 발견된 애매한 답변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등을 통해 확인,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여 응답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가 진행된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제주 등 총 6지역이며, 총 156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최종 유효설문지는 151매였다.

3) 심층 면접

질적 연구는 적은 사례를 통해 심층적인 내용을 탐구하거나 연구 대상자 확보가 어려울 때 사용되는 방법으로, 심층면접은 특히 질적 연구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적 분석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적 분석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들의 노동조건, 인권침해 등에 대한 통계적 상황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과정과 맥락을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면접자들이 입국과정, 근무지 배치, 근무지에서의 역할, 인권침해 등의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의 기억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심층면접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심층 면접을 했던 대상자들은 E-6-1비자 분야 종사자가 5명, E-6-2비자 분야 종사자가 18명이었다.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대상자는 E-6-1분야에 종사하였으나, 본인이 처음 한국으로 왔을 때 받았던 비자는 C-3였고, 한국에서 E-6-1로 비자를 전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출신국가별로 보면 필리핀 15명, 몽골 4명, 러시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우크라이나 1명, 부르키나파소 1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몽골 4명은 전직 그리고 현직 기예단 단원이며, 러시아 1명, 우즈베키스탄 1명과 우크라이나 1명은 모 놀이공원 퍼레이드 단원이다.

성별은 여성 15명, 남성 8명이며, 이 중 아동은 2명이며 성인은 20명이다. 그리고 현재 비자를 유지하고 있는 등록 상태는 10명,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미등록 상태가 12명이다. 진행 경과와 이들의 특성은 <표1-5>와 같다.

한편 직접 심층면접을 시행하기 어려운 사례들은 서면으로 도움을 받았다. 시민단체인 '살림'에서 확보하고 있는 성폭행 사례, 필리핀 대사관에서 확보한 사례들을 서면으로 취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5> 심층면접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특성

순서	면접일	국가	성별/생년	입국비자	비자상태	면접장소
1	7월 4일	필리핀	여(1978)	E-6-2	미등록	인천
2	8월 5일	몽골	남(1991)	E-6-1	등록	제주
3	8월 8일	부르키나파소	남(1980)	C3	등록	서울
4	8월 10일	필리핀	여(1986)	E-6-2	미등록	인천
5	8월 10일	필리핀	여(1978)	E-6-2	미등록	인천
6	8월 10일	필리핀	여(1982)	E-6-2	미등록	인천
7	8월 10일	필리핀	남(1955)	E-6-2	미등록	인천
8	8월 10일	필리핀	여(1983)	E-6-2	미등록	인천
9	8월 10일	필리핀	남(1982)	E-6-2	미등록	인천
10	9월 6일	필리핀	여(1970)	E-6-2	미등록	평택
11	9월 8일	몽골	남(1993)	E-6-1	등록	제주
12	9월 16일	필리핀	여(1979)	E-6-2	미등록	서울
13	9월 17일	우즈베키스탄	남(1989)	E-6-2	등록	서울
14	9월 17일	우크라이나	여(1987)	E-6-2	등록	서울
15	9월 27일	필리핀	여(1985)	E-6-2	미등록	부산
16	10월 7일	필리핀	여(1983)	E-6-2	등록	양주
17	10월 7일	필리핀	여(1980)	E-6-2	등록	양주
18	10월 7일	필리핀	여(1989)	E-6-2	등록	양주
19	10월 7일	필리핀	여(1979)	E-6-2	등록	양주
20	10월 20일	필리핀	여(1972)	E-6-2	미등록	평택
21	11월 2일	몽골	남(2001)	E-6-1	등록	제주
22	11월 2일	몽골	남(1998)	E-6-1	등록	제주
23	12월 2일	러시아	여(1991)	E-6-1	등록	서울

4) 기관 방문 및 업체조사

기관방문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도입과 고용에 관련된 공식적 기관,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권의식, 각자의 역할이 현실에서 구현된 방식과 과정, 역할 수행과정에서의 고충 등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모두 마친 뒤 조사과정에서 파악된 내용을 공유하고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견해와 조언을 듣고,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함이었다.

공공기관방문과 의견청취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행하였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산 동구청 체육관광과와 위생청소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은 직접 방문하여 이들 부처의 입장과 의견을 듣고 자료를 요청하였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찰청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질문을 하였다.

E-6-2비자 소지 이주민을 파견하는 업체 관계자 1명과는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을 모집하는 과정, 계약기간, 입국비용, 노동환경, 숙박시설, 예술흥행비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5)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조사는 연구진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간과하였던 것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라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접근하는데 다양한 연구방법이 동원되어야 하고,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으며, 확률 표집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점은 결국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연구 과정에 대한 검토와 연구 방향, 연구 결과에 대한 대양한 대안과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전문가 자문조사는 워크숍과 중간보고를 통해 수행하였으며 최종보고회에서 의견을 참조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이상에서 진행된 연구방법과 이것이 적용된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표1-6>과 같다.

<표 1-6>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조사 및 분석 대상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실태 조사	◦ 설문조사 (지역·국적·업종·성별 표본 151건) ◦ 심층면접 (사례·지역·국적·업종·성별 표본 22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
관련 기관 조사 및 업체 조사	◦ 면접조사 ◦ 문헌조사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부 영등위, 여성가족부, 평택·의정부·제주도의 관광업소 및 위생 담당파견업체 실장, 주한필리핀대사관 노무관
관련 법제와 정책 조사	◦ 문헌조사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 관한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형법, 공연법, 관광진흥법 등 국내 법제, 인신매매 등에 대한 국제기준, 일본·미국의 예술흥행관련 비자제도·피해자보호제도
인권 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 제시	◦ 조사결과 종합 ◦ 공개 워크숍 ◦ 전문가 자문	

6. 연구의 추진일정과 참여 연구진

1) 연구추진일정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다. 추진일정은 <표 I-7>와 같다.

<표 1-7> 연구 추진일정

연구기간	2014.07 – 2014.12					
월 / 연구내용	7	8	9	10	11	12
연구계획 수립 및 조사 설계, 추진 일정 확정	■					
설문지와 질문지 작성	■	■				
면접자, 설문대상자, 조사 기관 섭외	■	■	■	■		
연구 분야별 본 조사			■	■	■	
중간보고서 작성				■		
1차 공청회(중간보고회)					■	
중간보고 공청회 의견 수렴을 반영한 보완 조사					■	■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회						■

2) 참여연구진의 역할

본 연구의 연구진은 모두 6명이며 각각의 역할은 <표 I-8>과 같다.

<표 1-8> 연구진과 역할 분담

구분	역할 분담 내용	비고
이병렬	책임연구원, 연구의 설계 및 진행 총괄	한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중대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김연주	공동연구원, 국제인권기준 및 인권협약 국내외 법, 제도, 정책 문헌조사	(재)동천 변호사
박정형	공동연구원, 설문·면접 조사 설계 및 진행, 국내 기존 연구 문헌조사	한국이주인권센터 상담팀장
윤명희	공동연구원, 설문·면접 조사 설계 및 제주지역 조사 진행, 국내 기존 연구 문헌조사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연구원
이혜진	공동연구원, 설문·면접 조사 설계 및 진행, 국내 기존 연구 문헌조사, 해외정책 조사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홍세영	공동연구원, 설문·면접 조사 설계 및 진행, 국내 기존 연구 문헌조사	한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7. 보고서의 구성

본고서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대상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2장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관련제도와 현황에 대한 서술이다. 여기서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도입배경, 비자유형, 입국과정, 고용관련제도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예술흥행비자제도와 정책은 행정 분류인 비자유형에 따라 정해지고 집행되며, 정부의 공식통계 또한 여기에 맞추어서 구성되었다. 예술흥행비자의 행정 분류인 E-6-1, E-6-2에 따라 그 비자의 성격과 특성, 현황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3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대해 서술하였다. 여기서의 서술방식은 예술흥행비자의 행정분류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이 근무하는 업태별로 분석결과를 서술하였다. 이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유형이 너무도 다양하고 다양한 업태가 하나의 비자 유형에 묶여 있어 비자유형별로 인권침해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침해를 업태별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여 뒤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자 하였다. 업태에 대한 분류는 호텔, 나이트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주점, 외국인전용클럽, 시멘스클럽, 놀이공원, 테마파크로 나누었다. 유흥업소에 대한 분류는 그 변형이 많고 또한 분류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곳이 많아 쉽지 않았지만 조사결과와 영업장의 주요성격에 따라 분류를 하였다. 즉, 나이트클럽은 무대가 갖추어져 있고 춤을 중심으로 유흥을 즐기는 곳으로, 카페·7080은 무대를 중심으로 공연이 진행되는 것을 감상하면서 유흥을 즐기는 곳으로, 단란주점은 룸을 중심으로 여성접객원과의 유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곳으로 규정하였다. 외국인전용클럽은 미국 캠프 주변의 클럽으로 주요 고객이 미군 및 군속인 곳으로, 시멘스클럽은 항구 근처의 선원들을 중심으로 영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정의하였다. 놀이공원과 테마파크의 분류는 놀이공원은 다양한 탈 것과 구경거리, 즐길 거리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테마파크는 특정한 주제를 지닌 공연이 중심으로 구성된 곳으로 정의하였다.

4장은 일본과 미국의 예술흥행비자제도와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해 분석하여 한국의 비자제도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데 활용하고자 하였다.

5장은 앞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예술흥행비자제도, 노동문제, 인권침해, 인신매매의 4개 부분으로 나누어 그 각각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6장은 결론으로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본 연구보고서의 한계를 서술하였다.

8.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본 연구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전국 단위의 인권실태조사라고 볼 수 있다.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인권실태라는 다차원적인 사회현상에 접근하기 위해 현장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등이 결합하여 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조사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원 가능한 연구 방법을 진행하여 조사와 분석에서 최대한 편중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물론 자연현상과는 달리 사회현상은 정확하게 그 문제의 본질에 오차 없이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예상 가능한 오차를 최대한 줄이려 연구진은 노력하였으며 설사 이러한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연구결과의 중요성을 무효화할 만큼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다음과 같은 활용을 기대해 본다.

첫째, 본 연구는 성매매 이주여성 뿐만 아니라 공연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책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을 확산시킬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밝혀질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를 바탕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관련부처 및 기관에 대한 권고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을 위한 실질적인 국가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 밝혀질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의 심각성은 관련 학계의 관심을 유도하고 심층적인 후속연구를 견인할 것이다.

넷째, 학계와 인권단체의 공동연구를 유도하여 예술흥행비자 제도의 개선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Ⅱ.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관련제도와 현황

1. 예술흥행(E-6)비자제도와 고용관련제도 ····· 25
2.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현황 ····· 34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 예술흥행(E-6)비자제도와 고용관련제도

1) 예술흥행비자제도의 변화

외국연예인의 국내 유입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이 당시의 외국연예인의 도입은 미8군 클럽에서 공연하는 국내연예인이 부족해지면서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문화부가 허가해주면서였다. 따라서 외국연예인의 입국은 허가제로 출발하였는데, 이는 공연사업허가를 받은 공연기획사가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연예인을 초빙하는 형태였다.

그러다 1990년대에 들면서 이 제도가 변질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은 1996년 4월 문화관광부가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 이 단체의 주요 회원사는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관광업소에서의 외국연예인 공연을 다루는 공연기획사들과 미군기지 주변 클럽주들이다 - 의 사업허가 및 공연추천허가를 포괄적으로 허용해준 시기와 맥을 같이 한다. 1996년 당시 외국연예인의 국내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소에 대해 '포괄추천제가'가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는 외국인전용유흥주점이나 관광업소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별 공연장소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외국연예인의 공연추천허가를 취득하여 외국연예인을 고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현웅 외, 2006). 이 결과 외국연예인의 국내유입은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미군기지 주변의 클럽에 집중 배치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공연노동자가 아니라 유흥접객원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더욱이 정부는 1999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외국인 국내공연을 허가제에서 추천제로 변경하였고, 그 결과 해외 파견사업 허가만 있으면 누구나 외국연예인의 공연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외국연예인 고용 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 당시에 7개였던 기획사가 2001년 103개로, 2002년 5월에는 157개로 증가하였는데(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2) 외국 연예인 기획사의 증가추이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공연을 기획할 능력이 없는 각종 기획사가 난립하고 이들을 통해 외국연예인의 국내 유흥산업으로의 진입은 더욱 급증하게 되었다.

한편 늘어난 외국연예인의 상당수가 원래 입국한 목적과는 달리 유흥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이동되면서 성매매 강요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결과 2001년에 발간한 미국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에 한국이 3등급 국가로 분류되면서 외국연예인 도입 관련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때 예술흥행사증 신청 서류 심사와 외국연예인이 고용되어 있는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무용수에 대한 사증발급을 중단하였다.

또 다른 방안은 E-6비자를 크게 예술・연예(E-6-1), 호텔・유흥(E-6-2), 운동・경기(E-6-3) 등으로 세분화하자는 것이었으며 2004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는 이른바 고급 예술인에게는 E-6-1비자를 부여하여 출입국 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그 외의 예술인들은 E-6-2비자를 부여하여 통제와 관리의 관점에서 운영하자는 것이었다.

2) 현행 예술흥행비자제도의 유형

예술흥행비자는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자에 한해 발급되는 체류자격이다. 현재 이 비자는 2004년부터 예술・연예(E-6-1), 호텔・유흥(E-6-2), 운동(E-6-3)로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체류기간의 상한은 2년이다[11]. 이 기간은 공연추천기간, 고용추천기간, 고용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적정 체류기간을 부여한다.

<표 2-1> 예술흥행비자의 분류와 활동 분야

분류	활동 분야
E-6-1 (예술・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및 전문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작곡가・화가・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호텔・유흥)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요·연주자, 곡예·마술사 등)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예:워커힐 호텔 등)에서 활동하려는 자
E-6-3 (운동)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및 매니저 등)

※ 자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

이 비자의 분류기준은 공연시설에 해당하는 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E-6-1(예술・연예) 비자는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공연의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및 전문방송연기가 이에 해당한다. 주로 작곡가・화가・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이 속한다.

11) 체류기 간이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C-4)의 체류자격에 해당된다.

E-6-2(호텔・유흥) 비자는 '관광진흥법'에 적용되는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자격이다. 이는 주로 가요・연주자, 곡예・마술사 등이 해당된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시설의 부재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에서 활동하려는 자도 이에 속한다.

<표 2-2> 예술흥행 사증 발급인정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내용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고용계약서 사본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추천제외대상 공연은 면제) ⑤ 공연계획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관광업소에서의 연주, 가요, 곡예, 마술에 대한 공연추천은 '주한 미8군 영내클럽,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유람선, 휴양콘도 미니엄, 관광극장 유흥업, 외국인전용음식점,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추천하지않음 - 단, 관광업소 공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장(예, 워크힐호텔, 부산롯데호텔 등)에서의 퍼레이드・쇼・뮤지컬 등 가무적 요소를 갖춘 공연과 유원시설(예,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및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코엑스벡스코 등 무역전시장 및 롯데・하얏트 등 특급호텔)에서의 '가무'도 공연추천 ⑤ 연예활동계획서 ⑥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⑦ 신원보증서
그 밖의 경우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광고・패션모델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용추천서, 방송출연자 등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용추천서 등 ** 프로축구 등 운동선수・지도자・심판 등에 대한 소속회사(연맹)의 고용추천서, 주무장관의 협조공문, 초청단체(자)의 초청사유서 및 활동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 상금이 걸린 운동・바둑・노래 등의 대회참가자에게 주최측이 발급한 참가자 확인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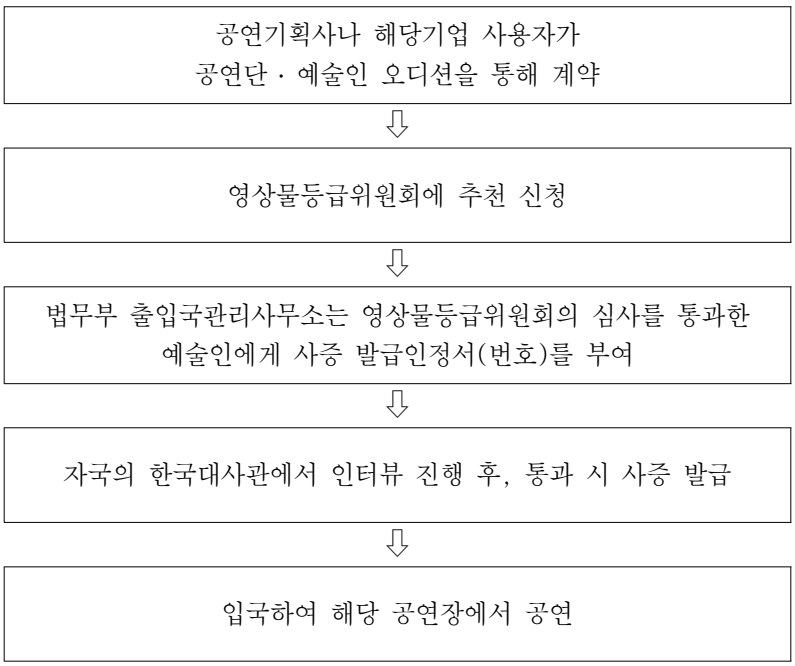
※ 자료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홈페이지(체류자격별-사증 안내메뉴얼)

한편 예술흥행사증 발급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위의 <표2-2>와 같다.

3)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입국 및 고용관련제도와 문제점

외국연예인들이 국내에서 장기간 머물면서 공연을 하려면 예술흥행사증인 E-6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E-6-1비자와 E-6-2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은 유사하다. 먼저 E-6-1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표2-3>과 같다.

<표 2-3> E-6-1 공연 이주노동자 도입과정



E-6-1비자로 외국연예인이 입국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오디션을 통과하는 것이다. 현지 오디션은 주로 해당 기업의 사용자나 관련 매니저가 직접 공연단이나 예술단의 오디션을 주로 보지만, 대규모 공연단의 경우에는 알선업체가 대행하기도 한다. 현지 공연단이나 예술인의 오디션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추천 신청을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추천과 관련한 일체의 서류를 검토하여 등급을 재분류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이후 각국 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사증을 신청하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E-6-1 사증이 발급되면 공연 이주노동자가 입국할 수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연추천을 하더라도 사증 발급조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연 이주노동자의 입국 자체가 불허되기도 한다. 공연 이주노동자가 입국을 하게 계약된 공연장에서 체류기간 동안 공연을 하게 된다.

E-6-2비자로 해외 연예인이 입국하는 과정도 역시 오디션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외고용 알선업체(에이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국 알선업체의 요청에 따라 외국 현지의 에이전시는 연예인을 발탁하여, E-6-1 비자 도입절차와 같이 재분류 과정과 심사과

정을 거쳐서 사증을 받아 공연 이주노동자가 입국하도록 한다. 입국 후에는 한국 내 알선업체는 해당 사업주에게 인계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 업소 변경, 비자 연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입국한 공연 이주노동자는 파견알선업체의 요구에 따라 E-6-1비자 소지 공연노동자와는 다르게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표 2-4> E-6-2(호텔 · 유흥) 공연 이주노동자 도입과정

현지 해외고용 알선업체(에이전시)는
한국 파견업체에서 인력을 요청받아 연예인을 발탁함

⇩

한국파견업체는 해당 연예인의 노래가 담긴 영상을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연예인에게 사증 발급인정서(번호) 부여

⇩

해당 연예인은 자국의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 심사 후,
통과 시 사증 발급

⇩

한국 파견업체는 한국에 입국한 해당 연예인을 업소와 업주에게 인계.
월급 지급을 담당. 업주의 요청 시 급여 지급, 해당 연예인의 업소
변경, 비자 연장 등의 업무를 담당

이 과정에 관계되는 정부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해외주재 대사관, 고용노동부, 각 지방자치단체이다.

우선 E-6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12]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제를 규정하고 있는 「공연법」은 1999년 개정되면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관광,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공연은 공연법상 공연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원회 추천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2003년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제45조 3항을 신설하여 공연법상 공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공연의 추천업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하였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법」, 「관광업소 종사 외국 연

12) 문화관광체육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조 1항과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연법」 제6조 1항 및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에 종사할 외국인에 대한 공연추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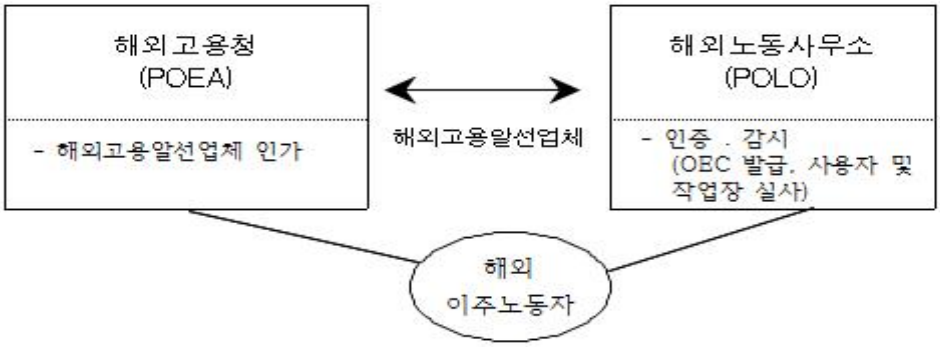
예인 추천 지침」 및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관광업소 공연에 대한 추천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관광극장식당 또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의 공연추천이다. 실제 관광유흥업소에서 공연을 하는 이주노동자들, 특히 이주여성들이 유흥업소의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권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 왔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연추천을 위한 심사를 엄격하게 수행하여 공연자가 아닌 자의 추천을 받기 위한 기망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연자로 추천한 이주노동자들이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는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인권침해를 제재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법무부에서는 사증발급심사가 이루어진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연예인에게 사증 발급인정서(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물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 심사 외에 법무부 출입국의 사증발급심사가 이루어져 이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상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책임소재의 불명확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현웅 외, 2006).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확인증이 전달되면 해당 연예인은 자국의 한국대사관에서 인터뷰 심사를 받는데 이것이 통과하면 E-6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국과의 협력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 현재 E-6비자로 입국한 사람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외국에 일하러 가기 위해서는 POEA(Philippines Overseas Administration: 필리핀 해외 노동청)가 발급한 OEC(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 해외취업사증)가 있어야 한다. OEC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외취업을 원하는 연예인을 섭외한 현지 인력업체가 POEA에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POLO(Philippines Overseas Labour Office: 필리핀 해외 노동사무관)가 요청이 들어온 한국 내 호텔 등의 노동환경 등을 검증한다. 한국 파견업체가 POLO로부터 확인증을 받으면 필리핀 현지 인력업체에 보내지고, 현지 인력업체는 그것을 POEA에 제출하여 OEC를 받게 된다.

<그림 2-1> 필리핀 해외이주노동자 송출시스템



필리핀에서 해외취업을 위해 떠나기 위해서는 OEC가 필요하지만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대사관에서 발급한 E-6비자만 있으면 된다[13]. POLO의 승인을 받은 사람, POEA의 OEC 발급받은 사람, E-6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사람의 수는 - 물론 OEC를 발급받은 사람 모두가 바로 한국에 입국하지는 않겠지만 -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2-5> POLO 승인·POEA 승인·E-6 비자 발급에 따른 연도별 비교

[단위: 명]

연도	POLO (필리핀 해외노동사무관)	POEA (필리핀 해외노동청)	E-6 비자 필리핀 입국자
2009년	601	856	2,505
2010년	323	241	2,002
2011년	359	315	1,317
2012년	277	285	1,735
2013년	170	151	1,603
2014년9월	131	-	989

※자료: 주한 필리핀대사관 자료(2009-2014.09.30)

그 다음으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입국과 고용에 관여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이다. 외국 연예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를 통해 당해 업소에 공연할 외국 연예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파견업체는 외국 연예인과 근로 또는 공연계약을 맺은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연추천을 받아 법무부로

13)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최근 6개월 이내 이탈자가 발생한 업체가 초청한 경우'에는 영사가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영사가 직접 인터뷰하면서 실제 가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지만, 합격기준 등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다고 한다(법무부 체류관리과 답변, 2014)

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는다. 이후 피초청자인 외국 연예인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전달하면 당해 외국 연예인은 위 인정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다. 파견업체는 공연 업소 등과 공연계약을 맺은 후 이들에게 이주노동자를 배정한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에서 파견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파견 사업체인 관광업소의 불법행위(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부) 등을 감독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파견업체인 기획사의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 사업주인 관광업소를 방문 조사를 시행하기도 하나 실제 계약과 근로 내용이 다른 경우를 적발하여 조치한 예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예술흥행비자 소지 공연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E-6-2 비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업소에 대한 관리도 기초단체에서 하고 있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시·군·구에 추천사실을 통보하면 해당 시·군·구에서 추천된 공연단에 대해 사후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원만한 조치가 이루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의 도입 및 고용관련 기관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공연 이주노동자 도입 및 고용 관련 기관과 역할

기관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14]
법무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연예인에게 사증 발급인정서(번호)를 부여
해외주재대사관	인터뷰 심사, E-6 비자 발급 신청
고용노동부	파견업 허가, 근로감독관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부 감독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등록, 업소관리, 추천된 공연단의 사후관리

14)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는「공연법」,「관광업소 종사 공연 이주노동자 추천 지침」및「영상물등급위원

이상에서 보듯이 추천권한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기획사 관리는 고용노동부, 인적관리는 법무부, 업소 및 추천 공연단의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나뉘어져 있어 업무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업무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인권침해 등을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이 거의 부재하다고 봐야 하며, 이 결과 이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질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회 심의기준」에 따라 관광업소 공연에 대한 추천을 하고 있다.

2.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현황

1962년~1999년까지 외국 연예인의 국내유입은 허가제로 이루어 졌다. 즉, 공연사업허가를 받은 공연기획사들은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 연예인을 국내로 초청하였다. 그러나 1999년 정부가 외국인 국내공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추천제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해외파견사업 허가만 있으면 누구나 외국 연예인의 공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업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15].

<표 2-7> 예술흥행비자 입국자수 : 1992-2013년

[단위: 명]

연도	예술흥행비자 입국자수		
	전체	남(비율)	여(비율)
1993	1,434	970(67.6%)	464(32.4%)
1994	649	414(63.8%)	235(36.2%)
1995	1,009	664(65.8%)	345(34.2%)
1996	1,550	762(49.2%)	788(50.8%)
1997	2,211	983(44.5%)	1,228(55.5%)
1998	2,105	760(36.1%)	1,345(63.9%)
1999	4,486	1,094(24.4%)	3,392(75.6%)
2000	7,044	1,466(20.8%)	5,578(79.2%)
2001	8,586	1,615(18.8%)	6,971(81.2%)
2002	6,452	1,390(21.5%)	5,062(78.5%)
2003	4,640	1,262(27.2%)	3,378(72.8%)
2004	3,943	1,445(36.6%)	2,498(63.4%)
2005	4,759	1,648(34.6%)	3,111(65.4%)
2006	4,410	1,710(38.8%)	2,700(61.2%)
2007	3,418	1,096(32.1%)	2,322(67.9%)
2008	4,845	1,793(37.0%)	3,052(63.0%)
2009	4,577	1,581(34.5%)	2,996(65.5%)
2010	4,183	1,678(40.1%)	2,505(59.9%)
2011	3,082	1,015(32.9%)	2,067(67.1%)
2012	3,495	873(25.0%)	2,622(75.0%)
2013	4,368	1,948(44.6%)	2,420(55.4%)

* 자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재구성

15) 1980년 7개의 외국인 연예인 공연기획사가 2001년에는 103개, 2002년에는 157개로 급증하였다(두레방, 2007)

이에 따라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수도 급증하게 되는데. 1998년 2,105명, 1999년 4,486명, 2,000년 7,044명, 2001년에는 8,586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2013년 말 현재 4,368명이 거주하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등록 현황을 16개 시·도별로 비교하여 보면, 경기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대구광역시, 서울, 경남, 제주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는 46%의 공연 이주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다.

<표 2-8> 지역 및 국적별 예술흥행비자 이주민 체류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필리핀	중국	한국계 중국인	우크라이나	몽골	러시아	기타
서울특별시	467	101	76	4	66	8	38	174
부산광역시	246	215	5	0	4	0	2	20
대구광역시	502	433	18	0	4	0	5	42
인천광역시	111	81	6	0	2	1	3	18
광주광역시	43	25	10	0	0	0	0	8
대전광역시	36	23	2	0	0	0	0	11
울산광역시	237	221	6	0	0	0	1	9
세종특별시	19	0	19	0	0	0	0	0
경기도	1,476	1,211	16	0	27	35	11	176
강원도	97	55	1	0	23	1	5	12
충청북도	37	35	0	0	0	0	0	2
충청남도	80	28	49	0	0	0	0	3
전라북도	112	87	4	0	4	1	0	16
전라남도	32	31	1	0	0	0	0	0
경상남도	417	365	11	2	6	0	3	30
경상북도	274	221	15	0	0	9	2	27
제주특별자치도	279	37	90	1	6	77	3	65
합계	4,465	3,169	329	7	142	132	73	613

* 자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3.12.31) 재구성

국적별로 필리핀 출신 공연 이주노동자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경상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다. 중국과 몽골 출신 공연 이주노동자는 최근 제주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에 E-6-2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하는 이주민들은 대부분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 고용되고 있다. 경기도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의 90%는 기지촌인 동두천시와 평택시, 의정부시 등 세 곳에 집중하여 위치하고 있다. 미군기지가 축소 혹은 이전될 예정인 지역은 업소수가 감소한 반면, 기지 확장이 예정된 지역은 업소수가 증가하였다(안태윤, 2012). 제주는 대규모 관광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시설이 많은 지역이다. 주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은 관광호텔 가수, 복합리조트단지 내의 테마파크 곡예단, 관광극장유흥업소 무대공연, 관광유람선 무대공연 등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제주는 타 지역에 비해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보다 중국과 몽골 출신 공연 이주노동자가 많은 편이다.

한편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입국이 늘어남과 동시에 예술흥행비자 입국자 중 여성의 비율이 1998년 63.9%, 1999년 75.6%, 2000년 79.2%, 2001년에는 81.2%에 이르러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여성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국내의 공연예술인의 수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흥산업에서의 이주여성 유흥접객원의 수요증가에 따른 결과였다. 한국외국인관광시설협회 회장이기도 했던 한 도의원이 예술흥행사증을 이용하여 러시아 여성들을 국내로 유입시킨 혐의로 구속되면서[16] 예술흥행사증이 이주여성의 성매매에 이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인신매매, 강요된 성매매 등을 비롯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였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었는데, 러시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정부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였고 2001년 7월 12일에 발표한 미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이 국제인신매매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예술흥행비자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외국연예인의 국내공연에 대한 추천신청 및 심사를 강화하고[17] 단속을 강화하는 정책을 선택하였다. 이 결과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2001년 8,546명을 최고점으로 하여 2002년 6,452명, 2003년 4,640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입국자 수가 줄였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개선된 것은 아니었다.

---

16) 연합통신(1999년 8월 22일자), "외국인여성 위장취업 도의원 등 3명 영장"

17) 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연예인을 추천신청 시 외국연예인의 공연장소에 대하여 관광업소 등록자에게 포괄적으로 주어지던 '포괄추천제'에서 2급 이하 관광호텔 및 관광특구를 추천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정추천제'로 전환하여 공연장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둘째, 외국연예인 공연에 대한 심사 시 비디오심사를 도입하여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심사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외국연예인의 추천심사 시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표준계약서 및 협조문 등을 요구하는 등 서류심사를 강화하였다. 넷째, 공연기획사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 관광업소 공연을 추천받으려하는 기획사에게 파견사업허가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한 기획사가 추천할 수 있는 연예인의 수를 제한하였다(고현웅 외, 2006)

<표 2-9>에 의하면 주요 입국 대상자가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에서 필리핀[18]으로 바뀌었을 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었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이들로 하여금 직장에서 이탈하도록 하여 미등록 체류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2-9> 출신국별 예술흥행비자 입국자수: 1999-2013년

[단위: 명]

연도	전체	러시아 연방	필리핀	우즈베 키스탄	키르기 스스탄	몽골
1999	**4,486**	2,049	**1,225**	321	31	5
2000	**7,044**	3,510	**1,849**	545	51	35
2001	**8,586**	3,901	**2,051**	30	117	956
2002	**6,452**	3,238	**1,208**	72	153	437
2003	**4,640**	1,856	**1,375**	76	128	73
2004	**3,943**	305	**2,215**	4	2	80
2005	**4,759**	438	**2,381**	16	4	124
2006	**4,759**	412	**2,880**	48	23	111
2007	**3,418**	180	**1,911**	24	0	88
2008	**4,845**	201	**2,332**	19	2	149
2009	**4,577**	216	**2,505**	24	0	100
2010	**4,183**	151	**2,002**	17	3	149
2011	**3,655**	172	**1,319**	54	5	154
2012	**4,162**	139	**2,735**	37	3	139
2013	**4,368**	94	**2,609**	52	47	160

* 자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재구성

또한 2011-13년 사이의 외국인의 미등록 체류율은 11.6 - 12.3%이나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체류율은 30.4 - 34.1%로 분포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7> 이주민 미등록 체류율

[단위: 명]

연도	총체류자	미등록 체류자	미등록 체류율(%)
2011년	1,395,077	167,780	12.0
2012년	1,445,103	177,854	12.3
2013년	1,576,034	183,106	11.6

* 자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3) 재구성

18) 한국의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가 증가하게 된 배경중의 하나는 2000년 초반 일본의 흥행비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필리핀 출신 연예인이 한국으로 선회하였다는 점도 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매년 수만 명 단위로 필리핀여성들이 유입되면서, 일본은 필리핀 엔터테이너의 거의 독점적인 수용국이었다. 그러나 흥행비자로 일본으로 들어온 필리핀 출신 엔터테이너가 2004년 82,741명을 정점으로 하면서 2004년 이후부터 격감하였다. 흥행비자 발급에 대한 엄정조치가 시작된 2005년에는 반감되었고, 2006년에는 2004년의 약1/10에 해당하는 8,608명이 감소했다(4장 참조).

<표 2-8> 예술흥행 이주민의 미등록 체류율

[단위: 명]

연도	총체류자(명)	미등록 체류자(명)	미등록 체류율(%)
2011년	4,246	1,446	34.1
2012년	4,528	1,377	30.4
2013년	4,940	1,504	30.4

* 자료: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3) 재구성

그 결과 2011년 7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국제협약 제6조를 이행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였다.

a)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을 제정하고, 인신매매를 범죄로 포함하도록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
b)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는 연예기획사의 현행 초기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E-6비자 소지 여성들이 성매매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일하는 업소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 감시 체계를 확립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c) 외국인 여성을 결혼중개업자와 인신매매업자, 그리고 배우자로부터의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입법조처를 강구할 것
d) 성매매에 관련된 여성들을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성매매정책과 관련 법안들을 재검토할 것
e) 인신매매의 희생이 된 여성과 소녀를 보호하고 지원하여, 인신매매의 원인을 밝히도록 심화된 조치를 취할 것
f) 성매매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의 성매매착취를 금지하고, 성매매로 착취당한 여성과 소녀를 위한 재활과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의 사회적 재통합을 활성화하도록 조처를 취할 것
g)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서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를 예방·억제·처벌하기 위한 의정서」를 비준할 것[19)]

그리고 2012년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표명한 우려와 권고에 동의를 하며 한국의 E-6 제도를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된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통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19) 안태윤(2012)에서 재인용

이상에서 한국의 예술흥행비자제도의 도입배경, 변화, 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난 20년간의 예술흥행비자 제도는 주로 외국 여성연예인의 성매매 피해와 인권침해 문제가 시민단체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외교적인 차원에서 조망되면서, 그 시기마다 부처 간의 합동 단속을 하거나 예술흥행비자 서류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단편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정책변화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제도 운용의 결과는 예술흥행비자로 들어오는 이주민의 노동권과 인권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3장의 실태조사 분석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Ⅲ. 실태조사 분석결과

1. 기본적인 인적사항 ····· 43
2. 업태별 분류 ····· 44
3. 이주 과정에서의 실태 ····· 45
4. 근로계약 체결 및 노동실태 ····· 61
5. 노동 과정에서의 인권 실태 ····· 83
6. 의료 ····· 117
7. 생활환경 ····· 120
8. 유엔마약범죄국(UNODC)의 인신매매 일반적 지표 적용에 따른 ····· 127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 기본적인 인적사항

분석은 총 151명의 유효 설문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단위: 명(%)]

구분	항목	빈도(비율)	합(비율)
출신국가	필리핀	117(77.5)	151 (100)
	러시아	2(1.3)	
	우크라이나	16(10.6)	
	우즈베키스탄	1(0.7)	
	몽골	15(9.9)	
성별	여성	120(79.5)	151 (100)
	남성	31(20.5)	
입국 시 비자 유형	E-6-1	14(9.3)	151 (100)
	E-6-2	122(80.8)	
	모르겠다	14(9.3)	
	기타	1(0.7)	
출생연도	1970년 이전	6(4.0)	151 (100)
	1971년~1980년	28(18.5)	
	1981년~1990년	79(52.3)	
	1991년~2000년	36(23.8)	
	무응답	2(1.3)	
현재 비자 유형	E-6-1	15(9.9)	151 (100)
	E-6-2	55(36.4)	
	G-1	1(0.7)	
	미등록	75(49.7)	
	기타	5(3.3)	
부양가족	있다	125(82.8)	151 (100)
	없다	25(16.6)	
	무응답	1(0.7)	

출신국가로는 필리핀 117명, 러시아 2명, 우크라이나 16명, 우즈베키스탄 1명, 몽골 15명에 대해서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120명, 남성이 31명이다. 국가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는 필리핀 107명, 러시아 2명, 우크라이나 11명이다. 남성의 경우는 필리핀 10명, 몽골 15명, 우즈베키스탄 1명, 우크라이나 5명이다.

입국 시 비자 유형으로는 E-6-1이 14명으로 모두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이며, E-6-2가 122명,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14명, 기타가 1명이었다. 출생연도로는 1970년 이전 출생자가 6명, 1971년부터 1980년 이전 출생자가 28명, 1981년부터 1990년 이전 출생자가 79명, 1991년부터 2000년 이전 출생자는 36명이었다.

현재 비자유형으로는 E-6-1이 15명으로 모두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이고, E-6-2가 55명, G-1비자가 1명, 기타는 5명이고 미등록이 75명이다. 부양가족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25명, 부양가족이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5명이었다.

2. 업태별 분류

설문지 응답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태에서 종사하고 있는지를 분류해 보았다.

<표 3-2> 업태별 분류

[단위: 명(%)]

국가	항목	빈도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놀이공원	19(12.6)
몽골	테마파크	15(9.9)
필리핀	호텔공연	4(2.6)
	나이트클럽	48(31.8)
	카페・7080클럽	7(4.6)
	단란주점	16(10.6)
	외국인전용클럽	15(9.9)
	시멘스클럽	13(8.6)
	기타(기타 7, 무응답 7)	14(9.3)
합계		151(100)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 공연 이주노동자는 놀이공원에 근무하였고,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는 테마파크에서 근무하였다.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는 호텔공연, 나이트클럽, 카페 및 7080클럽, 단란주점, 외국인전용클럽, 시멘스클럽 등에 종사하였다.

나이트클럽은 춤을 추는 것이 주가 되는 유흥업소이고, 카페 및 7080클럽은 노래를 들으

며 술과 음료를 마시는 곳이다. 단란주점은 고객들이 노래를 부르며 여성 접객원들에게 접대를 받으면서 술을 마시는 형태이다. 외국인전용업소와 시멘스클럽은 원칙적으로 외국인들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무응답 및 업소의 유형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응답은 14건이 있었다.

3. 이주 과정에서의 실태

1) 본국 직업

한국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모집된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에서 가지고 있던 직업은 다음과 같다.

<표 3-3> 본국에서의 직업_국가별(복수응답)

[단위: 명(%)]

항목	필리핀 (n=116)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n=20)	몽골 (n=15)	합계 (n=151)
가수	65 (56.0)	1 (5.3)	0 (0.0)	66 (44.4)
무용수	3 (2.6)	14 (73.7)	2 (13.3)	19 (12.6)
악기연주자	5 (4.3)	0 (0.0)	0 (0.0)	5 (3.3)
마술사 및 곡예사	1 (0.9)	1 (5.3)	1 (6.7)	3 (2.0)
연예예술지망생	2 (1.7)	3 (15.8)	1 (6.7)	6 (4.0)
제조업	3 (2.6)	0 (0.0)	1 (6.7)	4 (2.6)
자영업	2 (1.7)	0 (0.0)	1 (6.7)	3 (2.0)
주부	6 (5.2)	0 (0.0)	0 (0.0)	6 (4.0)
축산업	2 (1.7)	0 (0.0)	1 (6.7)	3 (2.0)
기타	32 (27.6)	1 (5.3)	9 (60.0)	42 (27.8)

가수, 무용수, 악기연주, 마술사, 곡예사, 연예예술지망생을 예술 및 연예분야의 종사자로 분류했을 때,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응답자 116명 중 74명(63.8%),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공연 이주노동자는 19명 중 19명(100%),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

우 15명 중 3명(20%)이 본국에서 예술 및 연예분야에 종사하였다.

필리핀과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기타(필리핀 32명, 몽골 9명)의 비율이 높은데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판매원, 웨이트리스, 호텔 접수원, 회사 비서 등이 있었다. 그리고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모두가 학생이었다.

종합해 보면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63.8%는 예술 및 연예분야 종사자, 36.2%는 비종사자가 한국으로 들어오며, 놀이공원에서 일을 하는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공연 이주노동자 경우는 관련 종사자가 오며, 테마파크에서 근무하는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학생이 많이 입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태별로 본국 예술 및 연예분야 관련자의 입국 여부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4> 본국에서 예술 및 연예분야 관련자 여부_ 업태별

[단위: 명(%)]

항목	관련 종사자	비종사자	합계
호텔공연	3 (75.0)	1 (25.0)	4 (100)
나이트클럽	31 (64.6)	17 (35.4)	48 (100)
카페 및 7080클럽	3 (42.9)	4 (57.1)	7 (100)
단란주점	10 (62.5)	6 (37.5)	16 (100)
외국인전용클럽	10 (66.7)	5 (33.3)	15 (100)
시멘스클럽	7 (53.8))	6 (46.2)	13 (100)
테마파크	3 (20.0)	12 (80.0)	15 (100)
놀이공원	19 (100)	0 (0.0)	19 (100)
합계	86 (62.8)	51 (37.2)	137 (100)

* 기타 업태 제외

놀이공원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전원이 관련 분야 종사자였다. 그러나 그 외의 업태들에 종사하는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예술 및 연예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던 비율이 높다.

전체적으로는 37.2%가 본국에서 관련분야 비종사자였으나, 놀이공원을 제외하면 비종사자의 비율이 43.2%로 높다. 따라서 유흥업소나 테마파크에서는 비전문적이거나 숙련되지 않은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모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국 입국 시 나이와 미성년 이주민 입국

유흥업소와 테마파크에서는 만 17세 이하의 나이에 취업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들의 경우 보호자와 분리되고, 학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돌봄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했다.

<표 3-5> 한국에 입국할 때의 나이_국가

[단위: 명(%)]

항목	필리핀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몽골	합계
만 17세 이하 10대	5 (4.4)	0 (0.0)	8 (53.3)	13 (8.8)
만 18세 이상 10대	9 (7.9)	5 (26.3)	4 (26.7)	18 (12.2)
20대 초반 (20~24)	45 (39.5)	14 (73.7)	2 (13.3)	61 (41.2)
20대 후반 (25~29)	33 (28.9)	0 (0.0)	1 (6.7)	34 (23.0)
30대 초반 (30~34)	14 (12.3)	0 (0.0)	0 (0.0)	14 (9.5)
30대 후반 (35~39)	6 (5.3)	0 (0.0)	0 (0.0)	6 (4.1)
40대 초반 (40~44)	2 (1.8)	0 (0.0)	0 (0.0)	2 (1.4)
합계	114 (100)	19 (100)	15 (100)	148 (100)

* 무응답 제외

입국 당시 10대였던 비율은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12.3%,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가 80.0%이다. 10대로 입국 했을 때 만 17세 이하인 경우가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5명,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8명이다. 특히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전체 조사자의 53.3%가 만 17세 이하였다. 이는 본인이 본국에서 학생이었다는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의 응답이 많은 것에 상응하는 결과이다.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10대의 비율이 25%에 달했으나 만 17세 이하는 없었다.

3) 이주에 관한 정보 습득 및 계약 과정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누구에게서 정보를 얻어서 어떤 과정으로 한국에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1) 친구 및 지인을 통한 초기 정보 습득

이주에 관한 정보를 주로 누구에게 얻었는지 물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6> 이주에 관한 정보 습득_국가별(복수응답)

[단위: 명(%)]

항목	필리핀 (n=115)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n=19)	몽골 (n=15)	합 (n=149)
가족·친척	5 (4.3)	0 (0.0)	4 (26.7)	9 (6.0)
친구	70 (60.9)	7 (36.8)	1 (6.7)	78 (52.3)
아는 사람	2 (1.7)	4 (21.1)	9 (60.0)	15 (10.1)
본국에이전트	18 (15.7)	7 (36.8)	1 (6.7)	26 (17.4)
한국프로모터	27 (23.5)	3 (15.8)	0 (0.0)	30 (20.1)
한국 근무지 사장 및 관련자	2 (1.7)	0 (0.0)	0 (0.0)	2 (1.3)
대중매체	0 (0.0)	0 (0.0)	0 (0.0)	0 (0.0)
인터넷	2 (1.7)	0 (0.0)	0 (0.0)	2 (1.3)

* 무응답 제외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친구 및 아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비중이 115명의 응답자 중 72명으로 전체의 62.6%로 가장 많았다.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친구 및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은 11명으로 전체 19명 중 57.9%였다.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15명 중 10명(66.7%)이 친구 및 아는 사람에게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프로모터에게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은 27명으로 23.5%, 본국 에이전트에게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이 18명으로 15.7%였다.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본국의 에이전트에게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7명으로 36.8%였고, 친구에게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이 역시 7명으로 비율이 동일했다. 몽골은 15명의 응답자 중 9명이 아는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었다고 응답했다. 가족·친척에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게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도 4명이 있었다.

<표 3-7> 이주에 관한 정보 습득_업태별 (복수응답)

[단위: 명(%)]

항목	호텔 공연 (n=4)	나이트 클럽 (n=48)	카페 · 7080클럽 (n=7)	단란 주점 (n=16)	외국인 전용클럽 (n=14)	시멘스 클럽 (n=12)	놀이 공원 (n=19)	테마 파크 (n=5)
가족 및 친척	0 (0.0)	3 (6.3)	1 (14.3)	0 (0.0)	0 (0.0)	0 (0.0)	0 (0.0)	4 (21.1)
친구 및 지인	2 (50)	29 (60.4)	3 (42.9)	12 (75.0)	8 (57.1)	11 (91.7)	11 (57.9)	10 (52.6)
본국 에이전트	2 (50)	3 (6.3)	3 (42.9)	4 (25.0)	1 (7.1)	3 (25.0)	7 (36.8)	1 (5.3)
한국 프로모터	0 (0.0)	12 (25.0)	0 (0.0)	1 (6.3)	7 (50.0)	3 (25.0)	3 (15.8)	0 (0.0)
한국사장 및 관련자	0 (0.0)	2 (4.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대중매체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인터넷	0 (0.0)	2 (4.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업태별로 보면 친구 및 지인에게 정보를 얻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호텔 공연의 경우 50.0%, 나이트클럽의 경우 60.4%, 카페 및 7080클럽의 경우 42.9%, 단란주점의 경우 75%, 외국인전용클럽의 경우 57.1%, 시멘스클럽의 경우 91.7%, 놀이공원의 경우 57.9%, 테마파크의 경우 52.6%로 높다.

프로모터 및 관계자에게 정보를 얻은 경우는 호텔과 카페 및 7080클럽의 공연 이주노동자에게서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나이트클럽, 외국인전용클럽, 시멘스클럽은 한국 프로모터에게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이 각각 25.0%, 50.0%, 25.0%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특히 나이트클럽의 경우는 정보를 얻는 대상이 다양하여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도 2건이 있었다.

친구 및 아는 사람을 통해서 초기 정보를 얻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필리핀에서 16살 때부터 밴드 및 그룹 보컬리스트로 활동하였다. 필리핀에서 나의 매니저였던 친구가 한국에서 활동할 것을 권했고 다리를 놓아주어 한국 프로모터를 소개시켜 주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니저였던 그 친구는 에이전시 소속이었는데 한국 프로모터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나를 소개해 준 거 같다.”(여, 필리핀, 1972년생, 2008년・2010년 입국, 심층)

> “대학교 졸업 후 예술학원에서 춤 노래 등의 공연을 하였다. 예전에 아는 친구들이 여기(놀이공원)에서 일한 후 좋다고 해서 이곳을 알게 되었다. 친구한테 정보를 얻어서 회사 광고를 보고 에이전시를 찾아갔다.”(여, 우크라이나, 1994년생, 2013년 입국, 심층)

"제가 원래 몽골 전통춤을 잘 추었다. 친한 친구가 한국에서 온 몽골사장을 알았는데 그 몽골사장이 춤 잘 추는 사람들은 오디션을 보고 괜찮은 사람은 한국에 취직시켜 준다고 말해줬다. 가족들에게 말하니까 아버지와 친척들이 해보라고 했다." (여, 몽골 1991년생, 2008년 입국, 심층)

주로 이미 정보를 알고 있는 친구 및 지인으로부터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사람 및 회사를 소개 받은 후, 본국 에이전시 및 한국 프로모터를 통해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 계약 과정

① 한국 프로모션(파견업체)과 연계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한 이주: 유흥업소의 경우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 프로모터와 연계된 현지 에이전시가 이들에 대한 오디션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한국 프로모션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승인이 날 경우 여권 및 비자 발급 받는 등 필리핀 현지에서 해야 하는 수속을 대신해 주고 있다.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집에서 한 시간 걸리는 곳에 있는 에이전시 사무실에 매일 가서 노래 연습을 했다. 오디션을 많이 받고 결국 합격했다. 그 뒤 몇 주 기다린 후에 POEA에서 OEC를 얻고 한국으로 들어왔다."(여, 필리핀, 1982년생, 2009년 입국, 심층)

"사촌의 친구가 필리핀 에이전시를 소개시켜 주었다. 필리핀 에이전시가 우리가 E-6 비자를 받을 수 있게 수속했다. 노래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한국에 보냈다."(여, 필리핀, 1983년생, 2006년 입국, 심층)

② 한국 업체 책임자 및 관리자와의 직접 계약: 테마파크의 경우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업체 책임자가 직접 현지로 와서 오디션을 봐서 사람들을 선발하여 계약했다.

"한국 업체의 관장과 아는 (부르키나파소)지역 문화센터 담당자가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오디션이 있다고 알려줬다. 한국 업체의 관장이 직접 부르키나파소로 와서 오디션을 봤다. 이틀에 걸쳐서 봤고 첫째 날에는 12~13명 정도가 오디션을 봤는데 둘째 날에는 이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무용수가 오디션을 봤다고 했다."(남, 부르키나파소, 1980년생, 2012년 입국, 심층)

"몽골에서 한국에서 일하는 몽골사장과 직접 계약했다. 몽골 사장은 OO파크 기마단의 총괄 매니저이다. 몽골에서 단원을 선발하고 계약을 하는 일을 하고, 한국에서는 기마 단을 관리하고 있다. (원래는) 기마단 단원으로 일하다가 한국 사장과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남, 몽골, 1993년생, 2012년 입국, 심층)

③ 한국 프로모션(파견업체)과의 직접 계약: 놀이공원의 경우

놀이공원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프로모션 사장과 놀이공원 담당자가 현지로 와서 오디션을 본 후 공연을 할 사람들을 선발하였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한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용을 하는 영상을 찍은 오디션 테이프를 만들어서 한국 프로모터에게 직접 보내어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 전에 여기에 와서 일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여기가 괜찮다 그러면서 소개시켜 줬고 내가 오는 걸 도와줬다. 한국 프로모션에 직접 내 프로필을 보냈다. 한국 프로모션은 10명이 모여 있으면 오디션을 보러 오겠다고 했다. 10명을 모았고 한국 프로모터 사장 놀이공원 관계자가 와서 오디션을 봤다. 그 중 2명이 뽑혔다" (남, 우즈베키스탄, 1989년생, 2010년 입국, 심층)"

> "여기에서 일한 적이 있는 학교 선배를 통해서 이곳을 알게 되었는데, 여기가 괜찮다고 그랬다. 내가 만든 안무로 춤을 추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한국에 비디오를 보냈다. 다른 서류들은 그 선배가 알아서 해 주었다. 여기서 일하는 러시아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춤을 추는 비디오를 찍어서 한국으로 보냈다."(여, 러시아, 1991년생, 2013년 입국, 심층)

놀이공원 프로모션 업체에 의하면 서울 소재 놀이공원의 경우는 특정 국가의 예술 및 연예분야 종사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강원랜드와 같은 경우는 쇼를 통째로 계약하고 있었다.

(3) 입국비용 및 임금으로부터 입국비용 공제

공연 이주노동자들은 입국비용을 에이전시 및 프로모터가 대신 내주고 한국에서 노동을 하면서 그 비용을 갚아야 했다. 먼저 입국비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국비용

<표 3-8> 입국비용

[단위: 원]

항목	필리핀(n=76)	몽골(n=10)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
최소	72,000	700,000	초기 비용 없음
평균	1,010,306	2,647,000	
최대	4,800,000	5,000,000	

먼저 국가 별로 살펴보면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입국비용 중 최소 비용은 72,000원(3,000페소), 최대 비용은 4,800,000원(200,000페소)이고 평균 입국비용은 1,060,171원이다. 최소 비용과 최대 비용의 차이가 큰 이유는 최소 비용의 경우 본인이 대행업체에 지불한 서류 처리 비용만 적어 주었기 때문이다.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권과 비자를 만드는 데 5,000-7,000페소(120,000원-168,000원)를 지불한다. 구체적으로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950페소(약 22,800원, 25일 소요), 빨리 만들기 위해서는 1,200페소(약 28,800원, 15일 소요)를 지불한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에 의하면 비자 발급 수수료는 4,050페소로 약 97,200원에 해당한다. 그리고 항공료로 10,000-20,000페소(24만원-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

테마공원에서 일하는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10명이 입국비용에 대해서 응답했는데, 최소 700,000원, 최대 5,000,000원의 비용을 지불했고, 입국비용의 평균을 내보면 2,647,000원으로 다른 업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모든 비용을 놀이공원이 프로모션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공연 이주노동자 본인이 낸 비용은 없다고 대답하였다.

업태별로 입국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9> 입국비용_ 업태별

[단위: 원]

항목	호텔공연	나이트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클럽	테마파크	놀이공원
최소	72,000	144,000	120,000	72,000	300,000	192,000	700,000	비용 없음
평균	421,333	901,406	450,000	848,222	1,492,000	1,623,166	2,647,000	
최대	1,000,000	3,600,000	1,000,000	3,600,000	2,400,000	4,800,000	5,000,000	

* 무응답 제외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한 업태는 테마파크로 최소가 70만원, 최대가 500만원이었고 평균 비용이 2,647,000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시멘스클럽 종사자들로 최소가 192,000원, 최대가 4,800,000원이고 평균이 1,623,166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나이트클럽의 경우로 최소 비용이 144,000원이고 최대 비용은 3,600,000원으로 평균 901,406원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응답했다. 단란주점의 경우는 최소가 72,000원, 최대가 3,600,000원으로 평균은 848,222원이었다. 카페 및 7080클럽은 평균이 450,000원, 호텔공연의 경우는 평균이 421,333원이 소요되었다.

② 입국비용의 지불자 : 에이전트 및 프로모션의 지급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현지 에이전시, 한국 프로모션 또는 근무지 사장이 입국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이 비용을 한국에서 받는 월급에서 공제하고 있었다.

<표 3-10> 입국비용 지불자_국가별

[단위: 명(%)]

항목	필리핀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몽골	합계
내가 전액 지불	10 (8.6)	0 (0.0)	11 (73.3)	21 (14.2)
본국 에이전트가 전액 지불	23 (19.8)	0 (0.0)	0 (0.0)	23 (15.5)
한국의 프로모터가 전액 지불	47 (40.5)	17 (100.0)	0 (0.0)	64 (43.2)
한국의 근무지 사장이 전액 지불	7 (6.0)	0 (0.0)	0 (0.0)	7 (4.7)
나와 본국 에이전트가 나누어서 지불	5 (4.3)	0 (0.0)	0 (0.0)	5 (3.4)
나와 한국 프로모터가 나누어서 지불	7 (6.0)	0 (0.0)	0 (0.0)	7 (4.7)
나와 한국 근무지 사장이 나누어서 지불	7 (6.0)	0 (0.0)	0 (0.0)	7 (4.7)
한국 프로모터와 근무지 사장이 지불	2 (1.7)	0 (0.0)	0 (0.0)	2 (1.4)
누가 지불했는지 모름	8 (6.9)	0 (0.0)	4 (26.7)	12 (8.1)
합계	116 (100)	17 (100)	15 (100)	148 (100)

* 기타 업태 제외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응답자 116명 중 내가 전액 지불했다는 10명(8.6%)과 누가 지불했는지 모른다는 8명(6.9%)을 제외하고, 본국 에이전트와 한국 프로모터 및 근무지 사장이 전액 지불했거나, 본인과 나누어 지불한 경우의 비율이 84.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현지 에이전시나 한국 프로모터, 때로 근무지 사장 등이 지불한 입국비용은 이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빚이 된다.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전액을 프로모터가 지불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15명 중 11명(73.3%)은 본인이 지불하였다고 응답하였고, 4명(26.7%)은 누가 지불했는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업태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1> 지불인_업태별

[단위: 명(%)]

항목	호텔 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 · 7080클럽	단란 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 파크	놀이 공원
내가 전액	1 (25.0)	4 (8.5)	1 (14.3)	0 (0.0))	1 (6.7)	2 (15.4)	11 (73.3)	0 (0.0)
본국 에이전트전액	1 (25.0)	9 (19.1)	2 (28.6)	3 (18.8)	0 (0.0)	4 (30.8)	0 (0.0)	0 (0.0)
한국 프로모터 전액	1 (25.0)	16 (34.0)	2 (28.6)	6 (37.5)	11 (73.3)	4 (30.8)	0 (0.0)	17 (100)
한국 근무지 사장 전액	1 (25.0)	2 (4.3)	1 (14.3)	3 (18.8)	0 (0.0)	0(0.0)	0 (0.0)	0 (0.0)
나와 한국 에이전트 나눔	0 (0.0)	2 (4.3)	0 (0.0)	1 (6.3)	0 (0.0)	1 (7.7)	0 (0.0)	0 (0.0)
나와 한국 프로모터 나눔	0 (0.0)	4 (8.5)	1 (14.3)	1 (6.3)	1 (6.7)	1 (7.7)	0 (0.0)	0 (0.0)
나와 근무지 사장 나눔	0 (0.0)	3 (6.4)	0 (0.0)	1 (6.3)	2 (13.3)	1 (7.7)	0 (0.0)	0 (0.0)
모름	0 (0.0)	7 (14.9)	0 (0.0)	1 (6.3)	0 (0.0)	0 (0.0)	4 (26.7)	0 (0.0)
합계	4 (100)	47 (100)	7 (100)	16 (100)	15 (100)	13 (100)	15 (100)	17 (100)

호텔공연의 경우는 전액 본인이 지불한 경우, 본국 에이전트가 부담한 경우, 한국 프로모터가 전액 부담한 경우, 한국 근무지 사장이 전액 부담한 경우가 각각 1명씩 있었다.

나이트클럽의 경우는 47명 중 34.0%인 16명이 한국인 프로모터가 전액 부담했다고 응답하였고 본국 에이전트가 전액 부담한 경우도 9명(19.1%) 있었다. 누가 부담했는지 모른다는 응답도 7명(14.9%)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카페 및 7080클럽의 경우는 7명의 응답자 중 본국 에이전트가 전액 부담했거나 한국 프로모터가 전액 부담한 경우가 각각 2명씩 있었다. 본인이 전액 부담했거나 한국인 근무지 사장이 부담했거나 본인과 한국 프로모터가 나눈 경우도 각각 1명씩 있었다.

단란주점의 경우는 16명 중 6명(37.5%)이 한국 프로모터가 전액 부담했다고 응답하였다. 본국 에이전트가 전액 부담한 경우는 3명으로 18.8%, 한국 근무지 사장이 전액 부담한 경우도 3명이다.

외국인전용클럽의 경우는 15명 중 11명(73.3%)이 한국 프로모터가 전액 부담했다고 응답하였다. 본인과 근무지 사장이 나눈 경우도 2명(13.3%)이 있었다.

시멘스클럽의 경우는 본국 에이전트가 전액 부담하거나 한국 프로모터가 전액 부담한 경우가 각각 4명(30.8%)이 있었고,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는 응답도 2명이 있었다.

테마파크의 경우 15명 중 11명(77.3%)이 본인이 전액 부담했다고 응답하였고 4명은 누가 부담했는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놀이공원의 경우 17명의 응답자 전원이 한국 프로모터가 전액 부담했다고 응답하였다.

호텔공연, 나이트클럽, 카페 및 7080클럽, 단란주점, 외국인전용클럽, 시멘스클럽 등에서 근무하는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현지 에이전시나 한국 프로모터가 여권과 비자와 OEC 등 서류를 대행하고 항공료 등을 대신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알려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응답자들이 본인들이 어떤 명목으로 입국비용을 지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테마파크의 경우 본인이 지불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심층 인터뷰 결과 공연장 관리자격인 몽골 사장이 일부 입국비용을 대신 지불하였고 한국에 와서 임금을 받은 후 변제해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현지 에이전시나 프로모션이 대신 내준 입국비용, 또는 업체에서 내준 입국비용은 한국에 와서 갚아야 하는 빚이 되었다.

③ 빚이 되는 입국비용

151명의 응답자들 중 100명이 입국비용을 갚아야 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3-12> 입국비용 갚는 과정

항목	빈도(명)	비율(%)
월급 지급 후 환급	19	19
월급에서 미리 공제	81	81
합계	100	100

입국비용을 갚아야 했다고 응답한 100명 중에서 임금 변제 방법을 묻는 질문에 월급을 지급받은 후 환급해 갔다는 응답은 19%였고, 나머지 81%는 임금을 일부 혹은 전부 공제한 후 지급받았다고 응답했다. 대부분은 임금을 몇 개월간 지급 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변제했다.

공연 이주노동자들은 입국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한 채로 에이전시나 프로모션이 이야기하는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 당했다. 아프리카 공연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A 박물관의 경우는 항공료로 든 비용을 매달 월급에서 공제하였고,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매년 10%의 임금을 공제된 경우도 있었다.

"한국에서 항공권을 보내줘서 가격을 몰랐다. 한국에 오고 나서 매달 항공권에 대한 돈을 10만원 씩 월급에서 공제했다."(남, 부르키나파소, 1980년생, 2012년 입국, 심층)

"필리핀에서 비자, 여권 등 서류 만드는데 내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필리핀 매니저는 임금을 공제할 거라고 얘기했다. 필리핀 매니저가 2년 동안 10%를 빼 간다고 이야기하였다."(여, 필리핀, 1978년생, 2006년 입국, 심층)

그러나 받아야 할 월급 자체를 몇 달 동안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제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권이 7,000페소였고, 준비기간 동안 에이전시에 40,000페소를 2번 지급했다. 한국에 와서는 한 달 월급을 공제했다."(여, 필리핀, 1989년생, 2009년 입국, 설문)

"어떤 설명 없이 240달러 들었다고 얘기하고는 3개월간 임금을 공제한다고 했다."(남, 필리핀, 1967년생, 2009년 입국, 설문)

업태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3> 입국비용 갚는 과정_업태별

[단위: 명(%)]

항목	호텔 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 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 파크	놀이 공원
월급 지급 이후 환급	1 (33.3)	9 (21.4)	1 (16.7)	0 (100)	4 (30.8)	2 (18.2)	해당 사항 없음	해당 사항 없음
월급에서 미리 공제	2 (66.7)	33 (78.6)	5 (83.3)	12 (100)	9 (69.2)	9 (81.8)		
합계	3 (100)	42 (100)	6 (100)	12 (100)	13 (100)	11 (100)		

* 기타 업태 제외

업태별로 살펴보면, 테마파크와 놀이공원의 경우는 입국비용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심층면접 결과 테마파크에서는 근무지 관리자이자 몽골에서 공연 이주노동자를 모집하는 '몽골사장'에게 입국비용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몽골에서 100만원을 주고 한국에 들어와서 월급 받아서 150만원을 더 (한국 업체의 몽골사장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준 친구도 있어요. 보통 한국에 와서 월급을 타면 그 돈으로 갚았어요."(남, 몽골, 1993년생, 2012년 입국)

그 외 업태에서는 월급에서 입국비용이 미리 공제되는 비율이 높았다. 호텔공연의 경우 3명 중 2명(66.7%), 나이트클럽의 경우 42명 중 33명(78,6%) 카페 및 7080클럽의 경우 6명 중 5명(83.3%) 외국인전용클럽의 경우 13명 중 9명(69.2%), 시멘스클럽의 경우 11명 중 9명(81.8%)이었고, 단란주점의 경우 전원이 월급에서 미리 입국비용을 공제한다고 응답하였다.

(4) OEC 발급과 경유 여부 및 위명여권 사용: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필리핀에서는 해외 취업을 위해서 OEC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OEC를 제대로 발급받지 않고 한국에 들어오기도 한다. 응답한 112명 중 OEC를 발급 여부는 다음과 같다.

<표 3-14> OEC 발급 여부

항목	빈도(명)	비율(%)
발급 받음	50	44.6
발급 받지 않음	62	55.4
합계	112	100

응답자 중 62%는 OEC를 발급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업태별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5> OEC 발급 여부_업태별

[단위: 명(%)]

항목	호텔공연	나이트클럽	카페 · 7080클럽	단란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발급	4 (100)	16 (34.0)	4 (57.1)	10 (66.7)	4 (28.6)	7 (58.3)
미발급	0 (0.0)	31 (66.0)	3 (42.9)	5 (33.3)	10 (71.4)	5 (41.7)
합계	4 (100)	47 (100)	7 (100)	15 (100)	14 (100)	12 (100)

* 기타 업태 제외

호텔공연의 경우는 전원이 OEC를 발급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나이트클럽의 경우 100명 중 31명(66.0%)이 OEC를 발급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카페 및 7080의 경우 7명 중 3명(42.9%)이, 단란주점의 경우 15명 중 5명(33.3%), 시멘스클럽의 경우 12명 중 5명(41.7%)이 OEC를 발급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외국인전용클럽의 경우 14명 중 10명(71.4%)이 OEC를 발급 받지 않아서 업태들 중 가장 높았다.

실명 여권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는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와 몽골은 모두 실명여권을 사용하였다고 대답하는 한편, 필리핀에서는 117명의 응답자 중 5명이 위명여권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업체별로는 나이트클럽에서 3명, 카페 및 7080클럽에서 1명, 시멘스클럽에서 1명이 위명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밝혀주었다. 그 중 OEC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은 4명이었다.

위명여권으로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는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건, 미등록 경험이 있기 때문이 2건, 에이전트의 권유가 2건, 미성년이기 때문이 1건이 있었다.

실제 이름과 다르거나 OEC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었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OEC 허위 발급: 현지 에이전시의 커넥션

본인 명의의 여권이 아니면서 OEC를 허위로 발급 받게 된 과정에 대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 "(필리핀 에이전시가) 내 이름으로 한국에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여권을 만들 때는 범죄경력 증명서가 필요한데, 3개월 정도 걸린다. 그런데 필리핀 에이전시는 한국 회사에서는 나를 빨리 오라고 하니 다른 이름으로 가자고 이야기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여권으로 오게 되었는데 어떻게 가능한지는 (에이전시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POEA 사무실에 가기는 했다. 그런데 나는 그냥 앉아있고 매니저가 알아서 했다. 당시에 필리핀 매니저는 이 사업만 20년을 해 왔던 사람이어서 커넥션이 많이 있어 보였다."(여, 필리핀, 1978년생, 2006년 입국, 심층)

위의 응답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POEA에 갔지만 이미 에이전시와 POEA 직원이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OEC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OEC없는 해외 취업: 현지 에이전시와 공항 직원의 커넥션 및 해외 경유

POEA에서 OEC를 발급받지 않고 예술흥행비자로 해외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 번째는 현지 에이전시의 커넥션으로 공항을 검사 없이 통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외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방법이다.

OEC 발급 여부와 제3국이나 타 지역을 경유한 사람의 비율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16> OEC 발급 여부

[단위: 명(%)]

항목	경유했음	경유하지 않았음	합계
OEC 발급 받음	6 (12.0)	44 (88.0)	50 (100)
OEC 발급 받지 않음	25 (40.3)	37 (59.7)	62 (100)
합계	31 (27.7)	81 (72.3)	112 (100)

OEC를 발급 받지 않은 사람 62명 중 40.3%는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들어온다고 응답하였다. 경유해서 들어오는 국가는 마카오, 홍콩,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홍콩 등이 있는데, 싱가포르, 태국, 홍콩을 많이 경유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 "필리핀 매니저가 말하기를, 공항에 가면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어떤 시큐리티 가드맨을 따라가라고 그랬다. 그리고 특정 부스에서만 기다리라고 했다. 프로모터가 그들에게 미리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무사히 공항을 빠져나가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여, 필리핀, 1983년생, 2006년 입국, 심층)

위의 응답자는 공항에 직원과 현지 에이전시와의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OEC가 없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을 몰래 통과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필리핀 여권에 붙은 비자를 떼고 홍콩으로 간다. 홍콩에서 여권에 뗀 비자를 다시 부착해서 한국으로 온다."(여, 필리핀, 1990년생, 2012년 입국, 설문)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EC가 없는 경우는 해외 취업이 아니라 관광인 것처럼 홍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비교적 필리핀에서 출국하기 쉬운 곳으로 간다. 출국 할 때 여권에 예술흥행비자 사증이 붙어 있는데 OEC가 없으면 출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권에서 비자를 뗀 뒤 관광인 것처럼 주변 국가로 간다. 그 후 떼어낸 비자를 다시 부착하여 한국에 입국하고 있다. OEC는 필리핀에서 해외취업을 위해 출국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한국으로 입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출국과 한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하다.

(5) OEC 발급 여부와 인권 및 노동권 실태

OEC를 발급 받은 공연 이주노동자들은 OEC를 발급받지 않은 이주노동자들보다 계약서가 더 준수되고 있었으며, 폭력의 상황에 덜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3-17> OEC 발급 여부와 계약서 준수 여부

[단위: 명(%)]

구분	항목	OEC 발급 여부	
		발급	미발급
계약서 임금	인지 준수	17 (35.4)	10 (17.2)
	인지 미준수	24 (50.0)	42 (72.4)
	모름	5 (10.4)	4 (6.9)
	계약서 내용 없음	2 (4.2)	2 (3.5)
	합	48	58
계약서 시간	인지 준수	15 (31.3)	8 (13.8)
	인지 미준수	25 (52.1)	37 (63.8)
	모름	4 (8.3)	10 (17.2)
	계약서 내용 없음	4 (8.3)	3 (5.2)
	합	48	58
계약서 업무 내용	인지 준수	16 (33.3)	10 (17.5)
	인지 미준수	14 (29.2)	21 (36.8)
	모름	12 (25.0)	18 (31.6)
	계약서 내용 없음	6 (12.5)	8 (14.0)
	합	48	57

* 무응답 제외

OEC를 발급한 경우 계약서상의 임금을 인지하고 있고 준수한 경우가 35.4%로 OEC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준수율 17.2% 보다 높았다. 계약된 시간이 준수되는 경우는 31.3%로 발급되지 않은 경우의 준수율 13.8% 보다 높았다. 업무 내용의 경우 발급한 경우의 업무 내용 인지 및 준수 비율은 37.3%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17.5%보다 높았다 결과적으로 OEC를 발급 받았을 때에 계약서의 준수 비율이 더 높았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18> OEC 취득 여부와 폭언, 폭행, 성폭력 경험

[단위: 명(%)]

구분	항목	OEC 취득 여부	
		발급	미발급
언어폭력 경험	있음	30 (60.0)	43 (69.4)
	없음	20 (40.0)	19 (30.6)
	합계	50 (100)	62 (100)
물리적 폭력 경험	있음	26 (52.0)	35 (56.5)
	없음	24 (48.0)	27 (43.5)
	합계	50 (100)	62 (100)
성폭력 경험	있음	29 (58.0)	46 (77.4)
	없음	21 (42.0)	14 (22.6)
	합계	50 (100)	62 (100)

OEC 취득 여부와 폭언, 폭행, 성폭력 경험 여부를 비교해 보았다. 비교 결과 OEC를 취득했을 때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0%였고, 취득하지 않았을 때 언어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69.4%로 OEC를 취득하지 않았을 때의 비율이 높았다. 물리적 폭력 경험의 경우 OEC를 취득했을 때는 52.0%, 취득하지 않았을 때는 56.5%로, 취득하지 않았을 때 물리적 폭력 비율이 높았다. 성폭력의 경우도 OEC를 취득했을 때는 58.0%, 취득하지 않았을 때는 77.4%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가 성폭력의 경험이 더 높았다.

즉 OEC를 취득했을 때 언어적 폭력, 물리적 폭력, 성폭력의 경험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근로계약 체결 및 노동실태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근무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한국으로 입국하여 실제 노동처우에 대한 적합성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다. 아래에서는 공연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였고, 실제 노동은 근로계약서와 얼마나 부합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1) 근로계약서의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응답한 150명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자가 145명(96.7%),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5명(3.3%)으로 대부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고,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표 3-19> 근로계약서 작성 장소_국가별

[단위: 명(%)]

항목	입국 전 근로계약서 작성	입국 후 근로계약서 작성	입국 전과 후 근로계약서 작성	합계
필리핀	89 (79.5)	13 (11.6)	10 (8.9)	112 (100)
몽골	11 (78.6)	0 (0.0)	3 (21.4)	14 (100)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5 (27.8)	1 (5.6)	12 (66.7)	18 (100)
합계	105 (72.9)	14 (9.7)	25 (17.4)	144 (100)

* 무응답 제외

전체적으로 144명의 응답자 중에서 입국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9.7%이고, 입국 전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비율은 17.4%였다.

입국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비율은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가 112명의 응답 중 79.5%,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가 14명의 응답 중 78.6%,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 공연 이주노동자가 27.8%가 응답했다. 입국 후에 한국에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입국 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한국에서 다시 작성한 두 경우를 합치면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가 20.5%,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가 21.4%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 공연 이주노동자가 72.3%에 달한다.

몽골 공연 이주노동자는 계약서를 한국에서 다시 작성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진술해 주었다.

> “몽골에서 몽골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어로 된 1장짜리 서류를 몽골 사장이 보여주면서 사인을 하라고 했어요. 그게 계약서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내용도 자세히 몰라요. 사인하라고 한 뒤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여, 몽골, 1991년생, 2008년 입국, 심층)

<표 3-20> 근로계약서 작성 장소_업태별

[단위: 명(%)]

항목	입국 전 근로계약서 작성	입국 후 근로계약서 작성	입국 전과 후 근로계약서 작성	합
호텔공연	3 (75.0)	1 (25.0)	0 (0.0)	4 (100)
나이트클럽	33 (75.0)	5 (11.4)	6 (13.6)	44 (100)
카페・7080클럽	5 (83.3)	1 (16.7)	0 (0.0)	6 (100)
단란주점	15 (93.8)	0 (0.0)	1 (6.3)	16 (100)
외국인전용클럽	13 (86.7)	2 (13.3)	0 (0.0)	15 (100)
시멘스클럽	7 (53.8)	4 (30.8)	2 (15.4)	13 (100)
테마파크	11 (78.6)	0 (0.0)	3 (21.4)	14 (100)
놀이공원	5 (27.8)	1 (5.6)	12 (66.7)	18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입국 후에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호텔공연, 나이트클럽, 카페 및 7080클럽, 외국인전용클럽, 시멘스클럽, 놀이공원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시멘스클럽의 비율이 높았다. 입국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입국 후에도 작성해야 했던 경우는 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 시멘스클럽, 테마파크, 놀이공원에서 나타났는데, 놀이공원(66.7%)과 테마파크(21.4%)의 비율이 특히 높았다. 하지만 놀이공원의 경우 입국 전과 후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같았다고 진술한 반면, 테마파크의 경우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표 3-21> 근로계약서 작성(복수응답)

[단위: 명(%)]

항목	한국어	자국어	영어
필리핀 (n=109)	61 (55.5)	2 (1.8)	77 (70.0)
몽골 (n=14)	0 (0.0)	14 (100)	0 (0.0)
러시아・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n=18)	2 (11.1)	17 (94.4)	0 (0.0)
합계 (n=144)	63 (43.8)	32 (22.2)	77 (53.5)

*무응답 제외

그렇다면 이들의 근로계약서는 이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었을까. 몽골과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자국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반면,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따갈로그어로 적성되었다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특히나 필리핀 응답자 중 계약서가 한국어로만 되어있다고 표기한 사람은 26명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에 표기해 준 필리핀 응답자 109명 중 23.9%였고, 전체 필리핀 응답자 중 22.2%에 달한다. 한국에 온 필리핀 응답자 중에는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근로계약서가 영어로 표기되어 있었더라도 잘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응들이 있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있었지만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확인했지만 이미 본인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채로 작성되었고, 한국에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 그 상황을 용인했다고 말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했어요. (그런데)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설명도 안 해줬기 때문에 내용은 전혀 몰라요. 서울에 와서 한국어로 된 근로계약서를 받았어요. 프로모터가 ‘그냥 사인해 사인해’라고 말했어요. 사인하지 않으면 일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인했어요.”(남성, 필리핀, 1982년생, 2006년 입국, 심층)

그나마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공연 이주노동자들에게 많은 경우 교부되지 않았다.

<표 3-22> 근로계약서 교부

[단위: 명(%)]

항목	계약서 교부받음	계약서 교부받지 않음	합계
필리핀	35 (31.3)	77 (68.7)	112 (100)
몽골	5 (38.5)	8 (61.5)	13 (100)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	19 (100)	0 (0.0)	19 (100)

* 무응답 제외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냐는 질문에는 필리핀 응답자 112명 중 68.7%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몽골은 61.5%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23> 근로계약서 작성 장소_업태별

[단위: 명(%)]

항목	교부 받음	교부 받지 않음	합
호텔공연	2 (50.0)	2 (50.0)	4 (100)
나이트클럽	10 (22.7)	34 (77.3)	44 (100)
카페・7080클럽	1 (16.7)	5 (83.3)	6 (100)
단란주점	7 (43.8)	9 (56.3)	16 (100)
외국인전용클럽	7 (46,7)	8 (53.3)	15 (100)
시멘스클럽	3 (23.1)	10 (76.9)	13 (100)
테마파크	5 (38.5)	8 (61.5)	13 (100)
놀이공원	19 (100)	0 (0.0)	19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호텔 공연의 경우 4명 중 2명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나이트클럽의 경우는 44명 중 34명(77.3%)이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카페 및 7080클럽의 경우 6명 중 5명(83.3%), 단란주점의 경우 16명 중 9명(56.3%), 외국인전용클럽은 15명 중 8명(53.3%), 시멘스클럽의 경우는 13명 중 10명(76.9%), 테마파크의 경우 13명 중 8명(61.5%)이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놀이공원을 제외하고 모든 업태에서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놀이공원의 경우는 19명 전원이 계약서를 교부받았다고 응답하였다.

2) 준수되지 않는 계약서와 실제 노동 조건

아래에서는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계약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 그리고 계약 내용이 잘 지켜졌는지 살펴보았다.

(1) 임금

129명의 응답자 중 65명인 50.4%가 임금이 약속한 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놀이공원을 제외하면 110명의 응답자 중에서는 59.1%가 임금이 약속한 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3-24> 근로계약서 인지 및 준수여부_ 임금

[단위: 명(%)]

항목	호텔 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 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 파크	놀이 공원	합계
계약서 내용 인지·준수	3 (75.0)	5 (11.4)	2 (33.3)	5 (31.3)	7 (46.7)	2 (15.4)	7 (58.3)	19 (100)	50 (38.8)
계약서 내용 인지·미준수	1 (25.0)	32 (72.7)	4 (66.7)	10 (62.5)	5 (33.3)	9 (69.2)	4 (33.3)	0 (0.0)	65 (50.4)
잘 모르겠음	0 (0.0)	3 (6.8)	0 (0.0)	1 (6.3)	3 (20.0)	2 (15.4)	1 (8.3)	0 (0.0)	10 (7.8)
계약서에 해당내용 없음	0 (0.0)	4(9.1)	0 (0.0)	0 (0.0)	0 (0.0)	0 (0.0)	0 (0.00)	0 (0.0)	4 (3.1)
합계	4 (100)	44 (100)	6 (100)	16 (100)	15 (100)	13 (100)	12 (100)	19 (100)	129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업태별로는 특히 나이트클럽(72.7%), 카페 및 7080클럽(66.7%), 단란주점(62.5%), 시멘스클럽(69.2%)에서 절반이 넘는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계약서 내용과 달리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외국인전용클럽의 경우는 15명 중 3명, 시멘스클럽의 경우는 13명 중 2명의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계약한 임금을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이트클럽의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는 응답도 44명 중 4명(9.1%)이 있었다.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놀이공원의 경우는 전원이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임금과 계약서의 임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표 3-25> 계약서 임금과 실제 임금의 차이

[단위: 원]

실제	호텔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파크	놀이공원	평균
계약	1,100,000 (n=2)	1,095,625 (n=31)	730,000 (n=5)	1,100,000 (n=7)	1,037,500 (n=8)	1,266,667 (n=6)	880,000 (n=5)	1,110,000 (n=18)	1,070,663 (n=82)
실제	750,000 (n=2)	551,613 (n=31)	441,666 (n=6)	575,000 (n=12)	831,250 (n=8)	645,000 (n=10)	712,717 (n=11)	1,110,000 (n=18)	700,285 (n=96)
하락률	31.8%	49.7%	39.5%	47.7%	19.9%	49.1%	19.0%	0.0%	34.6%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응답을 살펴보면, 놀이공원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임금 하락이 나타났다. 평균적으로는 34.6%의 임금이 하락하였으며, 가장 많은 임금 하락이 나타난 업태는 나이트클럽으로 49.7%의 임금이 하락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시멘스클럽으로 49.1%의 임금이 하락하였으며 단란주점은 47.7%의 임금이 하락하였다.

테마파크의 경우는 계약상 받기로 한 임금이 평균 880,000원으로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9.0%의 임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필리핀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매달 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 입국한 바로 다음 날 동두천 턱걸이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매월 45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매니저가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할 수밖에 없었어요."(여, 필리핀, 1985년생, 2008년 입국, 심층)

> "한국 프로모션은 우리 급여가 6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한국 클럽 사장은 프로모션에게 매달 130만원을 준다고 했어요" (여, 필리핀, 1978년생, 2006년 입국, 심층)

위의 응답자들은 필리핀에서 인지한 노동조건과 다른 계약서에 사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프로모터에게 입국비 외에 프로모션 및 관리비로 공제되는 금액에 대해서 모른 채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프로모터의 공제 금액을 알고 있는 29명의 필리핀 공연이주노동자의 경우 평균 임금의 53%를 프로모션이 가져간다고 응답하였고, 가장 많은 공제 비율은 임금의 80%이었다.

(2) 근무시간

근무시간의 경우 전체적으로 129명의 응답자 중 64명인 49.6%가 실제 계약과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은 놀이공원을 제외하면 계약된 근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수치는 58.2%에 이른다.

<표 3-26> 근로계약서 인지 준수여부_ 근무시간

[단위: 명(%)]

항목	호텔 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 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 파크	놀이 공원	합계
계약서 내용 인지·준수	3 (75.0)	5 (11.4)	1 (16.7)	4 (25.0)	5 (33.3)	0 (0.0)	6 (50.0)	19 (100)	43 (33.3)
계약서 내용 인지·미준수	1 (25.0)	29 (65.9)	4 (66.7)	9 (56.3)	7 (46.7)	10 (76.9)	4 (33.3)	0 (0.0)	64 (49.6)
잘 모름	0 (0.0)	6 (13.6)	0 (0.0)	3 (18.8)	2 (13.3)	2 (15.4)	1 (8.3)	0 (0.0)	14 (10.9)
계약서에 해당내용 없음	0 (0.0)	4 (9.1)	1 (16.7)	0 (0.0)	1 (6.7)	1 (7.7)	1 (8.3)	0 (0.0)	8 (6.2)
합계	4 (100)	44 (100)	6 (100)	16 (100)	15 (100)	13 (100)	12 (100)	19 (100)	129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업태별로 보면 시멘스클럽의 경우 13명의 응답자 중 10명(76.9%)이 근무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았다. 카페 및 7080클럽(66.7%), 나이트클럽(65.9%), 단란주점(56.3%)의 경우가 절반이 넘는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근무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단란주점에서는 16명 중 3명(18.8%)이 근무시간에 대한 계약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시멘스클럽은 13명 중 2명(15.4%), 나이트클럽의 경우 44명 중 6명(13.6%)이 계약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그 비율이 높았다.

나이트클럽의 경우는 44명 중 4명(9.1%)의 응답자들이 계약서에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놀이공원의 경우에는 전원이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실제 근무시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3-27> 계약서와 실제 노동조건_근무시간

[단위: 시간]

항목		호텔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파크	놀이공원	평균
계약		4.5 (n=2)	6.8 (n=16)	6.4 (n=3)	6.7 (n=9)	6.9 (n=9)	7.6 (n=7)	8 (n=6)	8 (n=18)	7.1 (n=70)
실제업무시간	최고	-	10.8 (n=10)	15 (n=2)	13 (n=1)	9.7 (n=3)	13 (n=7)	-	12	-
	최저	-	8.3 (n=10)	-	-	-	9 (n=7)	-	-	-
	평균	5.75 (n=4)	9.7 (n=32)	10.2 (n=5)	9.2 (n=13)	8.7 (n=12)	12 (n=4)	10.2 (n=9)	8	9.2 (n=97)
상승률		27.8%	42.6%	59.2%	36.6%	25.7%	57.9%	27.8%	0%	29.6%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평균 시간으로 계산하였을 때 놀이공원을 제외한 전 업태에서 노동시간이 늘어났고, 평균 29.6%의 노동시간이 늘어났다.

가장 많이 노동시간이 늘어난 업태는 카페 및 7080클럽으로 평균 6.4시간을 계약하지만 실제로는 10.2시간을 노동하고 있어 59.2%의 노동시간이 늘어났다. 시멘스클럽은 평균 7.6시간을 계약하지만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57.9%의 노동시간이 늘어났다. 나이트클럽은 6.8시간을 계약하지만 평균 9.7시간을 근무하고 있어서 42.6%의 노동시간이 늘어났다.

나이트클럽 종사자인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근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었다.

> "일하는 시간은 마음대로였다. 정확한 퇴근시간이 없다. 왜냐면 주스 쿼터를 채워야 했기 때문이다. 항상 코스트머한테 주스 사달라고 얘기해야 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다."(여, 필리핀, 1982년생, 2006년 입국, 설문)

시멘스클럽 종사자였던 이주민의 경우도 주스를 팔기 위해서 근무 시간이 계약시간보다 길었다고 진술했다.

> "근로계약은 세 시간 노래하는 거였다. 그러나 우리 일하는 시간은 저녁 여섯시부터 아침 여섯시까지였고, 가끔은 아침 10시까지였다. 주스쿼터를 채우지 않으면 화를 많이 냈다."(여, 필리핀, 1982년생, 2009년 입국, 설문)

(3) 휴일

전체적으로 129명의 응답자 중 58명인 45.0%가 휴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은 놀이공원을 제외하면 52.7%가 휴일이 계약과 다르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계약 내용을 잘 모르거나,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비율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는 34.1%, 놀이공원을 제외한 업태들 110명의 응답자 중 25명인 22.7%의 응답자만이 계약된 내용의 휴일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휴일이 계약한 내용과 달랐다.

<표 3-28> 근로계약서 인지 준수여부_ 휴일

[단위: 명(%)]

항목	호텔 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 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 파크	놀이 공원	합계
계약서 내용 인지·준수	4 (100)	4 (9.09)	2 (33.3)	4 (25.0)	5 (33.3)	1 (7.7)	5 (41.7)	19 (100)	44 (34.1)
계약서 내용 인지·미준수	0 (0.0)	28 (63.6)	4 (66.7)	6 (37.5)	7 (46.7)	9 (69.2)	4 (33.3)	0 (0.0	58 (45.0)
잘 모름	0 (0.0)	6 (13.6)	0 (0.0)	4 (25.0)	2 (13.3)	3 (23.1)	1 (8.3)	0 (0.0)	16 (12.4)
계약서에 해당내용 없음	0 (0.0)	6 (13.6)	0 (0.0)	2 (12.5)	1 (6.7)	0 (0.0)	2 (16.7)	0 (0.0)	11 (8.5)
합계	4 (100)	44 (100)	6 (100)	16 (100)	15 (100)	13 (100)	12 (100)	19 (100)	129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업태별로 시멘스클럽 종사자들의 69.2%, 카페 및 7080 클럽 종사자들의 66.7%, 나이트클럽 종사자들의 63.6%가 실제 휴일이 계약서와 달리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여 그 비율이 매우 높았다. 계약된 휴일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단란주점의 경우 16명 중 4명(25.0%), 시멘스클럽의 경우 13명 중 3명(23.1%)이 있었다. 계약서에 휴일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응답은 테마파크(16.7%), 나이트클럽(13.6%), 단란주점(12.5%)에서 있었다.

계약서와 실제 휴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업태들의 평균 휴일은 4.1일이었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것으로 계약하고 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휴일은 한 달 평균 2.2일이었고, 한 번도 쉰 적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3-29> 계약서와 실제 노동조건 차이_휴일

[단위: 일]

항목	호텔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파크	놀이공원	평균
계약	4.5 (n=2)	3.9 (n=18)	3 (n=4)	4.1 (n=9)	4.9 (n=9)	4 (n=6)	4 (n=8)	4 (n=18)	4.1 (n=72)
실제	4.3 (n=4)	1.4 (n=37)	1 (n=6)	2.3 (n=12)	2.1 (n=13)	1.6 (n=10)	2.8 (n=11)	4 (n=18)	2.2 (n=111)
축소율	4.4%	64.1%	66.7%	43.9%	57.1%	60.0%	30.0%	0%	46.3%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근로계약서와 실제 휴일이 가장 많이 다른 곳은 카페 및 7080으로 한 달에 평균 3일을 쉬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평균 한 달에 1일만 쉬어 휴일이 66.7% 축소되었다. 나이트클럽은 한 달 평균 3.9일을 쉬기로 하였으나 1.4일을 쉬어 휴일이 64.1% 축소되었고, 시멘스클럽의 경우는 한 달 평균 4일을 쉬기로 했으나 1.6일을 쉬어 휴일이 60% 축소되는 등 비율이 높았다.

숙박 및 식사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31.0%의 응답자들이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없었다는 응답(10.9%)이 이전 항목들 보다 많아졌다.

<표 3-30> 근로계약서 인지 준수여부_ 숙박 및 식사

[단위: 명(%)]

항목	호텔 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 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 파크	놀이 공원	합계
계약서 내용 인지·준수	3 (75.0)	10 (23.3)	2 (33.3)	7 (43.8)	9 (60.0)	1 (7.7)	9 (69.2)	19 (100	60 (46.5)
계약서 내용 인지·미준수	1 (25.0)	16 (37.2)	4 (66.7)	4 (25.0)	3 (20.0)	10 (76.9)	2 (15.4)	0 (0.0	40 (31.0)
잘 모름	0 (0.0)	8 (18.6)	0 (0.0)	3 (18.8)	2 (13.3)	2 (15.4)	0 (0.0)	0 (0.0)	15 (11.6)
계약서에 해당내용 없음	0 (0.0)	9 (20.9)	0 (0.0)	2 (12.5)	1 (6.7)	0 (0.0)	2 (16.7)	0 (0.0)	14 (10.9)
합계	4 (100)	44 (100)	6 (100)	16 (100)	15 (100)	13 (100)	12 (100)	19 (100)	129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숙박 및 식사가 계약서의 내용과 가장 다르게 나타난 업태는 시멘스클럽으로 13명의 응답자 중 10명(76.9%)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카페 및 7080클럽으로 종사자 중 66.7%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숙박 및 식사에 대한 계약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은 단란주점이 16명 중 3명(18.8%), 나이트클럽이 44명 중 8명(18.6%), 시멘스클럽이 13명 중 2명(15.4%)이 응답하여 높았다. 계약서에 숙박과 식사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응답은 나이트클럽의 경우 44명 중 9명(20.9%)이 응답하여 높게 나타났다.

계약한 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129명의 응답자 중 27.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놀이공원을 제외하면 110명의 응답자 중 32.7%가 계약한 업무내용이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어떤 업무를 하기로 하였는지 잘 모르거나(20.2%), 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없었던 경우(12.4%)가 앞선 항목들에 비해서 매우 높았다. 전체적으로 61.2%는 계약서의 업무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거나,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모르고 한국으로 입국하였다[20].

<표 3-31> 근로계약서 인지 준수여부_ 업종 및 업무내용

[단위: 명(%)]

항목	호텔 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 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 파크	놀이 공원	합계
계약서 내용 인지·준수	3 (75.0)	6 (14.0)	3 (50.0)	4 (25.0)	5 (33.3)	1 (7.7)	10 (76.9)	19 (100	50 (38.8)
계약서 내용 인지·미준수	0 (0.0)	14 (32.7)	2 (33.3)	5 (31.3)	6 (40.0)	9 (69.3)	0 (0.0)	0 (0.0	36 (27.9)
잘 모름	0 (0.0)	17 (39.5)	1 (16.7)	4 (25.0)	2 (13.3)	1 (7.7)	1 (7,7)	0 (0.0)	26 (20.2)
계약서에 해당내용 없음	1 (25.0)	6 (14.0)	0 (0.0)	3 (18.8)	2 (13.3)	2 (15.4)	2 (15.4)	0 (0.0)	16 (12.4)
합계	4 (100)	43 (100)	6 (100)	16 (100)	15 (100)	13 (100)	13 (100)	19 (100)	129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특히 시멘스클럽(69.3%)에서 업무 내용이 계약서와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외국인전용클럽(40.0%), 카페 및 7080클럽(33.3%), 나이트클럽(32.7%), 단란주점(31.3%)순으

20) 전체 업태를 포함하면 62.9%가 업무 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거나 업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로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로 업무 내용이 계약서와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나이트클럽에서는 종사자의 39.5%가 어떤 업무를 하기로 하였는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계약서에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단란주점(18.8%), 시멘스클럽(15.4%), 테마파크(15.4%), 외국인전용클럽(13.3%)에서 있었다. 호텔 공연장에서도 1건이 있었다.

계약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시킨다는 사실은 계약한 공연 횟수와 실제 공연 횟수의 차이에서도 알 수가 있다. 카페 및 7080클럽과 테마파크, 놀이공원을 제외하면 모든 업태에서 실제 공연 횟수가 계약한 공연 횟수보다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32> 계약서와 실제 노동조건 차이_ 공연 횟수

[단위: 횟수]

항목	호텔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카페	단란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파크	놀이공원	평균
계약	5 (n=1)	2.2 (n=15)	1.5 (n=4)	3 (n=8)	2.8 (n=8)	4 (n=5)	3 (n=7)	4.8 (n=12)	3.2 (n=60)
실제	4.5 (n=2)	2.1 (n=29)	2 (n=5)	1.8 (n=10)	1.8 (n=10)	2.8 (n=10)	3 (n=9)	5 (n=12)	2.7 (n=87)
축소율	10.0%	4.5%	-33.3%	40.0%	35.7%	30.0%	0.0%	-4.2%	15.6%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전체적으로 계약한 공연 횟수보다 15.6%의 공연 횟수가 축소되었다. 특히 단란주점에서 공연 횟수가 40.0%, 외국인전용클럽에서 35.7%, 시멘스클럽에서 30.0% 축소되었다. 카페 및 7080클럽, 놀이공원에서만 공연 횟수가 계약보다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이유는 실제로 주요 업무가 공연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 어떤 일인지 설명 안했다. 손님과 같이 앉는 것도, 주스쿼터 있는 것도 성매매를 시키는 것도 이야기 안했다. 처음에 필리핀에서는 그냥 가수로 일하라고 했다. 그리고 휴가도 있었다. 월급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여, 필리핀, 1992년생, 2013년 입국, 설문)

위 공연노동자는 가수로 일하는 줄 알고 한국으로 왔는데 업무 내용이 전혀 달랐다고 하였다. 나이트클럽 종사 경험이 있는 다른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도 자신 가수인줄 알고 한국에 왔는데 전혀 다른 일을 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 “필리핀에서는 가수로 신청했다. 하지만 한국 왔을 때 그런 일이 아니었다. 나의 일은 웨이트리스고, 손님에게 ”주스 사주 세요“라고 말해야 했다. 이런 일이 제일 싫었다. 클럽 안에서

내 인생이 너무 나빴다. 그래서 도망을 갔다"(여, 필리핀, 1987년생, 2007년 입국, 설문)

테마파크 공연 이주노동자는 공연 횟수는 같았지만, 공연 외 다른 업무를 했어야 했다고 설명하였다.

"몽골에서 계약한 거와 달러요. 월급도, 일하는 시간도요. 몽골에서 계약할 때 한국에서 일하면 월급이 10만원, 20만원씩 점점 오른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도 공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연 후에 공연 본 사람들에게 말에게 줄 당근도 팔게 하고 간식도 팔게 해요. 사진도 같이 찍어줘야 해요"(남, 몽골, 1993년생, 2012년 입국, 심층)

<표 3-33> 근로계약서 인지 준수여부_ 업체명

[단위: 명(%)]

항목	호텔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 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 파크	놀이 공원	합계
계약서 내용 인지·준수	4 (100)	18 (41.86)	4 (66.7)	5 (31.3)	9 (60.0)	4 (30.8)	7 (53.9)	19 (100)	50 (54.3)
계약서 내용 인지·미준수	0 (0.0)	8 (18.6)	2 (33.3)	4 (25.0)	2 (13.3)	3 (23.1)	1 (7.7)	0 (0.0	36 (15.5)
잘 모름	0 (0.0)	14 (32.6)	0 (0.0)	4 (25.0)	1 (6.7)	4 (30.8	5 (38.5)	0 (0.0)	26 (21.7)
계약서에 해당내용 없음	0 (0.0))	3 (7.0)	0 (0.0)	3 (18.8)	3 (20.0)	2 (15.4)	0 (0.0)	0 (0.0)	16 (8.5)
합계	4 (100)	43 (100)	6 (100)	16 (100)	15 (100)	13 (100)	13 (100)	19 (100)	129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계약한 업체명이 잘 지켜졌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4.3%가 잘 지켜졌다고 응답하여 앞선 항목들 보다는 준수율이 높았다. 그러나 15.5%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계약한 업체명을 잘 모른다는 응답도 21.7%였다. 응답자의 8.5%는 계약서에 일해야하는 업체명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나 카페 및 7080클럽에서는 종사자의 33.3%가 업체명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단란주점도 25.0%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시멘스클럽은 23.1%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계약한 업체명을 잘 모른다는 응답은 테마파크(38.5%)가 가장 높았으며, 시멘스클럽(30.8%)과 나이트클럽(32.6%)도 높았다. 외국인전용클럽(20.0%), 단란주점(18.8%), 시멘스클럽(15.4%), 나이트클럽(7.0%)에서는 계약서에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3-34> 근로계약서 인지 준수여부_ 근무지역

[단위: 명(%)]

항목	호텔 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 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 파크	놀이 공원	합계
계약서 내용 인지·준수	4 (100)	15 (34.9)	3 (50.0)	4 (25.0)	9 (60.0)	4 (30.8)	2 (66.7)	19 (100	50 (50.4)
계약서 내용 인지·미준수	0 (0.0)	7 (16.3)	1 (33.3)	4 (25.0)	2 (13.3)	2 (15.4)	0 (0.0)	0 (0.0	16 (13.4)
잘 모름	0 (0.0)	17 (39.5)	2 (33.4)	4 (25.0)	2 (13.3)	6 (46.2)	0 (0.0)	0 (0.0)	31 (26.1)
계약서에 해당내용 없음	0 (0.0))	4 (9.3)	0 (0.0)	4 (25.0)	2 (13.3	1 (7.7)	1 (33.3)	0 (0.0)	12 (10.1)
합계	4 (100)	43 (100)	6 (100)	16 (100)	15 (100)	13 (100)	3 (100)	19 (100)	119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근무지역의 경우, 계약된 근무지역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26.1%로 높았고, 계약서에 근무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는 응답도 10.1%였다. 계약된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달랐다는 응답은16명으로 13.4%였다.

특히 나이트클럽은 43명 중 7명(16.3%), 단란주점은 16명 중 4명(25.0%)이 계약된 지역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카페 및 7080클럽과 외국인전용클럽, 시멘스클럽에서도 나타났다. 시멘스클럽의 경우 계약된 근무지역을 모른다는 응답이 46.2%로 높았고, 나이트클럽의 경우도 39.5%로 높았다. 계약서에 근무지역이 없었다는 응답은 단란주점에서 16명 중 4명으로 높았고 나이트클럽에서 43명 중 4명이 응답하였으며 외국인전용클럽, 테마파크, 시멘스클럽에서도 근무지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3) 업태별 노동조건

지금까지 파악한 근로계약서와 실제 노동조건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3-35> 유흥업소 업태별 실제 노동조건과 계약서비교

항목	구분	호텔 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 파크	놀이 공원	평균
한달 평균 임금 (단위: 원)	실제	750,000 (n=2)	551,613 (n=31)	441,666 (n=6)	575,000 (n=12)	831,250 (n=8)	645,000 (n=10)	712,717 (n=11)	1,110,000 (n=18)	700,285 (n=96)
	계약	1,100,000 (n=2)	1,095,625 (n=31)	730,000 (n=5)	1,100,000 (n=7)	1,037,500 (n=8)	1,266,667 (n=6)	880,000 (n=5)	1,110,000 (n=18)	1,070,663 (n=82)
하루 평균 근무 시간 (단위: 시)	실제	평균 5.8 (n=4)	많을 때 10.8 (n=10) 평균 9.7 (n=32) 적을 때 8.3 (n=10)	많을 때 15 (n=2) 평균 10.2 (n=5)	많을 때 13 (n=1) 평균 9.1 (n=13)	많을 때 9.7 (n=3) 평균 8.7 (n=12)	많을 때 13.0 (n=7) 평균 12.0 (n=4) 적을 때 9.0 (n=7)	평균 10.2 (n=9)	많을 때 12.0 (n=18) 평균 8.0 (n=18)	평균 9.2 (n=97)
	계약	4.5 (n=2)	6.8 (n=16)	6.4 (n=3)	6.7 (n=9)	6.9 (n=9)	7.6 (n=7)	8.0 (n=6)	8.0 (n=18)	7.1 (n=70)
하루 공연 (단위: 회)	실제	4.5 (n=2)	2.1 (n=29)	2.0 (n=5)	1.8 (n=10)	1.8 (n=10)	2.8 (n=10)	3.0 (n=9)	5.0 (n=83)	2.7 (n=87)
	계약	5.0 (n=1)	2.2 (n=15)	1.5 (n=4)	3.0 (n=8)	2.8 (n=8)	4.0 (n=5)	3.0 (n=7)	4.8 (n=12)	3.2 (n=60)
한달 휴일 일수 (단위: 일)	실제	4.3 (n=4)	1.4 (n=37)	1.0 (n=6)	2.3 (n=12)	2.1 (n=13)	1.6 (n=10)	2.8 (n=11)	4.0 (n=18)	2.2 (n=111)
	계약	4.5 (n=2)	3.9 (n=19)	3.0 (n=4)	4.1 (n=9)	4.9 (n=9)	4.0 (n=6)	4.0 (n=8)	4.0 (n=18)	4.1 (n=72)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1) 유흥업소

한 달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경우는 카페 및 7080클럽으로 441,666원이었다. 단란주점은 575,000원, 나이트클럽은 551,613원, 시멘스클럽은 645,000원, 외국인전용클럽 831,250원, 호텔공연은 평균 750,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518,317원이었다. 근로계약서 임금 평균인 1,047,500원 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근무 시간은 평균 9.2시간이고 많이 일할 때의 평균은 11.3시간, 적을 때의 평균은 8.72 시간이었다. 실제 근무시간의 경우 답변자들 간의 편차가 컸다. 빈도로 보면 12시간 이상의 근무를 경험한 공연 이주노동자는 시간에 응답해 준 100명 중 35명(35%)에 달했다. 무엇보

다 근무시간에 비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시멘스클럽이 보통 근무하는 시간이 하루 12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으로는 카페・7080클럽으로 보통 근무하는 시간이 하루 10.2시간이었다. 반면 계약서 근무 시간은 6시간-7시간으로 비슷했으나 호텔공연의 경우가 4.5시간으로 적었다.

공연의 경우는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 횟수가 공연 횟수보다 감소한다. 전체적으로는 실제 공연 횟수는 2.7시간으로 근로 계약서 공연 횟수 3.2시간 보다 낮은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공연이 아예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공연을 하지 않고 고객 접대 및 음료를 파는 행위로 근무 시간을 채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멘스클럽의 경우 하루에 4회 공연을 해야 하지만 2.8회 공연을 하였고, 단란주점의 경우 3회 공연을 하기로 계약을 하지만 1.8회 공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 및 7080클럽의 경우는 계약서 보다 조금 더 많은 공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은 계약서 평균은 한 달에 4.1일인데 반해 실제 휴일은 한 달에 2.2일 밖에 되지 않았다. 휴일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곳은 한 달에 평균 4.3일을 쉰다는 호텔 공연장이었다. 카페 및 7080클럽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3일을 쉬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으나 한 달에 하루 정도를 쉰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았다.

(2) 놀이공원

놀이공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 공연 이주노동자는 다른 업태에 종사하는 공연 이주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여 수준이 나은 편이었다. 한 달 평균 임금은 1,100,000원이고, 많을 때는 12시간, 적을 때는 8시간 근무한다고 하였다.

관계자 인터뷰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팀을 나누어서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는데 첫 번째 팀은 12시~7시 반, 두 번째 팀은 1시 반~7시 반이다. 12시부터 9시까지 일하게 되면 추가수당을 받는다. 기본은 5번 공연하고 9번을 공연할 때도 있다. 한번 공연 시간은 30분이고 공연이 한번 끝나면 2시간 정도는 휴식을 취하게 되어 있다. 임금을 많이 받을 때는 170만원까지 받는다고 하였다.

응답자에 의하면 공연은 하루 평균 공연 횟수는 5.0회였고, 계약서상의 공연 횟수는 4.8회로 거의 비슷했다. 휴일도 한 달에 4일로 계약서와 같다고 대답하였다.

(3) 테마파크

몽골 이주민들의 업태로 응답한 테마파크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한 달 임금은 평균 712,717원이고, 계약서에 명기되었던 임금의 평균은 880,000원이었다. 실제 평균 근무 시간은 10.2시간이고 계약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이를 종합해 보면 계약해서 입국할 때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계약해서 오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실제 공연 횟수와 계약서 공연 횟수는 하루 평균 3일로 같았으나 실제 휴일은 한 달에 평균 2.8일로, 계약서의 평균 4일과 절반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4) 임금 지급 및 급여 형태

프로모션을 통해서 입국한 유흥업소와 놀이공원 공연 이주노동자 경우 많은 수가 임금을 프로모션에게 지급받고 있었다. 또한 일부는 프로모션에게 월급으로 지급받고 일부는 근무지 사장에게 팁 형식으로 지급받기도 하는 등 형식이 다양하였다. 이렇게 임금 지급 방식이 불분명할 경우 만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곤란해진다. 설문에 응답한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급여 지급자 뿐만 아니라 급여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본인의 정확한 직무내용과 그에 따른 대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임금 지급자

임금을 누구에게 지급받느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표 3-36> 임금 지급자(복수응답)

[단위: 명(%)]

항목	호텔 공연 (n=4)	나이트 클럽 (n=45)	카페·7080클럽 (n=7)	단란주점 (n=17)	외국인전용클럽 (n=15)	시멘스 클럽 (n=12)	놀이동산 (n=19)	테마파크 (n=8)	합계 (n=127)
근무지 사장	2 (50.0)	16 (35.6)	4 (57.1)	6 (35.3)	4 (26.7)	5 (41.7)	2 (10.5)	2 (22.2)	41 (32.3)
본국 에이전트	0 (0.0)	2 (4.4)	0 (0.0)	0 (0.0)	2 (11.8)	0 (0.0)	0 (0.0)	1 (11.1)	5 (3.9)
한국 프로모터	2 (50.0)	19 (42.2)	2 (28.6)	9 (52.9)	8 (47.1)	6 (50.0)	17 (89.5)	3 (33.3)	66 (52.0)
임금 받은 적 없음	0 (0.0)	8 (17.8)	1 (14.3)	2 (11.76)	3 (17.7)	1 (17.7)	0 (0.0)	2 (22.2)	17 (13.4)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업태별로는 놀이공원과 시멘스클럽, 외국인전용클럽, 단란주점에서 한국 프로모터가 임금을 주었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근무지 사장이 주었다는 경우는 카페 및 7080클럽이 4명(57.1%)으로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 유흥업소의 경우 한국 프로모터에게 지급받는 다는 비율이 51%로 가장 높았고, 근무지 사장에게 지급받는 다는 경우도 응답자의 39.8%에게서 나타났다.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도 13.3%였다.

나이트클럽, 외국인전용클럽, 시멘스클럽에서는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이 각각 17.8%, 17.7%, 1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테마파크의 경우 한국 프로모터에게 지급 받는 경우가 33.3%였고, 근무지 사장에게 받는

경우도 2건 있었으나,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 역시 2건으로 임금 체불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급여 지급방법

급여를 정해진 날에 지급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몽골과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공연 이주노동자들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고 대답한 반면,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필리핀 응답자 116명 중 65명(56%)만이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고 응답하였고 43명은 그렇지 않다(37.1%), 3명(2.58%)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급여를 어떻게 지급받느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3-37> 임금 수령 방법

[단위: 명(%)]

항목	호텔 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 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 파크	놀이 공원	합계
한국의 은행 통장	3 (75.0)	5 (10.4)	1 (14.3)	0 (0.0)	0 (0.0)	1 (8.3)	15 (100)	19 (100)	44 (32.6)
일부 현금, 일부 한국의 은행통장	0 (0.0)	4 (8.3)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4 (3.0)
현금 지급	1 (25.0)	35 (72.9)	5 (71.4)	14 (93.3)	12 (80.0)	9 (75.0)	0 (0.0)	0 (0.0)	76 (56.3)
일부 수령, 일부 고용주가 본국 송금	0 (0.0)	0 (0.0)	0 (0.0)	0 (0.0)	2 (13.3)	0 (0.0)	0 (0.0)	0 (0.0)	2 (1.5)
일부 수령, 일부 강제적립	0 (0.0)	4 (8.3)	1 (14.3)	1 (6.7)	0 (0.0)	2 (16.7)	0 (0.0)	0 (0.0)	8 (5.9)
기타	0 (0.0)	0 (0.0)	0 (0.0)	0 (0.0)	1 (6.7)	0 (0.0)	0 (0.0)	0 (0.0)	1 (0.7)
합계	4 (100)	48 (100)	7 (100)	15 (100)	15 (100)	12 (100)	15 (100)	19 (100)	135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전체적으로 한국의 통장으로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135명 중 44명(32.6%)이었다. 전원이 한국의 은행통장으로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테마파크와 놀이공원을 제외하면 유흥업소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101명 중 10명만 은행통장으로 지급받는다고 응답하여 9.9%밖에 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135명의 공연 이주노동자 중 76명으로 56.3%였다. 전원이 한국의 은행통장으로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테마파크와 놀이공원 공연 이주노동자들을 제외하면 유흥업소 공연 이주노동자의 75.2%(101명 중 76명)가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었다. 특히 단란주점의 경우는 15명 중 14명이 현금으로 지급받는다고 응답하여 93.3%가 해당하

였으며 외국인전용클럽도 80.0%에 달했다. 나이트클럽, 시멘스클럽, 카페 및 7080클럽, 단란주점에서는 일부는 수령하지만 일부는 강제로 적립해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전체로는 5.9%였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명세서나 증빙서를 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표 3-38> 명세서 및 증빙서 교부 여부 _업태별

[단위: 명(%)]

항목	교부 받음	교부 받지 않음	합계
호텔공연	2 (50)	2 (50)	4 (100)
나이트클럽	4 (8.5)	43 (91.5)	47 (100)
카페・7080클럽	0 (0.0)	7 (100)	7 (100)
단란주점	1 (6.7)	14 (93.3)	15 (100)
외국인전용클럽	4 (28.6)	10 (71.4)	14 (100)
시멘스클럽	2 (16.7)	10 (83.3)	12 (100)
테마파크	7 (53.8)	6 (46.2)	13 (100)
놀이공원	9 (50)	9 (50)	18 (100)
합계	29 (22.3)	101 (77.7)	130 0(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전체적으로 명세서를 교부받는다는 응답은 130명 중 29명으로 22.3%, 교부받지 않는다는 응답이 130명 중 101명으로 77.7%였다. 특히 카페 및 7080의 경우는 7명 중 전원이 명세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단란주점의 경우 15명 중 14명(93.3%)이 교부받지 않았고, 나이트클럽은 47명 중 43명(91.5%)이 교부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시멘스클럽의 경우 12명 중 10명(83.3%)이 교부받지 않았다. 외국인전용클럽의 경우는 14명 중 10명(71.4%), 테마파크의 경우 13명 중 6명(46.2%)는 교부받지 않았고, 7명(53.8%)은 교부받고 있었고, 놀이공원의 경우 18명 중 9명은 교부받고, 9명은 교부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5) 기타 공제 여부

건강보험이 임금에서 공제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136명의 응답자 중 43명(31.6%)가 공제된다고 응답했으며, 54명(39.7%)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39명(28.7%)은 공제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호텔 공연장(75%), 외국인전용클럽(60.0%), 카페 및 7080클럽(57.1%)에서 건강보험을 공제하고 있지 않았다. 공제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은 단란주점(43.8%), 시멘스클럽(38.5%), 나이트클럽(35.4%), 테마파크(35.7%)에서 높았다. 놀이공원(94.7%)과 테마파크(64.3%)에서는 건강보험을 공제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3-39> 공제여부_건강보험·국민연금

[단위: 명(%)]

항목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미가입	모름	가입	미가입	모름
호텔공연 (n=4)	1 (25.0)	3 (75.0)	0 (0.0)	1 (25.0)	3 (75.0)	0 (0.0)
나이트클럽 (n=48)	9 (18.8)	22 (45.8)	17 (35.4)	0 (0.0)	26 (54.2)	22 (45.8)
카페 · 7080클럽 (n=7)	1 (14.3)	4 (57.1)	2 (28.6)	0 (0.0)	4 (57.1)	3 (42.9)
단란주점 (n=16)	1 (6.3)	8 (50.0)	7 (43.8)	0 (0.0)	9 (56.3)	7 (43.8)
외국인전용클럽 (n=15)	3 (20.0)	9 (60.0)	3 (20.0)	1 (6.7)	10 (66.7)	4 (26.7)
시멘스클럽 (n=13)	1 (7.7)	7 (53.8)	5 (38.5)	0 (0.0)	7 (53.8)	6 (46.2)
놀이공원 (n=19)	18 (94.7)	1 (5.3)	0 (0.0)	17 (89.5)	1 (5.3)	1 (5.3)
테마파크 (n=14)	9 (64.3)	0 (0.0)	5 (35.7)	1 (7.1)	5 (35.7)	8 (57.1)
합계 (n=136)	43 (31.6)	54 (39.7)	39 (28.7)	20 (14.7)	65 (47.8)	51 (37.5)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국민연금의 공제여부(14.7%)는 건강보험(31.6%)보다 더 낮았다. 국민연금이 공제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47.8%였고, 공제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은 37.5%로 높았다. 특히 호텔 공연장(75%)과 외국인전용클럽(66.7%)에서 그 비율이 높았으며 테마파크(57.1%)와 시멘스클럽(46.2%)에서는 공제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다. 놀이공원에서만 89.5%의 종사자들이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40> 공제여부_숙박비·식대

[단위: 명(%)]

항목	숙박비			식대		
	공제	공제안함	모름	공제	공제안함	모름
호텔공연 (n=3)	1 (33.3)	2 (66.7)	0 (0.0)	0 (0.0)	3 (100)	0 (0.0)
나이트클럽 (n=48)	13 (27.4)	18 (37.5)	17 (35.4)	9 (19.6)	19 (41.3)	20 (39.1)
카페·7080클럽 (n=7)	1 (14.3)	4 (57.1)	2 (28.6)	0 (0.0)	4 (57.1)	3 (42.9)
단란주점 (n=16)	1 (6.3)	9 (56.3)	6 (37.5)	1 (6.3)	9 (56.3)	6 (37.5)
외국인전용클럽 (n=15)	4 (26.7)	7 (46.7)	4 (26.7)	4 (26.7)	7 (46.7)	4 (26.7)
시멘스클럽 (n=13)	1 (7.7)	7 (53.8)	5 (38.5)	0 (0.0)	7 (53.8)	6 (46.2)
놀이공원 (n=19)	0 (0.0)	17 (89.5)	2 (10.5)	0 (0.0)	17 (89.5)	2 (10.5)
테마파크 (n=14)	1 (7.1)	6 (42.9)	7 (50.0)	8 (57.1)	1 (7.1)	5 (35.7)
합계 (n=135)	22 (16.3)	70 (51.9)	43 (31.9)	22 (16.3)	67 (49.6)	46 (34.1)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숙박비의 경우 전체적으로 135명의 응답자 중 22명(16.3%)이 공제되었다고 응답하였고, 70명(51.9%)은 공제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43명(31.9%)은 공제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나이트클럽(27.1%)과 외국인전용클럽(26.7%)에서 숙박비를 공제당했다는 응답율이 높았으며, 호텔공연장도 3명 중 1명이 응답하였다. 공제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은 테마파크(50%), 시멘스클럽(38.5%), 단란주점(37.5%), 나이트클럽(35.4%)에서 높게 나타났다.

식대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22명(16.3%)이 식비를 공제당했다. 67명(49.6%)은 공제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나 46명(34.1%)은 공제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테마파크(57.1%)와 외국인전용클럽(26.7%)에서 식비를 공제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시멘스클럽(46.2%), 카페 및 7080클럽(42.9%)에서 공제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3-41> 벌금여부

[단위: 명(%)]

항목	사장 또는 프로모션 벌금		
	공제	공제안함	모름
호텔공연 (n=4)	1 (20.0)	2 (40.0)	1 (20.0)
나이트클럽 (n=45)	6 (13.3)	19 (42.2)	20 (44.4)
카페 · 7080클럽 (n=7)	0 (0.0)	4 (57.1)	3 (42.9)
단란주점(n=16)	2 (12.5)	6 (37.5)	8 (50.0)
외국인전용클럽 (n=14)	1 (6.3)	7 (43.8)	6 (50.0)
시멘스클럽 (n=13)	1 (7.7)	7 (53.8)	5 (38.5)
놀이공원 (n=21)	4 (22.2)	12 (66.7)	5 (27.8)
테마파크 (n=13)	0 (0)	7 (53.8)	6 (46.2)
합계 (n=133)	15 (11.3)	64 (48.1)	54 (40.6)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사장 또는 프로모션의 벌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11.3%가 사장 또는 프로모션의 벌금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공제하는 벌금이 없다는 응답은 48.1%였고, 벌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응답이 40.6%로 높았다. 벌금이 있다는 응답은 놀이공원(22.2%)에서 높았고, 나이트클럽의 경우 45명 중 6명(13.3%), 단란주점의 경우 16명 중 2명(12.5%)의 응답자가 있었고 호텔공연장, 외국인전용클럽, 시멘스클럽에서 각각 1명씩 있었다.

5 노동 과정에서의 인권 실태

1)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압류

"한국에 들어왔을 때, 프로모터에게 여권을 바로 뺏겼어요. 우리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혹시 도망갈까봐 차에서 우리 짐도 빼앗았어요. 일주일간 돌려주지 않았어요. 갈아입을 옷만 주고 짐은 다시 빼앗아 갔어요. 외국인 등록증도 만들었었지만 프로모터가 바로 다시 가져갔어요."(여, 필리핀, 1983년생, 2006년 입국, 심층)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은 업체 한국 사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들이 도망갈까 봐 한국 사장이 보관했어요.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모두 한국 사장이 보관하고 몽골에

돌아갈 때 까지 안줬어요."(여, 몽골, 1991년생, 2008년 입국, 심층)

앞의 진술은 한국 프로모터가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 입국 후에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3-42> 여권 소지 여부

[단위: 명(%)]

항목	호텔 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 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 파크	놀이 공원	합계
본인 소지	4 (100)	23 (47.9)	3 (42.9)	10 (62.5)	9 (60.0)	6 (46.2)	0 (0.0)	19 (100)	74 (54.0)
한국 프로모터 소지	0 (0.0)	16 (33.3)	1 (14.3)	4 (25.0)	6 (40.0)	6 (46.2)	0 (0.0)	0 (0.0)	39 (28.5)
업소 매니저 또는 마마상 소지	0 (0.0)	2 (4.2)	2 (28.6)	0 (0.0)	0 (0.0)	1 (7.7)	12 (80.0)	0 (0.0)	17 (12.4)
근무지 사장 소지	0 (0.0)	7 (14.6)	1 (14.3)	2 (12.5)	0 (0.0)	0 (0.0)	2 (13.3)	0 (0.0)	12 (8.8)
소지자 모름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6.7)	0 (0.0)	1 (0.7)
합계	4 (100)	48 (100)	7 (100)	16 (100)	15 (100)	13 (100)	15 (100)	19 (100)	137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전체적으로 137명의 응답자 중 74명(54.0%)만이 본인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63명(46%)은 프로모터 및 근무지 관리자 또는 사장이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프로모터가 소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8.5%였고, 업소 관리자가 소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12.4%였다.

업태별로 보면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카페 및 7080클럽(42.9%)과 시멘스클럽(46.2%)이 가장 낮았다. 한국 프로모터가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시멘스클럽(46.2%)과 외국인전용클럽(40.0%)이 높았다. 업소 관리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테마파크 공연 이주노동자의 80%에 해당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43> 외국인 등록증 소지 여부

[단위: 명(%)]

항목	호텔 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기타	단란 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 파크	놀이 공원	합계
본인 소지	4 (100)	22 (47.8)	4 (57.1)	12 (75.0)	10 (66.7)	8 (66.7)	0 (0.0)	19 (100)	79 (59.0)
한국 프로모터 소지	0 (0.0	11 (23.9)	1 (14.3)	3 (18.8)	4 (26.7)	1 (8.3)	0 (0.0)	0 (0.0)	20 (14.9)
업소 매니저 또는 마마상 소지	0 (0.0	4 (8.7)	2 (28.6)	0 (0.0)	0 (0.0)	2 (16.7)	10 (66.7)	0 (0.0)	18 (13.4)
근무지 사장 소지	0 (0.0)	6 (13.0)	0 (0.0)	0 (0.0)	0 (0.0)	0 (0.0)	5 (33.0)	0 (0.0)	11 (8.2)
소지자 모름	0 (0.0)	1 (2.2)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0.7)
발급받지 않음	0 (0.0)	2 (4.3)	0 (0.0)	1 (6.3)	1 (6.7)	1 (8.3)	0 (0.0)	0 (0.0)	5 (3.7)
합계	4 (100)	46 (100)	7 (100)	16 (100)	15 (100)	12 (100)	15 (100)	19 (100)	134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외국인 등록증의 경우 134명의 응답자 중 79명(59.0%)이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55명(41.0%)은 프로모션, 근무지 관리자 및 사장에게 외국인 등록증을 압류 당하였다. 특히 한국 프로모터가 압류하였다는 응답이 전체의 14.9%였다.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조차 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5명으로 일부 있었다.

업태별로는 프로모션에게 여권을 압류 당하였다는 응답 비율이이 외국인전용클럽(26.7%)과 나이트클럽(23.9%)에서 높게 나타났다. 근무지 관리자가 압류하였다는 응답은 테마파크에 공연 노동자의 66.7%에 해당하였다. 근무지 사장이 소지하고 있다는 응답역시 테마파크 공연 노동자들의 33.0%에 해당하여 높았다.

2) 서비스 제공 및 강요 여부

설문의 대상자들의 한국 프로모션은 영등위로부터 해당 노동자들의 공연에 대한 추천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쇼와 서비스를 물어보는 질문에 공연과 관련 없는 업무에 대한 응답들이 많았다.

<표 3-44> 업소에서 제공하는 쇼와 서비스(복수 응답)

[단위: 명(%)]

항목	유흥업소 (필리핀)		놀이공원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n=117)	억지로 제공하는 서비스(n=110)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n=19)	억지로 제공하는 서비스(n=16)
노래	87 (74.4)	16 (14.5)	0 (0.0)	0 (0.0)
댄스	19 (16.2)	5 (4.5)	18 (94.7)	1 (5.3)
뮤지컬	3 (2.6)	0 (0.0)	2 (10.5)	0 (0.0)
악기연주	12 (10.3)	1 (0.9)	1 (5.3)	0 (0.0)
마술	0 (0.0)	0 (0.0)	1 (5.3)	0 (0.0)
곡예	0 (0.0)	0 (0.0)	1 (5.3)	0 (0.0)
야한 춤	3 (2.6)	2 (1.8)	0 (0.0)0	0 (0.0)
고객의 말벗 또는 춤(주스 음료 주류 판매)	76 (65.0)	53 (48.2)	0 (0.0)0	0 (0.0)
랩댄스	22 (18.8)	22 (20.0)	0 (0.0)0	0 (0.0)
성매매	27 (23.1)	23 (20.9)	0 (0.0)	0 (0.0)
출장데이트	21 (17.9)	20 (18.2)	0 (0.0)0	0 (0.0)
기타	6 (5.1)	7 (6.4)	2 (10.5)	1 (5.3)
호객행위	-	12 (10.9)	-	-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일하는 업소가 댄스 및 뮤지

컬 등을 제공한다고 대답한 반면, 필리핀 응답자 117명 중 업소에서 노래를 제공하는 경우가 74.4%로 마찬가지로 많았지만, 주스・음료・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고객의 말벗 또는 춤을 추도록 하는 업소가 65.0%였으며 성매매를 하는 업소도 23.1%, 출장데이트를 해야 하는 업소도 17.9%였다.

원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 수준이 높은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원치 않은 서비스 제공에 표기해 준 110명의 응답자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48.2%가 주스・음료・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 고객의 말벗이 되거나 춤을 추어야 했던 것을 가장 억지로 제공해야 했던 서비스라고 표기하였다. 업체에서 제공한다는 응답자 76명 중에서는 53명이 본인이 억지로 서비스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69%나 되었다. 20.9%는 성매매라고 응답하였는데, 업체가 제공한다는 응답 27명 중에 23명이 본인이 억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무려 85%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출장데이트는 전체적으로는 18.2%가 억지로 제공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업체가 제공한다는 21명 중에 20명이 억지로 제공한다고 응답하여 무려 95%에 달한다. 랩댄스는 전체적으로는 응답자 중 20%가 억지로 제공했다고 표기했지만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표기한 20명 중 전원인 100%가 본인은 하고 싶지 않지만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표기하였다. 110명의 응답자 중 12명인 10.9%는 호객행위를 했어야만 했다고 응답하였다.

한 필리핀 여성은 성매매와 주스쿼터의 어두운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 “24시간동안 노동했다. 쉬는 날도 없었고, 퇴근 후에도 바파인(성매매)을 해야 했다. 바파인은 한번 하면 15만원을 받는데 나에게는 4만 5천원을 주었다. 주스쿼터는 2만원을 팔면 4천원을 나에게 주었다. 하루에 바파인을 4번 정도 나가면 사모님은 ‘4번은 적으니 6번 나가라’라고 항상 독촉을 했다. 손님에게 받는 팁은 따로 없었고 오럴섹스 등 여러 가지를 제공해야 했고, 섹스 장면을 비디오로 찍은 경우도 있었다. 우리를 ‘후커’, ‘창녀’라고 부르기도 했다. 가장 힘든 것은 퇴근 후에도 바파인을 해야 했던 것이다. 퇴근 후의 바파인은 똑같이 15만원인데 시간 제약이 없어서 손님들이 퇴근 후에 우리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바텐더가 손님에게 돈만 챙겨서 돌아오고 나는 손님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 혼자 돌아와야 했다. 퇴근 후 바파인에서는 이상한 손님이 많기 때문에 손님 중 괜찮은 사람에게 전화해서 다른 손님이 돈을 내기 전에 얼른 나를 불러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다. 퇴근 후 바파인 손님이 없을 때는 사모님이 화를 많이 내면서 우리에게 운동하라고 독촉을 했다.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제일 바빴는데, 사모님과 바텐더가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손님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이다. 화장실에 있을 때도 빨리 나오라고 재촉하고, 생리할 때도 바파인을 억지로 보냈다. 손님이 생리해서 싫다고 거절할 경우에만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2주마다 바파인으로 30만 원 정도를 받았다. 내 돈으로 성병검사를 매달 받았다.”(여, 필리핀, 1985년생, 2008년 입국, 심층)

위 여성은 주스쿼터로는 거의 돈을 벌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15분마다 손님이 주스를 사마시지 않으면 사장이 손님을 나가게 했기 때문이었다. 업소는 상대적으로 큰돈을 받을 수 있는 성매매(바파인)을 하도록 유도하고 독촉했다.

<표 3-45> 업소에서 제공하는 쇼와 서비스_업태별(복수 응답)

[단위: 명(%)]

항목	호텔공연		나이트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주점		외국인전용클럽		사롄스클럽		놀이공원	
	업체 제공	억지로 제공	업체 제공	억지로 제공	업체 제공	억지로 제공	업체 제공	억지로 제공	업체 제공	억지로 제공	업체 제공	억지로 제공	업체 제공	억지로 제공
노래	3 (75.0)	0 (0)	32 (66.7)	10 (20.8)	6 (85.7)	0 (0)	14 (87.5)	2 (12.5)	12 (80.0)	1 (6.7)	11 (84.6)	1 (7.7)	0 (0)	0 (0)
댄스	0 (0)	0 (0)	13 (27.1)	4 (8.3)	1 (14.3)	0 (0)	0 (0)	0 (0)	0 (0)	0 (0)	1 (7.7)	0 (0)	18 (94.7)	1 (5.3)
뮤지컬	1 (25.0)	0 (0)	1 (2.1)	0 (0)	0 (0)	0 (0)	0 (0)	0 (0)	1 (6.7)	0 (0)	0 (0)	0 (0)	2 (10.3)	0 (0)
악기 연주	1 (25.0)	0 (0)	6 (12.5)	1 (2.1)	1 (14.3)	0 (0)	2 (12.5)	0 (0)	0 (0)	0 (0)	1 (7.7)	0 (0)	1 (5.3)	0 (0)
아한 춤	0 (0)	0 (0)	2 (4.2)	2 (4.2)	0 (0)	0 (0)	1 (6.3)	0 (0)	0 (0)	0 (0)	0 (0)	0 (0)	1 (5.3)	0 (0)
말벗 또는 춤[21]	0 (0)	0 (0)	34 (70.8)	22 (45.8)	6 (85.7)	4 (57.1)	11 (68.8)	10 (62.5)	8 (53.3)	5 (33.3)	9 (69.2)	7 (53.8)	1 (5.3)	0 (0)
랩댄스	0 (0)	0 (0)	11 (22.9)	9 (18.8)	3 (42.9)	3 (42.9)	3 (18.8)	3 (18.8)	3 (20.0)	3 (20.0)	2 (15.4)	1 (7.7)	0 (0)	0 (0)
성매매	0 (0)	0 (0)	13 (27.1)	10 (20.8)	0 (0)	0 (0)	4 (25.0)	3 (31.3)	5 (33.3)	5 (33.3)	1 (7.7)	1 (7.7)	0 (0)	0 (0)
출장 데이트	0 (0)	0 (0)	12 (25.0)	12 (25.0)	1 (14.3)	1 (14.3)	0 (0)	0 (0)	3 (20.0)	3 (20.0)	3 (23.1)	0	0 (0)	0 (0)
호객 행위	0 (0)	0 (0)	0 (0)	5 (10.4)	0 (0)	1 (14.3)	0 (0)	3 (18.8)	0 (0)	1 (6.7)	0 (0)	1 (7.7)	0 (0)	0 (0)
기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10.5)	1 (5.4)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업태별로 보면 호텔공연의 경우 노래, 뮤지컬, 악기 연주 등을 서비스 한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 중 원치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었다.

나이트클럽의 경우 48명의 응답자 중 34명(70.8%)이 고객의 말벗 또는 춤을 추며 주스 음료 주류를 판다고 응답하였다. 노래와 댄스를 하는 경우는 각각 32명(66.7%), 13명(27.1%)이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체인 곳도 13건(27.1%), 출장 데이트는 12건(25.0%)이었다. 그 중 억지로 서비스를 해야 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장 큰 비율이 고객의 말벗과 춤으로 전체 응답자 중 45.8%가 응답하였다. 성매매와 출장데이트도 각각 10명(20.8%)과 12명(25.0%)이 응답하였다. 특히나 출장데이트의 경우 업체 서비스에 표기한 12명 중 전원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성매매도 업체 서비스에 표기한 13명 중 10명이 억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카페 및 7080클럽의 경우에는 노래를 제공한다는 경우는 6명으로 85.7%가 있었다. 또한 고객의 말벗 또는 춤을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도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42.9%는

21) 고객 말벗 또는 춤(주스, 음료, 주류 판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업체에서 랩댄스를 서비스한다고 응답하였다. 악기 연주도 1건 있었다. 성매매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출장 데이트가 있다는 응답은 1건이 있었다. 4명(57.1%)의 응답자가 고객의 말벗과 춤 및 주스 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표기했는데 업체에 서비스가 있다는 응답 6명 중에서는 4명이 표기한 것이다. 랩댄스는 업체에 서비스가 있다는 3명 중 3명이 모두 어쩔 수 없이 서비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출장 데이트도 업체에 서비스가 있다는 1명이 어쩔 수 없이 서비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단란주점의 경우는 노래를 제공하는 경우는 14건(87.5%)이고, 악기 연주가 2건이고, 고객의 말벗과 춤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 16명의 응답자 중 11건(68.8%)이었다.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응답도 4건(25.0%), 랩댄스가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3건(18.8%)이었다. 이들 중 고객의 말벗과 춤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11건 중 10명은 억지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고 응답하였고 랩댄스는 전원이, 성매매는 4건 중 3명이 억지로 해야 한다고 응답이었다.

외국인전용클럽의 경우 노래가 15명중 12건, 고객의 말벗 또는 춤이 8건, 랩댄스가 3건이 있고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5건, 출장데이트가 이루어진다는 응답은 3건이 있었다.

이 중 8명 중 5명은 고객의 말벗과 춤 및 음료를 파는 것을 억지로 한다고 응답하였고, 랩댄스와 성매매, 출장데이트는 전원이 억지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였다. 3건은 억지로 호객행위를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시멘스클럽의 경우는 노래(84.6%), 고객의 말벗과 춤을 통한 주류 판매(69.2%), 댄스(7.7%)가 이루어지고 있다. 랩댄스는 2건, 성매매는 1건, 출장데이트는 3건이 있었다. 그 중 원하지 않은 서비스로는 '객과의 말벗 또는 춤'을 업체에서 제공한다는 9명 중 7명이 본인이 억지로 서비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랩댄스는 1건, 성매매도 1건, 호객행위도 1건이 있었다.

호객행위의 경우에는 업무가 끝난 시간에 손님에게 전화해서 업소로 오라고 하거나, 업소 앞에서 지나가는 손님에게 들어오라고 하거나, 낮에 동네를 돌면서 전단지를 붙이는 일 등이 있었다.

<표 3-46> 억지로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 _ 업태별(복수응답)

[단위: 명(%)]

항목	호텔 전용 (n=1)	나이트 클럽 (n=41)	카페 ·7080클럽 (n=4)	단란 주점 (n=11)	외국인 전용클럽 (n=13)	시멘스 클럽 (n=13)	테마 파크 (n=3)	놀이 공원 (n=1)
근무지 사장의 강요	0 (0.0)	18 (43.9)	4 (100)	8 (72.7)	6 (46.2)	10 (76.9)	0 (0.0)	0 (0.0)
근무지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0 (0.0)	3 (7.3)	3 (75.)	0 (0.0)	2 (15.4)	1 (7.7)	0 (0.0)	0 (0.0)
프로모터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0 (0.0)	2 (4.9)	0 (0.0)	1 (9.1)	2 (15.4)	1 (7.7)	0 (0.0)	0 (0.0)
근무지 사장이 약속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해서	0 (0.0)	2 (4.9)	0 (0.0)	0 (0.0)	1 (7.7)	1 (7.7)	1 (33.3)	0 (0.0)
프로모터가 약속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해서	0 (0.0)	2 (4.9)	0 (0.0)	0 (0.0)	2 (15.4)	1 (7.7)	0 (0.0)	0 (0.0)
소득을 더 얻기 위해서	0 (0.0)	17 (41.5)	0 (0.0)	4 (36.4)	3 (23.1)	2 (15.4)	1 (33.3)	1 (100)
시간이 많이 남아서	0 (0.0)	2 (4.9)	0 (0.0)	0 (0.0)	0 (0.0)	1 (7.7)	0 (0.0)	0 (0.0)
기타	0 (0.0)	5 (12.2)	0 (0.0)	1 (9.1)	4 (30.8)	1 (7.7)	2 (66.6)	0 (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억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로는 카페 및 7080의 경우에는 4명의 응답자 중 4명이 모두 근무지 사장의 강요 때문이었다고 응답하였고, 3명은 근무지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단란주점의 경우 응답자 11명 중 8명이 근무지 사장의 강요 때문이었고, 4명은 소득을 더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1명은 프로모터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외국인전용클럽의 경우 13명 중 6명은 근무지 사장의 강요 때문이었고, 사장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와 프로모터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또는 프로모터가 임금을 적게 지급해서가 각각 2건이었다. 시멘스클럽의 경우는 13명 중 10명은 근무지 사장의 강요 때문이었고, 2명은 소득을 더 얻기 위해서였으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적게 지급받았기 때문이라는 경우도 각각 1건이 있었다. 테마파크의 경우는 근무지 사장이 약속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했기 때문이 1건이고, 소득을 더 얻기 위해서

라는 응답도 1건이었다. 놀이공원의 경우는 1명의 응답자가 소득을 더 얻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한 필리핀 여성은 억지로 강요하는 일을 해야 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해 주었다.

"계약서는 140만원을 월급으로 받고 보컬리스트였고 일주일에 1번은 쉬는 것이고 식사와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이었다. 그러나 입국했을 때 한국 프로모터는 3개월간의 월급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가 필리핀으로 갈 때 돌려준다고 했고, 3개월 이후에 월급을 준다고 했다. 그런데 3개월 이후에 월급 내용이 달러졌는데 월급이 30만원이었다. 바파인, 주시걸 등을 해야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30만원 월급을 포함해 벌어들인 소득이 총 70만원 정도였다, 마마상은 미국인과 한국인 손님과의 바파인을 주선했는데 이건 의도적이었다. 벌이가 저조할 경우 마마상과 업주가 불평을 일삼았고 다른 업소로 보내지곤 했다." (여, 필리핀, 1972년생, 2009년 입국, 심층)

3) 언어폭력 실태

(1) 언어폭력에 대한 경험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나는 한국에서는 동료들과 사업주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받았다. 폭력이 많았다. 동료들이 언어폭행이 심했는데 사업주가 그냥 놔두고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일하는 동안 동료들한테 나쁜 행동 받은 적이 있는데도 사업주는 그냥 놔두기만 했다. 지금까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여, 필리핀, 1988년생, 2012년 입국, 설문)

"몽골 사장(공연전반 및 공연 이주노동자의 관리자)이 욕을 자주 해요. 일을 잘 못해도, 손님이 공연이 재미없다고 항의해도 저희한테 와서 욕해요. 그럴 땐 화가 나지만 참아요. 손님이 안 오는 게 우리 탓인가요? 일할 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랬어요."(여, 몽골, 1991년생, 2008년 입국, 심층)

설문에 응답해 준 공연 이주노동자 중 53%에 달하는 이주민들이 언어폭력의 경험이 있었다.

<표 3-47> 언어폭력 경험_ 전체 (n=151)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합
언어폭력 경험	80 (53)	71 (47)	151 (100)

<표 3-48> 언어폭력 경험_업태별 (비율)

[단위: 명(%)]

항목	있다	없다	합
호텔공연장	1 (25.0)	3 (75.0)	4 (100)
나이트클럽	36 (75.0)	12 (25.0)	48 (100)
카페・7080클럽	3 (42.9)	4 (57.1)	7 (100)
단란주점	10 (62.5)	6 (37.5)	16 (100)
외국인전용클럽	9 (60.0)	6 (40.0)	15 (100)
시멘스클럽	12 (92.3)	1 (7.7)	13 (100)
테마파크	3 (17.6)	14 (82.4)	17 (100)
놀이공원	0 (0.0)	19 (100)	19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업태별로 살펴보면, 시멘스클럽에 종사한 응답자의 경우 13명 중 12명인 92.3%가 언어폭력을 경험하여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나이트클럽 종사자의 경우 48명의 응답자 중 36명인 75%가 언어폭력을 경험하였다. 단란주점의 경우 16명의 응답자 중 10명인 62.5%가 언어폭력을 경험하였고 외국인전용클럽의 경우 15명의 응답자 중 9명인 60%가 언어폭력을 경험하였다. 카페 및 7080클럽의 경우에는 7명 중 3명인 42.9%가 언어폭력을 경험하였다.

놀이공원의 경우는 전원이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테마파크의 경우에는 17명 중 3명(17.6%)이 언어폭력을 경험하였다. 호텔의 경우 4명의 응답자 중 1명(25.0%)이 언어폭력을 경험하였다.

(2) 언어폭력의 가해자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폭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표 3-49> 언어폭력 가해자 (n=80,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한국 프로모션 관리자	일하는 근무지 사장 및 관리자	한국인 동료	외국인 동료	손님	기타
언어폭력 가해자	19 (23.8)	32 (40.0)	19 (23.8)	7 (8.8)	46 (57.6)	3 (3.8)

전체 80명의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46명(57.5%)가 손님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32명(40%)의 응답자는 일하는 근무지 사장 및 관리자에게 폭언을 들었다고 응답했다. 한국 프로모션 관리자에게 폭언을 들은 응답은 19명으로 23.8%, 한국인 동료에게 폭언을 들은 수치는 19명인 23.8%로 수치가 같았다. 외국인 동료들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비율도 7명으로 8.8%였다.

<표 3-50> 언어폭력 가해자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한국 프로모션 관리자	일하는 근무지 사장 및 관리자	한국인 동료	외국인 동료	손님	기타
호텔공연장 (n=1)	1 (1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나이트클럽 (n=36)	7 (19.4)	14 (38.9)	7 (19.4)	3 (8.3)	25 (69.4)	2 (5.6)
카페・7080클럽 (n=3)	0 (0.0)	1 (33.3)	0 (0.0)	1 (33.3)	2 (66.7)	0 (0.0)
단란주점 (n=10)	3 (30.0)	4 (40.0)	2 (20.0)	0 (0.0)	3 (30.0)	0 (0.0)
외국인전용클럽 (n=9)	5 (55.6)	4 (44.4)	1 (11.1)	2 (22.2)	4 (44.4)	0 (0.0)
시멘스클럽 (n=12)	3 (25.0)	7 (58.3)	6 (50.0)	1 (8.3)	9 (75.0)	0 (0.0)
테마파크 (n=3)	0 (0.0)	2 (66.7)	2 (66.7)	0 (0.0)	0 (0.0)	0 (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업태별로 살펴보면 한국 프로모션 관리자에게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업태는 외국인전용클럽(55.6%), 단란주점(30.0%), 시멘스클럽(25.0%)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하는 근무지의 사장 및 관리자에게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업태는 테마파크(66.7%), 시멘스클럽(58.3%), 외국인전용클럽(44.4%), 단란주점(40.0%), 나이트클럽(38.9%) 순이었다. 한국인 동료에게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업태로는 테마파크(66.7%), 시멘스클럽(50.0%)이 특히 높았다. 손님에게 언어폭력을 경험한 업태는 시멘스클럽(75.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이트클럽(69.4%), 카페 및 7080클럽(66.7%), 외국인전용클럽(44.4%), 단란주점(30.0%) 순이었다. 놀이공원에서는 언어폭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3) 언어폭력을 당한 이유

언어폭력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3-51> 언어폭력 이유 (n=80, 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29	36.3
일을 잘 하지 못해서	10	12.5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36	45.0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	20	25.0
외국인이라서	12	15.0
내가 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서	24	30.0
잘 모르겠다	5	6.3
기타	7	8.8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강요한 일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으로 45.0%였다.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언어적 폭력을 당했다는 비율도 36.3%로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이 있었다. 또한 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30.0%,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25.0%로 높았다.

<표 3-52> 언어폭력 이유_업태별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호텔공연 (n=1)	나이트 클럽 (n=36)	카페·7080클럽 (n=3)	단란주점 (n=10)	외국인 전용클럽 (n=9)	시멘스 클럽 (n=12)	테마파크 (n=3)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0 (0.0)	14 (38.9)	0 (0.0)	5 (50.0)	2 (22.2)	5 (41.7)	1 (33.3)
일을 잘 하지 못해서	0 (0.0)	6 (16.7)	0 (0.0)	2 (20.0)	0 (0.0)	1 (8.3)	1 (33.3)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1 (100)	14 (38.9)	2 (66.7)	2 (20.0)	6 (66.7)	8 (66.7)	1 (33.3)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	0 (0.0)	8 (22.2)	0 (0.0)	6 (60.0)	2 (22.2)	3 (25.0)	0 (0.0)
외국인이라서	0 (0.0)	6 (16.7)	0 (0.0)	1 (10.0)	1 (11.1)	4 (33.3)	0 (0.0)
내가 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서	0 (0.0)	13 (36.1)	1 (33.3)	5 (50.0)	2 (22.2)	3 (25.0)	0 (0.0)
잘 모르겠다	0 (0.0)	1 (2.8)	0 (0.0)	2 (20.0)	1 (11.1)	0 (0.0)	0 (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업태별로 보면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단란주점(50.0%), 시멘스클럽(41.7%), 나이트클럽(38.9%)에서 특히 비율이 높았다. 일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테마파크(33.3%)와 단란주점(20.0%)에서 높게 나타났다.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시멘스클럽(66.7%), 외국인전용클럽(66.7%), 카페 및 7080클럽(66.7%)에서 특히 높았고, 나이트클럽(38.9%), 테마파크(33.3%), 단란주점(20.0%)순이었다. 고객이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단란주점(60.0%)에서 특히 높았고, 나이트클럽(22.2%), 외국인전용클럽(22.2%), 시멘스클럽(25.0%)에서도 나타났다. 외국인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시멘스클럽(33.3%)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단란주점(50.0%)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트클럽(36.1%), 카페 및 7080클럽(33.3%), 시멘스클럽(25.0%), 외국인전용클럽(22.2%)에서도 나타났다.

(4)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

다음은 언어폭력에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80명 중 76명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표기해 주었다.

<표 3-53> 언어폭력에 대한 대응_전체 (n=76, 복수응답)

[단위: 명(%)]

항목	빈도(명)	비율(%)
그냥 참고 일했다	57	75.0
말로 항의했다	16	21.1
똑같이 폭언 욕설을 했다	5	6.6
집단적으로 항의했다	4	5.3
프로모션에 항의했다	14	18.4
일하는 업체에 항의했다	9	11.8
경찰에 신고했다	2	2.6
인권단체에 상담했다	8	10.5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었다	22	28.9
기타	1	1.3

76명의 응답자 중 75.0%인 57명의 응답자들은 그냥 참고 일했다고 대답을 했다. 이들 중 그냥 참는 것 외의 행동을 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33명이었다. 내용을 보면 업체에서 나와서 미등록이 되었다는 경험은 22명으로 28.9%였다. 말로 항의한 경험은 16명으로 21.6%이고 프로모션에 항의한 경험은 14명으로 18.4%였다. 인권단체에 상담을 받은 경우는 10.5%, 경찰에 신고하는 등 외부에 알리는 대처를 한 경우는 2.6%였다.

<표 3-54> 언어폭력 대응_업태별

[단위: 명(%)]

구분	호텔 공연 (n=1)	나이트 클럽 (n=36)	카페·7080클럽 (n=3)	단란주점 (n=10)	외국인 전용클럽 (n=9)	시멘스 클럽 (n=12)	테마 파크 (n=2)
그냥 참고 일했다	1 (100)	23 (63.9)	2 (66.7)	10 (100)	7 (77.8)	9 (75.0)	1 (50.0)
말로 항의했다	0 (0.0)	11 (30.6)	0 (0.0)	2 (20.0)	1 (11.1)	1 (8.3)	0 (0.0)
똑같이 폭언 욕설을 했다	0 (0.0)	2 (5.6)	0 (0.0)	2 (20.0)	1 (11.1)	0 (0.0)	0 (0.0)
집단적으로 항의했다	0 (0.0)	3 (8.3)	0 (0.0)	1 (10.0)	0 (0.0)	0 (0.0)	0 (0.0)
프로모션에 항의했다	0 (0.0)	6 (16.7)	2 (66.7)	1 (10.0)	2 (22.2)	2 (16.7)	0 (0.0)
일하는 업체에 항의했다	0 (0.0)	3 (8.3)	1 (33.3)	2 (20.0)	1 (11.1)	2 (16.7)	0 (0.0)
경찰에 신고했다	0 (0.0)	0 (0.0)	0 (0.0)	0 (0.0)	0 (0.0)	2 (16.7)	0 (0.0)
인권단체에 상담했다	0 (0.0)	1 (2.8)	1 (33.3)	0 (0.0)	0 (0.0)	6 (50.0)	0 (0.0)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었다	0 (0.0)	11 (30.6)	1 (33.3)	4 (40.0)	4 (44.4)	1 (8.3)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1 (5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업태별로 보면 참고 일해야 했다는 응답은 전 업태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단란주점(100%), 외국인전용클럽(77.8%), 시멘스클럽(75.0%)에서 높게 나타났다. 말로 항의했다는 응답은 나이트클럽(30.6%)에서 나타났으며 단란주점 2건, 외국인전용클럽 1건, 시멘스클럽 1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업태들에서는 항의한 경험이 없었다. 똑같이 욕설과 폭언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항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프로모션에 항의했다는 응답은 카페 및 7080클럽(66.7%), 외국인전용클럽(22.2%), 나이트클럽(16.7%), 시멘스클럽(16.7%)에서 나타났다. 일하는 업체에 항의한 경우는 프로모션에 항의한 경우보다 더 낮았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시멘스클럽(16.7%)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인권단체에 상담한 경우는 시멘스클럽(50.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나이트클럽, 카페 및 7080클럽에서 일부 나타났으나 그 수치가 적어 언어 폭력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나 인권단체 등 외부에 알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된 경우는 외국인전용클럽(44.4%), 단란주점(40.0%), 나이트클럽(30.6%)에서 높게 나타났다.

(5) 대응 결과

대응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55> 대응 결과_ 전체 (n=76, 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일했다	34	44.7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	9	11.8
다른 직장으로 동의 없이 이동되었다	9	11.8
더 큰 폭언 폭행을 당했다	2	2.6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었다	40	52.6
기타	1	1.3

업체에서 나와서 미등록이 되었다는 비율이 응답자 중 52.6%로 가장 많았다. 이 수치는 앞서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는 대응(28.9%)보다 훨씬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업체를 나오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아무런 조치 없이 일했다는 비율은 44.7%, 다른 직장으로 나의 동의 없이 이동되었다는 비율은 11.8%였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은 비율은 11.8%였다. 더 큰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는 비율은 2.6%에 해당한다.

<표-56> 언어폭력 대응결과_업태별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호텔 공연 (n=1)	나이트 클럽 (n=36)	카페·7080클럽 (n=3)	단란 주점 (n=10)	외국인 전용클럽 (n=9)	시멘스 클럽 (n=12)	테마 파크 (n=3)
아무런 조치 없이 일했다	0 (0.0)	16 (44.4)	0 (0.0)	6 (60.0)	3 (33.3)	6 (50.0)	2 (66.7)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	0 (0.0)	5 (13.9)	0 (0.0)	2 (20.0)	0 (0.0)	1 (8.3)	1 (33.3)
다른 직장으로 동의 없이 이동되었다	0 (0.0)	2 (5.6)	0 (0.0)	3 (30.0)	2 (22.2)	1 (8.3)	0(0.0)
더 큰 폭언 폭행을 당했다	0 (0.0)	1 (2.8)	0 (0.0)	0 (0.0)	0 (0.0)	1 (8.3)	0 (0.0)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었다	1 (100)	18 (50.0)	3 (100)	7 (70.0)	3 (33.3)	6 (50.0)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대응한 결과를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일해야 했다는 응답이 테마파크(66.7%), 단란주점(60.0%), 시멘스클럽(50.0%), 나이트클럽(44.4%) 외국인전용클럽(33.3%)에서 높았다. 특히 다른 직장으로 동의 없이 이동되었다는 경험이 단란주점(30.0%), 외국인전용클럽(22.2%)에서 나타났다.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었다는 응답은 전체적으로 매우 높아졌고, 카페 및 7080클럽(100%), 호텔공연장(100%), 나이트클럽(50.0%), 시멘스클럽(50.0%), 외국인전용클럽(33.3%)에서 높게 나타났다.

4) 물리적 폭력 실태

(1) 물리적 폭력 경험

다음은 한 몽골 이주민의 물리적 폭력 상황에 대한 진술이다.

> “몽골 사장((공연전반 및 공연 이주노동자의 관리자)이 주로 때려요. 때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에요. 공연에서 실수할 때도 때리고, 공연 관람하는 사람이 반응이 없어도 우리가 못했다고 때려요. 월급을 적게 줄까봐 그냥 참아요.”(남, 몽골, 1993년생, 2012년 입국, 심층)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3-57> 물리적 폭력 경험 (n=151)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합계
물리적 폭력경험	70 (46.4)	81 (53.6)	151 (100)

전체 응답자 151명 중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70명으로 46.4%에 달했다.

<표 3-58> 물리적 폭력 경험

[단위: 명(%)]

항목	있다	없다	합계
호텔공연장	0 (0)	4 (100)	4 (100)
나이트클럽	30 (62.5)	18 (37.5)	48 (100)
카페 · 7080클럽	2 (28.6)	5 (71.4)	7 (100)
단란주점	8 (50.0)	8 (50.0)	16 (100)
외국인전용클럽	7 (46.7)	8 (53.3)	15 (100)
시멘스클럽	11 (84.6)	2 (15.4)	13 (100)
테마파크	5 (33.3)	10 (66.7)	15 (100)
놀이공원	0 (0)	19 (100)	19 (100)

업태별로 구분해 보면 호텔공연과 놀이공원의 경우는 전원이 물리적 폭력의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물리적 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업태는 시멘스클럽으로 13명 중 11명(84.6%)이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였다. 그 다음은 나이트클럽으로 48명 중 30명(62.5%)이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단란주점은 16명 중 8명(50%)이 물리적 폭력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외국인전용클럽은 15명 중 7명(46.7%), 테마파크의 경우 15명 중 5명(33.3%), 카페 및 7080클럽의 경우 7명 중 2명(28.6%)이 물리적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 물리적 폭력의 가해자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70명 중 42명인 60.0%는 손님에게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일하는 근무지의 사장 및 관리자가 폭행했다는 응답으로 41.4%였다. 한국인 동료의 폭력은 10.0%, 외국인 동료의 폭력과 한국 프로모션 관리자의 폭력은 응답이 8.6%로 동일하다.

<표 3-59> 물리적 폭력 가해자_전체 (n=70,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한국 프로모션 관리자	일하는 근무지 사장 및 관리자	한국인 동료	외국인 동료	손님	기타
가해자	6 (8.6)	29 (41.4)	7 (10.0)	6 (8.6)	42 (60.0)	1 (1.4)

<표 3-60> 물리적 폭력 가해자_업태별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한국 프로모션 관리자	일하는 근무지 사장 및 관리자	한국인 동료	외국인 동료	손님	기타
나이트클럽 (n=30)	0 (0.0)	12 (40.0)	3 (10.0)	1 (3.3)	21 (70.0)	0 (0.0)
카페·7080클럽 (n=2)	0 (0.0)	0 (0.0)	0 (0.0)	0 (0.0)	2 (100)	0 (0.0)
단란주점 (n=8)	1 (12.5)	3 (37.5)	2 (25.0)	1 (12.5)	4 (50.0)	0 (0.0)
외국인전용클럽 (n=7)	3 (42.9)	4 (57.1)	0 (0.0)	0 (0.0)	4 (57.1)	0 (0.0)
시멘스클럽 (n=11)	2 (18.2)	5 (45.5)	2 (18.2)	1 (9.1)	8 (72.7)	0 (0.0)
테마파크 (n=5)	0 (0.0)	2 (40.0)	0 (0.0)	2 (40.0)	0 (0.0)	1 (20.0)

업태별로 살펴보면 한국 프로모션 관리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는 비율은 외국인전용클럽(42.9%)에서 가장 높았다. 일하는 근무지 사장 및 관리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은 역시 외국인전용클럽(57.1%)에서 가장 높았고 시멘스클럽(45.5%), 나이트클럽(40.0%), 테마파크(40.0%), 단란주점(37.5%)에서 높았다. 한국인 동료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은 단란주점(25.0%)에서 높았다. 손님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는 전 업태가 매우 높았는데 카페 및 7080클럽(100%), 시멘스클럽(72.7%), 나이트클럽(70.0%), 외국인전용클럽(57.1%), 단란주점(50.0%)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물리적 폭력의 이유

물리적 폭력의 경험자 70명 중 69명이 물리적 폭력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응답하였다.

<표 3-61> 물리적 폭력 이유 (n=69, 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22	31.9
일을 잘 하지 못해서	14	20.3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11	15.9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	27	39.1
외국인이라서	10	14.5
내가 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서	8	11.6
잘 모르겠다	7	10.1
기타	6	8.7

고객이 폭력의 가해자라는 응답이 많았던 만큼이나, 응답자들 중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라고 표기한 비중이 39.1%로 가장 높았다.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라는 비율은 31.9%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일을 잘 하지 못해서 물리적 폭력을 당했다는 비율은 20.3%였다.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15.9%, 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서라는 비율도 11.6%가 되었다. 외국인이어서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14.5%가 되었다.

나이트클럽 종사 경험이 있는 한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물리적 폭력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진술해 주었다.

> “밴드 마스터(동료)가 나를 때렸어요, 우리들 중 17살인 아주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국 손님이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기에 내가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성이 밴드

마스터에게 이 사실을 일렀어요. 밴드마스터가 우릴 부르더니 만져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했어요. 다시 들어갔는데 그 한국 손님이 그 소녀의 엉덩이를 또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이블을 엎었어요. 그러자 밴드마스터가 저를 때렸어요."(여, 필리핀, 1982년생, 2009년 입국, 심층)

위의 응답자는 업무 과정에서 생기는 성폭력에 대해서 관리자에게 항의를 했는데 관리자가 상황을 묵인하라고 지시하며 폭력의 상황을 방치하였다. 그 과정에서 항의하는 응답자를 폭행하였다.

업태별로 물리적 폭력의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3-62> 물리적 폭력 이유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나이트 클럽 (n=30)	카페·7080클럽 (n=2)	단란주점 (n=8)	외국인 전용클럽 (n=7)	시멘스 클럽 (n=11)	테마파크 (n=5)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8 (26.7)	0 (0.0)	5 (62.5)	3 (42.9)	5 (45.5)	1 (20.0)
일을 잘 하지 못해서	7 (23.3)	0 (0.0)	4 (50.0)	2 (28.6)	1 (9.1)	0 (0.0)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3 (10.0)	0 (0.0)	2 (25.0)	1 (14.3)	2 (18.2)	1 (20.0)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	14 (46.7)	2 (100)	4 (50.0)	2 (28.6)	4 (36.4)	0 (0.0)
외국인이라서	4 (13.3)	0 (0.0)	1 (12.5)	1 (14.3)	4 (36.4)	0 (0.0)
내가 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서	4 (13.3)	0 (0.0)	1 (12.5)	2 (28.6)	1 (9.1)	0 (0.0)
잘 모르겠다	2 (6.7)	0 (0.0)	1 (12.5)	0 (0.0)	1 (9.1)	3 (60.0)
기타	2 (6.7)	0 (0.0)	0 (0.0)	0 (0.0)	0 (0.0)	1 (2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업태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유흥업소에서 물리적 폭력의 경험이 많았다.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이유를 보면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단란주점(62.5%), 시멘스클럽(45.5%), 외국인전용클럽(42.9%)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을 잘 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은 특히 단란주점(50.0%)에서 높게 나타났다.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모든 업태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카페 및 7080클럽(100%), 단란주점(50.0%), 나이트클럽(46.7%), 시멘스클럽(36.4%)였다. 그저 외국인이어서라는 응답은 시멘스클럽(36.4%)에서 특히 높았다. 테마파크 공연 이주노동자 5명 중 3명은 폭력의 이유를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4)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응

물리적 폭력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3-63>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응_전체 (n=70, 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그냥 참고 일했다	51	72.9
말로 항의했다	18	25.7
똑같이 행동 했다	1	1.4
집단적으로 항의했다	5	7.1
프로모션에 항의했다	8	11.4
일하는 업체에 항의했다	9	12.9
경찰에 신고했다	2	2.9
인권단체에 상담했다	4	5.7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었다	13	18.6
기타	4	5.7

70명의 응답자 중 72.9%의 응답자들이 물리적 폭력을 당한 후에도 그냥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참은 것 외에 행동을 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70명 중 31명이었다.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들 중 말로 항의했다는 비율이 25.7%이고, 18.6%는 업체에서 나와서 미등록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일하는 업체에 항의한 경험이 12.9%, 프로모션에 항의한 경험은 11.4%였다. 인권단체에 상담하거나(5.7%), 경찰에 신고(2.9%)하는 등 외부에 사건을 알린 경우는 매우 낮았고, 똑같은 물리적 폭력을 행한 경우도 1.4%로 낮았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64> 물리적 폭력 대응_업체별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나이트 클럽 (n=30)	카페·7080클럽 (n=2)	단란주점 (n=8)	외국인 전용클럽 (n=7)	시멘스 클럽 (n=11)	테마파크 (n=5)
그냥 참고 일했다	20 (66.7)	2 (100)	7 (87.5)	5 (71.4)	9 (81.8)	4 (80.0)
말로 항의했다	10 (33.3)	0 (0.0)	3 (37.5)	2 (28.6)	3 (27.3)	0 (0.0)
똑같이 폭언 욕설을 했다	1 (3.3)	0 (0.0)	0 (0.0)	0 (0.0)	0 (0.0)	0 (0.0)
집단적으로 항의했다	3 (10.0)	0 (0.0)	1 (12.5)	0(0.0)	0 (0.0)	0 (0.0)
프로모션에 항의했다	1 (3.3)	2 (100)	2 (25.0)	2 (28.6)	1 (9.1)	0 (0.0)
일하는 업체에 항의했다	1 (3.3)	0 (0.0)	3 (37.5)	1 (14.3)	2 (18.2)	0 (0.0)
경찰에 신고했다	0 (0.0)	0 (0.0)	0 (0.0)	0 (0.0)	2 (18.2)	0 (0.0)
인권단체에 상담했다	0 (0.0)	1 (50.0)	0 (0.0)	0 (0.0)	2 (18.2)	0 (0.0)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었다	6 (20.0)	0 (0.0)	2 (25.0)	2 (28.6)	2 (18.2)	0 (0.0)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1 (2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그냥 참고 일해야 했다는 응답이 전 업태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카페 및 7080클럽(100%), 단란주점(87.5%), 시멘스클럽(81.8%), 테마파크(80%), 외국인전용클럽(71.4%), 나이트클럽(66.7%)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말로 항의한 경험은 단란주점(37.5%), 나이트클럽(33.3%), 외국인전용클럽(28.6%), 시멘스클럽(27.3%)에서 나타났다. 똑같이 대응하거나 집단적으로 항의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프로모션에 항의한 경우는 카페 및 7080클럽(100%), 외국인전용클럽(28.6%), 단란주점(25.0%)에서 나타났고, 일하는 업체에 항의한 경우는 단란주점(37.5%)에서 나타났고 나머지 업태들은 거의 없었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시멘스클럽에서만 2건이 있었고, 인권단체에 상담한 경우는 카페 및 7080클럽에서 1건, 시멘스클럽에서 2건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다.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된 경우는 외국인전용클럽(28.6%), 단란주점(25.0%), 나이트클럽(20.0%)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5)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응 결과

물리적 폭력에 대처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65> 대응 결과_전체 (n=70, 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일했다	35	50.0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	7	10.0
다른 직장으로 동의 없이 이동되었다	10	14.3
더 큰 폭언 폭행을 당했다	1	1.4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었다	32	45.7
기타	2	2.9

70명의 응답자들 중 절반인 50%는 아무 조치 없이 일했다고 응답을 했다. 그러나 45.7%는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앞서 70명중 13명이 물리적 폭력의 대처 방법으로 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택한 것과 비교하자면 19명의 응답자들이 더 늘어난 수치이다. 이는 업체로부터의 이탈 외에 다른 방법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업체로부터 도망하여 미등록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어 일을 했어야 한 경험은 14.3%였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은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표 3-66> 물리적 폭력 대응결과_업태별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나이트 클럽 (n=30)	카페·7080클럽 (n=2)	단란주점 (n=8)	외국인 전용클럽 (n=7)	시멘스클럽 (n=11)	테마파크 (n=5)
아무런 조치 없이 일했다	14 (46.7)	0 (0.0)	5 (62.5)	3 (42.9)	6 (54.5)	5 (100)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	4 (13.3)	0 (0.0)	2 (25.0)	0 (0.0)	0 (0.0)	1 (20)
다른 직장으로 동의 없이 이동되었다	3 (10.0)	0 (0.0)	3 (37.5)	2 (28.6)	0 (0.0)	0 (0.0)
더 큰 폭언 폭행을 당했다	0 (0.0)	0 (0.0)	0 (0.0)	1 (14.3)	0 (0.0)	0 (0.0)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었다	14 (46.7)	2 (100)	4 (50.0)	3 (42.9)	5 (45.5)	0 (0.0)
기타	1 (3.3)	0	1 (12.5)	0 (0.0)	0 (0.0)	0 (0.0)

업태별로 보면 아무런 조치 없이 일해야 했던 경우가 전 업태에서 매우 높은데 테마파크(100%), 단란주점(62.5%), 시멘스클럽(54.5%)에서 특히 높았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은 경우는 단란주점(25.0%), 테마파크(20.0%), 나이트클럽(13.3%)에서 일부 있었다. 다른 직장으로 동의 없이 이동된 경우는 단란주점(37.5%), 외국인전용클럽(28.6%), 나이트클럽(10.0%)에서 있었다. 최종적으로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된 경우는 테마파크를 제외한 모든 업태, 즉 카페 및 7080클럽(100%), 단란주점(50.0%), 나이트클럽(46.7%), 시멘스클럽(45.5%)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5) 성폭력 실태

(1) 성폭력 유형과 경험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55.0%에 해당하는 83명의 응답자가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성폭력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82명(98.8%)은 여성이며, 이는 전체 여성의 120명 중 69.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국가별로 보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필리핀 이주민의 80명(75.5%),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우크라이나 이주민 1명(5.3%)이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3-67> 성폭력 경험(n=151)

[단위: 명(%)]

구분	있다	없다	합계
성폭력경험	83 (55.0)	68 (45.0)	151 (100)

<표 3-68> 성폭력 경험_업태(비율)

[단위: 명(%)]

항목	있다	없다	합계
호텔공연장	0 (0)	4 (100)	4 (100)
나이트클럽	38 (79.2)	10 (20.8)	48 (100)
카페・7080클럽	3 (42.9)	4 (57.1)	7 (100)
단란주점	10 (62.5)	6 (37.5)	16 (100)
외국인전용클럽	11 (73.3)	4 (26.7)	15 (100)
시멘스클럽	12 (92.3)	1 (7.7)	13 (100)
놀이공원	1 (5.3)	18 (94.7)	19 (100)
테마파크	0 (0)	15 (100)	15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업태별로 보면 호텔 공연과 테마파크의 경우는 성폭력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놀이공원은 19명의 응답자 중 1명이 성폭력 경험이 있었다. 그 외의 업태들은 성폭력 경험의 비율이 높은데, 가장 비율이 높은 업태는 시멘스클럽으로 13명의 응답자 중 12명(92.3%)이 성

폭력 경험이 있었다. 나이트클럽의 경우는 48명의 응답자 중 38명인 79.2%가 성폭력을 경험했고, 외국인전용클럽은 15명의 응답자 중 11명(73.3%)이 경험하였다. 단란주점의 경우 16명의 응답자 중 10명(62.5%)이, 카페 및 7080클럽 종사자들은 7명의 응답자 중 3명이 성폭력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테마파크의 경우는 응답자들은 성폭력 경험이 없다고 하였지만, 친구가 업체 관리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표 3-69> 성폭력의 유형과 경험(n=83, 복수응답)

[단위: 명(%)]

항목	빈도 (명)	비율 (%)
(1) 성적인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67	80.7
(2) 억지로 술을 권유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58	69.9
(3)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들을 보여주는 행위	26	31.3
(4) 상대방이 성과 관련한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40	48.2
(5)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원치 않은 신체 접촉 행위	73	88.0
(6)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23	27.7
(7) 가슴, 엉덩이,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63	75.9
(8)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25	30.1
(9)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요구하는 행위	24	28.9
(10) 성폭행(강간)행위	4	4.8

유형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입맞춤, 포옹, 껴안기 등 원치 않은 신체 접촉 행위로, 성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들 중 88.0%가 경험이 있다고 표기했다. 성적인 농담과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는 성폭력 경험자 중 80.7%였다. 가슴, 엉덩이,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75.9%에 달했다. 억지로 술을 권유하거나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69.9%였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와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요구하는 행위는 각각 30.1%와 28.9%인데, 이 두 가지의 경우를 합하면 31명의 응답자(37%)가 성적 관계를 강요받거나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받았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20.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성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4명이 있었다.

업태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70> 성폭력의 유형과 경험_업태별 (복수응답)

[단위: 명(%)]

항목[22]	호텔공연 (n=4)	나이트 클럽 (n=48)	카페·7080클럽 (n=7)	단란주점 (n=16)	외국인 전용클럽 (n=15)	시멘스 클럽 (n=12)	놀이공원 (n=19)
(1)	0 (0.0)	31 (64.6)	3 (42.9)	8 (50.0)	8 (53.3)	10 (83.3)	0 (0.0)
(2)	0 (0.0)	27 (56.3)	2 (28.6)	6 (37.5)	8 (53.3)	9 (75.0)	0 (0.0)
(3)	0 (0.0)	11 (22.9)	2 (28.6)	2 (12.5)	5 (33.3)	3 (25.0)	0 (0.0)
(4)	0 (0.0)	17 (35.4)	2 (28.6)	5 (31.3)	6 (40.0)	5 (41.7)	0 (0.0)
(5)	0 (0.0)	34 (70.8)	2 (28.6)	9 (56.3)	10 (66.7)	10 (83.3)	1 (5.3)
(6)	0 (0.0)	12 (25.0)	0 (0.0)	2 (12.5)	3 (20.0)	2 (16.7)	0 (0.0)
(7)	0 (0.0)	30 (62.5)	2 (28.6)	6 (37.5)	8 (53.3)	10 (83.3)	0 (0.0)
(8)	0 (0.0)	13 (27.1)	0 (0.0)	2 (12.5)	4 (26.7)	2 (16.7)	0 (0.0)
(9)	0 (0.0)	14 (29.2)	0 (0.0)	4 (25.0)	3 (20.0)	1 (8.4)	0 (0.0)
(10)	0 (0.0)	2 (4.2)	0 (0.0)	0 (0.0)	1 (6.7)	0 (0.0)	0 (0.0)

* 기타 업태 제외

성적인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경험한 업태는 시멘스클럽(83.3%), 나이트클럽(64.6%), 외국인전용클럽(53.3%), 단란주점(50.0%)에서 특히 높았다. 억지로 술을 마시거나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시멘스클럽(75.0%), 나이트클럽(56.3%), 외국인전용클럽(53.3%)에서 특히 높았다. 상대방이 성과 관련한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는 시멘스클럽(41.7%), 외국인전용클럽(40.0%)에서 특히 높았다. 원치 않은 신체 접촉 행위는 시멘스클럽(83.3%), 나이트클럽(70.8%), 외국인전용클럽(66.7%), 단란주점(56.3%)에서 높게 나타났다.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는 나이트클럽(25.0%), 외국인전용클럽(20.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가슴 엉덩이 성기 등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시멘스클럽(83.3%), 나이트클럽(62.5%), 외국인전용클럽(53.3%)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는 나이트클럽(27.1%), 외국인전용클럽(26.7%)에서 높게 나타났고, 성매매를 요구하는 행위는 역시 나이트클럽(29.2%), 단란주점(25.0%), 외국인전용클럽(2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성폭행을 당한 경험은 나이트클럽과 외국인전용클럽의 공연 이주노동자들에게서 나타났다.

22) 항목은 <표 3-69>와 같다.

(2) 성폭력 가해자

성폭력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3-71> 성폭력 가해자 (n=82,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한국 프로모션 관리자	일하는 근무지 사장 및 관리자	한국인 동료	외국인 동료	손님	기타
가해자	22 (26.8)	43 (52.4)	11 (13.4)	8 (9.8)	25 (30.5)	3 (3.7)

83명의 성폭력 경험자 중 82명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응답해 주었다.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는 것은 52.4%인 일하는 근무지 사장 및 관리자였다. 앞서 손님이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에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다른 결과이다. 손님이 가해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30.5%였고, 한국 프로모션 관리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26.8%였다. 한국인 동료 및 외국인 동료가 성폭력을 행했다는 응답 비율도 13.4%와 9.8%에 달했다.

업태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72>성폭력 가해자_업태별(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한국 프로모션 관리자	일하는 근무지 사장 및 관리자	한국인 동료	외국인 동료	손님	기타
나이트 클럽 (n=37)	10 (27.0)	18 (48.6)	5 (13.5)	5 (13.5)	12 (32.4)	2 (5.4)
카페·7080클럽 (n=3)	0 (0.0)	2 (66.7)	0 (0.0)	0 (0.0)	3 (100)	0 (0.0)
단란주점 (n=10)	3 (30.0)	4 (40.0)	2 (20.0)	2 (20.0)	3 (30.0)	0 (0.0)
외국인 전용클럽 (n=11)	4 (36.4)	6 (54.5)	3 (27.3)	0 (0.0)	1 (9.1)	0 (0.0)
시멘스 클럽 (n=12)	3 (25.0)	6 (50.0)	1 (8.3)	1 (8.3)	5 (41.7)	0 (0.0)
놀이공원 (n=19)	0 (0.0)	0 (0.0)	0 (0.0)	0 (0.0)	0 (0.0)	1 (5.3)

* 기타 업태 제외

성폭력의 가해자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한국 프로모션 관리자라는 응답은 외국인전용클럽(36.4%)과 단란주점(30.0%)에서 특히 높았다. 일하는 근무지 사장 및 관리자가 가해자라는 응답은 외국인전용클럽(54.5%), 카페 및 7080클럽(66.7%), 시멘스클럽(50.0%), 나이트클럽(48.6%)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 동료가 가해자라는 응답은 외국인전용클럽(27.3%), 단란주점(20.0%)에서 높았으며, 외국인 동료가 가해자라는 응답도 단란주점(20.0%)에서 높았다. 손님이 가해자라는 응답은 카페 및 7080클럽(100%), 시멘스클럽(41.7%), 나이트클럽(32.4%)에서 높게 나타났다.

(3) 성폭력을 경험한 이유

<표 3-73> 성폭력 이유 (n=83, 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22	26.5
일을 잘 하지 못해서	7	8.4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6	7.2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	21	25.3
외국인이라서	11	13.3
내가 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서	10	12.0
잘 모르겠다	11	13.3
기타	17	20.5

전체적으로는 83명의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응답은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로 26.5%이고,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는 25.3%였다. 그 외에 기타에 대한 비율이 20.5%로 높았는데, 이는 고객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이유를 항목에서 고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3-74> 성폭력 이유_업태별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나이트 클럽 (n=37)	카페·7080클럽 (n=3)	단란주점 (n=10)	외국인 전용클럽 (n=11)	시멘스클럽 (n=12)	놀이공원 (n=1)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10 (27.0)	1 (33.3)	5 (50.0)	1 (9.1)	3 (25.0)	0 (0.0)
일을 잘 하지 못해서	4 (10.8)	0 (0.0)	1 (10.0)	1 (9.1)	0 (0.0)	0 (0.0)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2 (5.4)	0 (0.0)	2 (20.0)	0 (0.0)	1 (8.3)	0 (0.0)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	11 (29.7)	0 (0.0)	6 (60.0)	3 (27.3)	1 (8.3)	0 (0.0)
외국인이라서	3 (8.1)	0 (0.0)	2 (20.0)	1 (9.1)	4 (33.3)	1 (100)
내가 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서	5 (13.5)	0 (0.0)	0 (0.0)	4 (36.4)	1 (8.3)	0 (0.0)
잘 모르겠다	8 (21.6)	2 (66.7)	0 (0.0)	0 (0.0)	1 (8.3)	0 (0.0)
기타	7 (18.9)	0 (0.0)	0 (0.0)	2 (18.2)	4 (33.3)	0 (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성폭력을 경험한 이유로는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단란주점(50.0%)에서 특히 높았다. 강요하는 일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응답 역시 단란주점(20.0%)에서 높았다.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단란주점(60.0%)에서 가장 높았고, 나이트클럽(29.7%), 외국인전용클럽(27.3%)에서 나타났다. 외국인이라서 성폭력을 당했다라는 응답은 시멘스클럽(33.3%), 놀이공원(100%)에서 나타났다. 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은 외국인전용클럽(36.4%)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카페 및 7080클럽(66.7%), 나이트클럽(21.6%)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4) 성폭력에 대한 대응

성폭력에 발생했을 때의 응답자들의 대응은 다음과 같았다.

<표 3-75> 성폭력에 대한 대응_전체 (n=83, 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그냥 참고 일했다	29	34.9
말로 항의했다	23	27.7
똑같이 행동 했다	1	1.2
집단적으로 항의했다	6	7.2
프로모션에 항의했다	10	12.0
일하는 업체에 항의했다	19	22.9
경찰에 신고했다	1	1.2
인권단체에 상담했다	1	1.2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었다	25	30.1
기타	4	4.8

가장 높은 비율은 그냥 참고 일했다는 응답으로 34.9%였고, 업체에서 나와서 미등록이 되었다고 표기한 응답자들이 25명으로 30.1%의 비율에 달한다. 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주는데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작업장을 이탈하는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말로 항의했다(27.7%), 일하는 업체에 항의했다(22.9%), 프로모션에 항의했다(12.0%)는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고, 경찰이나(1.2%), 인권단체(1.2%) 등 외부에 알려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한 경우는 각각 1명이 경험이 있다고 표기하여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표 3-76> 성폭력에 대한 대응_업체별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나이트클럽 (n=37)	카페·7080클럽 (n=3)	단란주점 (n=10)	외국인 전용클럽 (n=11)	시멘스클럽 (n=12)	놀이공원 (n=1)
그냥 참고 일했다	15 (40.5)	1 (33.3)	4 (40.0)	2 (18.2)	5 (41.7)	0 (0.0)
말로 항의했다	10 (27.0)	0 (0.0)	4 (40.0)	2 (18.2)	4 (33.3)	1 (5.3)
똑같이 폭언 욕설을 했다	1 (2.7)	0 (0.0)	0 (0.0)	0 (0.0)	0 (0.0)	0 (0.0)
집단적으로 항의했다	4 (10.8)	0 (0.0)	1 (10.0)	0 (0.0)	1 (8.3)	0 (0.0)
프로모션에 항의했다	4 (10.8)	0 (0.0)	1 (10.0)	2 (18.2)	2 (16.7)	0 (0.0)
일하는 업체에 항의했다	6 (16.2)	0 (0.0)	3 (30.0)	3 (27.3)	5 (41.7)	0 (0.0)
경찰에 신고했다	0 (0.0)	2 (66.7)	0 (0.0)	0 (0.0)	1 (8.3)	0 (0.0)
인권단체에 상담했다	0 (0.0)	0 (0.0)	0 (0.0)	0 (0.0)	1 (8.3)	0 (0.0)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었다	14 (37.8)	0 (0.0)	3 (30.0)	4 (36.4)	2 (16.7)	0 (0.0)
기타	0 (0.0)	2 (66.7)	0 (0.0)	0 (0.0)	1 (8.3)	0 (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업태별로 보면 그냥 참고 일한 경험은 놀이공원을 제외한 전 업태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시멘스클럽(41.7%), 나이트클럽(40.5%), 단란주점(40.0%)에서 나타났다. 말로 항의했다는 응답은 단란주점(40.0%), 시멘스클럽(33.3%)에서 높았다. 집단적으로 항의한 경우는 나이트클럽(10.8%)을 제외한 전 업태에서 거의 없었고 프로모션에 항의한 경우도 매우 낮지만 외국인전용클럽(18.2%), 시멘스클럽(16.7%), 나이트클럽(10.8%), 단란주점(10.0%)에서 일부 있었다. 일하는 업체에 항의한 경우는 소폭 상승하는데 시멘스클럽(41.7%), 단란주점(30.0%), 외국인전용클럽(27.3%)에서 특히 높았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카페 및 7080클럽에서 2건, 시멘스클럽에서 1건이 있었고, 인권단체에 상담한 경우도 시멘스클럽에서 1건이 있는 것으로 봐서 외부에 사건을 거의 알릴 수가 없었다.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된 경우는 나이트클럽(37.8%), 외국인전용클럽(36.4%), 단란주점(30.0%)에서 높게 나타났다.

(5) 성폭력에 대한 대응결과

성폭력에 대응한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3-77> 성폭력 대응결과_전체 (n=83, 복수응답)

항목	빈도(명)	비율(%)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일했다	32	38.6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	2	2.4
다른 직장으로 동의 없이 이동되었다	8	9.6
더 큰 폭언 폭행을 당했다	2	2.4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었다	47	56.6
기타	3	3.6

성폭력을 경험한 83명 중 폭력의 결과 업체에서 나와서 미등록이 되었다는 응답이 56.6%로,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에 비교할 때 미등록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일을 했다는 응답도 32명으로 38.6%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직장으로 이동되어 근무했어야 했던 경험이 9.6%의 응답자들에게 있었다.

<표 3-78> 성폭력 대응결과_업태별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나이트 클럽 (n=37)	카페·7080클럽 (n=3)	단란주점 (n=10)	외국인 전용클럽 (n=11)	시멘스 클럽 (n=12)	놀이공원 (n=1)
아무런 조치 없이 일했다	15 (40.5)	1 (33.3)	4 (40.0)	3 (27.3)	6 (50.0)	1 (5.3)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	1 (2.7)	0 (0.0)	1 (10.0)	0 (0.0)	0 (0.0)	0 (0.0)
다른 직장으로 동의 없이 이동되었다	2 (5.4)	0 (0.0)	3 (30.0)	2 (18.2)	0 (0.0)	0 (0.0)
더 큰 폭언 폭행을 당했다	0 (0.0)	0 (0.0)	1 (10.0)	1 (9.1)	0 (0.0)	0 (0.0)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었다	23 (62.2)	2 (66.7)	8 (80.0)	4 (36.4)	5 (41.7)	0 (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업태별로 살펴보면 아무런 조치 없이 일해야 했던 경험이 모든 업태에서 높은데 특히 시멘스클럽(50.0%), 나이트클럽(40.0%), 단란주점(40.0%)에서 높았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은 경우는 전 업태에서 거의 없었고, 다른 직장으로 이동된 경우는 단란주점(30.0%)에서 특히 높

았다.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는 경우가 놀이공원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단란주점(80.0%), 카페 및 7080클럽(66.7%), 나이트클럽(62.2%)에서 매우 높았다.

놀이공원의 경우 업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작년 할로윈 공연 때 손님이 연기자들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일이 일어났다. 그 후에는 공연 때 프로모션 관리자들이 같이 나가서 그런 사람이 없도록 감시하지만 솔직히 누가 그러는지 잡아내기는 어렵다.”(놀이공원 프로모션 매니저)

시멘스클럽에서 근무하였던 종사자의 경우 클럽 안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우리 클럽 안에서 생활은 어려웠다. 클럽에서 이런 일 하는지 몰랐다. 고객이 폭행하고, 몸을 만지고, 블로우잡을 하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음식은 거의 없다. 생활할 돈도 없고. 사업주가 고객이랑 성매매 하게 시켜서 클럽이 돈을 번다. 우리 13시간 동안 일해서 힘들다. 하지만 우리는 참았는데 왜냐면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주가 만약에 손님 전화가 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안 나가면 여권을 뺏는다고 협박하였다. 그래서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여, 필리핀, 1986년생, 2008년 입국, 설문)

클럽 사장이 공연 이주노동자에게 성매매를 시켜서 이익을 얻는 구조 속에서, 여성은 성폭력의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 될 수밖에 없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는 것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6) 감시・강요 등 기타 인권실태

실태조사팀은 공연 이주노동자들을 만나면서 이들이 사업주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사업주가 개인시간을 감시하며, 따라서 자신의 자유 시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광경을 몇 차례 목격하였다.

감시 및 강요 등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 필리핀 이주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우리를 방치했다. 필요한 걸 지급해주지 않았다. 필요한 걸 달라고 하면 불법 시키고 감옥가게 하겠다며 협박했다. 실제로 아픈 필리핀 사람을 필리핀으로 보내 버리기도 했다. 남자 5명, 여자 3명이 있었는데, 남자들 방의 문은 잠가 버리고, 여자들은 호스티스처럼 일하게 했다. 필리핀에서 올 때부터 우리를 감시했다. 도망친 후에 프로모션 사장에게 잡혀서 맞았다. 병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남, 필리핀, 1983년생, 2004년 입국, 설문)

설문지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79> 감시・강요 등 기타 인권실태_전체

[단위: 명(%)]

항목	있음	없음	무응답	합계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강제 노동 강요	75 (49.7)	74 (49.0)	2 (1.3)	151 (100)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외출 금지	67 (44.4)	82 (54.3)	2 (1.3)	151 (100)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개인적 활동 감시	78 (51.7)	71 (47.0)	2 (1.3)	151 (100)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	70(46.4)	78 (51.7)	3 (2.0)	151 (100)
강제로 업무지를 이동시키겠다고 협박	57 (37.7)	89 (58.9)	5 (3.3)	151 (100)
해고나 이탈에 대한 협박[23]	43 (28.5)	105 (69.5)	3 (2.0)	151 (100)
약물복용을 강요	1 (0.7)	148 (98.0)	2 (1.3)	151 (100)
폐쇄된 공간에 감금	16 (10.6)	131 (86.8)	4 (2.6)	151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151명의 응답자들 중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개인 활동을 감시당한 경험은 51.7%가 있었고, 44.4%의 응답자들은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도 외출을 금지 당했다. 46.4%의 응답자들은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제지당했다.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도 노동할 것을 강요당한 경험은 49.7%가 있었다. 28.5%는 해고나 이탈에 대한 협박을 당한 적이 있고, 폐쇄 공간에 감금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0.6%가 되었다. 약물복용을 강요당한 경우는 1건이 있었다. 감시와 감금, 노동 강요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억압적인 상황에서 근무하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3) 특히 22명이 이탈을 할 경우 본국의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151명의 응답자 중 14.6%이다. 응답자들은 본국 에이전트(6명), 한국 프로모터(14명), 근무지 사장(11명), 직장 매니져(4명)에게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복수응답)

<표 3-80> 감시・강요 등 기타 인권실태_업태별

[단위: 명(%)]

항목	호텔 공연 (n=4)	나이트 클럽 (n=48)	카페・ 7080클럽 (n=7)	단란 주점 (n=16)	외국인 전용클럽 (n=15)	시멘스 클럽 (n=13)	놀이 공원 (n=19)	테마 파크 (n=13)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강제 노동 강요	1 (25.0)	30 (62.5)	3 (42.9)	8 (50.0)	7 (46.7)	11 (84.6)	2 (10.5)	6 (46.2)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외출 금지	0 (0.0)	31 (64.5)	2 (28.6)	6 (37.5)	7 (46.7)	7 (53.8)	0 (0.0)	5 (38.5)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개인적 활동 감시	0 (0.0)	34 (70.8)	4 (57.1)	9 (56.3)	7 (46.7)	8 (61.5)	1 (5.3)	5 (38.5)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	1 (25.0)	31 (64.6)	3 (42.9)	8 (50.0)	9 (60.0)	5 (38.5)	2 (10.5)	0 (0.0)
강제로 업무지를 이동시키겠다고 협박	0 (0.0)	26 (54.2)	2 (28.6)	9 (56.3)	6 (40.0)	7 (53.8)	0 (0.0)	0 (0.0)
해고나 이탈에 대한 협박	1 (25.0)	19 (39.6)	0 (0.0)	7 (43.8)	5 (33.3)	4 (30.8)	0 (0.0)	0 (0.0)
약물복용을 강요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폐쇄된 공간에 감금	0 (0.0)	0 (0.0)	0 (0.0)	1 (6.3)	3 (20.0)	4 (30.8)	0 (0.0)	1 (7.7)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업태별로 살펴보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강제 노동을 강요당한 경험은 모든 업태에서 나타났는데 시멘스클럽(84.6%), 나이트클럽(62.5%), 단란주점(50.0%)에서 특히 높았다.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휴일이나 외출을 금지당한 경험은 호텔공연장과 놀이공원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나타났는데 나이트클럽(64.5%), 시멘스클럽(53.8%)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개인 활동을 감시당한 경험은 호텔공연장을 제외한 모든 업태에서 나타났는데 나이트클럽(70.8%), 시멘스클럽(61.5%), 카페 및 7080클럽(57.1%), 단란주점(56.3%)에서 특히 높았다. 외부와의 연락을 제지한 경우는 테마파크를 제외한 모든 업태들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나이트클럽(64.6%), 외국인전용클럽(60.0%)에서 높게 나타났다. 업무지를 이동시키겠다고 협박을 당한 경우는 호텔공연, 놀이공원, 테마파크를 제외한 업태들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나이트클럽(54.2%), 단란주점(56.3%), 시멘스클럽(53.8%)에서 높았다. 이탈에 대해서 협박을 받은 경험은 카페 및 7080클럽, 놀이공원, 테마파크를 제외하고 나타났는데 특히 단란주점(43.8%)이 높았다. 폐쇄된 공간에 감금당한 경험은 단란주점, 외국인전용클럽, 시멘스클럽, 테마파크에서 나타났다. 한 테마파크 종사자는 자신의 개인 시간을 감시당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쉬는 날에는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구경하고 싶다. 젊은 사람들이 놀러 갈 수 있는 곳을 가보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해준다."(남, 몽골, 1986년생, 2013년 입국, 설문)

특히나 단란주점, 외국인전용클럽, 시멘스클럽, 테마파크의 종사자의 경우 감금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다.

기타 응답 중에는 기숙사 안에 CCTV가 있고,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하는 것도 제지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6. 의료

1)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54.4%가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45.6%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응답자 절반 이상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1> 아팠거나 다쳤던 경험

항목	빈도(명)	비율(%)
있음	81	54.4
없음	68	45.6
합계	149	100

업태별로 분석해보면 호텔(100%), 테마파크(80%), 시멘스클럽(69.2%), 나이트클럽(55.3%)에서 높게 나타났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심층면접 당시 사례자는 오른쪽 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다)말에서 떨어지면서 손을 잘못 짚었어요. 종종 다쳐요. 지난번에는 크게 허리가 다쳐서 한라의료원에 입원한 적도 있어요. … 공연장이 야외라서 비올 때나 추울 때가 정말 힘들어요. 비오거나 눈 내릴 때는 공연을 안했으면 해요."(남, 몽골, 1993년생, 2012년 입국, 심층)

<표 3-82> 아팠거나 다쳤던 경험_업태별

[단위: 명(%)]

구분		호텔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파크	놀이공원
아프거나 다친여부	있음	4 (100.0)	26 (55.3)	3 (42.9)	4 (25.0)	8 (53.3)	9 (69.2)	12 (80.0)	8 (42.1)
	없음	0 (0.0)	21 (44.7)	4 (57.1)	12 (75.0)	7 (46.7)	4 (30.8)	3 (20.0)	11 (57.9)
전체		4 (100)	47 (100)	7 (100)	16 (100)	15 (100)	13 (100)	15 (100)	19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2) 병원에서 치료 여부

전체 응답자 중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던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 갈 수 없었던 경우는 22.3%, 병원에 갔던 경우가 77.7%로 나왔다. 수치상으로는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을 경험할 경우 상당수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앞의 응답에서 아프거나 다쳤던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응답자들을 제외한다면 아팠거나 다쳤던 경험을 한 사람들 중에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83>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던 경우

항목	빈도(명)	비율(%)
있음	33	22.3
없음	115	77.7
합계	148	100

업태별로 살펴보면 카페 및 7080클럽(42.9%), 외국인전용클럽(40%), 시멘스클럽(38.5%)에서 일을 하다가 아프거나 다친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표 3-84>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던 경우_업태별

[단위: 명(%)]

항목		호텔공연	나이트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클럽	테마파크	놀이공원
아프거나 다친여부	있음	1 (33.3)	9 (19.1)	3 (42.9)	3 (18.8)	6 (40.0)	5 (38.5)	3 (20.0)	0 (0.0)
	없음	2 (66.7)	38 (80.9)	4 (57.1)	13 (81.2)	9 (60.0)	8 (61.5)	12 (80.0)	19 (100.0)
전체		3 (100)	47 (100)	7 (100)	16 (100)	15 (100)	13 (100)	15 (100)	19 (100)

* 기타 업태, 무응답 제외

아팠거나 다쳤던 경험이 있었는데 병원에 가고 싶었으나 갈 수 없었다 것이 복수응답으로 총 53개가 나타났다. 12명이 병원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갈 수 없었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비용(10명), 시간 및 의사소통(8명), 강제 출국 염려(6명)순이었다.

<표 3-85>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단위: 명(%)]

유형	장소 모름	비용	시간	고용주	의사 소통	건강 보험	강제 출국 염려	기타
빈도	12 (23)	10 (19)	8 (15)	4 (7)	8 (15)	3 (6)	6 (11)	2 (4)

<표 3-86>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_업태별

[단위: 명(%)]

분류	호텔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 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 파크	놀이 공원
장소와 방법 모름	0 (0.0)	3 (2.0)	0 (0.0)	2 (1.3)	4 (2.6)	2 (1.3)	0 (0.0)	0 (0.0)
비용	0 (0.0)	3 (2.0)	0 (0.0)	1 (0.7)	2 (1.3)	2 (1.3)	1 (0.7)	0 (0.0)
시간	0 (0.0)	2 (1.3)	0 (0.0)	2 (1.3)	1 (0.7)	2 (1.3)	0 (0.0)	0 (0.0)
고용주	0 (0.0)	1 (0.7)	1 (0.7)	0 (0.0)	1 (0.7)	0 (0.0)	1 (0.7)	0 (0.0)
의사소통	0 (0.0)	2 (1.3)	0 (0.0)	0 (0.0)	2 (1.3)	2 (1.3)	0 (0.0)	0 (0.0)
건강보험	1 (0.7)	1 (0.7)	0 (0.0)	0 (0.0)	0 (0.0)	1 (0.7)	0 (0.0)	0 (0.0)
강제출국 염려	0 (0.0)	2 (1.3)	0 (0.0)	1 (0.7)	1 (0.7)	1 (0.7)	0 (0.0)	0 (0.0)
기타	0 (0.0)	0 (0.0)	1 (0.7)	0 (0.0)	0 (0.0)	0 (0.0)	0 (0.0)	0 (0.0)

* 기타 업태 제외

3) 병원비 해결 방법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 해결방법에는 본인 지불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의 도움이 16명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고용주 지불은 14명이, 고용주가 지급한 후에 월급에서 공제한 경우는 10명이었으며, 기타가 6명으로 나타났다.

<표 3-87> 병원비 지불 방법

[단위: 명(%)]

본인돈	고용주 지불	고용주 지급 후 월급 공제	지인도움	기타	해당사항없음
27 (35)	14 (18)	10 (13)	16 (21)	6 (8)	4 (5)

<표 3-88> 병원비 지불방법_업태별

[단위: 명(%)]

분류	호텔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파크	놀이공원
본인 돈	1 (0.7)	17 (11.3)	0 (0.0)	2 (1.3)	2 (1.3)	3 (2.0)	0 (0.0)	2 (1.3)
고용주 지불	0 (0.0)	1 (0.7)	0 (0.0)	0 (0.0)	1 (0.7)	0 (0.0)	8 (5.3)	3 (2.0)
고용주 지불 후 공제	0 (0.0)	2 (1.3)	0 (0.0)	3 (2.0)	1 (0.7)	0 (0.0)	1 (0.7)	0 (0.0)
지인도움	0 (0.0)	5 (3.3)	1 (0.7)	2 (1.3)	3 (2.0)	3 (2.0)	0 (0.0)	0 (0.0)
기타	0 (0.0)	1 (0.7)	2 (1.3)	1 (0.7)	0 (0.0)	1 (0.7)	0 (0.0)	0 (0.0)
해당없음	0 (0.0)	1 (0.7)	0 (0.0)	0 (0.0)	1 (0.7)	1 (0.7)	1 (0.7)	0 (0.0)

* 기타 업태 제외

7. 생활환경

다음은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생활환경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생활환경은 숙소와 식사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숙소

응답자들은 숙소에서 욕실이나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실내는 경우가 57.4%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42.6%였다. 숙소의 욕실에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경우가 92.6%였다. 화장실의

경우 84.6%가 제대로 갖추어진 곳에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15.4%였다.

숙소에 부엌이나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는 77.0%였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23.0%였다. 응답자의 94.0%는 숙소에 세탁기가 있었고, 91.2%는 난방시설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환기와 통풍과 관련해서 87.2%는 햇볕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81.2%는 모기나 다른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모기장, 방충망 등이 있었다. 숙소의 잠금장치 여부에 대해서는 82.4%가 욕실과 침실에 안전한 잠금장치가 있었으나 직장 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는 경우는 49.3%나 되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숙소가 분리되어 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86.3%였다.

<표 3-89> 숙소환경

[단위: 명(%)]

항목	있음	없음
① 욕실이나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실내에 있다	85 (57.4)	63 (42.6)
② 욕실이나 씻을 수 있는 시설에 따뜻한 물이 나온다	138 (92.6)	11 (7.4)
③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	126 (84.6)	23 (15.4)
④ 부엌이나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	114 (77.0)	34 (23.0)
⑤ 세탁기가 있다	140 (94)	9 (6)
⑥ 난방시설이 있다	135 (91.2)	13 (8.8)
⑦ 햇볕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창문이 있다	130 (87.2)	19 (12.8)
⑧ 모기나 다른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모기장, 방충망 등이 있다	121 (81.2)	23 (18.8)
⑨ 욕실과 침실에 안전한 잠금장치가 있다	122 (82.4)	26 (17.6)
⑩ 남자와 여자의 숙소가 분리되어 있다	126 (86.3)	20 (13.7)
⑪ 숙소에 직장 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든다	73 (49.3)	75 (50.7)

업태별로 살펴보면 욕실의 경우, 테마파크의 공연 이주노동자 경우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곳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았다. 놀이공원의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욕실이 실내에 갖추어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나이트클럽이나 외국인전용클럽,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의 공연 이주노동자들은 절반 이상이 욕실이 실내에 갖추어져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카페 및 7080클럽의 경우 71.4%로 다른 유흥업소보다 높은 편이었다. 온수의 경우,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호텔, 놀이공원, 카페 및 7080클럽, 시멘스클럽의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테마파크,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외국인전용클럽도 80%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화장실의 경우, 카페 및 7080클럽의 응답자은 42.9%만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다른 업태에 종사하는 공연 이주노동자들은 약 80% 이상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조리도구의 경우, 테마파크, 카페 및 7080클럽은 응답자의 절반만이 조리도구가 갖추어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다른 업태에서 종사하는 공연 이주노동자들은 80%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창문과 같은 통풍시설은 카페 및 7080클럽을 제외하고 대부분 통풍이 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방충방의 경우, 카페 및 7080클럽의 경우 28.6%만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숙소에 사장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경우는 나이트클럽, 카페 및 7080클럽, 시멘스클럽 등의 공연 이주노동자들 중 5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사생활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3-90> 숙소환경_업태별

[단위: 명(%)]

항목[24]		호텔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파크	놀이공원
①	있음	3 (75.0)	27 (56.2)	5 (71.4)	8 (53.3)	8 (53.3)	8 (66.7)	0 (0)	19 (100)
	없음	1 (25.0)	21 (43.8)	2 (28.6)	7 (46.7)	7 (46.7)	4 (33.3)	14 (100)	0 (0)
②	있음	4 (100)	43 (89.6)	7 (100)	13 (86.7)	14 (93.3)	13 (100)	12 (85.7)	19 (100)
	없음	0 (0)	5 (10.4)	0 (0)	2 (13.3)	1 (6.7)	0 (0)	2 (14.3)	0 (0)
③	있음	4 (100)	38 (79.2)	3 (42.9)	14 (93.3)	12 (80.0)	11 (84.6)	14 (100)	19 (100)
	없음	0 (0)	10 (20.8)	4 (57.1)	1 (6.7)	3 (20.0)	2 (15.4)	0 (0)	0 (0)
④	있음	4 (100)	33 (68.8)	4 (57.1)	13 (86.7)	13 (86.7)	8 (61.5)	8 (57.1)	19 (100)
	없음	0 (0)	15 (31.2)	3 (42.9)	2 (13.3)	2 (13.3)	5 (38.5)	6 (42.9)	0 (0)
⑤	있음	4 (100)	43 (89.6)	4 (57.1)	15 (100)	15 (100)	12 (92.3)	14 (100)	19 (100)
	없음	0 (0)	5 (10.4)	3 (42.9)	0 (0)	0 (0)	1 (7.7)	0 (0)	0 (0)
⑥	있음	4 (100)	44 (93.6)	6 (85.7)	12 (86.7)	12 (80.0)	11 (84.6)	14 (100)	19 (100)
	없음	0 (0)	3 (6.4)	1 (14.3)	2 (13.3)	3 (20.0)	2 (15.4)	0 (0)	0 (0)
⑦	있음	4 (100)	39 (81.2)	4 (57.1)	15 (100)	12 (80.0)	10 (76.9)	14 (100)	19 (100)
	없음	0 (0)	9 (18.8)	3 (42.9)	0 (0)	3 (20.0)	3 (23.1)	0 (0)	0 (0)
⑧	있음	4 (100)	39 (81.2)	2 (28.6)	14 (93.3)	11 (73.3)	9 (69.2)	13 (92.9)	19 (100)
	없음	0 (0)	9 (18.8)	5 (71.4)	1 (6.7)	4 (26.7)	4 (30.8)	1 (7.1)	0 (0)
⑨	있음	4 (100)	36 (76.6)	6 (85.7)	12 (80.0)	12 (80.0)	9 (69.2)	13 (92.9)	19 (100)
	없음	0 (0)	11 (23.4)	1 (13.4)	3 (20.0)	3 (20.0)	4 (30.8)	1 (7.1)	0 (0)
⑩	있음	3 (75.0)	38 (79.2)	7 (100)	15 (100)	12 (92.3)	12 (92.3)	8 (57.1)	18 (100)
	없음	1 (25.0)	10 (20.8)	0 (0)	0 (0)	1 (7.7)	1 (7.7)	6 (42.9)	0 (0)
⑪	있음	1 (25.0)	30 (63.8)	6 (85.7)	9 (60.0)	7 (46.7)	8 (61.5)	6 (42.9)	0 (0)
	없음	3 (75.0)	17 (36.2)	1 (14.3)	6 (40.0)	8 (53.3)	5 (38.5)	8 (57.1)	19 (100)

* 기타 업태 제외

요약하자면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숙소의 생활환경에 대해, 욕실이 실내에 갖추어져 있으며, 온수를 사용할 수 있고,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며, 조리도구, 세탁기, 난방시설,

24) 항목은 <표 3-89>와 같다.

창문, 방충망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사장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사생활과 자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한 테마파크 공연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기숙사 환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나중에 기숙사를 옮기게 되었다. 따듯한 물은 가끔씩만 나왔고, 히터도 없었다. 우리가 히터를 직접 구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올라간 만큼의 금액을 월급에서 차감했다. 쥐가 있어서 쥐가 우리 음식도 먹고 정말 더러웠다. 이 곳은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아니라고 항의하고 다른 숙소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찾아주지 않았다." (남, 부르키나파소, 1980년생, 2012년 입국, 심층)

2) 식사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식사 환경은 식사 해결방법과 음식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식사 해결방법은 근무지에서 제공, 근무지에서 재료를 제공받아 직접 요리, 사장이 식비 제공, 본인 돈으로 해결, 친한 손님을 통해 해결로 유형화했으며, 음식의 질은 규칙적인 식사시간, 양이 적절한지, 입맛에는 맞는지, 위생이 좋은 환경에서 조리했는지, 식사 장소가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근무지에서 제공(57.3%), 본인 돈으로 해결 (54.4%), 친한 손님을 통해 해결 (53.0%) 하는 경우가 50%이상으로 재료를 제공받아 직접 요리해먹거나(40%), 사장이 식비 제공(41.6%)하는 경우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그다지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음식과 관련된 질적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규칙적인 식사시간(63.9%), 충분한 양(67.8%), 입맛(76.7%), 위생적인 조리과정(87.9%), 식사장소(77.4%)등 과반수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 3-91> 식사해결 방법

[단위: 명(%)]

근무지 제공		재료제공 직접요리		사장식비제공		본인 돈 해결		친한 손님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86 (57.3)	64 (42.7)	60 (40.0)	90 (60.0)	62 (41.6)	87 (58.4)	81 (54.4)	68 (54.6)	79 (53.0)	70 (47.0)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양		입맛		위생적인 조리과정		적절한 식사 장소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94 (63.9)	53 (36.1)	101 (67.8)	48 (32.2)	102 (76.7)	31 (23.3)	131 (87.9)	18 (12.1)	113 (77.4)	33 (22.6)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업태별로 살펴보면 테마파크의 공연 이주노동자들 경우 식사해결은 본인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66.7%), 근무지에서 제공하거나(46.7%) 재료를 제공받아 직접 요리를 해먹거나(40.0%) 사장이 식비를 제공하는 비율(21.4)은 다소 낮은 편이었다. 음식의 질적 측면에서는 식사시간, 양, 위생, 식사장소는 75-93%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호텔의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근무지에서 제공받는 비율이 75%로 높았으며, 사장에게 식비를 받는 경우가 25%로 낮았다. 음식의 질적 측면에서는 식사시간, 양, 입맛, 위생적 조리과정, 식사장소에 대해 과반수이상이 다소 만족하는 편이었다. 놀이공원에 근무하는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근무지에서 제공받아 해결하고 있었으며 음식의 질적 측면은 90%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트클럽의 경우 근무지 제공이나 재료를 제공받거나 사장이 식비를 제공하는 공식적 해결방식보다 본인 돈이나 친한 손님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높았으며, 특히 친한 손님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70.2%로 평균 53.0%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의 질과 관련해서 식사시간, 양, 맛, 위생은 과반수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이는 응답자 전체 평균 정도의 수준이다. 카페 및 7080클럽의 경우 본인 돈(85.7%)나 친한 손님(71.4%) 등 비공식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양(57.1%)이나 식사 장소(57.1%)의 경우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낮았다. 단란주점의 경우 근무지에서 제공받는 경우가 62.5%로 평균보다 높았으며, 본인 돈이나 친한 손님을 통해서도 56.2%로 절반이상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음식의 질적 측면의 경우 규칙적인 식사시간이 43.8%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입맛, 위생, 식사장소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다소 높은 편이었다. 외국인전용클럽의 경우 근무지에서 제공받거나(73.3%), 본인 돈으로 해결(66.7%), 친한 손님(93.3%)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높았으며, 음식의 질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60%이상이었다. 시멘스클럽의 경우, 근무지(23.1%)에서 제공하거나, 재료를 제공받아 직접 요리(15.4%)로 해결하는 경우는 낮았으며, 본인 돈으로 해결(84.6%)하거나 친한 손님(61.5%)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높았다. 음식의 질적 측면은 위생상태(92.3%)를 제외하고는 50%내외의 만족도를 보였다.

<표 3-92> 식사해결 방법_업태별

[단위: 명(%)]

항목		호텔공연	나이트 클럽	카페·7080클럽	단란주점	외국인 전용클럽	시멘스 클럽	테마파크	놀이공원
근무지 제공	예	3 (75.0)	22 (46.8)	4 (57.1)	10 (62.5)	11 (73.3)	3 (23.1)	7 (46.7)	19 (100)
	아니오	1 (25.0)	25 (53.2)	3 (42.9)	6 (37.5)	4 (26.7)	10 (76.9)	8 (53.3)	0 (0)
재료제공 직접요리	예	2 (50.0)	22 (46.8)	3 (42.9)	6 (37.5)	9 (60.0)	2 (15.4)	6 (40.0)	2 (10.5)
	아니오	2 (50.0)	25 (53.2)	4 (57.1)	10 (62.5)	6 (40.0)	11 (84.6)	9 (60.0)	17 (89.5)
사장 식비제공	예	1 (25.0)	25 (55.3)	4 (57.1)	9 (56.2)	4 (26.7)	6 (46.2)	3 (21.4)	0 (0)
	아니오	3 (75.0)	21 (44.7)	3 (42.9)	7 (43.8)	11 (73.3)	7 (53.8)	11 (78.6)	19 (100)
본인 돈 해결	예	1 (33.3)	24 (51.1)	6 (85.7)	9 (56.2)	10 (66.7)	11 (84.6)	10 (66.7)	2 (10.5)
	아니오	2 (66.7)	23 (48.9)	1 (14.3)	7 (43.8)	5 (33.3)	2 (15.4)	5 (33.3)	17 (89.5)
친한 손님	예	1 (33.3)	33 (70.2)	5 (71.4)	9 (56.2)	14 (93.3)	8 (61.5)	1 (6.7)	1 (5.3)
	아니오	2 (66.7)	14 (29.8)	2 (28.6)	7 (43.8)	1 (6.7)	5 (38.5)	14 (93.3)	18 (94.7)
규칙적인 식사시간	예	2 (66.7)	28 (59.6)	5 (71.4)	7 (43.8)	9 (60.0)	6 (46.2)	10 (76.9)	18 (94.7)
	아니오	1 (33.3)	19 (40.4)	2 (28.6)	9 (56.2)	6 (40.0)	7 (53.8)	3 (23.1)	1 (5.3)
충분한 양	예	2 (66.7)	30 (63.8)	4 (57.1)	10 (62.5)	11 (73.3)	6 (46.2)	13 (86.7)	18 (94.7)
	아니오	1 (33.3)	17 (36.2)	3 (42.9)	6 (37.5)	4 (26.7)	7 (53.8)	2 (13.3)	1 (5.3)
알맞은 입맛	예	2 (66.7)	34 (73.9)	6 (85.7)	13 (81.2)	13 (86.7)	5 (38.5)	-	19 (100)
	아니오	1 (33.3)	12 (26.1)	1 (14.3)	3 (18.8)	2 (13.3)	8 (61.5)	-	0 (0)
위생적인 조리과정	예	2 (66.7)	40 (85.1)	6 (85.7)	15 (93.8)	15 (100)	12 (92.3)	12 (80.0)	19 (100)
	아니오	1 (33.3)	7 (14.9)	1 (14.3)	1 (6.2)	0 (0)	1 (7.7)	3 (20.0)	0 (0)
식사장소	예	2 (66.7)	33 (73.3)	4 (57.1)	13 (81.2)	11 (73.3)	7 (53.8)	13 (92.9)	19 (100)
	아니오	1 (33.3)	12 (26.7)	3 (42.9)	3 (18.8)	4 (26.7)	6 (46.2)	1 (7.1)	0 (0)

* 기타 업태 제외

요약하자면 전체적으로 식사 환경은 50%이상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식사를 해결하는 방식은 근무지에서 제공받거나 본인 돈으로 또는 친한 손님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이었으며, 놀이공원의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식사환경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멘스클럽에 종사하는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식사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였다.

8. 유엔마약범죄국(UNODC)의 인신매매 일반적 지표 적용에 따른 인신 매매 가능성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란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자동차로 운송하거나 사람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사람을 인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착취란 “성매매, 기타 형태의 성적 착취, 강제 노동 및 서비스, 노예 및 노예와 유사한 관행, 노역, 장기 적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유엔마약범죄국(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s, 이하 UNODC)에서 제시한 인신매매 지표를 일부 분석함으로써 인신매매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UNODC에서 제시한 지표는 일반, 아동, 성, 가족, 노동력 착취, 구걸 및 경범죄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지표의 목적은 인신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기소를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아동과 여성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래에서는 UNODC의 인신매매 지표 중 일반적 지표를 설문지 결과에 비추어 분석하여 인신매매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한 공연 이주노동자의 상황은 인신매매에 대한 총 36개의 일반적 지표 가운데 23개의 항목에 해당하였고, 13개의 항목에는 해당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표 3-93> UNODC 인신매매 일반적 지표

번호	항목	해당 여부
1	자신의 의지에 반하면서 노동의무가 있다는 믿음	△
2	노동환경에서 떠날 수 없는 상황	○
3	움직임이 통제 당하는 징후	○
4	떠날 수 없다는 느낌	○
5	공포감 또는 근심 징후	○
6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구성원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조건 상황	△
7	폭행의 결과로 나타난 상해 고통	○
8	일정 직업상의 손상 혹은 통제수단으로 받은 상해 고통	○
9	통제수단의 적용 결과 발생한 상해 고통	△
10	당국의 불신임 상황	△
11	당국에 이송된 이후 위협 상황	△
12	이주 지위 폭로에 대한 두려움	△
13	여권 또는 여행문서 또는 신분증의 박탈(인신매매 관련자의 보관)	○
14	위조 신분증 또는 위조 여행증명서	○
15	착취하는 사람과 지방기관의 연계 혹은 연대	△
16	익숙지 못한 지역 언어	○
17	집주소와 작업장 주소를 모르는 경우	△
18	주소를 직접 자신이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말하는 경우	△
19	어떤 사람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
20	일정 조건 하에서 강제 노동하는 경우	○
21	처벌을 통해 훈련된 행동	△
22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을 못하는 경우	○
23	임금을 적게 받거나 혹은 못 받는 경우	○
24	수입에 대해 접근을 못하는 경우	○
25	오랜 기간 극단적으로 장시간 노동 상황	○
26	휴일이 없는 경우	○
27	빈곤하게 사는 경우 또는 표준 이하의 숙박시설	○
28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
29	사회적 상호관계가 제한되거나 차단 된 경우	○
30	가족 또는 외부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되는 경우	○
31	자유롭게 제3자와 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
32	부채에 의해 올가미에 걸려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는 경우	△
33	종속적 지위	○
34	인신매매의 원천으로 알려진 장소로부터 온 사람	△
35	정착국까지 운송에 관련된 제비용이 든 사람 (노동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비용을 갚아야만 함)	○
36	거짓 약속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행위	○

* ○: 해당함, △: 가능성이 있으나 파악되지 못함, ×: 해당하지 않음

1) 인신매매지표 해당 항목

(1) 노동환경에서 떠날 수 없는 상황

공연 이주노동자들은 해당 프로모션 또는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만 일을 할 수 있다. 유흥업소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문제가 많은 작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프로모션과 협의 하에 사업장을 옮길 수 있으며, 프로모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한국에서 다른 프로모션를 찾아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업장과 직접 계약을 하는 테마파크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역시 공연장에 문제가 많아도 본인의 의지로 업체에서 퇴사하게 되면 다른 공연장을 찾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계약한 업체와 계약관계를 종료하면 예술흥행비자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2) 떠날 수 없다는 느낌

떠날 수 없다는 느낌은 1) 노동환경에서 떠날 수 없는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 유흥업소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무지에서의 감시 때문에 비자를 포기하고 도망을 치는 것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도망을 간 공연 이주노동자를 발견한 경우에 폭행 등을 통해 응징하는 경우도 있었다.

(3) 공포감 또는 근심 징후

심층면접에 의하면, 근무지의 체불임금과 계약서상의 내용과 맞지 않은 업무 내용 때문에 프로모션에 문제를 제기한 공연팀을 프로모션이 감금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 외에 감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있었다. 문제제기를 하면 더 안 좋은 근무지로 보내버리겠다는 협박을 통해서 사업장에서 순응하고 있을 수밖에 없도록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4)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구성원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조건 상황

조사결과, 이탈을 할 경우 본국의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은 경우가 139명의 응답자 중 22명으로 14.6%였다. 응답자들은 본국 에이전트(6명), 한국 프로모터(14명), 근무지 사장(11명), 직장 매니저(4명)에게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5) 폭행결과로 나타난 상해의 고통

심층 면접에 의하면 문제제기를 하는 유흥업소 공연 이주노동자가 외딴 곳으로 끌려가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본인이 그 당시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폭행은 전체 설문 응답자의 46.4%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연 이주노동자에게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6) 일정 직업상의 손상 혹은 통제수단으로 받은 상해 고통

심층면접에서 사업장 내에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없는 억압적인 환경에 놓인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거나, 당시 사건들 때문에 두통이 생겨서 사업장에서 도망을 나온 후에도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7) 여권, 여행문서 등의 신분증의 박탈

설문에 응답한 공연 이주노동자의 46.0%가 여권을 직접 소지하지 않았고, 프로모터나 근무지 사장 또는 업소 매니저가 여권을 압류하고 있었다. 외국인 등록증의 경우는 41.0%만이 본인이 소지하고 있었다.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은 출입국 관리법상 본인이 소지해야 하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또는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자 마자 프로모션이나 근무지 사장 또는 관리자가 압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분증의 압류는 공연 이주노동자들을 종속적인 지위에 놓고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8) 위조 신분증 또는 위조 여행증명서

위조 신분증 또는 위조 여행증명서는 실제 한국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법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자국 대사관에 조차 소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에서 프로모션에게 여권과 신분증을 압류당한 한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대사관에서 여권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본인이 위조여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필리핀에 있는 본인 신분증으로는 여권을 다시 만들 수가 없다며 하소연했다.

본 실태조사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응답자는 모두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였다. 그 비율은 전체 필리핀 응답자 117명 중 5명으로 4.4%였다. 이유로는 입국 당시 16-17살이어서 언니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국에서 예술흥행분야에 일하기에는 나이가 많다고 하여 나이를 더 어리게 기입한 여권을 사용하여 들어온 경우도 있었다. 또한 프로모터에게 준 본인의 여권 및 서류를 프로모터가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여 본인의 여권을 도용당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조여권을 만들어야 했다는 이유도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조여권은 또 다른 누군가가 다시 위조여권을 만들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한다.

(9) 익숙하지 못한 지역 언어

분석에 따르면 공연 이주노동자들은 언어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 전체 필리핀 응답자 117명 중 26명은 계약서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응답이 17%(8명)였고,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서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공연 이주노동자도 31.9%(33명)가 있었다.

(10) 일정 조건 하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경우

설문에 응답한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유흥업소의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근무지 사장의 강요로 인해서 고객과 말벗 또는 춤(48.2%), 성매매(20.9%), 랩댄스(20.0%), 출장 데이트(18.2%), 호객행위(10.9%) 등을 해야 했다고 응답하였다.

(11)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을 못하는 경우

심층 면접에 의하면, 본국에서 읽어보지도 않은 근로계약서에 본인의 서명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는가 하면,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인지시키지도 않고 빨리 서명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었다. 이럴 경우 해당 공연 이주노동자들은 문제제기를 하면 취업을 할 수 없을 까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노동 조건을 모른 채로 한국으로 와서 계약을 했어야 했던 경우도 있었으며, 한국에 와서 본국의 근로계약서와 다른 조건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응답자들도 있었다..

(12) 임금을 적게 받거나 혹은 못 받은 경우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는 현지 에이전시 및 한국 프로모션 또는 업체 사장이 입국비용을 대신 내주고 한국에 와서 노동을 하면서 입국비용을 갚아야 했다. 전체 응답자 중 100명이 입국비용을 갚아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81명은 이미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 공제당한다고 응답하였다. 심층면접에 의하면 1개월~3개월 동안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임금이 공제된 경우도 있다. 129명의 응답자 중에 65명(50.4%)은 한국에 와서 계약한 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151명 중 42명(27.8%)은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13) 수입에 대한 접근을 못하는 경우

전체 공연 이주노동자 130명 중 22.3%(29명)만이 임금 명세서를 제공받고 있었고,

77.7%(101명)는 제공받지 못하였다. 상당수는 본인의 임금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포함한 세금, 숙박비, 식대 등이 공제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심층면접에 의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프로모션에게 물어보니 한국에서 노동하는 기간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필리핀으로 귀국할 때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험도 있었다.

(14) 오랜 기간 극단적으로 장시간 노동 상황

심층면접에 따르면 예술흥행 이주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사례자는 본인이 인식하기로 24시간 노동을 한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업무시간이 끝난 후에도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며 성매매를 강요당했기 때문이었다. 화장실을 가는 것도 눈치를 봐야 했으며,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 노동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테마파크의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도 계약된 공연 시간이 끝나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노동을 강요받기도 하였으며, 공연 이외에도 말을 관리하는 등 초과 근무를 하였으나 여기에 대한 수당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15) 휴일이 없는 경우

설문 응답자에 의하면 휴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응답이 151명 중 18명(11.9%)이었다. 한 달에 한 번만 있었다는 응답은 22명(14.6%)였고, 한 달에 두 번 있었다는 응답이 43명(28.5%)이었다. 업무 시간이 끝난 후에나 휴일에도 노동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51명 중 75명(49.7%)이었다. 심층면접에 의하면 유흥업소의 공연 이주노동자는 휴일이 따로 없이 작업장에 고객이 있으면 나가서 고객접대를 했어야 했고, 테마파크 공연 노동자의 경우에도 약속된 휴일에도 노동을 강요당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16) 빈곤하게 사는 경우 또는 표준 이하의 숙박시설

심층면접에 의하면 한국에 온 후로 2개월 동안 입국비용이 월급에서 공제되어 월급을 한 번도 받지 못하였다. 그 동안에 생필품조차 프로모션이나 업체에서 지급하지 않아서 주변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 다른 심층 면접자는 “프로모션이 우리를 방치했다”라고 표현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화장실이 실내에 없는 경우가 63명(42.6%), 숙소에 온수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11명(7.4%), 세탁기가 없었던 경우는 9명(6.0%), 난방시설이 없었던 경우는 13명(8.8%)이었다.

(17)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본 조사에 따르면 151명 중 81명(54.4%)이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거나 다쳤는데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29명으로 아픈 경험이 있는 사람 중 22.3%가 병원에 가지 못하였다. 주요 사유로는 장소와 시간을 몰라서 12명, 비용이 없어서가 10명, 시간이 없거나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이 8명이었고, 고용주가 가지 못하게 했다는 응답도 4명이 있었다. 공연 이주노동자들은 심리적인 불편함이나 어려움으로 인한 심리적 접근성에서도 위치나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한 물리적 접근성에서 배제되고 있다. 병원에 갔다는 응답자 들 중에서도 70%이상은 본인부담이나 지인의 도움 등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의료비를 해결하고 있었다.

(18) 사회적 상호관계가 제한되거나 차단된 경우

설문조사에 참여한 공연 이주노동자들 중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외출일 금지당하였다는 응답이 67명(44.4%), 개인적인 활동들을 감시 당한 경험들이 78명(51.7%)로 매우 높았다. 심층에 의하면 숙소에 업소 관리자(마마상)이 함께 거주하여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73명(49.3%)은 숙소에 사장이 자유롭게 드나든다고 응답하였다.

(19) 가족 또는 외부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되는 경우

조사대상자의 46.3%(70명)은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해서 본국 가족들에게 전화도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0) 자유롭게 제3자와 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실태조사 과정에서 필리핀 식당에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공연 이주노동자를 설문을 하던 도중 업체 관리자가 오자 겁을 먹어 설문을 중단하고 허겁지겁 숙소로 돌아갔던 사례가 있는가 하면, 면접에서는 상황이 좋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후에 SNS로 당시에 무서워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였던 경우도 있었다. 업체 관리자와 사이가 좋은 같은 공연 이주노동자가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해당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지 않고 억압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21) 정착국까지 운송에 관련된 제비용이 든 사람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프로모터나 작업장에서 입국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노동을 하면서 빚을 갚아야 한다. 응답자 들 중 80%가 월급 받기 전 미리

공제 된다는 점에서 프로모터나 근무지 사장 등 선지불 한 사람은 채권자로 공연 이주노동자는 채무자의 관계로 설정되게 된다.

(22) 종속적 지위

프로모션 및 근무지 사장은 공연 이주노동자의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을 압류해가고, 이주 노동자는 빚이 된 입국비용을 갚아야 하며, 노동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 시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프로모션 및 근무지 사장과 공연 이주노동자의 관계는 종속적이게 된다.

(23) 거짓 약속 조건하에 이루어진 행위

응답자들의 36명(27.9%)은 계약서와 업무 내용이 달라졌다고 응답하였다. 심층 면접에 의하면 한국에 올 때는 '가수'를 하기로 하고 왔는데 실제로는 고객 접대 및 심지어 성 매매를 했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공연 이주노동자에게 업소 마마상이 "이런거 하는지 모르고 왔냐"며 도리어 위협을 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2) 인신매매 일반지표 해당 가능성 항목

다음 지표는 해당 가능성은 있지만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던 지표들이다.

(1) 자신의 의지에 반하면서 노동의무가 있다는 믿음

특히 유흥업소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가수의 역할을 하는 줄 알고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본인이 원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해야했다. 유흥업소의 경우 110명의 응답자 중 주스 및 음료를 팔면서 고객의 말벗(40%), 랩댄스(20%), 성매매(20.9%), 출장데이트(18.2%), 호객행위(10.9%)를 사장의 강요 등으로 인해서 억지로 해야 했다고 응답하였다는 점에서 원하지 않은 일이지만 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2) 통제수단의 적용 결과 발생한 상해 고통

전체 151명의 응답자 중 70명인 46.4%가 물리적 폭력의 경험이 있었다. 폭력 경험자 중 일하는 근무지 사장 및 관리자에게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41.4%(29명)으로 노동의 통제를 목적으로 한 폭력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른 상해의 가능성도 높다.

(3) 당국의 불신임 상황

특히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위명여권을 사용하거나 OEC를 합법적인 방법으

로 발급받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자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다는 진술이 있었다.

(4) 당국에 이송된 이후 위협 상황

특히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탈에 대한 협박을 받았다는 응답이 있었고, 해외 취업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입국한 경우들이 있어서 당국에 이송된 이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5) 이주 지위 폭로에 대한 두려움

응답자들 중에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업체에서 도망을 하여 미등록이 된 후에도 비슷한 업종에서 가수 내지 접대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미등록이 발각될 경우를 항상 두려워하였다.

(6) 착취하는 사람과 지방 기관의 연계 혹은 연대

특히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현지 에이전시와 POEA의 일부 직원의 결탁으로 OEC를 허위로 발급 받는 경우가 있었다.

(7) 집주소와 작업장 주소를 모르는 경우

특히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작업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전체 115명의 응답자 중 23.8%에 달했다. 심층 조사결과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 프로모션의 결정에 의해서 지역을 이동하여 작업장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집주소와 작업장 주소를 모를 가능성이 높다.

(8) 주소를 직접 자신이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말하는 경우

이 항목은 7)의 항목의 이유와 같다. 또한 유흥업소의 경우 업소 관리자가 근처에 있거나 다른 외국인 동료가 있는 경우에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상황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작업장과 그 주소의 경우 위치가 어디인지 솔직하게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9) 어떤 사람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이 항목은 9)의 항목과 같다. 설문과 심층 조사 과정에서 업소 관리자가 근처에 있을 때 자신의 노동조건을 업소 관리자에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경우가 있었다.

(10) 처벌을 통해 훈련된 행동

작업장 관리자에 의해서 폭력과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의지와 반한 행동을 해야 하는 가능성이 높다.

(11) 부채에 의해 올가미에 걸려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는 경우

유흥업소와 테마파크의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프로모션이나 업소 관리자가 입국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에서 노동하면서 그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부채로 인해 종속적인 지위가 형성되어 올가미에 걸려 있다는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다.

(12) 인신매매의 원천으로 알려진 장소로부터 온 사람

특정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알선하는 에이전시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이상에서의 논의는 UNODC에서 제시한 인신매매관련 일반적 지표를 이용하여 그 가능성을 분석한 것이다. 팔레르모 의정서와 이를 토대로 구체화한 UNODC의 인신매매 규정은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어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규정과 지표를 한국사회에 적용하면 인신매매의 발생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신설한 형법상의 인신매매죄에서의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과 적용 범위는 여전히 협소하고, 인신매매죄로 공연 이주노동자를 인신매매한 가해자가 처벌된 예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Ⅳ. 일본과 미국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1. 일본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 139
2. 미국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 154

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1. 일본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한국의 예술흥행비자제도는 각국의 외국연예인 관련 비자제도와 연관되어 운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한국의 비자제도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흥행비자(興業ビザ)[25]를 취득하여 일본으로 도항하는 것이 좌절되었을 경우 차선책으로 한국이 선택되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본의 흥행비자제도는 2000년대 중반까지 인권침해의 실상이 빈번히 보고되었다. 일본의 흥행비자제도와 관련한 상황들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예술흥행비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 일본 흥행비자와 필리핀 엔터테이너[26]

일본의 흥행비자는 '입관법[27] 별표 제1(入管法別表第一)'에서 규정한 '연극, 연예, 연주, 스포츠 등의 흥행에 관계되는 활동 또는 기타 예능활동'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비자이며, 배우, 가수, 댄서, 프로 스포츠선수 등이 이 비자를 통해 일본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별표해석(別表解釋)'에 따르면, '흥행이란 관객을 모아서 입장료를 받고 연극, 연예, 연주, 스포츠, 영화, 시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바, 카바레, 클럽에 출연하는 가수 등이 행하는 활동도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佐竹·ダアノイ, 2006: 16). 이러한 흥행비자를 통한 이주노동자는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입국하고 있었지만, 전성기인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그 대부분이 필리핀여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발단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는데, 필리핀밴드가 일본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 대부분은 클럽에서 연주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며, 그 흐름에서부터 비롯되어 엔터테이너들이 흥행비자를 통해 일본에 입국하게 되었고, 1980년대부터는 카바레에서 필리핀 엔터테이너를 호스티스로 고용하는 브로커가 생겨나게 되었다.

일본의 경제호황기였던 1970, 80년대 필리핀에는 일본인남성 관광객이 증가했으나, 1985년경부터는 마르코스정권의 쿠데타로 인해 필리핀이 위험국가로 인식되어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게 되었다. 그로 인해 마닐라의 환락가에 고객이 줄자,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여성들이 일본으로 건너와서 일본 각지에 필리핀주점(일명, Philippines Pub)이 증가하게 되었다(佐竹·ダアノイ, 2006: 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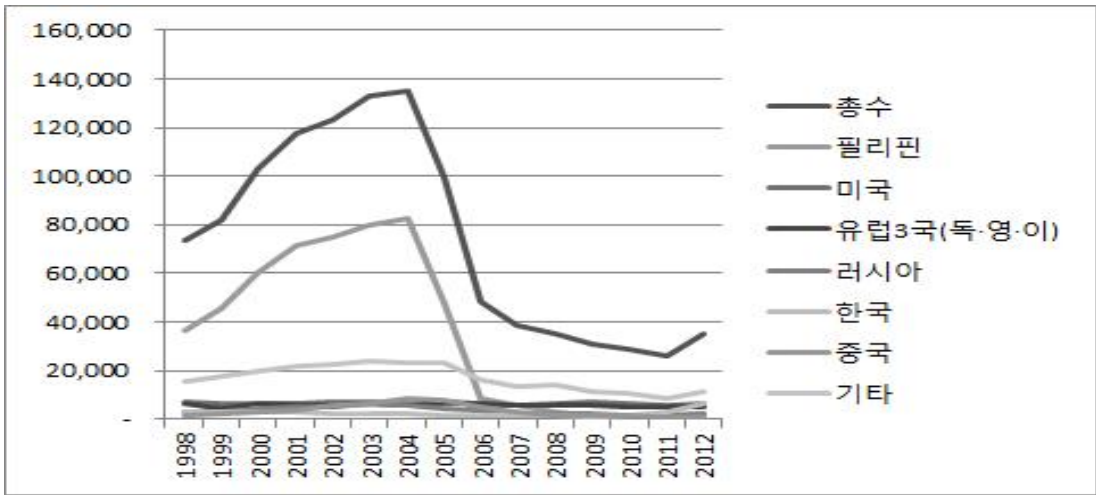
---

25) 일본에서는 예술비자(芸術ビザ)와 흥행비자가 분리되어 있다. 예술비자의 경우는 수입을 동반하는 음악, 미술, 문학 등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체류자격이다. 단, 전람회의 입선 등 예술가 또는 예술 활동의 지도자로서 상당 정도의 업적이 있어야 하며, 예술 활동에 의해서만 일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체류기간은 3개월, 1년, 3년, 5년이다. 만약, 예능 등을 공중에게 보임으로써 소득을 얻을 목적을 가질 경우는 흥행비자에 해당하고, 수입을 동반하지 않는 예술상의 활동은 문화활동비자(文化活動ビザ)에 해당한다.

26) 일본에서는 흥행비자로 입국하여 주로 접객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를 엔터테이너로 부른다.

27) 입관법이란 일본의 출입국관리제도와 난민조약 및 난민의정서에 기반한 난민인정제도 등을 규정한 일본의 법령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出入國管理及び難民認定法)'의 줄임말이다.

[그림 4-1] 흥행비자 소지 신규입국자수 추이(1998～2012년)



필리핀 엔터테이너들은 마닐라 수도권, 앙헤레스, 세부, 다바오 등지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선발되었으며,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에이전트와 일본 측의 브로커 프로모터가 존재했다. 이러한 업자들은 현지의 디스코클럽이나 가라오케 등에서 일하는 가수, 댄서, 마술사, 코미디언 등을 주선하거나, 일본 측 고용주의 의뢰로 오디션을 개최하여 선발된 엔터테이너를 흥행비자를 통해 일본각지로 보냈다. 엔터테이너는 일본 측 프로모터와 계약하고, 프로모터는 영업소과 계약하는 방식이었다. 흥행비자로 초청 가능한 인원수는 프로모터의 사원 수, 영업소의 대기실과 무대 면적이 영향을 미치며, 위법행위(호스테스 업무, 도망, '불법체류' 등)가 발생하거나 발각되면 출입국관리국이 벌칙으로 인원수를 삭감하거나 비자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필리핀정부는 출국하는 엔터테이너에게 공식적인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명목상 아마추어가 간단히 일본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했지만, 반대로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문제가 발생했다[28]. 또한 간단히 위조여권을 입수할 수 있는 환경 때문에 실제로 18세 미만이라도 타인의 이름으로 일본에 입국한 경우도 적지 않게 발각되었다.

이렇듯 1980년대에서 2005년 3월의 흥행비자 발급의 엄중조치 실시까지 매년 수만 명 단

28)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상에서 흥행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외국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것들에 준하는 공공, 민간기관이 인정한 자격'에 상당하는 필리핀의 예능인등록수첩(Artist Record Book: ARB)에는 해당 엔터테이너의 개인정보와 이전의 계약기간 및 장소가 기재되었다. 1994년 10월에 일본으로 가는 엔터테이너의 도항조건으로서 취득이 의무화되었다. 당초 기술교육기능개발청(TESDA)이 노래와 춤 및 학과시험 실시를 담당하고, 필리핀해외고용청(POEA)이 합격자에게 ARB을 발행했으나, 2001년 10월에 학과시험이 폐지되어, 2002년 8월에는 ARB 발행업무도 TESDA에 위임되었다. 그 후 ARB의 매매에 직원들이 관여하는 등 TESDA에서의 부정부패가 문제가 되어 2004년 8월에는 다시 POEA로 발행업무 및 시험실시업무가 돌아갔다. 2004년 8월부터 ARB를 대신하여 '예능인인정카드(Artist Accreditation Card: AAC)'가 자격증명서류가 되었다(ドーン(DAWN), 2005: 17-18).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위로 필리핀여성들이 일본으로 건너왔다. 일본은 필리핀 엔터테이너의 거의 독점적인 수용국이었다. 예를 들면 2003년 필리핀인 일본 입국자 131,834명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80,048명이 흥행비자를 통해 입국했다(법무성, 2005). 또한, 필리핀 해외고용청의 보고에 따르면 엄중조치 직전인 2004년의 경우, 71,489명의 신규 해외노동 파견자 중에 70,628명이 일본을 향했다고 한다(鈴木, 2009: 4). 필리핀에서 흥행비자를 통해 신규로 일본에 입국한 가수, 댄서 등의 엔터테이너는 과거 최고치를 기록한 2004년의 82,741명을 정점으로 격감하고 있다. 이듬해인 2005년에는 절반으로 줄었으며, 2006년은 2004년의 약 1/10에 해당하는 8,608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 흥행비자 개요

(1) 흥행비자

일본에서 흥행비자는 엔터테이너비자, 연예인비자, 탤런트비자 혹은 예능비자로 불린다. 즉, 흥행비자는 외국인 모델이나 가수, 배우, 댄서, 음악가, 격투기선수, 탤런트, 프로스포츠 선수 등이 콘서트, TV출연, 무대출연 등 일본에서 일을 할 때에 취득하게 되는 체류자격이다. 근래에는 흥행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인신매매 그리고 불법취업, 초과체류 사건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6년 6월 1일부터 흥행비자에 관한 기준성령(基準省令)[29]이 개정되어, 흥행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다. 현재 흥행비자는 대단히 엄중하게 심사되는 체류자격 중 하나이다.

29) 외국인이 일본 입국허가를 받을 때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법무성령. 정식명칭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이다.

(2) 흥행비자 취득 기준

일본의 흥행비자는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흥행비자 취득 기준

기준 1호	- 신청인이 연극, 연예, 가요, 무용 또는 연주 (이하, '연극 등' 으로 표기) 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할 경우 - 구체적으로 클럽, 바에서의 흥행 등
기준 2호	- 신청인이 '연극 등' 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할 경우 - 구체적으로는 1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나 콘서트홀의 객석에서 음식물을 유상으로 제공을 하지 않는 시설에서의 흥행 등(단, 객석부분과 구분된 로비 등에서의 자동판매기나 매점에서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는 손님이 이곳에서 구입한 음식물을 스스로 객석에 가져와서 식사하더라도 객석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 3호	- 신청인이 '연극 등' 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이외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할 경우 - 구체적으로 프로스포츠 선수 혹은 코치 등
기준 4호	- 신청인이 '연극 등' 의 흥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이외의 예능활동에 종사하려고 할 경우 - 구체적으로는 상품 선전, 텔레비전 출연, 잡지 촬영, 녹음작업 등

(3) 흥행비자 취득요건

흥행비자의 체류기간은 3년, 1년, 6개월, 3개월, 15일로 5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흥행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신청인(해당 외국인), 초빙기관(프로모터), 출연시설(영업소)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① 신청인의 요건

ⅰ.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해당 흥행 활동에 관계되는 과목을 2년 이상 전공할 것

ⅱ. 2년 이상 외국에서의 해당 흥행 활동 관련 경험을 가질 것

ⅲ. 신청인이 연극, 연예, 가요, 무용, 연주의 흥행에 관계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할 경우일 것

② 초청기관(promoter)의 요건

ⅰ. 외국인의 흥행과 관련되는 업무에 관해 통산 3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경영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것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ii. 5명 이상의 직원을 상근으로 고용하고 있을 것

iii. 해당 기관의 경영자 또는 상근 직원이 다음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

· 인신매매 등을 행하거나 부추기거나 조력한 자

· 과거 5년간에 입관법 제73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 또는 동항 제3조의 알선 행위를 한 자

· 과거 5년간에 해당 기관의 사업 활동에 관하여 외국인에게 부정하게 입관법 제3장 제1절 혹은 제2절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 교부, 상륙허가의 증인(証印) 또는 허가, 동 장 제4절의 규정에 따른 상륙의 허가, 또는 입관법 제4장 제1절 또는 입관법 제5장 제3절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게 할 목적으로 문서 또는 도화(図畫)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허위 또는 변조시킨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하여 소지하고, 양도, 대여, 혹은 그 양도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 입관법 제74조부터 제74조의 8까지의 죄, 또는 매춘방지법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로 형벌에 처해지거나, 그 집행을 끝내거나 혹은 집행을 받지 않아도 되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폭력단원에 의한 부정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입관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iv. 흥행계약에서, 월 20만 엔 이상의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가질 것이 명시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과거 3년간 체결된 흥행계약을 토대로 흥행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지불의무를 가진 보수 전액을 지불했을 것

단, 주로 외국의 민족요리를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기관과의 계약에서는 월 20만 엔 이상의 보수를 얻어 음식점에서 외국의 민족음악에 관한 가요, 무용 또는 연주 활동에 종사할 경우는 초청기관과의 계약은 필요 없다.

③ 출연시설 요건

i.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흥행을 행하는 시설일 것

ii. 풍속영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업을 하는 시설일 경우는 다음 요건 중 어느 것에 적합할 것

· 오로지 고객의 접대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5명 이상 있을 것

· 흥행과 관련되는 활동에 종사하는 흥행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자가 고객의 접대에 종사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것

iii. 13㎡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

iv. 9㎡(출연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는 9㎡에 5명을 초과하는 인원수 1명 당 1.6㎡를 추가한 면적) 이상의 출연자용 대기실이 있을 것

v. 해당 시설의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일 것

vi.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영자 또는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상근 직원이 다음 어는 것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인신매매 등을 행하거나 부추기거나 조력한 자

· 과거 5년간에 입관법 제73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 또는 동항 제3조의 알선행위를 한 자

· 과거 5년간에 해당 기관의 사업 활동에 관하여 외국인에게 부정하게 입관법 제3장 제1절 혹은 제2절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 교부, 상륙허가의 증인(証印) 또는 허가, 동 장 제4절의 규정에 따른 상륙의 허가, 또는 입관법 제4장 제1절 또는 입관법 제5장 제3절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게 할 목적으로 문서 또는 도화(図畫)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허위의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허위 또는 변조시킨 문서 또는 도화를 행사하여 소지하고, 양도, 대여, 혹은 그 양도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 입관법 제74조부터 제74조의 8까지의 죄, 또는 매춘방지법 제6조부터 제13조까지의 죄로 형벌에 처해지거나, 그 집행을 끝내거나 혹은 집행을 받지 않아도 되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폭력단원에 의한 부정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입관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원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④ 신청자의 요건, 초빙기관과의 계약, 시설 요건이 제외될 경우

ⅰ. 일본의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관 또는 특수법인이 주최하는 연극, 연예, 가요, 무용 또는 연주의 흥행 및 학교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전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서 행해지는 연극 등의 흥행에 관련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ⅱ.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국가, 지방공공단체 또는 독립행정법인의 원조를 받아 설립된 일본의 공공 · 민간기관이 주최하는 연극, 연예, 가요, 무용 또는 연주의 흥행에 관련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ⅲ. 외국의 정경(情景) 또는 문화를 주제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에 의한 연극, 연예, 가요, 무용 및 연주의 흥행을 상시적으로 행하고 있는 부지면적 100,000㎡ 이상의 시설에서 흥행 활동을 하려는 경우

ⅳ. 외국인이 객석에서 음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손님을 접대하지 않는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본의 공공 ·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것 또는 객석의 정원이 100명 이상일 것에 한함)에서 연극, 연예, 가요, 무용 또는 연주의 흥행과 관계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ⅴ. 외국인이 해당 흥행으로 얻을 수 있는 보수액(단체로서 행할 경우는 해당단체가 수령하는 총액)이 1일 50만 엔 이상일 것이며, 15일을 넘지 않는 기간 일본에 체류하여 연극, 연예, 가요, 무용 또는 연주의 흥행과 관련되는 활동을 하려는 경우

⑤ 스포츠 선수 등 기타 흥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ⅰ. 일본의 공공 · 민간기관과의 사이에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스포츠 시합을 위해 해당기관과 계약했을 경우

ⅱ. 해당기관이 스포츠 시합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일 것

ⅲ. 신청인이 연극 등의 흥행과 관련되는 활동 이외의 흥행과 관련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는 일본인이 종사할 경우에 받는 보수와 동등한 액수 이상의 보수를 받고 종사할 것

⑥ 모델 등 기타 흥행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연극 등의 흥행과 관련되는 활동 이외의 흥행과 관련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할 경우는 일본인이 종사할 경우 받게 되는 보수와 동등한 액수 이상의 보수를 받고 종사할 것

⑦ 텔레비전, 영화 출연, 녹음작업 등의 경우

신청인이 흥행과 관련되는 활동 이외의 예능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는 신청인이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하는 활동에 종사하고, 일본인이 종사할 경우에 받게 되는 보수와 동등한 액수 이상의 보수를 받을 것

ⅰ. 상품 또는 사업의 선전과 관련되는 활동

ⅱ. 방송프로그램(유선방송프로그램 포함) 또는 영화 제작과 관련되는 활동

ⅲ. 상업용 사진 촬영과 관련되는 활동

ⅳ. 상업용 레코드, 비디오테이프, 기타 기록매체에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활동

(4) 흥행비자 필요서류

흥행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표 4-2>와 같다.

<표 4-2> 흥행비자 필요 서류

공통 서류 (1호, 2호, 3호, 4호)	-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서 - 증명사진(4㎝ * 3㎝) - 회신용 봉투(380엔 우표 부착) - 신청인의 예능활동상의 실적을 증명하는 자료 - 고용계약서 사본 - 출연승낙서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 최근 결산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사본 - 종업원 명부 - 안내서(팸플릿 등) - 초빙이유서(일본에서 구체적인 활동 내용, 기간, 지위 및 보수를 증명하는 문서) - 본국 서류 번역문
음식을 수반하는 흥행비자의 경우(1호)	- 계약기관의 경영자(또는 관리자) 및 상근 직원(5명 이상 고용) 명부 - 계약기관의 경영자(또는 관리자)가 흥행과 관계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했다는 증거 자료 - 신청서에서 금지되는 항목에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 계약기관이 과거 3년간에 체결한 흥행계약에 따라 흥행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지불의무를 가지는 보수 전액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문서 중 어느 것이라도 해당할 것 ⅰ. 흥행계약에 관련되는 계약서 사본, 상기 외국인이 보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은행구좌 이체 기록(사본) ii. 급여대장 등 보수를 지불한 것을 증명하는 회계장표(사본) iii.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의 소득의 소득세징수액계산서(납부서) 등 납세관계서류 iv. 결산서 및 법인세 신고(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음식을 수반하지 않는 흥행비자의 경우(2호), 프로스포츠 선수를 초빙할 경우(3호)	- 영업허가서 사본 - 시설 도면 - 시설 사진 - 종업원 명부 - 등기사항증명서 - 최근 결산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사본 - 청부계약서 사본(초빙기관이 청부일 경우) - 고용계약서 사본 - 출연승낙서 사본

3) 일본 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 현황

흥행비자를 소지한 신규입국자 수는 1990년대 이후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 이후 감소를 보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2011년에 비해 8,857명(33.9%)가 증가한 34,969명을 기록했다. 흥행비자는 여전히 전문직 · 기술직 분야의 취업목적 체류자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法務省入國管理局編, 2013). 2006년에 흥행비자와 관련되는 기준성령이 개정되어 상륙심사 · 체류심사가 엄격해진 후 수가 증가한 것은 처음이다.

<표 4-3> 흥행비자 소지 신규입국자수 추이(1998 - 2012년)[30]

[단위: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수	73,778	82,305	103,264	117,839	123,322	133,103	134,879	99,342	48,249	38,855	34,994	31,170	28,612	26,112	34,969
한국	2,764	2,679	2,847	2,991	2,519	2,184	2,141	1,954	1,674	1,553	1,329	1,173	1,450	3,179	6,528
미국	7,528	6,548	6,200	6,488	6,887	7,066	6,704	6,852	6,772	6,075	6,653	7,288	6,785	5,908	6,514
영국	2,850	2,781	2,939	2,956	2,854	2,724	2,665	2,763	2,712	2,500	2,908	2,575	3,009	2,474	2,916
필리핀	36,550	45,594	60,455	71,678	74,729	80,048	82,741	47,765	8,608	5,533	3,185	1,873	1,506	1,407	1,984
러시아	3,214	2,925	4,418	4,944	5,068	6,240	5,775	4,325	3,454	2,562	2,249	2,467	1,432	1,452	1,982
독일	2,221	1,149	1,893	1,527	1,625	1,749	1,750	2,435	1,868	2,052	1,682	1,601	1,241	1,358	1,594
중국	1,601	2,056	2,798	3,730	5,670	6,486	8,277	8,263	4,978	3,156	1,820	1,694	1,386	739	964
이탈리아	1,189	830	1659	1667	1,291	2,302	1,225	1,690	1,867	1,575	1,130	1,325	1,105	1,205	866
기타	15,861	17,743	20,055	21,858	22,679	24,304	23,601	23,295	16,316	13,849	14,038	11,174	10,698	8,390	11,621

<표 4-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적어도 2005년까지는 일본의 흥행비자의 최대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필리핀이다. 2004년 정점을 기록하는 필리핀은 이후 감소를 보이며, 중국과 러시아도 이 시기부터 감소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구미지역의 흥행비자 신규입국자의 수치는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흥행 체류자격에 의한 신규입국자수를 국적 ·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국이 6,528명(18.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미국 6,514명(18.6%), 영국 2,916명(8.3%), 필리핀 1,984명(5.7%), 러시아 1,982명(5.7%)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는 2011년부터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일본 법무성은 이것이 한류 붐[31]의 영향으로 인한 증

30) 법무성 출입국관리 백서(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42.html)의 10년간의 자료(2003년-2013년)를 토대로 작성했다.

31) '겨울 소나타'가 2003년에 일본에서 방영되면서 한류 붐이 일었다. 그 이후 한국에서 프로모션을 위해 단기간 일본을 방문할 때 흥행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단기비자(2006년부터 무비자협정)로 일본에 들어와서 활동했지만, K-POP의 융성으로 인해 엄격해졌다. 실제로 2011년에는 흥행비자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돌그룹 BEAST, 락밴드 CNBLUE가 공항에서 입국거부를 당해 한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현재는 한류 가수가 일본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흥행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프로모션 활동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기준 4호'에 맞춰 흥행비자를 신청하면 되지만, 콘서트를 개최

가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다(法務省, 2013: 36). 예전과 달리 접객업 종사 목적으로 흥행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격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흥행비자의 개선과 문제점

유입 초기부터 흥행비자 이주노동자들은 스트립쇼, 누드댄스, 바파인(Bar Fine), 출장 데이트 등으로 고객 접대를 했다는 기록이 있지만(山谷, 1985), 점차 대부분의 여성들이 접객 중심으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한다(Anderson, 1999; Suzuki, 2008; 鈴木, 2009: 4 재인용). 흥행비자는 법무성의 규제를 만족시키는 무대를 가진 영업소에서 댄서 혹은 가수로 쇼를 하는 것이라서 법률상 '노동'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접객은 '자격외 활동'에 해당한다.

90일 이상의 체류기간을 가진 흥행비자 소지자라면 외국인등록(현재는 중장기체류자로서 체류카드 소지자)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많이 발견되는 단기체류(관광) 비자보다는 흥행비자로 입국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흥행비자로 입국한 많은 실질적인 유흥접객원들에게 일본에서의 3개월 혹은 6개월의 이주노동은 매상 강요, 향수병, 불안 등의 위협요소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본국에서는 단기간에 벌 수 없을 정도의 현금을 벌어 귀국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지 오디션에는 항상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들었다. 일본에서 유흥접객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수로 일할 것이라 생각하여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초기에는 다소 존재했었지만, 2000년 전후로는 유명무실해졌다. 대부분의 경우, 고객을 상대하는 접객업무가 주가 되었으며, 가라오케에서 고객과 노래를 부르는 일은 있더라도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주점은 거의 사라졌다. 고수익 창출을 기대하여 필리핀주점을 운영하는 악덕업자가 속출했고, 필리핀여성에 대한 임금체불, 아파트 감금, 매춘 강요 등의 인권 침해상황이 매스컴을 통해 보고되었다. 위기에서 탈출한 필리핀여성이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가 되어 출입국관리국에 검거된 경우도 있었다.

할 경우는 우선 장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행사장 규모가 크고 유료이벤트일 경우는 콘서트로 취급되어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드는 '기준 1호'를 신청해야 하지만,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곳이며,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장소라면 '기준 2호'에 해당되어 심사기준이 비교적 완화된다. 또한 콘서트를 할 때는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도 중요하다. 이 계약관계의 확인은 일본에 있는 어떤 기관(회사)이 해당 콘서트에 관한 한류스타의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의 대리인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결정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항을 확인한 후, 서류를 작성하거나 수집하게 된다. 이 때, 해당 연예인의 예능활동이 기준 몇 호에 해당하는지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각각의 활동에 합당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지 않으면, 신청을 하더라도 비자 취득을 못할 가능성도 발생한다. 일본에서 예능활동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흐름은 [일본에서의 콘서트 개요 결정(장소, 일시 등) → 출입국관리국에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필요에 따라 출입국관리국과 사전 절충) → 출입국관리국에서 '체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 한국에 있는 한류 가수에게 '체류자격인정증명서' 송부 → 재한일본대사관 또는 일본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발급 → '체류자격인정증명서'와 비자를 소지하여 일본 입국(필요에 따라, 재입국허가 취득) → 콘서트 개최 → 한국 귀국]의 형태를 띤다. 이때 한류스타와 동행하는 스태프(매니저, 스타일리스트, 헤어메이커, 코러스, 댄서 등)의 체류자격에 관해서는 한류가수가 행하는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활동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들도 흥행비자를 취득해야만 한다. 이 때문에 한국인의 흥행비자 소지 신규입국자수가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2004년에는 미국 국무성의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에서 일본을 인신매매 용인국으로 지목하며, 수십만 명에 달하던 흥행비자를 통한 젊은 외국인여성의 일본입국을 '성 착취에 의한 인신매매이며, 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을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US-DOS, 2004). 당시 일본의 외교정책의 최우선 전략에 안전보장이사회 진출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아무런 반론도 없이 바로 흥행비자 운용을 엄격히 규제했다.[32] 엔터테이너를 노동자로 인정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에 흥행비자 발급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상이 되는 엔터테이너의 과거 실적요건, 계약금액의 엄중 적용, 과거 입국 시의 위법행위 유무에 따라 비자발급을 결정했다(鈴木, 2009: 5). 구체적으로, 2004년 일본정부가 책정한 '인신매매대책행동계획'의 제1단계 대책으로 일본의 외국인 흥행' 체류자격'의 취득조건의 하나로 삼고 있던 '외국의 국가 혹은 지방공공단체 또는 이것들에 준하는 공적 · 사적기관이 인정한 자격을 가질 것'이라는 항목을 2005년 2월에 법무성 기준성령에서 삭제하여 3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큰 영향을 받은 것은 필리핀이었다. 이 자격증은 필리핀 노동고용청의 산하 기관이 노래와 춤에 대한 심사를 하여 인정하는 필리핀 고유의 '예능인자격증명서'를 사실상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신매매대책행동계획' 가운데 '필리핀정부가 발행하는 예능인증명서를 소지하게 되면 상륙허가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입국할 수 있었던 필리핀인에게 예능인으로서의 능력이 없으며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사람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라며 필리핀정부의 예능인증명서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다. 더욱이 2006년 6월 1일부터는 제2단계로서 일본 측의 초청업자 가운데 인신매매 관련 이력이 있다면 초청할 수 없게 된다는 탈락조항을 만듦으로서 더욱 엄격해졌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접객업과 관련되는 일본 입국은 관광비자를 통한 입국 후의 초과체류 등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힘들어졌다.

이러한 경과를 거쳐, '불법체류' 노동자에 대한 입국관리국의 조사가 엄격해졌으며, 흥행비자 자체의 발급요건도 엄중해졌기 때문에 엔터테이너의 평균연령은 급속히 상승하여 현

32) 2005년 2월에 법무성 도쿄 출입국관리국장 사카나카 히데노리(坂中英徳)씨가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여성이 실제로는 자격외 활동인 호스티스 역할을 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면서, "정부가 문제를 방치하는 외에도, 업계와 정치가 등의 압력으로 출입국관리 행정이 저자세가 된 것이 원인"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현장의 우두머리격인 현직 국장이 출입국관리 행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흥행비자에 대해서는 '인신매매를 감추는 방패막'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드세다. 지금 국회에서는 인신매매 대책을 위한 형법 등 개정안이 제출되어, 사카나카 국장의 발언 내용은 심의에서 논쟁을 일으킬 전망이다. 사카나카 국장은 "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것은 사실상 외국인 호스티스의 조달 수단으로, 때로는 열악한 조건 하에 노동과 매춘까지 강요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이것을 정부도 오랜 기간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그 자신이 도쿄 출입국관리국의 체류과장이었던 1995년에 흥행 체류자격의 심사를 강화했지만, 그 후 입회조사 때 국회의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등 '압력'이 강해져서 "대응이 중단되었다"고 증언했다. 더욱이 "결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신매매 왕국'으로 비판받는 사태를 불러와, 현장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이 실태를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사카나카 국장은 1970년부터 법무성에서 근무했고, 후쿠오카, 나고야의 출입국관리국장을 거쳐 현직에 이르렀으며, 3월에 퇴직할 예정이다(朝日新聞 2005/02/28、「入管行政は弱腰」興行ビザ問題で東京入管局長が指摘).

재는 이전과 같은 호황이 드물어졌다. 2006년의 흥행비자 발급은 이전에 비해 10% 정도로 격감했지만, '흥행' 체류자격에 의한 국가별 신규입국자수는 2006년도 필리핀이 여전히 최대다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까지 필리핀인 엔터테이너를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알게 해준다.

2005년에 개정된 인신매매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은 '인신매매죄' 신설을 포함한 형법 개정으로 단속 측면이 강조되고 있을 뿐 피해자 구제와 인권옹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그다지 보강되지 않았다. 인신매매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제를 요청한 이주여성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피해자 인정 여부는 대부분 경찰 소관이며, 피해자 인정 지침이 없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을 수가 없다. 단속 현장에서 경찰이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 당국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입관법이 적용되어 해당 이주여성은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다. 동년 7월의 입관법 일부 개정에 의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재류특별허가(在留特別許可)가 인정되어 본인 의사에 따라 귀국 또는 일시적인 체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 2007: 87). 피해 이주여성에 대해서는 통역지원서비스 및 교통비 지원, 일시보호시설(쉼터 등) 이용, 귀국 비용 및 수속 등의 지원이 있지만, 피해자가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지위를 보장하거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적극적 구제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다.

현재, 출입국관리국은 2004년의 '인신매매대책행동계획' 및 2009년 12월에 책정된 '인신매매대책행동계획 2009'를 적용하고 있다. 출입국관리국이 2012년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보호(귀국지원 포함) 절차 중인 외국인은 9명(2011년, 21명)으로, 국적 · 지역별 내역은 필리핀 4명(2011년, 13명), 태국 4명(2011년, 8명), 대만 1명(2011년, 없음)이다. 피해자 9명 가운데, 정규 체류자는 8명(2011년, 6명), 입관법 위반('불법체류')은 1명(2011년, 15명)이다. 아울러, 입관법을 위반한 피해자에게는 재류특별허가를 제공했다.

출입국관리국이 인신매매 피해자수의 통계를 잡기 시작했던 2005년 당시에는 115명의 피해자를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인신매매대책행동계획 하에서 정부가 일체가 되어 종합적 · 포괄적인 인신매매 대책을 위해 힘쓴 것과, '흥행' 체류자격과 관련되는 기준성령의 개선 그리고 엄격한 상륙심사의 실시 등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法務省入國監理局, 2013: 93)고 법무성은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일본 각지의 필리핀주점 대부분은 큰 타격을 입었다. 현재 필리핀주점에서는 일하는 대부분의 필리핀여성들은 흥행비자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 주로 일본인과의 결혼(위장결혼 포함)과 일본인아동[33]의 양육으로 인해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이나 친족방문비자로 일본에 온 필리핀인 혹은 흥행이나 친족방문, 관광비자 등으로 일본에 들어와 '초과체류'하는 필리핀인들이 종사하고 있다.[34]

33) 그 대부분이 일본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일본에 흥행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도항비용, 체류비용, 식비의 일부는 일본 측 고용주가 지급하고 있으며, 첫 월급은 입국 전에 지급되는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일본이 대우가 나쁘지 않은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은 흥행비자 취득, 입국 시의 지문채취 등으로 일본입국이 상당히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한국, 대만, 홍콩, 마카오, 중동 등지로 취업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5) 흥행비자 소지 범죄피해자 구제 제도

인신매매는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인신매매 피해자,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초래하며, 그로 인한 피해와 손해에 대한 회복이 극도로 곤란하다. 현대 일본에서 인신매매가 최초로 인식된 것은 1980년대 해외에서 입국하여 일본에서 성 착취를 당한 외국인여성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흥행비자를 통해 일본으로 입국하고 있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평균 350만 엔에 육박하는 일본입국비용에 따른 '빚'으로 인한 강제적인 성매매, 강제노동, 감금, 폭력, 협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필리핀여성들이 급증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콜롬비아여성,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도네시아여성 등 피해자의 국적도 다양해졌다. 국제사회에서의 인신매매문제의 관심은 외국인여성의 성 착취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일본정부의 대응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1994년, 2003년) 등에서 지적되었다.

일본정부는 2000년 팔레르모 의정서 체결 후, 2002년에 서명했고, 2004년 12월에는 정부주도의 인신매매 대책으로 '인신매매대책행동계획'[35]을 마련했다. 이로 인해, 인신매매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 피해자에게 재류특별허가를 부여하는 입관법의 개정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보호의 목적 혹은 부정한 여권과 비자의 조달, 지급 또는 소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소급할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기준성령이 인신매매의 목적을 위해서 흥행 체류자격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개정되고, IC여권 도입 등 출입국관리 강화, 흥행비자와 관련되는 상륙허가기준 개선 및 비자심사 엄격해졌다. 이로 인해, 인신매매 사범의 인지건수가 감소하고, 이전보다는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근래에는 흥행비자로 입국하는 인신매매 피해자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위장결혼을 통해 취업제한이 없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일본에 입국하는 등 인신

34) 일본으로 흥행비자를 취득하여 재입국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흥행비자 소지자들은 정해진 체류기한을 넘겨 '초과체류(불법체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5) 2004년 4월 5일, 인신매매 방지·박멸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성청간의 긴밀한 연계를 꾀하고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이를 빠른 시일 내에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내각관방부장관보를 의장으로 하는 '인신매매대책에 관한 관계성청연락회의'가 설치되었고, 12월에는 연락회의가 '인신매매대책행동계획'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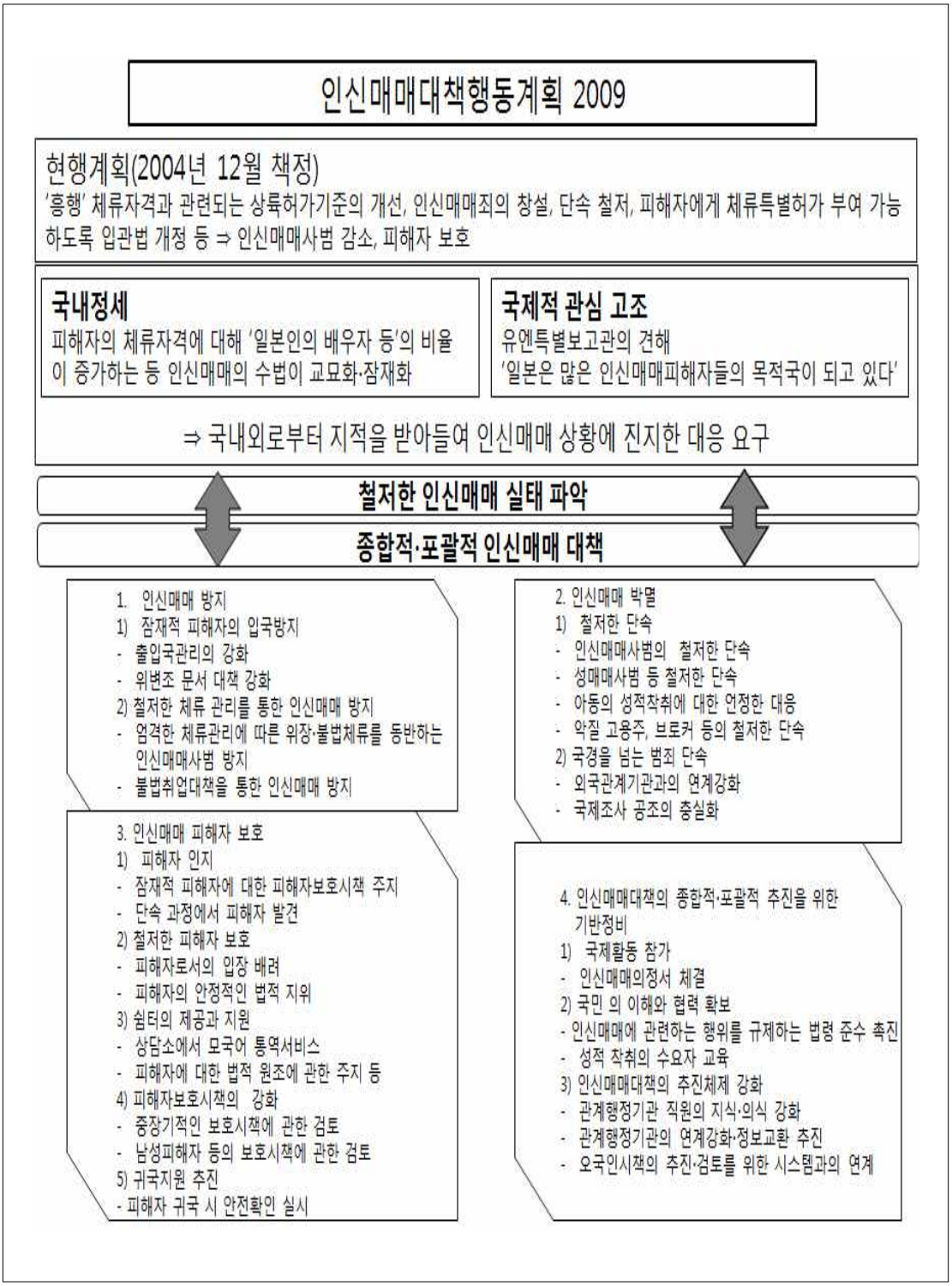
매매의 수법이 교묘해졌고 잠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인신매매는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들여 일본정부 전체가 인신매매에 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 12월에는 '인신매매대책행동계획 2009'가 책정되었다.

'인신매매대책행동계획 2009'에서는 팔레르모 의정서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인신매매'의 정의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이 더욱 긴밀히 연계하면서 외국 관계기관, 국제기관, NGO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인신매매를 방지함과 동시에, 잠재화될 가능성이 있는 인신매매 사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인신매매를 박멸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신매매가 정의상의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성 착취, 강제노동 또는 부역 제공, 장기 적출 등을 포함한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획득하거나 수송하는 등 광범위한 행위를 가리키고, 외국인 여성과 아동에게 한정되지 않는 다양한 피해자가 존재하며,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할 과제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개선에 노력하며, 관계행정기관과의 적절한 연계 방식을 과제로 삼고,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포함시켜 계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책 추진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을 표명하고 있다(犯罪對策閣僚會議, 2009: 1-2).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매년 발행되는 각국의 인신매매대책을 평가하는 미국 국무성 인신매매보고서는 일본의 경찰청이 발표하는 인신매매 피해자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일본정부의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지가 상당히 소극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2004년 이후 마련된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 대책에서 피해자 의견 차단 문제, 2005년 이후의 피해자 인지와 지원에서 민관연계시스템의 결여, 피해의 내재화에 따른 피해당사자가 피해자성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인신매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 등이 요구되고 있다(齋藤, 2013: 1).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그림 4-2] 인신매매대책행동계획 2009의 개요



2. 미국의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여러 예술가들과 이민분야 변호사들은 9·11이후 10년 동안 해외 아티스트와 공연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절차는 “점점 복잡해지고, 비싸지며, 제멋대로여서 이것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의 문화교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36]. 미국의 외국연예인 도입과 관련되는 비자제도는 해당 외국연예인의 국내외적 유명세, 능력, 활동방식 등에 따라 구분된다. 미국의 외국연예인 도입은 해당 연예인의 활동이 미국의 국내노동자의 활동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인신매매 혹은 기타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의 외국인 인신매매 등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방향에 큰 시사를 준다.

1) 미국의 이민 관리제도

이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여러 정부기관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이며,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미숙련 외국인력 도입과 이주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타 정부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해당업무를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고현웅 외, 2006: 122-123).

<표 4-4> 정부기관별 해당업무

정부 기관	해당업무	
국토 안보부	국경순찰, 불법이주방지, 거주외국인에 대한 이민법 및 고용법 집행 등 외국인의 합법적 도입 관리 ·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이민비자, 귀화, 난민신청 등의 결정기능 · 이민세관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 · 세관국경수비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국경 순찰 및 관리	
국무부	해외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발급	
노동부	도입전	외국인력 도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에 대한 확인
	도입후	근로기준국(Employment Standards Administration) 산하 임금근로시간과(Wage and Hour Division)에서는 고용주가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이주노동자가 학대를 받고 있지 않은 지에 대한 확인하고, 아래에 제시한 법조항 등 광범위한 노동법에 대한 집행 책임 - 공정기준근로법(Fair Labor Standard Act)의 최저임금, 초과근무, 아동노동조항 - 가족과 의료 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 이주민 및 계절농업노동자 보호법(Migrant and Seasonal Agricultural Worker Protection Act) - 각종 단기 비자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노동자 보호 조항 - 데이비스-베이컨법(Davis-Bacon Act)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규정 - 서비스계약법(Service Contract Act)

36) ‘U.S. Visa Rules Deprive Stages of Performers’ By Larry Rohter, 《The New York Times》 Published: April 11, 2012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1986년에 개정된 이민법(Immigration Reform and Control Act of 1986)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항을 개설했다. 특히, 고용주의 의무 사항과 피고용자, 즉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에 대해서 명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신분과 취업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I-9양식(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을 작성하고 보관해야한다. 노동부 산하의 임금근로시간과와 연방계약준수과(Office of Federal Contract Compliance Programs)는 수색영장 없이도 I-9양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불충분한 내용일 경우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경우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직장 내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권리를 침해당했다면 내국인과 동등하게 청구권을 갖게 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거나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고용되었을 경우, 임금근로시간과와 연방계약준수과는 조사결과를 국토안보부의 이민세관집행국과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이민관련 부당고용행위 특별상담과(Office of Special Counsel for Unfair Immigration-Related Employment Practices)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것이 적발되면 고용주에게 벌금이 부과된다(고현웅 외, 2006: 123-124).

2) 예술흥행 관련 비자제도 개요

(1) 예술흥행 관련 비자유형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는 두 종류로 하나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이민비자(Immigrant visa)이며, 또 다른 하나는 어떤 특정한 활동을 목적으로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이다(장미진 외, 2002: 65).

비이민은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ly Act)의 101(a)(15) 부분에서 규정된 비자 범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다. 예를 들어 비이민의 승인 구분은 외국 정부의 사무관, 사업이나 관광을 위한 일시적인 방문객, 미국을 경유하는 외국인, 협정에 따른 무역업자 및 투자자, 학생·직업훈련생, 일시적 노동자, 교환방문자, 운동선수 및 연예인, 특정 범죄의 피해자, 그리고 미국 시민과 합법적 영구 거주자의 가족구성원을 포함한다. 최대 거주기간은 비자 범주에 따라 결정된다(DHS 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2014: 1-2).

비이민비자 가운데 단기취업비자는 H비자(간호원, 단기 전문취업자, 임시 농업노동자, 비전문 임시취업자, 직업훈련생), L비자(지사 근무자), O비자(특수재능 소유자), P비자(직업적 연예인, 예술가, 체육인), Q비자(국제문화교류행사 참가자)가 있고, 이 중 연예인 관련 비자는 O, P, H비자이다. 한편, 취업 혹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연예 활동일 경우는 B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에서 국내적 혹은 국제적 명성이 있는 특

기자나 영화, 텔레비전 분야에서 명성이 있는 외국인, 그리고 이들의 보조 인력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그리고 P비자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운동선수 혹은 그룹으로 공연하는 연예인, 상호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술가나 연예인, 독특한 문화행사에서 공연할 예술가나 연예인에게 부여되는 비자이다. 한편, H-2비자는 H비자 중에서도 단기 미숙련 노동자를 들여올 수 있는 비자인데, H-2A비자는 농업노동자, H-2B비자는 비농업노동자의 도입에 활용된다. 미국 내에서 예술흥행 관련 노동자를 구할 수 없다면 H-2B비자[37]를 통해 이주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다(고현웅 외, 2006: 125-126). 또한 각 비자 소지자들은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B비자의 경우는 가족동반이 안 되는 한정적인 체류비자로, 미국에서 수익을 얻지 않는 연예 활동만 가능하다. 미국 외국연예인 도입 관련 비자유형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4-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4-5> 미국 외국연예인 도입 관련 비자유형

비자유형		구분	체류 기간	연장 기간
O 비자	O-1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와 연예인	3년	최장 1년까지 연장가능
	O-2	O-1비자 소지자를 직업적인 분야에서 동반 혹은 보조하는 자		
	O-3	O-1, O-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		
P 비자	P-1	공연을 하려는 유명 연예인그룹이나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개인 혹은 팀)	-연예인그룹,운동선수팀은 1년 -개별 운동선수는 5년	-연예인그룹, 운동선수팀의 경우 최장 1년까지 연장 가능 -개별 운동선수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P-2	상호교환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예술가나 연예인		
	P-3	고유문화행사에서 공연할 예술가 혹은 연예인		
	P-4	P-1, P-2, P-3,P-4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		
H 비자	H-2B	미국 내에서 구인할 수 없는 임시 비농업 노동자	노동허가유효기간 (최대 1년)	노동허가유효기간 (최장 1년까지 연장가능 / 총 체류기간 3년 초과 불가)
	H4	H-2B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		
B 비자	B-1	전문 예술가 및 연예인이 제한된 상황에서 특정문화프로그램 및 대회 참여	1년 이하	6개월까지 연장가능 (실제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기간만 체류허가)
	B-2	B-1비자 소지자의 가족은 동반비자 부여받지 못해, 개별적으로 B-2비자(관광비자)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신청		

(2) 외국연예인 도입 절차

1990년 11월 미국은 전문, 기술 인력의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내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민법을 개정(Immigration Act of 1990)하였다(노동부, 2003: 220; 고현웅 외, 2006: 127 재인용). 동 법은 전문직 직원(speciality

37)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외국연예인 관련 비자 가운데 H-2B비자의 형태가 한국의 예술흥행비자와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장미진 외, 2002: 75).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occupations)을 위한 H-1B 비자의 신청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여기에서 누락된 특기자를 위해 새로이 O비자와 P비자를 신설했다(장미진 외, 2002: 68). 한편, H-2B비자는 원래 연예인을 위한 비자 범주가 아니라 비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O비자와 P비자의 발급 절차보다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O비자와 P비자의 자격 요건에 미달되는 외국연예인은 H-2B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하기도 한다(고현웅 외, 2006: 136-137). B-1비자는 미국에서의 취업 및 소득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상정되므로 발급 절차가 다른 연예인 비자에 비해 취득 절차가 간단하다.

① O비자(O-1비자를 중심으로)

O-1비자는 특별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가진 국제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나 연예인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이다. O-1비자를 취득하려면, 예술가(연예인)의 고용주, 고용주나 예술가(연예인) 혹은 그 둘을 대신하는 미국 에이전트, 또는 미국 에이전트로서 고용주에게 권한이 부여된 개인 혹은 단체는 이민국에 비자 청원서와 함께 해당 예술가(연예인)가 그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예술가(연예인)의 동료집단(peer group)이나 노동조합, 혹은 동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그룹에 의해 지정된 사람에게서 얻은 자문(의견서)을 청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영화나 TV산업의 예술가(연예인)인 경우, 노동조합 그리고 동일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관리조직으로부터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한다.

O-1비자 청원서는 고용주 혹은 에이전트와 해당 예술가(연예인)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서 사본 혹은 구두계약 상의 조건에 대한 개요를 첨부해야 한다. 타사 고객과 계약을 맺을 때는 계약서 제출이 요구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비자청원서에 행사나 활동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기하고, 종사하게 되는 행사나 활동에 해당 예술가(연예인)가 맡게 되는 역할이나 성격에 대한 서명을 덧붙여 일정서를 제출할 필요도 발생한다. 일단, 이민국에서 비자 청원서가 승인되면, 해당 예술가(연예인)는 자국 주재 대사관에 O-1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게 된다.

② P비자(P-1비자를 중심으로)

P-1비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엔터테인먼트 그룹과 그 구성원이 취득할 수 있는 비자이다. P-1비자를 취득하려면, 적어도 그룹의 75%이 지속적으로 1년 이상을 그 그룹과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보통을 넘어서는 상당한 기술과 인지도를 증명할 수 있는 높은 기준의 업적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구성원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그룹으로서의 명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경우는 예외에 해당한다.

· 서커스 공연자와 그 서커스 공연에 필수적인 서포터에게는 1년 조건 및 국제적 명성에 대한 요구는 제외된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국내에서 인정받는 서커스단이어야만 한다.
·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의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경우,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졌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국제적 명성에 대한 요구는 면제된다.

P-1비자의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미국 고용주 혹은 미국 에이전트가 그 연예활동 성격과 관련된 적절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해당 그룹이 적어도 1년 동안 정기적으로 활동해 왔음을 증명해주는 진술서와 함께 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적절한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요건은 면제된다. 청원서에는 고용주/에이전트, 엔터테인먼트 그룹/개인들 사이의 계약서와 행사의 전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일단, 이민국에서 비자 청원서가 승인되면, 해당 그룹의 구성원들은 자국 주재 대사관에 P-1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게 된다.

③ H-2B비자[38)]

H-2B비자는 연예산업직종에서 축제 종사자를 포함하여, 공연에 관련되는 공연자(예능인)와 관련 서포터들이 취득할 수 있는 단기취업비자이다. O비자 및 P비자의 발급 절차와는 달리, 임시 혹은 계절별 비농업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H-2B비자 발급에는 노동부가 관여한다(고현웅 외, 2006: 101). 따라서 모든 H-2B비자 지원은 노동부 산하의 시카고 처리센터(the Chicago National Processing Center)의 승인사무관을 통해 노동허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다.

2008년 6월부터는 노동부의 연예전담사무소(the Offices Specializing in Entertainment in New York, New York; Austin, Texas; or Sacramento, California)를 통해 노동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다. 단, H-2B비자를 지원하기 전에 고용주는 20 CFR 655.10.('임시노동허가 목적을 위한 적정임금 결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카고 처리센터로부터 적정 임금 결정을 요구해서 받아내야 한다. 미국 고용주 혹은 미국 에이전트는 적절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하며, 법규와 규정에 따라 고용주는 시카고 처리센터로부터 제공된 적정 임금(혹은 더 높은 임금)을 H-2B노동자 혹은 유사하게 고용되는 미국 노동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는 노동허가 지원서 제출에 앞서 모든 H-2B노동자 모집이 착수되어야 하며, 미국 노동자에 대한 구인노력에 대한 상세한 상황과 지원한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뒤에, 비로소 H-2B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H-2B의 취업 기회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모집 단계를 거쳐야 한다.

38) http://www.foreignlaborcert.doleta.gov/h-2b.cfm

i. 20 CFR 655. 15(e)의 규정에 따라, 고용이 의도되는 주정부 산하 노동국(the State Workforce Agency: SWA)에 작업지시서를 제출한다. SWA는 작업장으로 예상되는 모든 주(states)로 작업지시서 복사본을 전달한다.

ii. 미국 노동자들의 반응이 있을 법한 국내출판물에 일요일을 포함한 총 이틀 동안 구인광고를 내야 한다.

iii. 고용자는 H-2B 노동자격 대상인 직업분류를 제어하는 단체교섭협정을 하는 지역의 노동조합과 반드시 접촉하여 자문을 얻어야 한다.

iv. 모집기간이 종료되면, 고용주는 20 CFR 655. 15(j)의 규정에 따른 구인보고서를 준비하여, 노동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시카고 처리센터가 외국인 연예인의 노동허가를 수락 또는 거부할 경우, 고용주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민국에서 외국인 피고용자의 H-2B비자 자격을 심사받게 된다. 노동부가 노동허가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이민국에 해당 노동자의 H-2B비자를 청원할 수는 있다(고현웅 외, 2006: 103). 일단, 이민국에서 비자 청원서가 승인되면, 해당 외국연예인은 자국 주재 대사관에 H-2B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게 된다.

한편, 노동부 산하 임금근로시간과는 2009년 1월 18일부터 국토안보부로부터 집행 책임이 위임되어, H-2B의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해 임금 지급 및 민사금전벌(civil money penalty)로 행정 구제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39]

④ B-1비자

B-1비자는 임시로 미국에 오는 예술가와 연예인들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시적인 상황의 제한된 범위 내의 예술 및 연예활동에 적합하다.

- 전문 연예인이 미국에 입국하여 송출국가가 후원하는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경비는 송출국가의 정부가 지급할 경우
- 전문 연예인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경우, 상품과 비용 이외의 보상은 없을 경우
- 음악가나 작곡가는 레코딩 작업을 위해 녹음시설을 이용하고자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해당 레코딩 작업의 결과물은 미국 이외의 장소에서 배포 및 판매되는 것이어야 하며, 미국에서 대중공연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 회화나 조각 등을 위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예술가는 미국의 고용주와 계약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에서 예술 작품을 판매할 의도가 없을 경우

B-1비자의 O비자나 P비자와는 달리, 고용주 또는 대리인이 이민국에 청원하여 사전 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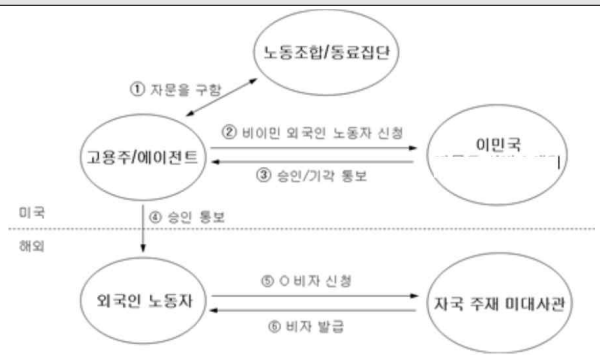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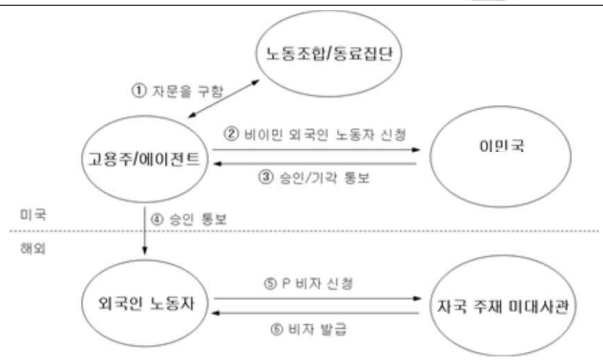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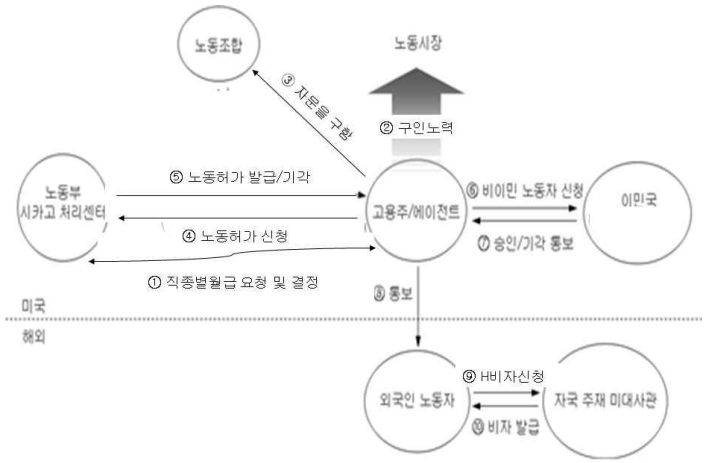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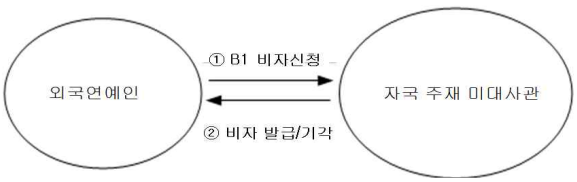
39) http://www.dol.gov/whd/immigration/h2b.htm

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비자신청과정에 대한 처리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O비자, P비자, H-2B, B-1비자를 통한 외국연예인의 도입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표 4-6> 비자유형에 따른 외국연예인의 도입 절차

비자유형	외국연예인 도입 절차
O 비자	
P 비자	
H-2B 비자	
B-1 비자	

* 주: O비자, P비자, H-2B비자의 외국 연예인 도입 절차는 문화관광부외 보고서(2006: 130, 135, 141)에서 발췌하여 수정 사용했으며, B1비자는 본인 작성.

3) 미국 예술흥행 관련 비자 소지 이주민 현황

단기 취업이 목적인 모든 비이민 프로그램은 수요 주도적이다(유길상 외, 2004: 168). 2003년, 2008년, 2013년의 미국 정부의 연예인 관련 비이민비자 발급 수는 다음과 같다. 10년 동안 비이민비자를 통한 이주노동자 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O비자와 P비자를 통한 외국연예인 도입 수도 지난 10년 사이 2배 정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교적 외국연예인의 입출국이 용이하던 2000년대 이전에 비해서 2000년대 이후의 미국으로의 외국연예인의 유입은 상당히 까다로운 상태이다.

<표 4-7> 이주노동자 입국 허가, 2003년, 2008년, 2013년 회계연도

[단위: 명(%)]

종류	2003		2008		2013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O-1, O-2	30,862	0.1	53,735	0.1	87,366	0.1
P-1	43,274	0.2	57,030	0.1	85,583	0.1
P-2,P-3	12,767	-	17,125	-	21,818	-
H-2B	102,833	0.4	109,621	0.3	104,993	0.2
전체비자	27,849,443	100.0	39,381,928	100.0	61,052,260	100.0

* 자료 : 미국 국무부, Annual Flow Report, July 2006, 2009, 2014에서 본인 작성
** 주: H-2B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비농업 노동자를 포함한다.

2013년의 외국연예인 관련 비자 상황은 다음 <표 4-8>과 같이 나타난다. 연예인 관련 비자 지원자의 약 20% 정도가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비이민비자, 2013 회계연도

[단위: 명(%)]

종류	발급	거부	지원자 수	면제/극복
O-1	12,359	2,446	14,805	2,204
O-2	6,623	813	7,436	695
P-1	23,269	4,212	27,481	3,068
P-2	125	13	138	10
P-3	7,590	3,647	11,237	1,806
H-2B	57,600	9,981	67,581	4,317
전체비자	9,164,349	2,279,534	11,443,883	719,702

* 자료: 미국 국무부, FY2013 NIV Workload by Category(Data as of 9/30/2013)
* * 주: H-2B 비자는 연예인을 비롯한 모든 비농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연예인의 경우, 그 사람의 고유성이나 명성이 체류자격에

서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민국은 비자 심사 시 관련 증비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게 된다. 한편, 단기취업비자를 통한 연예인의 도입은 외국인의 예술이나 예능으로서의 특이성 보다는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인력수급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비자 청원을 넣기 전에, 고용주는 미국 노동자의 고용을 위해 구인노력을 해야 하며, 노동부에서 해당 분야에서 국내노동자의 고용 가능성 여부 및 고용주의 구인활동을 엄격히 평가하여, 노동허가를 발급하거나 기각한다. 어떠한 경우에서든(미등록 노동자 포함) 외국연예인이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고용주는 노동부의 임금근로시간과 관리, 감독,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집행까지 받게 된다. 미국정부는 외국연예인의 도입 전부터 도입 후까지 각 정부기관과의 협업 하에 외국연예인에 대해 철저히 관리 및 보호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현웅 외, 2006: 143).

4)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시스템

미국은 1998년 3월,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에 관한 행정각서(Executive Memorandum)가 공포된 이래, 기존 '3D(detention, deportation, disempowerment; 구류, 추방, 권한박탈)' 패러다임에서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방영한 '3+1P(prosecution, protection, prevention and partnership; 기소, 보호, 예방 그리고 협력)'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포괄적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제정에 앞서 현행법이 인신매매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인신매매 범죄자를 처벌하기에 부적절했고, 다양한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의 부재로 인신매매 범죄자들이 아주 경미한 처벌만 가끔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반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입국과 노동에서의 불법적 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위반 사항에 대해 불리하게 처벌받고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며 UN총회가 인신매매 의정서를 채택하기 바로 전인 2000년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2000)을 제정했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인신매매를 방지하고, 가해자에게는 효과적인 처벌이 확립되도록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3P' 중심의 정책을 법 개정을 거치면서 발전시켜왔다(어진이·최민영, 2012: 56).

미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신매매의 발생국, 경유국, 종착국이며 성매매 업소, 마사지 업소, 호텔 서비스, 각종 서비스업, 농업, 제조업, 건설업, 청소용역, 간병 및 가사 등의 돌봄노동, 채무노역, 비자발적 노역 그리고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시민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멕시코, 필리핀, 대만,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에서 온 이주민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한국여성들도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노출되어[40] 있다는 보고도 있다(어진이·최민영, 2012: 57).

40) 미국 내에서는 성인 여성의 성매매를 자발적인 범죄로 취급하므로 '보호' 보다는 '처벌' 조치를 내리는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한 정부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을 위한 법 집행관 대상, 혹은 공항직원대상 교육 등도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인신매매 및 기타 범죄의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미국정부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가 가능하도록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2: 21-25).

(1) 인신매매 범죄자 기소 및 처벌(Prosecution)[41]

① '중범죄 인신매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중범죄 인신매매'에 대해, ⅰ) 타인에게 무력, 사기 또는 강압을 통해 '상업적 성행위'[42]를 하게 하거나, 18세 미만인 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43] 또는 ⅱ) 비자발적 노역, 채무노역, 채무속박 또는 노예를 목적으로 무력, 사기 또는 '강압'[44]을 통해 사람을 모집, 은닉, 이송, 공급 또는 사람의 노동이나 서비스를 얻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중범죄 인신매매'를 행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도록 했다. 만약 이러한 인신매매 범죄가 사망, 납치 또는 이를 시도한 자, 가중한 성적 학대 또는 이를 시도한 자, 살인 미수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종신형을 부과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했다.

'강제노동'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ⅰ) 무력, 위협, 신체적 감금, 중대한 위해나 신체적 감금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협이나 ⅱ) 타인에게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대한 위해나 신체적 감금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하도록 하는 책략, 계획, 유형 그리고 ⅲ) 법적 절차를 남용하여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얻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2008년에 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강제노동에 대해 '강제노동과 관련된 서비스나 노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것을 통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이것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체포된 100여명의 한인여성들에게 벌금을 징수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이 여성들이 맺은 계약에 착취적 요소가 있었으므로 인신매매 피해자로 구명 받았어야 하지만, 해당자들이 한국에서 동일한 업종에 종사했으며,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조치를 받았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2: 21).

41) 인신매매 범죄자 기소 및 처벌에 대한 내용은 어진이·최민영(2012: 57-62)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42) '상업적 성행위'는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되는 성행위를 뜻한다. 미국 법원에서는 '상업적 성행위'에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가 포함된다는 판례가 있다. 미국의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정의는 상업적 성행위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결혼은 해당되지 않는다. '우편주문 신부(mail order brides)'를 포함한 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결혼으로 인해 피해자가 착취를 당했다면 '국제결혼 중개법(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2005)'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만약, 결혼중개업소의 브로커가 중개한 결혼의 목적이 의뢰인을 도와 타인을 성매매에 강제로 유입시킬 목적이라면 상업적 성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브로커와 의뢰인 모두 인신매매 행위로 처벌 가능하다.

43) '성 착취 목적 인신매매'는 상업적인 성행위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은닉, 이송, 공급 또는 사람의 노동이나 서비스를 얻는 것으로 정의된다.

44) 여기서 '강압'이란,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나 신체적 감금 협박, 부작위가 타인에게 중대한 위해나 신체적 감금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하도록 하는 책략, 계획 또는 패턴 혹은 법적 절차의 남용 및 남용 협박을 가리킨다.

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미필적 고의로 방치한 행위'도 처벌받게 되었다. 더욱이, 강제노동의 수단 중에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대한 위해'[45]나 신체적 감금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하도록 하는 책략, 계획 혹은 유형, 또는 '법적 절차의 남용'[46]이 구체적인 정의 가운데 추가되었다.

2008년 개정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타인을 비자발적으로 노역하게 하거나 노예로 팔기 위해 납치하거나 유인, 설득, 유도하여 승선하게 하거나 다른 장소로 보낸 자는 벌금형이나 2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도록 규정했다. 만약 사망, 납치 또는 이를 시도한 자, 가중한 성적 학대, 또는 이를 시도한 자, 살인미수를 동반했을 경우에는 종신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기타 사기행위' 부분을 추가하여 의도적으로 미국 외에서 사기, 허위, 위조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선고하도록 했다.

② 아동의 인신매매 및 섹스관광

2003년에 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은 아동의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기존의 '무력, 위협, 강압,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아동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사기' 항목을 추가하였고, '운송' 뿐만 아니라 '모집, 유인, 은닉, 운송, 제공, 획득'을 포함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자는 무력, 위협, 사기, 강압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5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을 부과함으로써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다. 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0년의 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

섹스관광 부분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섹스관광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관련 범죄자에게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도 가능하게 했다. 18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행위를 목적으로 외국여행을 시도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위와 같은 불법 성행위를 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위의 불법 성행위를 주선, 유도, 제공 또는 도모한 자 모두 최고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예를 들면, 필리핀 아동들과의 불법 성행위를 목적으로 필리핀으로 도항하려던 미국인이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체포되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아동섹스관광을 시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은 사례이다.

---

45) '중대한 위해'는 신체적 또는 비신체적 피해로, 정신적, 재정적 또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어떤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모든 주변 상황으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위해를 피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동 또는 서비스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가해 상황을 뜻한다.

46) '법적 절차의 남용'은 타인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중압감을 주기 위해 행정,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 상관없이 법률 또는 법적 절차를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는 것을 가리킨다. 미국 법원의 판례에서는 이민법 규정을 어길 경우 강제추방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에 대해, 법적 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피해가 있었는지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③ 신분증명서류 압수에 대한 처벌 및 법적 배상명령

의도적으로 타인의 여권, 이민서류 혹은 신분증명서류를 없애거나, 감추거나, 빼앗거나, 소지하여 타인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인신매매 처벌에서 법원이 인신매매 범죄자에게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 '법적 배상'을 명령하도록 했다. 인신매매 범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재산이나 그 범행을 조장하는데 사용되거나 사용될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정부가 몰수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경우 인신매매 범죄에 재정적 또는 기술적 지원, 물자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으며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이들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에도, 지난 5년간 불법행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아왔거나, 그런 경제적 혜택이 불법행위에 의한 것임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단, 혜택을 받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2)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조치(Protection)

① 각 정부기관의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47)]

ⅰ.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집행국

이 기관에서는 인신매매 사건의 조사를 하고 있으며,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한 단속 및 체포를 담당한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임시거주 지위 등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Victims Assistance Program)도 같이 운영하여, 피해자가 사회서비스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치료를 비롯한 의료 지원, 거주 지원, 포주나 인신매매 가해자로부터의 보호 조치 등을 제공한다.

ⅱ. 보건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산하 아동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이 기관의 반인신매매 프로그램(Anti-Trafficking in Persons)에 의해, 미국시민 혹은 영주권자가 아닌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은 난민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난민재정 및 의료지원(Refugee Cash and Medical Assistance), 매칭그랜트프로그램(the Matching Grant Program), 공공주거(the Public Housing Program), 직업훈련(Job

47) 각 정부기관의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및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2: 21-24)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Corps)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iii. 미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지역, 주, 연방법 집행기관 및 피해자 지원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된 71개의 TF팀 및 워킹그룹과 협력하고 있다. FBI 소속 인신매매 관련 전문가들(미 연방검찰청, NGO활동가 등)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법률 및 귀국지원, 이민, 주거, 취업, 교육, 취업교육 및 양육 등과 관련하여 중장기적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FBI는 2004년 국무부 산하에 설치된 밀입국·인신매매센터(Human Smuggling Trafficking Center; HSTC)[48]에도 참여하여, CIA, FBI, 국무부, 국토안보부의 분석가, 공무원, 수사관 등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iv.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 여성폭력방지국(Office of Violence against Women)

1994년 연방의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법(Violence against Women Act 1994; VAWA)'이 통과되자,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근절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폭력 발생 시 직접지원, 위기개입, 임시거주 지원, 법률지원 및 법집행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가정폭력핫라인(National Domestic Violence Holine), 강간·학대·근친상간 전국 네트워크(Rape Abuse Incest National Network), 전국청소년 데이트 폭력 헬프라인(National Teen Dating Abuse Helpline), 범죄 및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국센터(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Stalking Resource Center) 등을 운영 중이다.

◎ 사법프로그램국(Office of Justice Program)

사법프로그램국 산하의 법무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과 범죄피해자지원국(Office for Victims of Crime)에서는 반인신매매 TF팀을 지원한다. 일반적으로 TF팀은 주정부와 지역의 법집행관, 수사관, 피해자서비스지원관 등 관련자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간의 협력을 통해 인신매매 사례에 대한 식별, 조사, 기소를 하고, 식별된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피해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국적으로 총 42개의 TF팀이 존재하며, 사법프로그램국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연수포럼 개최, 반인신매매 TF 전략 및 운영 e-가이드발간 등의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 소년사법 및 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48) 밀입국·인신매매센터는 밀입국 및 인신매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센터이다.

이 기관은 1974년에 제정된 청소년 처벌 및 비행보호법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비행을 막고 처벌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청소년 범죄 및 비행에 관한 조기개입 및 제재 등을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포르노그래피 및 온라인을 이용한 유혹에 대응하고자 아동대상 인터넷범죄 TF 프로그램(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Task Force Program, ICAC program)을 운영, 교육연수와 기술지원, 피해자 지원 및 커뮤니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② 안정적 체류자격 제공

미국에서는 인신매매 및 기타 범죄 피해 외국인 및 그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공하고 있다. T비자는 '성 착취 목적' 또는 '강제노동'으로 인한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한정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그들의 피해자성을 입증하는 데 관계된 법 집행으로부터 주어지는 합리적인 요구에 협력해야 한다.

U비자는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그리고 범죄의 결과로 상당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한 체류자격이다. U비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범죄의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법 집행을 위한 조사과정에 반드시 협조하도록 되어있다.

많은 경우 인신매매 생존자(survivors)들은 다른 범죄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 인신매매 상황의 심각성과 인신매매꾼(trafficker)의 정체에 따라, 생존자는 법 집행에 있어서 다른 범죄로서 호명될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T비자 대신에 U비자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자는 T비자를 신청할 것인지, U비자를 신청할 것인지 선택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두 가지 모두 신청하더라도, 이민국에서는 두 기준 아래에서 검토하여 하나의 체류자격을 결정내리게 되어 있다(Anti-Trafficking Network, 2010: A-10).

ⅰ. T비자

T비자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으로 신설되어, 심각한 인신매매 피해 생존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T-1)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T-2 ~ T-5)에게까지 비자가 파생되어,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주 지위를 제공하고 있다.[49] 피해자가 T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임이 밝혀져야 하고, 미 국토(본토 및 북마리아나제도, 미국령 사모아 포함) 내에서 인신매매된 사건이어야 한다. 또한 비자 신청자는 법 집행기관이 사건을 조사할 때 소환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2: 22). 단, 18세 미만의 피해자 또는 해당 범죄로 인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외상

49) 미국 국무부 2013년 6월의 자료에 따르면, T-2 ~ T-5와 관계되는 특정 성인이나 미성년자(T-1의 손자(손녀), 양자(양녀), 조카, 형제자매)로, T-1의 인신매매 상황으로부터의 탈출 혹은 법 집행에 협조한 것 때문에 보복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자에게 T-6비자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http://travel.state.gov/content/dam/visas/policy_updates/T_and_U_Visa_Changes_June_2013.pdf)

(trauma)이 있을 경우는 협력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T비자 소지자는 U비자보다 광범위하게 '공공이익(public benefits)'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보건부로부터 인증서(certification letter)를 받으면 사회시스템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Anti-Trafficking Network, 2010: A-10). 즉,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노동허가서가 발급된다. 그 밖에 식료품 할인 구매권, 재정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T비자 신청자 동반가족들도 T비자가 허가되면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어진이·최민영, 2012: 65-66).

<표 4-9>의 2013 회계연도 T비자 발급 상황을 보면, 인신매매 피해 당사자에 해당하는 T-1비자의 지원자는 전혀 없었지만, T-1비자로부터 파생되는 가족비자에 대해 신청은 수백 건에 육박한다.

<표 4-9> T비자, 2013 회계연도

[단위: 명(%)]

종류	자격	발급	거부	지원자 수	면제/극복
T-1	인신매매 피해자	0	0	0	0
T-2	T1의 배우자	171	78	249	55
T-3	T1의 자녀	357	167	524	118
T-4	21세 이하인 T1의 부모	22	9	31	8
T-5	21세 이하인 T1의 18세 이하의 미혼인 형제자매	31	12	43	9
합 계		581	266	847	190

* 자료: 미국 국무부, FY2013 NIV Workload by Category(Data as of 9/30/2013)

ii. U비자

U비자 역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으로 신설되어, 미국에서의 법적 체류 자격을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구제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U비자는 미국 법에 의해 범죄행위로 규정된 행위, 즉 납치, 욕설, 성적 접촉, 약탈, 가정폭력, 강요, 불법감금, 여성 할례, 극악한 폭행, 외국인 노동계약 사기, 인질, 근친상간, 비자발적 노역, 유괴, 살인, 공무집행 방해, 노역, 위증, 매춘, 강간, 성폭행, 성 착취, 노예무역, 스토킹, 고문, 인신매매, 증인 조작, 불법형사구속, 혹은 위의 범죄를 시도, 공모 혹은 권유에 해당하는 범죄[50]에 의해 피해를 당한 자와 그 가족들에게 발급 가능한 비자이다. 범죄행위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학대가 발생했고, 범죄행위 관련 정보를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사건의 기소 시 이를 기반으로 조사에 협력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2: 22). U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범죄 피해 당사자가 범죄행위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50)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T Nonimmigrant Status by USCIS (http://www.uscis.gov/humanitarian/victims-human-trafficking-other-crimes/victims-criminal-activity-u-nonimmigrant-status/victims-criminal-activity-u-nonimmigrant-status)

하며 법 집행을 도와야 한다. 만약, 피해 당사자가 16세 이하이거나, 장애로 인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법 집행을 지원할 수 없을 경우는 부모, 보호자 또는 친구가 대신해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51)]

<표 4-10>의 2013 회계연도 U비자 발급 상황 등을 살펴보면, T비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0> U비자, 2013 회계연도

[단위: 명(%)]

종류	자격	발급	거부	지원자 수	면제/극복
U1	범죄 행위의 피해자	169	245	414	200
U2	U1의 배우자	116	85	201	70
U3	U1의 자녀	1,391	460	1,851	421
U4	21세 이하인 U1의 부모	42	35	77	30
U5	21세 이하인 U1의 미혼인 형제자매	55	16	71	17
합 계		1,773	841	2,614	738

* 자료: 미국 국무부, FY2013 NIV Workload by Category(Data as of 9/30/2013)

③ 범죄 피해자를 위한 이민 구제의 인도주의적 방식

'여성에 대한 폭력법(VAWA)'에 따라 결혼 또는 약혼기간 동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약혼자, 혹은 부모 등이 잔혹한 폭력을 가하여 외국인과 외국인의 아동이 극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VAWA 자가청원서(Self Petition)을 제출할 수 있다. 그 밖에 아동의 경우 학대, 방치 또는 유기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때에 위탁보호와 함께 '특별 청소년 이민자(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고 난민에 해당할 경우에는 난민신청도 가능하다(어진이·최민영, 2012: 67).

51) Victims of Criminal Activity: U Nonimmigrant by USCIS
(http://www.uscis.gov/humanitarian/victims-human-trafficking-other-crimes/victims-criminal-activity-u-nonimmigrant-status/victims-criminal-activity-u-nonimmigrant-status

<표 4-11> 인도주의에 입각한 이민 구제 방식 비교표

	T비자	U비자	VAWA 자가청원	난민
해당 범죄행위	노동 혹은 성 착취로 인한 인신매매	특정 범죄가 시도 혹은 행해진 결과로서의 피해자	구타 혹은 극심한 학대	박해 혹은 박해로 인한 공포
미국 내 범죄발생	○ 인신매매로 인해 미국에서 존재	○ 혹은 미국 영토 및 소유지	○ 미국 영토 혹은 소유지	× 국적지에서 발생한 사건 혹은 마지막 거주 국가
법 집행 협력요구	○ 협력하고자하는 타당한 노력을 입증	○	×	×
가족관계의 가해자	×	×	○	×
적용 기간	인신매매로 인해 미국에 존재하고 있음을 입증	증명의 180일 이내	관계 종료, 가해자 추방 혹은 아동이 성인되지 않았다면, 무기한 가능	국가정세가 바뀌지 않거나, 특이한 환경이 입증될 수 없다면 법적자격 만료의 1년 이내
추방으로 야기되는 곤란	○	×	×	×
파생비자 가능여부	가족동반 가능	가족동반 가능	21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
영주권 신청	T비자로 3년 후 혹은 사건조사 완결 후	U비자로 3년 후	만약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예전에 결혼했었다면 즉시	난민비자로 1년 후

* 자료: Immigration Relief for Crime Victims: The U Visa Manual, March 2010 by Anti-Trafficking Network, Page A-11

(3) 인신매매 범죄 예방 활동(Prevention)[52]

① 인신매매 모니터 및 근절 테스크 포스(Interagency Task For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법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미국의 '인신매매 모니터 및 근절 테스크 포스(Interagency Task For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는 인신매매 범죄자에 대한 기소를 위한 노력 중에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공적 부패 척결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본 TF팀은 국내외 인신매매 관련 연구와 자료 수집을 위해 인신매매 기소 및 유죄판결 통계, 체류비자를 받은 피해자의 통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과 아동의 성 착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섹스관광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며, 미연방 정부 내부에서부터 인신매매에 연

52) 인신매매 범죄 예방 활동에 관한 내용은 어진이·최민영(2012: 68-70)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였다.

루되지 않기 위해 연방정부 계약자와 그의 고용자 또는 미연방 정부의 하청업자와 그의 고용자가 인신매매 범죄, 상업적 성행위 알선, 채무노역을 포함한 강제노동에 관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무부 내에 TF팀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통해 시민들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노동으로 제작된 생산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노동부에서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② 인신매매 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

국무부는 인신매매의 피해가 우려되는 자를 대상으로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경지대에서 지방경찰이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것과 피해자의 국외 이송을 막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는 등 국경지대 차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제 섹스관광을 방지하기 위해, 섹스관광이 불법이고 범행 시 기소될 것이며 이에 연루된 자에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섹스관광 참가자에게 알리기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섹스관광의 주요 목적지로 상정되는 곳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강제노동을 포함한 착취를 당할 수 있는 모집업체를 조사 및 수사할 수 있도록 송출국 정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이주민의 권리와 이를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정보를 담은 다국어 팸플릿을 보급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대를 위해 주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정부, 비영리기관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③ 인신매매 보고서 제출 및 연구 의무

국무부 산하 인신매매근절 및 감시국(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은 매년 전 세계 인신매매 현황을 다룬 인신매매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TIPs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해당국은 '보고서발간 및 정책(Reports and Political Affairs)', '국제프로그램(International Program)', '공공참여(Public Engagement)' 등 총 3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인신매매 보고서 발간, 외국정부 및 NGO대상 인신매매근절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 운영, 대·내외기관(의회, 언론, NGO, 정부기관, 기업, 학계 및 연구소, 일반 대중 등)을 대상으로 한 대중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무장관은 해외로 파견되는 공무원이나 평화유지군의 인신매매 행위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가진다. 국무장관은 UN,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또는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기구를 통해 평화유지군을 새로 파견하기 전에(표결 15일전), 평화유지군이 인신매매 행위, 피해자 착취, 성 착취 또는 학대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하는 동안 그러한 행위에 관여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하원 외교위원회를 포함한 기타 해당 의회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의 인신매매와 관련해 인신매매의 경제적 원인과 결과,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 인신매매와 보건위험 간의 상호연관성, 인신매매와 테러 행위 간의 관련성, 국제 인신매매 피해자의 현황 파악을 위한 매커니즘 구축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미국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3P(prosecution, protection, prevention and partnership)를 더욱 적절하고 유기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국내외의 정부기관 및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Partnership)을 추구하고 있다. 인신매매는 한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 초국가적인 범죄이므로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노력하기 위해, 인신매매를 척결하려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노력을 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비인도적(non-humanitarian)', '비통상 관련(non-trade-related)' 원조를 제재하는 정책을 두었다. 미국 대통령은 해당 국가의 정부가 최소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을 할 때까지 비인도적, 비통상 관련 원조를 못하게 하고, 해당 국가 공무원들의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 다자간 개발은행 및 국제통화기금의 미국대표들이 해당 국가기관의 자금대출 등에 반대투표를 하고 거부하도록 했다(어진이·최민영, 2012: 73).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들에 대한 조치 가운데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인신매매 피해자와 기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가족들의 돌봄이 필요한 이런 피해자들에게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인도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한국에서 남아 있는 경우라도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을 경우가 많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V. 한국의 예술흥행비자정책 제도개선 방향

1. 예술흥행비자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 177
2. 근로기준법의 위반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 182
3. 예술흥행비자 관련 부처 역할 및 부처 간 연계 강화 ····· 192
4.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 198
5. 인권침해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 205

실태조사를 토대로 분석된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유흥접객원으로의 신분변동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둘째,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셋째, 다른 이주민에 비해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넷째,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것은 한국의 비자정책의 문제, 공연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문제, 공연 이주노동자의 입국부터 공연 현장에 대한 관리 등에 관계하는 각 각 부처의 역할의 문제, 인신매매와 인권침해 피해자 보호의 문제가 서로 얽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예술흥행비자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

1) 공연법의 개정

(1) 공연에 대한 정의규정의 문제점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년에 국내공연을 규율하고 있는 「공연법」규정을 전면 개정하였다[53]. 개정된 부분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 '공연'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함.
- 공연자 등록제를 폐지함.
- 공연장 설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시설을 갖추면 누구나 공연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의 국내공연 허가제를 폐지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함.
-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를 각계 전문가 중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로 개편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을 민간에게 이양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대폭 신장하고자 함.

특히 여기서 문제의 소지가 큰 것은 공연법 제2조상의 공연에 대한 정의이다.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정한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있고,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 무대에서의 공연만 공연법 상의 공연으로 규정된다.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은 사실상 클래식 음악과 무용 과 같은 일부 영역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그 외 전용공연장, 호텔, 관광업소 등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하는 대중예술의 경우에는 이중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위와 같은 「공연법」 규정은 클래식 등 일부 소수 공연에 대한 우월적 태도를 드러내고, 다양한 장르의

53) 공연법 (법률 제5924호, 1999.2.8., 전부개정, 1999.5.9. 시행)

예술행위를 동등한 관점에서 대우하지 않는 차별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연의 내용과 형식이 다양화되고 융합되는 현재의 공연 방식에는 맞지 않는다.

또한 공연법에서는 외국인의 국내공연 허가제를 폐지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연 이주노동자들이 공연을 하는 곳은 전용공연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공연법 상의 추천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54]에 따라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사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우회하였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초래한다. 우선 관광업소나 유흥업소에서 주로 공연을 하는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행위가 진정한 공연예술인지 아닌지의 구분을 어렵게 하였다. 공연예술가들의 공연은 공연행위 그 자체로 공연인지 아닌지가 판단되어야 하나, 지금의 공연법은 공연 행위 그 자체 보다는 공연예술가가 서는 무대의 장소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이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지위를 탈법적으로 악용할 여지를 줄 수 있다. 공연법 상의 공연노동자라는 위치를 엄격하게 부여하는 것은 취약한 지위에 있는 공연 이주노동자들을 유흥접객원으로 활용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연법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역할을 애매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공연장에서의 공연에 대한 추천은 위 법에 의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으로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공연 추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관광업소 등에 대한 공연추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위탁"된 것으로, 공연 이주노동자의 예술흥행비자 발급에 가장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역할을 불분명하게 할 소지가 있다.

(2) 제언 : 「공연법」상 정의규정의 개정

여기서 논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 역시 "공연"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공연법」의 목적인 예술의 자유 보장과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은 위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한 공연"에도 동일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호텔업시설, 관광편의시설 등에서의 공연도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공

5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751호) 제48조(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증발급을 위한 추천서의 발급 사무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위탁한다.

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연소자 공연, 외국인 공연 등 공연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공연법」 상의 공연장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도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55]의 경우, E-6-2 비자 노동자가 사실상 "유흥종사자"[56]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흥주점에서의 공연은 「공연법」 상 공연의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유흥주점도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유흥시설만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영업의 형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는 경우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곳에서 공연 이주노동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연 추천 신청 시 "해당 업소가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후적으로도 해당 업소에 실제로 유흥종사자가 없는지 여부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표 5-1> 공연법상의 공연 정의 제언

현행 「공연법」 상 "공연"의 정의	제언 「공연법」 상 "공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 영업시설에서의 공연은 제외한다.***

5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56)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유흥종사자"에 대해여 다음과 같이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 ②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2) 예술흥행비자를 단기공연비자와 장기공연비자로 개편

(1) 예술・흥행(E-6) 비자유형 세분화와 문제점

1999년 외국인의 국내공연이 허가제에서 추천제로 바뀌자 각종 형태의 기획사가 난립하게 되었다. 1980년에 7개였던 기획사가 2001년에는 103개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무질서한 공연활동이 이루어졌다[57]. 또한, 외국인 여성이 국내의 유흥산업 또는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수가 증가하였고, 성매매 등 관련 외국인 범죄 피해는 2배 이상 증가하였다[58].

이에 관계부처는 그 대안의 하나로 예술흥행비자를 크게 고급예술공연, 일반 공연, 체육 등으로 분리하였다. 법무부의 질의에 대한 응답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이 내부지침으로 예술・연예(E-6-1), 호텔・유흥(E-6-2), 운동・경기(E-6-3)로 세분하여 규정한 이유는 활동 유형별・목적별 관리 및 통계 유지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예술・연예(E-6-1)비자는 고급 예술인에 대해 발급하고, 출입국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고, 호텔・유흥(E-6-2)비자는 출입국관리의 시각에서 통제의 관점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4장에서 살핀 예술비자와 흥행비자를 구분하는 일본의 분류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는 다음과 같은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데, 고급기능 연예인은 일종의 사업자로서 거의 무제한의 취업자유를 부여하는 한편, 일반기능연예인은 사실상 근로자라는 점을 중시하여 노동착취나 인권침해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예술흥행 체류자격을 “고급예술인(E-6-1)”과 “특별한 기능을 갖지 못한 일반 외국 연예인(E-6-2)” 사증으로 분리하여 운영해 온 결과, 앞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이 제기된다.

E-6-2 비자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호텔 등 공연법령 규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에서의 퍼레이드, 쇼, 뮤지컬 등과 롯데월드 등 유원시설, 무역전시장 등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등에서의 가무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지만, 특히 주한 미8군 영내클럽, 관광호텔, 외국인 전용음식점 등 관광업소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숫자의 외국인이 나이트클럽에 종사하고 있었다.

<표 3-44> “업소에서 제공하는 쇼와 서비스”에 대한 응답결과에 따르면 업소에서는 주스・음료・주류를 판매하기 위해 고객의 말벗 또는 춤을 추도록 하는 비율이 65.0%나 되었고, 성매매를 하는 업소도 23.1%에 이르렀으며, 출장데이트를 해야 하는 업소도 17.9%였다.

57) 「외국연예인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2002)」, 정미진 외 4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1-12면
58) 1998년에 24건에서 1999년 5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미진 등(2002), 8면

결과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관광산업을 영위하는 업소에서 E-6-2 비자 노동자는 사실상 “유흥종사자”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E-6-2 비자 소지 이주민이 종사하는 곳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관광업소에서 성착취적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비율도 과반수 이상이며, 성매매의 비율도 매우 높다. 앞서 검토한 2002년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의 「외국연예인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드러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실태는 당초부터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이었다.

즉, 외국 연예인의 유형에서 소위 “고급 예술인”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최대한의 특혜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그 밖의 일반 연예인”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유입의 길은 계속 열어 놓으면서 출입국 통제는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E-6-2 비자 소지 이주노동자로서는 성착취적 인권침해 및 인신매매의 피해에 계속 노출되어 왔고, 이미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선된 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입국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효과를 발휘하고자 하였던” E-6-1 비자의 경우에도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용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테마파크 공연노동자의 인권실태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표3-26> “근로계약서 인지 준수여부- 근무시간”에 따르면 약 33%의 몽골 이주민이 근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표3-28> “업태별 근로계약서 인지 준수여부- 휴일”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약 33.3%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표3-42> “여권소지여부”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몽골 이주민의 경우 본인이 여권을 소지하는 경우가 한 명도 없었다. 이와 같이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및 노동착취의 문제가 왕왕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6-1 비자가 이른바 “고급예술인” 유형의 비자라는 인식으로 인해 오히려 이와 같은 노동착취・인신매매・인권침해의 현실이 가려지고 방치되고 있다.

즉, 2003년부터 출입국관리법령이 예술흥행 체류자격을 “고급예술인”과 “특별한 기능을 갖지 못한 일반 외국 연예인” 사증으로 분리하여 운영해 온 정책은 위와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진다. E-6-2 비자는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은 관광업소에 유흥종사자로 종사할 노동자를 유입하는 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고, E-6-1 비자는 “고급예술인”이라는 구별로 인하여 그 안에서 사실상 발생하는 인신매매와 노동착취의 현실이 가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태의 한 원인을 E-6-1 비자와 E-6-2 비자의 분리 운영에서 찾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위 세분화된 E-6-1 비자와 E-6-2 비자를 다시 통합하여 규율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제언 : 예술흥행비자를 단기공연비자와 장기공연비자로 개편

모든 공연활동을 공연법에 의해 규율되도록 공연법을 개정하고, 공연예술비자를 단기공연비자와 장기공연비자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예술을 고급예술과 고급예술이 아닌 것으로 구별하는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예술인들도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예술흥행비자를 예술・연예와 호텔・유흥으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를 대체하여 **단기공연비자와 장기공연비자(1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공연)**로 나누는 것을 제안한다.

단기공연의 경우는 몇 차례의 공연만으로도 비용과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유명예술인들이 대다수이다. 이들에게 입국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예술가로서의 경력 증명과 무대 확인 등의 절차는 간소하게 진행해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신매매의 가능성을 비롯한 인권침해의 문제는 1개월 이상의 장기공연에서 집중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거주하며 장기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과 입국과정, 그리고 공연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장기공연을 하려는 외국 연예인의 경우 대체로 예술시장에서의 입지, 유명도, 기술 등에서 단기 공연자보다는 열등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어 이들에게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연 추천시 이들의 공연노동자로서의 공연경력, 교육받은 경력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이들이 공연할 무대에 대한 확인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예술인 경력이나 교육경험이 확실한 외국인만 초청하도록 해야 예술흥행비자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본다.

2. 근로기준법의 위반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1) 장기공연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1)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근로실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 **근로계약서 내용의 몰이해**

앞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흥행 분야 종사자들이 근로계약을 작성한 여부에 응답한 150명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응답자가 145명, 작성하지 않은 응답자가 5명으로 대부분

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몽골과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자국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반면, 필리핀의 경우 따갈로그어로 작성되었다는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즉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적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만 듣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했지만 이미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채로 작성된 것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점을 발견하고도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용인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 과도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부족

전체적으로는 129명의 응답자 중 64명인 49.6%가 실제 계약과 근무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좋은 놀이공원을 제외하면 계약된 근무시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수치는 58.2%에 이른다. 한 업소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후, 같은 사용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업소에 보내져 추가적으로 새벽 근무가 강요되고 있기도 하였다.

휴게시간에 대해서도 계약 내용을 잘 모르거나,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비율을 고려하면 놀이공원을 제외한 업태들 110명의 응답자 중 25명인 22.7%의 응답자만이 계약된 내용의 휴게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휴게시간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임금의 불충분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129명의 응답자 중 65명인 50.4%가 임금이 약속한 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놀이공원을 제외하면 110명의 응답자 중에서는 59.1%가 임금이 약속한 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심층 면접에 의하면, 이와 같이 계약서에 약속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더 이상의 노동을 할 수 없을까봐 항의를 할 수 없었다. 또한 업소에서 본인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큰돈을 받을 수 있는 성매매(바파인)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독촉하기도 하였다는 답변도 있었다. 이와 같이 약속된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공연 이주노동자들을 인신매매의 상황에 놓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임금 직접・전액・통화 지급의 원칙 미준수**

전체적으로 유흥업소의 경우 한국 프로모터에게 지급받는 다는 비율이 52.0%로 가장 높았고, 근무지 사장에게 지급받는다는 경우도 응답자의 32.3%에게서 나타났다.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비율도 13.4%였다. 호텔공연을 제외한 모든 업태들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비율이 각 응답자들의 70%가 넘었다. 나이트클럽과 카페, 단란주점에서는 일부는 받고 일부는 강제로 적립해야 했다는 답변들도 있었다.

월급에서 입국비용이 미리 공제되는 경우는 호텔공연의 경우 3명 중 2명(66.7%), 나이트클럽의 경우 42명 중 33명(78,6%) 카페 및 7080클럽의 경우 6명 중 5명(83.3%) 외국인전용클럽의 경우 13명 중 9명(69.2%), 시멘스클럽의 경우 11명 중 9명(81.8%)였고, 단란주점의 경우 전원이 월급에서 미리 입국비용을 공제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알려주거나 명세서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었다. 1-4개월간 월급을 입국비용의 명목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판단

① 서설

앞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① 내용을 모르는 상태의 근로계약서 서명, ② 과도한 초과근로 및 휴게시간 부족, ③ 임금의 미지급 및 불충분 지급, ④ 임금 직접・전액・통화 지급원칙의 미준수는 모두 강행규범인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 다만, 근로기준법 위배를 논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② 판례에 나타난 근로자성 판단기준[59]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관한 판례의 태도[60]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

59)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등 참고
60) 대법원 1996.09.06. 선고 95다35289 판결;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61] 근로자성의 요소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사업 또는 사업장
- 임금을 목적
-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짐
-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음
-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상대방에 의해 지정됨
- 업무의 대체성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사회보험 등 가입여부

③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의 근로자성 검토

E-6-2(연예・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의 경우 본 실태조사에 따르면 모두 파견사업주에 고용되고,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6-2(연예・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경우도 근로관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함은 동일하나, 위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바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다. E-6-2(연예・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근로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유흥업소에서 상근하며 정해진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계약 기간 및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고, 업소 내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마찬가지로 계약 당시 약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근로제공이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경우가 많은 등 이주여성들의 노동의 내용과 형태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에게 매우 종속적이다. **따라서 E-6-2 비자 소지 이주민은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다[62].**

61) 대법원 1996.09.06. 선고 95다35289 판결;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62) 고현웅 외(2006) 173면 참조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E-6-1비자 소지 이주민 역시 많은 경우, 예술 활동 등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계약당시 약정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근로제공이 일방적으로 강요되기도 하며 사업장 내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근로의 대가로서 급여를 받는 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다만, E-6-1(예술・공연)비자 소지 이주민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 독자성 등이 강화된 형태의 계약관계에 의해 활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공연법 및 동법 시행령 “공연장”에 대한 정의 규정에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공연장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63], 이를 유추하여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장기 공연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기준 준수 의무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실태조사 결과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계속해서 30일 이상 공연활동에 종사하는 장기 공연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표준(근로, 공연)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사자인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기숙사・식사 등 생활환경,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 입국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자국어로 번역된 표준(근로, 공연)계약서를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공연계약에도 사용하도록 하여 표준적이고 공정한 공연 계약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은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하는 전제 하에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서 원본을 꼭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3)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공연장의 범위)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최저임금 보장, 입국비용 공제 금지 및 임금 명세서 지급 의무화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공연 이주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역할, 예를 들면 유흥접객원의 역할에 대한 요구를 억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파견사업주의 과도한 소개비(소위 프로모션에 대한 대가)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을 두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임금은 직접, 전액, 통화로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강제적립 및 입국비용 등을 미리 선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다. 대부분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들의 임금에서 입국비용이 공제되고 있었으나,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알려주지 않거나 명세서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입국비용[64]은 초청업체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국비용에 관한 명세서 및 임금 명세서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③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준수

근로기준법은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및 3호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등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화제작 및 흥행업 종사자로 포함될 수 있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노동자의 경우 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는데, 예술흥행비자 소지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 내에 이러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을지 조차 의문스럽다. 근로기준법은 강행적 효력이 있으며 이에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 나아가 근로감독관에 의한 감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근로의 내용 (약정된 근로의 제공, 선량한 풍속위반의 근로 등 금지)

사업주 및 파견사업주(또는 사용사업주)는 계약당시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내용과 다른 근로제공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사업주가 법률로 금지되었거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그 근로제공이 근로자에게 예견할 수 없었던 양심상의 가책을 주는 경우, 노동보호법규에 위반한 근로의 제공이 근로자에게 생명이나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체가 기대불가능하거나 기대 불가능한 조건 하에서 근로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러한 근로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다른 근로제공이 강제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다. 또한 사

64) 국가별로 입국비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실태조사 결과 위와 같이 사업주가 다른 근로제공을 강요하거나, 법률로 금지되었거나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생명이나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경우 대응할 방법을 몰라 참거나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에서 공연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공연장(사업장) 이탈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E-6비자 발급이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65].**

2) 파견근로자의 보호

파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2에서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등이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함에 따라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경우(특히 E-6-2), 많은 경우 파견근로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도 필요한 업무에 전문 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노동력 투입에 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나, 그로 인하여, 임금의 중간착취, 책임관계의 불분명,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 파견근로자인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보호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우려가 많다.

실태조사 결과 파견사업주가 E-6 이주민의 입국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입국비용이 고스란히 E-6 이주민의 빚이 되었다. 입국비용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한 채로 에이전시나 프로모션이 이야기하는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 당했다. 아프리카 이주민을 고용한 A 박물관의 경우는 매달 항공권으로 든 돈을 월급에서 공제하였고, 필리핀 이주민의 경우 매년 10%의 임금을 공제되거나, 1~3개월의 임금이 전액 공제당한 경우도 있었다. 151명의 응답자들 중 100명이 입국비용을 갚아야 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파견사업주가 수익을 얻는 것에 집중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이중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가 이익을 얻거나[66], 사용 사업주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 예술흥행비자

65)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고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66) “몽골에서 몽골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국어로 된 1장짜리 서류를 몽골 사장이 보여주면서 사인을 하라고 했어요. 그게 계약서인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내용도 자세히 몰라

소지 이주민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묵인하거나, 일조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67].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정관,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등을 첨부해서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68].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 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여 근로자 파견 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에 위법 등이 있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폐쇄조치를 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주에게 사업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등 파견사업주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 기획사에게 "기획사와 공연업소 간의 파견계약서와 파견사업 허가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민 연예인을 초청하기 위해서 공연 기획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공연 추천을 신청하기 이전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고용노동부가 파견사업주인 외국인 공연 기획사에 대한 파견사업 허가를 결정할 때 해당 기획사가 예술흥행비자 소지 외국인 연예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적정한 자산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해당 기획사가 과거에 인신매매·성매매·불법취업 활동 관여·문서 위변조-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게 하였음을 이유로 한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적정하지 않은 공연 기획사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관계에서 파견사업주인 기획사가 공연계약상·법률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역시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임검하여 근로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해 조사하는 방법으로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또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조치(동법 제23조-제29조)와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동법 제30조-제33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조치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요. 싸인하라고 한 뒤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여, 몽골, 1991년생, 2008년 입국, 심층)

6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8)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3) 연소자의 노동에 대한 보호

실태조사에서 한국 입국 시 만 17세 이하인 경우가 필리핀이 5건, 몽골이 8건이다. 특히 몽골의 경우 전체 조사자의 53.3%가 17세 이하였다.

<표 5-2> 청소년의 한국 취업

[단위: 명(%)]

항목	필리핀(비율)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비율)	몽골(비율)
10대/[69]만 17세 이하	14(12.3)/5(4.4)	5(26.3)/0	12(80.0)/8(53.3)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6월 17일 제네바 연례총회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가혹한 노동과 매춘, 강제징병 등을 금지하는 '협정 182조'로 알려진 '최악의 아동노동금지 협정(Convention Concerning the Prohibition and Immediate Actions Toward the Elimination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174개 회원국 대표들이 전원 찬성한 이 협약은 모든 서명국들에 대해 법을 어긴 고용주의 처벌을 비롯해 최악의 형태의 어린이 노동을 금지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70]. 또한, 국제아동권리협약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천명하고 있다.

국내법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장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에서 연소자의 근로를 규제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32조 제5항의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적극적으로 구체화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르면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

69) '/'사선 이하는 10대 입국자 중 입국 당시 만 17세 이하의 수치와 비율이다

70) 국제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한국은 1991년 가입하였다.

국제아동권리협약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못하고,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18세 미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및 본인의 동의가 없는 이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근로감독관의 감독 대상이 되며, 위반시 벌칙 규정이 적용된다.

앞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마파크 종사 E-6-1비자 소지 이주민들은 80%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고, 테마파크 종사자의 53.3%가 17세 이하였다. 그러나 위 테마파크 종사하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연령 기준, 연소자 공연에 대한 안전 기준, 연소자 안전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근거 및 장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4) 근로감독관의 기능 강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근로감독관은 실질적으로 사업장 방문 및 불법적인 근로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위치에 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을 통한 최저임금 위반 사항 점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 폭행 및 강제근로 위반 사항 및 근로계약 위반 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감독관에 접근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조건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이 가능하다.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 위반 사실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는 근로감독관의 집무에 대하여 사업장 근로감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각종 인·허가 및 승인, 과태료 부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차별시정 등과 관련한 업무를 근로감독관의 직무라 하고 있고, 최저임금사항 주지 관련 서류, 근로자파견사업 대상 업무 관련 서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기준 관련 서류, 근로자파견계약 관련 서류,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파견 및 사용 사업주의 조치필요사항 관련 서류 등을 사업장 감독 당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이주민이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착취 등의 피해를 개선해 가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기능이 매우 강화될 필요가 있다.

노동법 위반 이외의 **사용자,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사용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성폭력범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차별행위, 폭행, 상습적 폭언, 인권침해 등 부당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적발할 경우, 현재 근로감독관에게 이에 대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5) 사회보험 보장

예술흥행비자 소지 노동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르고 육체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및 건강 침해의 우려가 항상 존재한다. 특히 E-6-1 비자 소지 공연노동자의 경우 공연의 종류에 따라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이주민의 지위가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불문하고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따라서 예술흥행비자 소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산업재해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 합법적 체류상태 외국인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체류자격이 있고, 노동자가 속한 사업장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술흥행비자 소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등을 통하여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상 사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공연장의 경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직장건강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표준(근로, 공연)계약서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등 의료보장 대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술흥행비자 관련 부처 역할 및 부처 간 연계 강화

1) 각 부처별 관리·감독 및 부처 간 연계의 미비

예술흥행비자의 세부 유형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예술흥행비자 정책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체계 실질화 및 관련 부처 간의 연계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앞

서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예술흥행비자의 발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어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기획사가 인신매매를 하거나 업소에서 노동착취가 이루어져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다. 따라서 예술흥행비자를 통한 입국자들이 원하지 않았던 혹은 계약한 것과 다른 내용의 노동환경 속에 놓이거나 인권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분장이 불가피한 각 절차에 있어서는 법적 심사와 규제 개입을 강화해내는 현실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 : 사전 제출서류 및 공연현장 심사 강화

현재 예술흥행비자의 발급은 공연법에 의거하여[71]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은 "공연사증 발급조건의 확보"라는 의미를 갖는다. 즉,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연 이주노동자 유입에 있어 일차적이고 핵심적인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기준」에 맞추어 이주민의 공연내용, 공연하게 될 장소 등을 심사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에 대한 심사 시 공연 영상물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상자료를 통해서 가수의 공연의 질이나 공연내용을 심사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외국인 공연을 직접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연 영상물, 대본, 음악, 계약서, 공연단 사진, 공연장 도면 등 영상 또는 서류를 통해 심의를 하고 있다. 또한 사전·사후 감독 권한이 전무하다는 심사의 한계 등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사가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72].

전문 예술·연예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주민 대하여 발급되는 예술흥행비자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위 비자정책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공연추천의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공연에 대한 심사의 실질화 및 강화가 필요하고, 실제로 제출된 공연계약서 및 공연개**

---

71)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6-2 비자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연의 추천업무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공연추천을 위탁하고 있다.

72) 장미진 등(2002) 33-34면 외 다수

요 등에 나타난 내용과 같은 공연을 수행하고 있는지, 공연을 위한 무대 등 설비 및 기준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확인과 사후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공개한 공연추천에 관한 주요기준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업소 공연에 대해서는 일반 공연 및 무대공연과 별도로 상세한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73] 여기에 더하여 사전제출 서류로서 **㉮ 현지의 활동경력 내지는 관련 분야의 학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연 목적의 입국임을 분명히 증빙하도록 하며, **㉯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의 파견 근로자 사용에 관한 계약 내지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파견사업주의 과도한 중간착취 등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 자국어로 번역된 공연표준계약서**를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공연계약에도 사용하도록 하여 공정한 공연 계약의 정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현장 확인 및 사후 정기적 모니터링 또는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추천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사후적 관리·감독을 위한 기준 또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 확인을 위한 절차 마련 및 현장담당자의 확보가 필요**하다. 현장 확인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 공연장소, ㉯ 무대 등 공연 설비의 구비 및 안전성 확보, ㉰ 제출된 명단과 동일한 출연진 확보, ㉱ 제출된 바와 동일한 내용의 공연 등이 갖추어졌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침 내지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현장 확인은 주로 신규로 신청하였거나 과거 인신매매·성매매·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공연장 또는 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이 미비된 경우 (사전 확인시) 공연 추천을 거부하고, (사후 감독시) 공연 추천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한편 일부에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민간기구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한 행정력이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이러한 서류과정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와는 달리 예술흥행비자 발급을 위한 사전 조치로 영등위의 공연추천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 예술인뿐만 아니라 공연의 내용도 검토 하겠다[74]는 의미이다. 이러한 과정을 정부 부처 중에서도 업

---

73) 공연장소, 공연인원, 제출서류, 공연영상물(동영상)에 관하여 세세한 기준을 두고 있다. 이 중 "공연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연프로그램은 공연계약서 및 근로자파견계약서의 내용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고, 노래 및 연주의 경우 공연의 곡명과 공연 횟수, 공연시간을 기재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검토 지침을 두고 있다.

74) 공연법 제7조(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외국인 공연 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무 성격 상 가장 보수적인 법무부 등에 맡긴다는 것은 문화에 대한 정부의 검열을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 만일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문제가 되는 표현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인 질서에 의해 검토되는 단계에 도달한다면 이러한 일부의 주장은 타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3) 법무부 : 사증 발급시 실질적 심사의 필요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등의 부서에서 예술흥행비자소지 외국인 연예인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는 예술흥행 사증발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처로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 추천 및 고용노동부의 파견사업 허가 등의 모든 절차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사업주(공연업소 등)에 과거 성매매 알선 등 법 위반의 전력 등이 있었는지, 파견사업주(기획사)의 인신매매, 근로기준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사항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심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와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예술흥행비자 소지 외국 연예인의 유입에 있어서의 다단계적인 심사 절차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나듯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공연장 내지는 관광업소, 수행할 노동의 종류 및 내용 등이 사업주(파견사업주 내지는 사용사업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강요되고 있는 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특히 현행 E-6-2 비자 소지 이주민)이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경우라도 인신매매, 인권침해 등 피해로부터의 구제를 위하여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규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강요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 안정적 체류자격을 보장해야 한다.

4) 고용노동부 : 파견사업 허가 심사 강화 및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후 심사 강화

E-6-2 비자 소지 외국 연예인의 경우 대부분 파견근로관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75].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공연 기획사에 대한 파견사업 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

7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가를 결정할 때 해당 기획사가 예술흥행비자 소지 외국 연예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적정한 자산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해당 기획사가 과거에 인신매매·성매매·불법취업 활동 관여·문서 위변조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적정하지 않은 공연 기획사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사후적으로 파견근로관계에서 파견사업주인 기획사가 공연계약상·법률상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임검하여 근로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해 조사하는 방법으로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견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E-6-1 소지 이주민의 경우에도 이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제도 등을 통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들의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76]. 이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충분한 수 확보와 충분한 조사시간 및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권한에 근로기준법 위반 뿐 아니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도 포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지방자치단체 : 공연장에 대한 안전검사 강화 및 공연장 운영 관리감독의 강화

한편, 예술흥행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E-6-2 비자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77]. 또한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78]을 경영하려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76) 제4장의 <표 4-4>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 노동부 이주노동자 도입 전후에 걸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개별 규정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는바,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근로관계 관리·감독에 소극적인 한국 고용노동부에서 참조할 만하다.

77) 공연법 제9조

78)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79].

또한, 공연법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연자나 공연장운영자가 공연법 또는 공연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위반이 있을 경우, 공연 정지, 폐쇄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유 중 하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허가 취소사유로 두고 있다[80].

앞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노동자들의 54.4%가 일하다가 아프거나 다친 경험이 있으며, 업태별로 분석할 경우 테마파크 종사 E-6-1비자 소지 이주민들은 80%가 일을 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연장, 무대 등 공연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공연법[81]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설계, 안전 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정기안전검사 등을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안전검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공연**

---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79) 관광진흥법 제4조, 제6조

80)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8호

81)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공연장 설치 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2. 공연장 등록 전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검사(이하 "등록 전 안전검사"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공연장운영자는 매년 무대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연장운영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장으로 등록하는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근로관계 및 생활, 각종 인권침해 문제의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의 역할은 현장성, 지속성, 신속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하고[82], 경찰, 지방 노동청, 근로감독관 등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6) 송출국 대사관과의 협력: 관련 부처 연계 현장 관리·감독 및 자국민 보호 강화

3장의 분석에서 OEC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 공연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를 덜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는 필리핀 정부에서 해외로 이주노동을 하려는 자국민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이것의 발급과정에서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확인은 위험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를 배제할 수 있는 주요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관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도 공연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이거나 막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83][84]. 그러나 이는 매우 민감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당사국과의 신중한 협의를 전제로 한다.

4.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

82) 가령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515호, 2010.1.19., 일부개정] 중 "제8조(외국인주민에 대한 인권 증진)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업, 시민사회단체, 주민,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규정 참조
② 시장은 인권침해 발생시 권리구제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편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83) 비자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송출국과의 긴밀한 협력도 요구된다. 예를 들어 한국 유입 필리핀 이주민 연예인들을 필리핀의 해외고용청(POEA)에 해외이주노동자로 등록하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만 예술흥행비자를 발급하는 등 송출국과 긴밀히 협력한다면 당국의 관리·감독도 강화되어 비자정책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해외고용청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소속으로 필리핀 해외노동자들의 이동을 관리하는 곳이다. 해외고용청이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전자영수증(E-Receipt)이나 OEC를 발급해 주고, 이 증명서는 출국 전에 공항에 있는 해외고용청 노동지원센터와 이민국 심사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는 본 노동자가 정부의 보호와 혜택 속에 있다는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자가 해외노동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있다면 법적으로 많은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송출국과의 협력은 현지와의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앞서 일본의 사례에 따르면 일본은 필리핀 정부가 발행하는 '예능인자격증명서'에 대한 불신을 표명한 바 있다.

84) 고현웅 외 (2006) 176-177면 참조

1)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인신매매의 가능성

앞서 제3장에서 유엔범죄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s, 이하 UNODC)에서 제시한 인신매매 지표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 여권 또는 여행문서 또는 신분증 압수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 입국시 위조 신분증 또는 위조 여행증명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으나, ㉱ 어쩔 수 없이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쇼와 서비스가 있는 점,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원하지 않는 노동을 하고 있는 점, ㉳ 근로 계약서 대로 근로 조건이 준수되지 않고 있는 점, ㉴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점, ㉵ 임금을 적게 받거나 혹은 못 받은 경우가 존재하는 점, ㉶ 임금 명세서 또는 증명서를 거의 못 받고 있는 점, ㉷ 오랜 기간 극단적으로 장시간 노동 상황에 놓여 있는 점, ㉸ 제한되거나 사회적 상호관계가 차단된 점, ㉹ 프로모터나 근무지 사장 등 선지불 한 사람은 채권자로 이주 노동자는 채무자의 관계로 설정되면서 이들은 종속된 위치로 자리매김 될 가능성, ㉺ 폭언 및 폭행을 경험하였고, 성폭력, 성매매 피해에 노출되어 있던 점, ㉻ 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한국어가 서툴거나 고객의 불만족, 강요하는 일을 거부해서였던 점 등 인신매매 지표의 많은 경우에 해당이 되었다. 즉 **위 UNODC에서 제시한 인신매매 지표 기준에 따르면 많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은 인신매매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예술흥행비자의 운영을 두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하에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선 촉구의 논의와 국제 규범의 국내법적 이행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규범의 준수

(1)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 규범

-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ICESCR; 1966년 제정)의 이행을 모니터하는 「사회권위원회」는 동 규약 제10조(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서 인신매매문제를 다루고 있다. 2009년 11월 대한민국의 제3차 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에서 인신매매에 관한 제반 대책을 권고하였다.

-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79년 제정)」의 이행을 모니터하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동 협약 제6조(인신매매와 성매매착취금지)에 의거, 인신매매를 다루고 있다. 2011년 7월 대한민국의 제7차 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에서 인신매매에 관한 제반 조치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 「아동권리협약(CRC; 1989년 제정)」의 이행을 모니터하는 「아동권리위원회(CRC)」는 동 협약 제35조(아동의 납치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의무)에 의거하여 인신매매를 다루고 있다. 2011년 9월 대한민국의 제3차, 4차 보고서 병합심의에서 아동의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대책을 권고한 바 있다.

•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2000년 제정)」의 3개 부속 의정서 중 하나로 제정된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일명 Palermo Protocol, 팔레르모 의정서)는 인신매매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 유엔 인권이사회는 주제별 특별절차의 하나로 「인신매매 특별 보고관」을 2004년에 설치하였고, 모든 특별보고관은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연례 보고서 제출, 현장방문, 진정서접수 업무를 하고 있다.

(2) 협약에 기초한 권고 사항

① 2010년 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PR) 권고 내용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과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물론 그와 동등하게 강제노동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하여도 이를 철폐함에 있어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②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내용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2011년 대한민국 제7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7월 19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위원회는 8월 3일에 심의 결과에 따른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를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은 2015년 7월까지 제8차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았으며 심의는 다음 해인 2016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 법률 채택 및 인신매매를 위법행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형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것, ㉯ 외국인 여성을 채용하는 연예기획사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여성의 성매매 금지를 보장하는 효과적 감시 장치를 마련할 것, ㉰ 인신매매 피해자 여성 및 소녀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인신매매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위한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할 것, ㉱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비준할 것을 촉구하였다.

③ US. Department of Stat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2[85]

미국 국방부 인신매매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 인신매매 범죄를 규정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인신매매 방지 법령을 제정할 것. ㉯ 정부는 노동 관련 인신매매에 연루된 범죄자를 포함하여 인신매매범을 수사하고 기소하며 유죄를 확정하는 노력을 확대할 것, ㉰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여성과 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근로자, 불법 이민자를 포함하여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공식적인 피해자 확인 절차를 수립하여 시행할 것,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강제 노동 피해자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확대할 것, ㉲ 3년 간격으로 실시되는 성매매 인신매매 실태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근로자 인신매매 범죄의 범위와 유무를 조사하는 연구나 정기 조사를 실시할 것, ㉳ 인신매매범을 상대로 수사와 기소 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자에게 사전에 예방적으로 취업 허가를 부여할 것, ㉴ 아동 성매매 관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그러한 행위에 연루된 내국인을 사법 처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받았다.

3)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규범의 국내법적 이행

(1) 국제규범의 이행 필요성 및 방법

범죄방지 분야는 과거에는 국가의 전속적, 배타적 관할사항이었으나 현대의 범죄의 추세와 범죄자의 국외도피의 증가 등은 이 문제를 과거처럼 국가에만 맡겨 둘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다.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이라는 우려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 따라 각국이 스스로 법제를 정비함으로써 국가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범죄에 대한 위협을 미연에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86].

일반적으로 국제조약에 국내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 내용을 국내법으로 변형하는 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조약을 일반적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방식이다.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일명 Palermo Protocol, 팔레르모 의정서)는 국내 이행의 차원에서 2013년 4월 5일 형법 조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면서 인신매매에 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다[87]. 또한 한국은 위

85) 미국 국방부 인신매매보고서
http://photos.state.gov/libraries/korea/49271/June_2012/p_Trafficking_in_Persons_ROK_2012.pdf

86) 이러한 점을 감안해 최근 형사 사법 분야 국제협약들의 방향은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자간조약을 체결한 후 국가의 사정에 따라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들 협약에서는 대부분 협약상의 의무조항을 국내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그 실현방법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각국의 국내적 조치에 위임하고 있다. 신의기, 조직범죄집단의 국제적 연계실태와 차단방안(Effective Control of the Organized Crimes),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참조

87) 국제협약 비준시의 입법 정비 방안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협약의 시행에 필요

의정서에 한국은 2000년 12월 13일 서명을 한 후 계속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인 2014년 3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동년 7월 10일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였고, 동년 12월 현재 국회에서 위 비준동의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4. 7. 10.

1. 제안이유
이 의정서의 비준을 통하여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의 방지 및 퇴치,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함께 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 등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문 및 본문 20개조로 구성)
가. 이 의정서는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며(안 제1조), 의정서의 목적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의 방지 및 퇴치,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함께 피해자들의 보호 및 지원,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사국 간 협력의 증진에 있음(안 제2조).
나. 당사국은 인신매매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원을 보호하고(안 제6조),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지체 없이 그 사람의 송환을 촉진하고 수락함(안 제8조).
다. 당사국은 인신매매의 방지 및 퇴치, 재발방지를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조치를 수립함(안 제9조).

(2) 형법상 “인신매매죄” 신설 및 한계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2013. 4. 5.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다.

한 법률을 형법에 포함하는 안, 유사한 법률과 통합하여 전면 개정하는 안, 별도의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안이 그것이다. 형법에 포함하는 안은 협약 규정사항이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어려울 수 있다. 유사한 법률과 통합하는 안은 장단점을 모두 가진다. 협약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을 경우 다른 법률과 통폐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관련규정을 현재의 법체계에 일일이 포함시킬 경우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협약의 본래 목적이 희석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간편하게 입법할 수 있고, 법 제정 시 다른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법률상 저촉되는 경우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4.5.>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정된 “인신매매”죄 규정은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88]

• **인신매매에 대한 자세한 정의 규정이 없다는 점과 “매매”라는 행위유형만을 규정해 놓은 것이 오히려 인신매매의 범위를 좁힐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기 때문에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수준의 범위로 확대되지 못하며, 인신매매의 ‘매매’에 함몰되어 매매나 국외 이송한 행위만 범죄로 규정하고 의정서상의 모집, 운반, 은닉, 인수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피의자가 예측불가능 할 정도로 형법의 조항을 확대 해석을 할 수 없기에,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처벌한다”라는 규정 역시 문리적으로 해석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89]. 물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관한 정의 규정[90]을 따로

88) 이하의 내용은 김종철(2014),「신안염전노예, 형법개정 1주년 그리고 인신매매 관련 특별법의 필요성」, 인신매매관련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8-17면 참조

89) 부녀매매라 거래 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처럼 대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서 본죄의 성립여부는 매도인이 매매 당시 부녀자를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 여부 즉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험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402 판결).

9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형법에서 해석해 왔던 인신 '매매'의 정의 보다 훨씬 넓은 것이 사실이다. 비록 목적은 성매매 목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인계 받는 행위(수수), 모집, 이동, 은닉도 포함하여 인신매매 의정서의 태도와 부합한다. 또한 수단에 대해서는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의 지배를 요구하는 형법의 약취, 유인, 매매 보다는 그 뜻이 조금 더 넓다.

• **아동(18세 미만의 사람) 인신매매의 경우 형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동의 경우에는 팔레르모 의정서가 규정한 바와 같이 강제노동 등 착취의 목적으로 아동을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의 취약한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인신매매로 본다는 조항이 형법에는 없으며, 그 사람의 취약한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의도한 착취에 대해 동의를 하더라도 인신매매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조항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형법만으로는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규약의 국내법적 이행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위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억제·처벌을 위한 의정서」의 내용이 충분이 반영된 입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입법의 형태는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 규정과 예방과 처벌 조항 뿐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까지 포함하는 특별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방법과 인신매매에 관한 현행 형법 규정을 개정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하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인신매매에 관한 현행 형법 규정을 보완하는 해석기준을 마련하여 보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4) 인신매매에 관한 지표의 개발 필요성 - UNODC 인신매매 지표의 활용

앞서 실태조사 결과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이 "인신매매"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의 판단을 위하여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서 제시한 인신매매 지표를 통해 "인신매매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UNODC에서 제시한 지표는 일반, 아동, 성, 가족, 노동력 착취, 구걸 및 경범죄 등 6개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UNODC 는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및 인신매매의 예방이라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지표를 개발하였다. 위 지표는 특히 아동과 여성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한국에서도 팔레르모 의정서의 내용과 의미에 바탕을 둔 인신매매죄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인신매매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현재는 수사기관에서도 현행 형법상 인신매매죄에 대한 아무런 해석기준 및 해석례 조차 없어 위 인신매매죄의 적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설령 이것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수사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사의 진행이 판단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인신매매 지표를 수사시 활용하여 수사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신매매 여부가 판단되는 것을 줄여야 한다.**

5. 인권침해 문제와 제도개선 방향

1)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권리구제수단의 미비

앞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흥행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민들 중 53%에 달하는 이주민들이 언어 폭력의 경험이 있으며, 물리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70명으로 46.4%에 달했다. 그리고 55%에 해당하는 83명의 응답자가 (광의의)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 24명의 응답자(28.9%)가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받았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응답자도 4명이 있었다. 그 밖에도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개인 활동을 감시당한 경험이 있었고,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도 외출을 금지 당했으며,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게 제지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도 노동할 것을 강요당하거나 해고나 이탈에 대한 협박, 폐쇄 공간에 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자행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응답자의 대부분은 이러한 언어적·물리적·성적 폭행 및 심각한 인권침해을 당한 이후에도 그냥 참고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참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이 되는 것을 택하였다.**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이주민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된다.

폭력·협박·모욕·성폭행·성추행·성희롱·감금 등 외출금지·강요 등 앞서 나타난 인권침해는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 의하여 규정된 범죄이다. 위와 같은 **범죄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고소·근로감독관 등에 의한 고발 등이 이루어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한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가해자가 적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수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수사기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피해자 보호의지와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

다 절실하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권침해를 입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은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가해자 처벌 및 피해 구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심지어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소한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공연 이주노동자가 사실상 유흥접객원으로 있었다는 점이 밝혀져 피해를 적극적으로 고소한 공연 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 4장에서 검토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권리구제절차 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보장하고, 그 밖의 권리구제 수단을 간단히 검토하고자 한다.

2) 인권침해 피해 외국인의 체류자격 보장 및 세분화

인권침해를 입은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권리구제 및 가해자의 적정한 처벌을 위한 수사과정의 협력을 위하여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은 이주민의 안정적 체류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현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외국인에 관한 체류의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을 준용한다.

수사기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규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서 공개한 최근 3년간 E-6비자 소지 이주민의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G-1 체류자격을 부여한 사유별 발급 건수를 살펴보면, 성매매 피해자임을 이유로 G-1 비자를 발급한 사례는 최근 3년 간 단 2건으로 모두 2014년도에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91].

> 여성은 클럽에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손님접대를 하도록 했고 일을 하면서 주스 커미션은 20%씩 받았는데 한 달에 120포인트(1포인트당 2천원)를 채워야 주스커미션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이 없으면 포인트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를(주중 약 35만원, 주말 약 55만원) 해야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기획사 사장이 클럽 사장에게 이야기하여 여성을 자신의 집과 사무실에 오게 하였는데 7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했고 거부할 때마다 '필리핀에 돌려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폭행을 했다. 계속되는 성폭행으로 여성은 견디지 못하고 한 미군의 도움으로 업소를 빠져나온 후 부산에 있는 친구(초량) 집으로 왔다. 이후 경찰조사를 진행하였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비자만료가 되어 G-1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했고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여 체류기간 연장신청만 할 수 있었다(필리핀 여성 38세, 살림)[92].

따라서 위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위 체류에 관한 특례 규정은 비단 성매매 피해를 입은 경우 외에 성폭력 피해자, 각종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에도 필요하다.

한편 **현재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은 G-1비자이다. 이는 피해자 관련 비자가 아니라 기타비자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일을 할 수 없고 3개월 마다 체류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4장에서 살펴본 미국의 경우는 피해자의 유형에 따라 체류자격이 세분화되어 있고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피해자의 유형에 따라 체류자격의 세분화가 이루어 져야 하고 여기에 맡게 지원제도가 갖추어져한다.**

---

91) **<표 5-3> E-6 자격자의 G-1 체류자격 변경 현황**

[단위: 명(%)]

연도 / 사유	2011	2012	2013	2014
산재보상	2			1
질병사고	1			2
소송진행	6	1	-	-
체임중재	8	1	4	-
임신출산	2	-	-	2
성매매피해	-	-	-	2
난민신청	-	-	-	3
기타	2	-	1	-
합계	21	2	5	10

92) 위 사례는 성매매피해 여성의 인권을 지키고, 성산업으로 아픈 우리 사회를 살리고자 설립된 단체 "살림"에서 지원한 사례임.

3) 피해자의 생활보장 대책 마련 : 취업・생활・의료・교육의 보장

설령 권리구제 절차 동안 기타(G-1) 비자를 받아 체류하더라도 위 G-1 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유형의 비자에 해당하여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체류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권리구제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취업허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공개한 최근 3년간 E-6비자 소지 이주민에게 G-1 비자 발급 후 '체류자격 외활동'을 부여한 건수는 2010년부터 2013년도 사이에는 총 4건, 2014년도에는 1건에 불과한 바, 위 수치만 보더라도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기간 동안 아무런 생계유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제4장에서 검토한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조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인신매매 피해 외국인 및 그 가족과 범죄 피해 외국인 및 그 가족들에게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허가서가 발급될 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동반가족들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으며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이 인권침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인신매매의 피해를 입은 경우 포함) 기타(G-1) 유형의 비자 외의 새로운 유형의 비자를 발급하거나 위 기타(G-1) 유형의 비자 요건을 개선하여, 수사절차 및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 취업허가를 부여하고, ㉯ 취업이 어려운 경우 보완적으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수 있어 특히나 ㉰ 적정한 치료의 제공 및 기타 의료 보장이 필요**하다.

4) 가족결합 권리의 보장

공연 이주노동자의 경우 혼자서 한국에 입국하여 바로 공연장 또는 관광업소로 보내져 한국 내에 다른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권침해로 인한 수사 및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본국의 가족을 초청하여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결합에 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인권침해 피해자의 경우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혼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나 권리구제절차를 견뎌야 한다. 이는 인권침해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 과정으로 해석될 수 도 있다. 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이 과정을 견뎌낼 수 있기 위해서는 가족결합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5)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절차와 매뉴얼 마련

인권침해를 입은 이주민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고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서 이주민 당사자에게 사전에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예술흥행비자와 관련된 업무가 행정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행정부처 또한 불명확하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노동권의 침해 문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기타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인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협조를 통해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기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수사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이 개발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인신매매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구조를 이해하고,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규정[93]을 두고 있는 취지를 준수하여, 피해자가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도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피해자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지하면 안 된다.

이러한 과정은 팔레르모 의정서에서 요구한 3P, 즉 예방(Prevention), 보호(Protection), 인신매매 가해자의 기소(Prosecution)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9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Ⅵ.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인권실태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밝히고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현황을 분석한 후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기관방문 및 면접조사, 문헌조사 등을 통해 정책이 구현되는 방식과 과정, 역할 수행과정에서의 고충, 이주민에 대한 인권의식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파견업체의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모집과 계약과정,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여부 등을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문헌조사를 통해 일본과 미국의 예술흥행관련 비자 정책의 특성, 이주민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정책과 제도 등을 분석하였으며, 국내법제와 국제인권기준 및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공청회에서의 전문가의견 등을 통해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이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입국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이다. 한국으로의 입국과정은 누구에게나 유사한 절차와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과정에 개입하는 프로모터나 에이전시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입국비용에 대한 지불 방법에서 프로모터와 에이전시 등이 대납을 한 경우에는 정확한 입국비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장기간 이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특히 필리핀인들의 응답에서 많이 나타났다.

둘째, 근로계약서의 문제이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에서 필리핀인과 몽골인은 입국 전에 주로 작성하였으나 계약서를 본인이 교부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계약서상의 언어는 자국어로 정확하게 서술되어야 이해가 가능한데 필리핀인의 경우는 한국어와 영어로 되어있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영어가 서툰 사람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구조였다.

셋째, 근로계약서의 준수여부이다. 임금, 근무시간, 휴식시간 등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근무 업태와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시멘스클럽, 외국인전용클럽 등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계약서 상 원래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일과 근무지에서의 일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압류 문제이다. 이는 호텔과 놀이공원에서 근무하는 이주노

동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태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테마파크에서 공연하는 몽골인의 경우는 여권을 본인이 소지한 경우가 한 명도 없었다.

다섯째, 노동조건에 관한 문제이다. 실제적 노동조건과 계약서상의 차이를 보면 업태별 특이한 점이 나타난다. 단란주점, 외국인전용클럽, 시멘스클럽에서는 계약서상의 공연 횟수보다 훨씬 적은 횟수의 공연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연보다는 다른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임금관련 문제이다. 유흥업소에 주로 근무하는 필리핀인은 월평균 518,317원, 테마파크에서 공연하는 몽골인은 월평균 712,717원, 놀이공원에서 공연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인은 월평균 1,100,000원이었다. 필리핀과 몽골출신 이주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금지급 방법은 테마파크와 놀이공원에서 공연하는 이주민에게는 모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유흥업소에 주로 근무하는 필리핀 출신 이주민에게는 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제공하는 일의 유형과 강제노동이다.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외국인전용클럽, 시멘스클럽 등의 유흥업소에서는 주로 '노래'와 '고객과의 말벗과 춤을 추는 일'을 주로 제공하였는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제공한 서비스는 '고객과의 말벗과 춤을 추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랩댄스, 성매매, 출장데이트 등도 높게 나왔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된 이유는 근무지 사장의 강요가 제일 많았으며 저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한 경우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아동노동의 문제이다. 아동노동은 테마파크에서 공연하는 몽골출신 이주민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 공연하는 아동에 대한 교육, 보호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여덟째, 언어적 폭력에 대한 문제이다.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외국인전용클럽, 시멘스클럽 등에서 언어적 폭력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가해자들은 한국인 프로모터, 근무지 사장, 한국인 동료, 손님 등이었다. 언어적 폭력이 발생한 이유로는 '강요한 일을 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제일 많았으며, 여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일을 한 경우가 제일 많았다.

아홉째, 물리적 폭력이다.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제일 높게 나온 곳은 시멘스클럽이며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외국인전용클럽, 테마파크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나이트클

럽, 단란주점, 외국인전용클럽, 시멘스클럽 등에서는 근무지 사장 및 관리자, 손님들이었으며, 테마파크에서는 근무지사장 및 관리자와 외국인동료가 높게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는 '그냥 참고 일하는 경우'와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열 번째, 성폭력에 대한 문제이다. 성폭력에 대한 경험은 시멘스클럽, 나이트클럽, 외국인전용클럽, 단란주점, 카페·7080클럽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의 유형으로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행위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는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시멘스클럽 등에서는 근무지 사장, 손님, 한국인 프로모션 관리자들이었고, 외국인전용클럽에서는 근무지사장 및 관리자, 한국인 프로모터가 주된 가해자로 나타났다. 성폭력의 이유로는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와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대응으로는 '그냥 참고 일하는 경우'와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열한 번째, 휴식시간과 휴일의 감시와 노동강요 등에 관한 문제이다.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 등에 감시나 외출금지, 노동강요 등은 호텔공연장을 제외한 조사한 모든 유흥업소와 테마파크 등에서 발생하였다.

열두 번째, 건강권침해에 대한 문제이다. 테마파크와 놀이공원에서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의료시설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었으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이주민의 경우에는 대다수 건강보험 조차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의료문제가 심각하였다.

열세 번째,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숙소의 경우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이주민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욕실이 실내에 없는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사장의 숙소출입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식사문제는,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이주민의 경우에 근무지에서 제공하는 비율이 낮았으며, 식사시간도 불규칙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게 나왔다.

열네 번째, 인신매매 가능성에 대한 문제이다. 유엔마약범죄국(UNODC)의 인신매매 지표를 적용하여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신매매의 가능성을 검토했을 때 그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이주민의 경우 그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열다섯 번째, 예술흥행비자 소지 필리핀 이주민의 OEC 취득자와 미취득자 간에 인권침해 경험 차이여부이다. 분석결과 계약서상의 임금 미준수,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내용 미준수 , 언어적 폭력, 물리적 폭력, 성폭력 경험 등에서 OEC 미취득자가 취득자 보다 높게 나

왔다. 이는 OEC 미취득자가 인권침해를 더 많이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의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국제 인권기준 및 인신매매 등에 대한 규정, 지표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관련제도의 한계점 등을 분석하고 앞에서의 연구·검토가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였다. 이 결과 연구진에 의해 도출된 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표 6-1>과 같다.

문제 항목별 대응방안 외에 예술흥행비자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것은 예술흥행비자 소이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으로 생각된다. 현재 예술흥행비자제도는 예술·연예비자(E-6-1), 호텔·유흥비자(E-6-2), 운동비자(E-6-3)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예술흥행비자를 분류한 이유는 소위 '고급예술인'은 입국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흥업소 등에 종사하는 이주민은 관리와 통제의 목적으로 이렇게 분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분리기준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법무부는 E-6-2비자 소지 이주민의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위해 이렇게 분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권침해는 E-6-1비자의 경우 주로 테마파크 형식으로 운영되는 상설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이주민에게 주로 발생하였으며, E-6-2의 경우는 유흥업소 전반에 걸쳐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E-6-1비자는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며 E-6-2비자의 경우는 이미 제도 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실태조사 결과는 보여준다.

따라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특히 E-6-2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하여 유흥접객원으로 유입되는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연노동자로서의 정확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1999년 개정된 공연법에서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공연이 아닌 것으로 되었다. 이 결과 대다수의 공연 이주노동자들의 공연은 공연법상 공연이 아닌 것으로 되었다. 공연예술가들의 공연은 공연행위 그 자체로 공연인지 아닌지가 판단되어야 하나 지금의 공연법은 공연 행위 그 자체 보다는 공연예술가가 서는 무대에 따라 달라지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공연 이주동자들의 역할을 위법적으로 사용하는 여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공연법 상의 공연노동자라는 위치를 엄격하게 부여하는 것이 이들을 유흥접객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차단하는 첫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텔업 시설, 관광편의시설 등에서의 공연도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것이므로, 「공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연소자 공연, 외국인 공연 등 공연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공연법」상의 공연장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도 적용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생법」 상의 '유흥종업원'이 고용되어 있는 곳에서의 공연은 「공연법」 상의 공연에서 제외해야 한다.

<표 6-1>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개선책

문제영역	문제내용	개선방안
이주과정	입국비용에서의 차이 입국비용정보 미제공 입국비용 임금에서 장기간·초과공제	표준계약서 마련 계약서에 입국비용 명기
근로계약체결	근로계약서 미교부 정보제공 부정확 계약서작성시 언어문제	이주민의 표준계약서 확인절차 강화 영등위 제출서류 확인 강화
근로계약준수	임금·근무시간·휴식시간의 미준수 최저임금 미준수 근무업태와 근무형태 미준수 계약과 다른 일 강요 프로모션비 과다공제	1개월 이상 장기공연자의 경우근로기준법의 적용 프로모션비 상항선 마련(예 최저임금 보장) 근무지와 프로모션과의 계약서 체출 근로감독관의 점검 강화
아동노동	교육·근무시간·아동보호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주아동노동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
폭력문제	언어적 폭력, 물리적 폭력, 성폭력 등의 발생 빈도가 높음	입국 후 교육강화 피해자 구제절차 강화
감시·노동강요 문제	휴식시간이나 휴일에 감시·외출금지 비율 높음 휴일에 추가 노동 강요	근로감독관 점검 강화 피해자 구제절차 강화 피해자 체류자격 보장
건강권 문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산재보험·건강보험 미가입	산재보험·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서에 명기 공연장 안전기준 마련
생활환경문제	숙소의 안정성문제 불규칙한 식사시간	숙소·생활환경에 대한 최저 기준을 마련하여 표준계약서에 명기
인신매매의 가능성 피해자보호	UNODC의 인신매매 지표 적용 시 인신매매로 분류 가능성 있음	인신매매 지표개발 수사시 피해자에게 지표적용 피해자비자제도 세분화 피해자 가족 초청제도 신설 인신매매 관련법 재정비 피해자중심 권리구제절차·매뉴얼 마련
필리핀인에 대한 높은 인권침해 비율	OEC 취득자와 미취득자 간의 인권침해 경험 차이	영등위 공연추천 시 현장 확인 송출국대사관과의 협력관계구축

공연법을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모든 공연활동을 공연법에 의해 규율되도록 한 다음 공연예술비자를 단기공연비자와 장기공연비자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예술을

고급예술과 아닌 것의 구별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예술인들도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예술흥행비자를 예술·연예와 호텔·유흥으로 분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단기공연비자와 1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공연하는 장기공연비자로 나누는 것이다. 단기공연의 경우는 몇 차례의 공연만으로도 비용과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유명예술인들이 대다수이며 이들의 예술가로서의 경력 증명, 무대 확인 등은 간소하게 진행해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1개월 이상의 장기공연의 경우는 이들에 대한 분명한 경력이나 교육 증명을 제출 서류에 포함해야 하며 공연추천 시 공연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예술인 경력이나 교육 경험이 확실한 외국인만 초청하도록 해야 예술흥행비자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본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문제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권감수성과 민감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은 그 시행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에 예상되는 한계는 연구과정에서 발생했을 오차와 관련된 것으로 이는 연구결과의 일반화 문제와 직결된다. 본 연구에서의 오차는 주로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에 대한 조사 조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은 입국과정부터 근무지 배치까지 모두 초청하는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고, 특히 이들이 주로 근무하는 유흥업소의 특성상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요인이 매우 많았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확률표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며 불가피하게 비확률표집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지적한 한계는 본 연구가 지니는 본질적인 한계이며 차후에 진행될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주기를 기대해본다.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참고문헌>

국내문헌

고현웅・김재원・김동심・소라미(2006),「2006 외국인 연예인도입 실태조사 및 정책 비교연구」, 문화관광부・IOM국제이주기구.

국가인권위원회(2008),「예술흥행 사증 외국인 인권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13),「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인신매매 등에 의한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및「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김인애(2013), '필리핀 여성, E-6비자 그리고 인신매매: 조명을 찾아 검은 그늘로', www.apil.or.kr/1303

김종철(2014),「신안염전노예, 형법개정 1주년 그리고 인신매매 관련 특별법의 필요성」, 인신매매관련법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노동부(2003),「7개국 외국인력도입제도 비교」.

두레방(2003),「경기북부 기지촌지역 성매매 근절을 위한 피해여성 지원사업 보고회 자료집」.

두레방(2007),「2007년도 경기도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보고서」.

두레방・공감(2010),「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 내서」.

민주노총 외(2014),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전통예술단 및 조각가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살림(2011),「성산업 이주여성 인권침해 그 실태와 대책」,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동훈・한건수・정경숙・박수미・조진경・박혜정(2011),「외국인 여성 성매매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신윤진(2013),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기준과 외국사례에 비추어 본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이주여성 도입제도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국제인신매매범죄 처벌 및 피해 방지대책 세미나」, 법무연수원.

안태윤(2012),「경기도 기지촌 외국인 여성 성매매 피해 실태분석」, 경기도 북부청.

어진이・최민영(2012),「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2007), 이주와인권연구소 옮김,『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 NGO의 정책제언』, 산지니.

이수희・유태영(2008),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교육과정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분석',「한국가정과 교육 학회지」20(3), 107-129.

장미진・김규원・설동훈(2002) ,『외국연예인 국내취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한국문화정책개발원.

조희진(2013), '외국인여성 인신매매범죄 처벌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 예술흥행(E-6)비자 입국 여성 사례 중심으로',「국제 인신매매 범죄 처벌 및 피해 방지대책 세미나」, 법무연수원.

한국교회여성연합회(1999),「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2002),「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제2차 현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지촌에 유입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12),『아시아-태평양 지역 성매매관련 정책 및 실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한국"』.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4), 『조직범죄집단의 국제적 연계실태와 차단방안』.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외국문헌

鈴木伸枝(2009), 「フィリピン人の移動・ケア勞働・アイデンティティ――移動勞働政策・ジェンダー化・自己實現のはざまで」, 『言語文化硏究――特集：ケアと勞働－－移動する女性たち』20(4): 3-17.

佐竹眞明・メアリ・アンジェリ・ダアノイ(2006), 「フィリピン－日本國際結婚―移住と多文化共生」, めこん.

ドーン(DAWN)(2005),『フィリピン女性エンターテイナーの夢と現實―マニラ、そして東京に生きる』, 明石書店.

法務省入國管理局編(2005),『平成17年度　出入國管理』.

----------(2006),『平成18年度　出入國管理』.

----------(2007),『平成19年度　出入國管理』.

----------(2008),『平成20年度　出入國管理』.

----------(2009),『平成21年度　出入國管理』.

----------(2010),『平成22年度　出入國管理』.

----------(2011),『平成23年度　出入國管理』.

----------(2012),『平成24年度　出入國管理』.

----------(2013),『平成25年度　出入國管理』.

山谷哲夫(1985),『じゃぱゆきさん』情報センター出版局.

齋藤百合子(2013), 「日本における人身取引對策の批判的檢討―被害者認知と支援の課題」, 日本平和學會2013年度秋季硏究集會報告レジュメ.

犯罪對策閣僚會議(2009),「人身取引對策行動計畵2009」

Anderson, James N.,(1999), “Filipina Migrants to Japan: Entertainers, House Helpers, and Homemakers.” Pilipina 33:57-73.

Anti-Trafficking Network(2010), “Immigration Relief for Crime Victims: The U Visa Manual”

DHS Office of Immigration(2014), “DHS Office of Immigration Statistics”.

US-DOS(2004),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State.

Suzuki, Nobue(2008),“Between Two Shores: Transnational Projects and Filipina Wives in/from Japan.”David Blake Willis and Stephen Murphy-Shigematsu, eds., Transcultural Japan: At the Vorderlands of Race, Gender, and Identity. New York: Routledg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부록

<설문지> ····· 225
<유엔마약범죄국(UNODC)의 인신매매지표 한글번역> ····· 241
<영문요약> ····· 246

예술흥행(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 안에 있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에 예술흥행비자(E-6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는 예술흥행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민들의 취업과정, 노동조건, 생활환경, 인권침해 경험 등을 파악하여 앞으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설문에 응답하신 내용은 실태파악과 예술흥행분야의 이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에만 이용될 것이며, 당신의 답변은 익명으로 분석·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완전히 보장됩니다. 가능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www.humanrights.go.kr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금세기빌딩
전화) 02-2125-9936 팩스) 02-2125-0922

설문 응답 방법: 해당되는 번호나 빈칸에 √표를 하시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답을 써주십시오.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처음에 떠오른 생각을 적어주십시오.

조사자	조사장소	조사일시

A. 기본 인적 사

1. 당신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① 필리핀 ② 러시아 ③ 중국 ④ 몽골 ⑤ 우즈베키스탄
⑥ 키르기스탄 ⑦ 카자흐스탄 ⑧ 우크라이나 ⑨ 벨라루스 ⑩ 기타( )

2. 당신의 성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남성 ② 여성 ③ 기타

3.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4. 당신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 ) 년

5. 당신은 언제 처음 한국에 입국했습니까?

( ) 년

6. 당신은 한국에 E-6 비자로 몇 번 입국하였습니까?

1) 1차 (년 ~ 년)
2) 2차 (년 ~ 년) (☞**아래 박스로 가시오**)
3) 3차 (년 ~ 년) (☞**아래 박스로 가시오**)
4) 4차 (년 ~ 년) (☞**아래 박스로 가시오**)
5) 5차 이상(년 ~ 년) (☞**아래 박스로 가시오**)

6-1. 이 질문은 한국에 E-6비자로 두 번 이상 입국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당신이 한국에 E-6비자로 재입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② E-6비자가 다른 비자보다 취득하기 쉬워서
③ 노동조건이 마음에 들어서
④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예술흥행비자를 받기가 쉬워서
⑤ 본국의 에이전트에 속아서
⑥ 한국의 프로모터에게 속아서
⑦ 기타 ( )

7. 당신의 지금까지의 총 체류기간은 얼마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8. 한국에 연예 흥행 비자(E-6)로 입국할 때 당신이 받은 비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E-6-1 ② E-6-2
③ E-6-3 ④ 모르겠다
⑤ 기타 ( )

9.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E-6-1 ② E-6-2
③ E-7 ④ G-1
⑤ A-3 ⑥ 미등록(불법체류)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⑦ 기타 ( )

※ 박스안의 질문은 미등록 체류자(불법체류)만 답해주세요.

9-1. 당신은 언제 미등록(불법체류)이 되었습니까?
언제: ( ) 년

9-2. 미등록(불법체류)이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고르시오.
① 비자기간이 만료되어서
② 근무지를 이탈하여서
③ 약속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④ 약속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임금이 낮아서
⑤ 약속된 근무시간보다 길어서
⑥ 약속된 근무내용과 달라서
⑦ 언어폭력이 있어서
⑧ 신체적 폭력이 있어서
⑨ 성희롱이 있어서
⑩ 성폭력이 있어서
⑪ 기타 ( )

10.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① 가수 ② 무용수 ③ 공장노동자 ④ 농축산업 노동자 ⑤ 어업노동자
⑥ 음식점 종사자, 웨이트레스 ⑦ 가사관련 노동자(가정부) ⑧ 학원강사
⑨ 곡예사 ⑩ 악기연주자 ⑪ 기타 ( )

11. 당신은 한국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① 가수 ② 무용수 ③ 악기연주자 ④ 마술사 ⑤ 곡예사 ⑥ 연예예술관련 지망생
⑦ 농업 ⑧ 어업 ⑨ 제조업 ⑩ 자영업 ⑪ 주부 ⑫ 축산업 ⑬ 기타( )

B. 이주 과정

12. 당신은 한국에 오기 위한 주요 정보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① 가족 · 친척 ② 친구 ③ 아는 사람 ④ 본국의 에이전트 ⑤ 한국의 프로모터
⑤ 한국의 근무지 사장 또는 관련자 ⑥ 대중매체 ⑦ 인터넷 ⑧ 기타( )

13. 당신은 한국에 오기 위하여 오디션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② 아니오

※ 박스안의 질문은 오디션을 받은 사람만 답해주세요.

13-1. 오디션을 받도록 권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권유한 사람이 없이 자발적으로 찾아갔다 ② 가족친척 ③ 친구
④ 아는 사람 ⑤ 본국의 에이전트 ⑥ 한국의 프로모터
⑦ 한국의 근무지 사장 ⑨기타 ( )

13-2. 오디션은 다음 중 어느 것을 했습니까? 모두 고르시오.
① 노래 ② 연주 ③ 댄스 ④ 퍼레이드 ⑤마술 ⑥곡예
⑦ 야한 춤 ⑧ 야한 옷 입어보기(Wearing sexy costume)
⑨ 심사자가 내 몸을 만지기 ⑩ 기타 ( )

14. 당신은 한국에 오기 위한 경비는 얼마 입니까? 첫 번째 괄호 안에는 항공료, 여권 및 사증 발급비, 기타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해서 얼마인지를 적어주시고 두 번째 괄호 안에는 내역별로 지불한 비용을 써주세요.
지불한 비용:( ) ※ 화폐 단위도 함께 기재
지불 내역별 비용:( )

15. 위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① 내가(또는 가족이) 전액 지불했다
② 본국의 에이전트가 전액 지불 했다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③ 한국의 프로모터가 전액 지불 했다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④ 한국의 근무지 사장이 전액 지불했다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⑤ 나와 본국의 에이전트가 나누어 지불했다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⑥ 나와 한국의 프로모터가 나누어 지불했다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⑦ 나와 한국의 근무지 사장이 나누어 지불했다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⑧ 누가 지불했는지 모른다

※ 박스안의 질문은 한국에 오기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이 지불해 준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15-1. 에이전트, 프로모터 또는 근무지 사장이 지불한 경우 그 비용은 갚았습니까?
① 갚았다 ② 갚지 못했다

15-2. 그 비용을 갚은 경우 어떻게 갚았습니까?
① 월급을 받은 후 내가 지급하였다
② 월급에서 미리 공제하였다

16. 당신은 한국에 올 때 실명 여권을 사용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아래 박스로 가시오**)

16-1. 이 질문은 한국에 올 때 다른 이름으로 여권을 만든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당신이 다른 이름으로 여권을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고르시오
① 에이전트의 권유로 ②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③ 한국에 미등록(불법체류) 경험이 있어서 ④ 범죄경력이 있어서
⑤ 미성년자이므로 ⑥ 비용을 감축할 수 있어서 ⑦ 기타 ( )

17. **이 질문은 필리핀 사람만 답해주세요**. 당신은 OEC(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 해외취업사증)을 취득하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8. 당신은 한국에 입국할 때 비자 문제로 제3국 또는 다른 지역을 경유한 적이 있습니까? 경유하였다면 어느 나라를 경유하였습니까?
① 예(경유한 지역 또는 국가명:)
② 아니오

19. 당신이 예술흥행관련 일을 할 때 당신의 여권은 누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① 직접 가지고 있다
② 한국의 프로모터가 가지고 있다
③ 업소 매니저(또는 마마상)가 가지고 있다
④ 근무지 사장이 가지고 있다
⑤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⑥ 발급받지 않았다

20. 당신이 예술흥행관련 일을 할 때 당신의 외국인 등록증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① 직접 가지고 있다
② 에이전트 · 프로모터가 가지고 있다
③ 업소 매니저(또는 마마상)가 가지고 있다
④ 근무지 사장이 가지고 있다
⑤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
⑥ 발급받지 않았다

C. 근로계약과 노동조건

21. 당신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까?

① 예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② 아니오 ③ 모름

※ 박스안의 질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만 답해주세요.

21-1. 언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① 한국에 입국 전에만 하였다
② 한국에 입국 후에만 하였다
③ 한국에 입국 전에도 하고 입국 후 에도 하였다

21-2. 근로계약서는 어떤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까?

① 한국어 ② 자국어 ③ 영어

21-3. 당신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제공받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4.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다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아래 표의 해당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내용	알고 있었고 잘 지켜지고 있다	알고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모르고 있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었다
① 임금 수준				
② 근무 시간				
③ 휴일 및 휴식 시간				
④ 숙박 및 식사				
⑤ 업종 및 업무내용				
⑥ 업체명				
⑦ 업체가 있는 지역				

22. 다음은 당신이 예술흥행 관련 일을 할 때 일하고 있는 곳에서 받은 또는 받고 있는 한 달 평균 임금, 근무시간, 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표의 해당되는 곳에 실제 노동조건과 근로계약서 상의 노동조건을 적어주십시오. 근로계약서 상의 노동조건을 모르겠으면 "모른다"에 √표 하십시오.

노동조건		실제	근로계약서	모른다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이 없었다
① 월 평균 임금		원	원		
② 하루 평균 근무 시간	성수기(-)	시간	시간		
	비수기(-)	시간	시간		
③ 하루 평균 공연 횟수	성수기(-)	번	번		
	비수기(-)	번	번		
④ 월 평균 휴일		일	일		

23. 당신이 처음 맺은 근로계약기간은 얼마였습니까?

① 6개월 ② 1년 ③ 1년 6개월 ④ 2년 ⑤ 기타 ( ) ⑥ 모른다

24. 당신이 과거 또는 현재 예술흥행관련 일을 하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평균 몇 명입니까? 괄호 안에 한국인의 수와 외국인의 수를 각각 적어주십시오 (대규모 놀이공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응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한국인 성인(명) ※ 고용주 제외
② 외국인 성인(명) ※ 본인 포함
③ 외국인 미성년자(명)
④ 한국인 미성년자(명)

25. 당신이 과거 또는 현재 예술흥행관련 일을 하는 곳에서 당신의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① 임금 ② 손님에게 받는 팁 ③ 아르바이트 ④ 주스 쿼터제 ⑤ 성매매 ⑥ 기타

26. 당신에게 임금(팁 제외)을 직접 지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근무지 사장
② 본국의 에이전트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③ 한국의 프로모터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④ 임금을 받은 적 없음

26-1. 이 질문은 **본국의 에이전트 또는 한국의 프로모터로 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입국비용을 제외하고, 프로모터 또는 에이전트가 가져가는 금액(월급의 %)은 얼마입니까?

본국의 에이전트 : 월급의 (%)
한국의 프로모터 : 월급의 (%)

27. 당신이 과거 또는 현재 예술흥행관련 일을 하는 곳에서 당신은 매달 정해진 날에 임금을 받았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28. 당신은 임금(팁제외)을 어떤 형태로 지급받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주세요.

① 시간급 ② 일당 ③ 주급 ④ 2주마다 ⑤ 월급
⑥ 비정기 급여(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마다)
⑦ 계약기간 종료시 일시불로 지불 ⑧ 기타( )

29. 당신이 과거 또는 현재 예술흥행관련 일을 하는 곳에서 임금을 어떻게 지급받았습니까?

① 한국의 은행통장으로 받는다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②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은행통장으로 받는다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③ 현금으로 직접 받는다
④ 고용주가 본국으로 송금한다
⑤ 일부는 받고 일부는 고용주가 본국으로 송금한다.
⑥ 일부는 받고 일부는 강제 적립한다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⑤ 기타 ( )

※ 박스안의 질문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통장으로 받는 사람만 답해주세요.

29-1. 당신의 임금이 입금되는 은행통장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① 본인 ② 근무지 사장 ③ 파견업체
④ 모르겠다 ⑤ 기타 ( )
29-2. 당신은 통장에서 돈을 자유롭게 찾아 쓸 수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0. 당신은 임금을 지급받을 때, 임금의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나 증빙서를 받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1. 당신이 과거 또는 현재 예술흥행관련 일을 하는 곳에서 당신의 임금에서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공제되는 돈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명목	예	아니오	모르겠다
① 건강보험			
② 고용보험			
③ 국민연금			
④ 주민세, 갑근세 등 세금			
⑤ 숙박비			
⑥ 식대			

⑦ 근무지 사장이 부과한 벌금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⑧ 프로모터가 부과한 벌금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⑨ 기타 (퇴직금 등)			

※ 박스안의 질문은 고용주 또는 에이전트에 의해 벌금이 부과된 사람만 답해주세요.

31-1. 근무지 사장이 부과한 벌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 )

31-2. 프로모터가 부과한 벌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 )

32. 당신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② 없다

32-1. 이 질문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답해주세요. 당신의 체불임금 총액과 받지 못한 기간은 각각 얼마입니까?
( )만원 ( )개월

D. 예술 및 노동 활동

33. 당신이 현재 일하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대전광역시
⑥ 광주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시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⑯ 경상남도 ⑰ 제주도

34. 당신이 한국에서 지금 또는 과거 예술 · 연예흥행 관련 일을 하던 곳은 어디 입니까? 가장 주된 곳 하나만 고르시오.
① 전용공연장 ② 호텔공연장 ③ 관광업소공연장 ④ 놀이공원 ⑤ 나이트클럽
⑥ 레스토랑 ⑦ 카페 ⑧ 7080클럽 ⑨ 유람선 ⑩ 룸살롱 ⑪ 단란주점
⑫ 외국인전용클럽 ⑬ 시멘스클럽(seaman's club) ⑭ 기타( )

35. 당신이 한국에서 지금 또는 과거 예술 · 연예흥행 관련 일을 하던 곳에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쇼와 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노래 ② 댄스 ③ 퍼레이드 ④ 뮤지컬 ⑤ 악기연주 ⑥ 마술 ⑦ 곡예
⑧ 야한 춤 ⑨ 고객의 말벗 또는 같이 춤을 춤(주스 · 음료 · 주류 판매)
⑩ 고객의 무릎에 앉는 랩댄스(lap dance) ⑪ 성매매 ⑫ 출장 데이트(lunch date)
⑬ 기타 ( )

36. 한국에서 지금 또는 과거 예술 · 연예흥행 관련 일을 하던 곳에서 **당신이** 손님에게 제공하는 쇼와 서비스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노래 ② 댄스 ③ 퍼이드 ④ 뮤지컬 ⑤ 악기연주 ⑥ 마술 ⑦ 곡예
⑧ 야한 춤 ⑨ 고객의 말벗 또는 같이 춤을 춤(주스 · 음료 · 주류 판매)
⑩ 고객의 무릎에 앉는 랩댄스(lap dance) ⑪ 성매매 ⑫ 출장 데이트(lunch date)
⑬ 기타 ( ) ⑭ 해당사항이 없다

37. 한국에서 과거 또는 현재 예술흥행관련 일을 하는 곳에서 당신이 원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쇼와 서비스를 모두 고르시오.

① 노래 ② 댄스 ③ 퍼레이드 ④ 뮤지컬 ⑤ 악기연주 ⑥ 마술 ⑦ 곡예
⑧ 호객 행위(길거리에 나가서 손님한테 업소에 오라고 하는 것) ⑨ 야한 춤
⑩ 고객의 말벗 또는 같이 춤을 춤(주스 · 음료 · 주류 판매)
⑪ 고객의 무릎에 앉는 랩댄스(lap dance) ⑫ 성매매 ⑬ 출장 데이트(lunch date)
⑭ 기타 ( ) ⑮ 해당사항이 없다

38. 이 질문은 원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쇼와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 답해주세요. 당신이 쇼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근무지 사장이 강요해서
② 근무지 사장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③ 프로모터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④ 근무지 사장이 약속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해서
⑤ 프로모터가 약속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해서
⑥ 소득을 더 얻기 위해서 ⑦ 시간이 많이 남아서 ⑧ 기타( )

39. 당신은 한국에서 근무지를 옮긴 적이 있습니까?

① 예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② 아니오

39-1. 이 질문은 한국에서 근무지를 옮긴 적이 있는 사람만 답해주세요. 당신이 근무지를 옮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① 임금 수준이 낮아서
② 임금을 못 받아서
③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
④ 약속된 근무내용과 달라서
⑤ 직장매니저의 일방적 결정
⑥ 에이전트 또는 프로모터의 일방적 결정
⑦ 업소 주인의 폭언, 폭력, 협박 등
⑧ 직장매니저의 폭언, 폭력, 협박 등
⑨ 자유가 없어서
⑩ 주스할당량을 못 채워서
⑪ 성매매를 강요해서
⑫ 폐업 ⑬ 기타( )

40. 당신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할 경우, 본국에 있는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본국의 에이전트가 협박
② 한국의 에이전트 또는 프로모터가 협박
③ 근무지 사장이 협박
④ 직장매니저가 협박
⑤ 협박 받은 적이 없다

E. 인권실태

41. 당신은 일하는 곳에서 욕설이나 폭언 및 협박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② 아니오

※ 박스안의 질문은 일하는 곳에서 욕설이나 폭언 및 협박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41-1. 누가 당신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시오)

① 한국 프로모션 관리자　　② 일하는 근무지 사장이나 관리자
③ 직장의 한국인 노동자　　④ 직장의 외국인 노동자
⑤ 손님　　⑥기타 (　　)

41-2. 당신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시오)

①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② 일을 잘 못해서
③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④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
⑤ 외국인이라서　　⑥ 내가 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서
⑦ 잘 모르겠다　　⑧ 기타 (　　)

41-3. 당신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시오)

① 그냥 참았다
② 말로 항의했다　　③ 같이 욕설과 폭언을 했다
④ 집단적으로 항의했다　　⑤ 한국 프로모션에 항의했다
⑥ 일하는 업체에 항의했다　　⑦ 경찰에 신고했다
⑧ 인권단체에 알리고 상담했다　　⑨ 직장에서 도망갔다
⑩ 기타 (　　)

41-4. 당신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시오)

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일했다　　②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
③ 다른 직장으로 동의 없이 이동되었다　　④ 더 큰 폭언, 폭행을 당했다
⑤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불법체류)이 되었다　　⑥ 기타 (　　)

42. 당신은 일하는 곳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아래 박스로 가시오**)　　② 아니오

※ 박스안의 질문은 일하는 곳에서 욕설이나 폭언 및 협박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42-1. 누가 당신을 폭행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시오)

① 한국 프로모션 관리자　　② 일하는 근무지 사장이나 관리자
③ 직장의 한국인 노동자　　④ 직장의 외국인 노동자
⑤ 손님　　⑥ 기타 (　　)

42-2. 당신을 폭행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시오)

①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② 일을 잘 못해서
③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④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
⑤ 외국인이라서　　⑥ 내가 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서
⑦ 잘 모르겠다　　⑧ 기타 (　　)

42-3. 당신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시오)

① 그냥 참았다
② 말로 항의했다
③ 같이 욕설과 폭언을 했다
④ 집단적으로 항의했다
⑤ 한국 프로모션에 항의했다
⑥ 일하는 업체에 항의했다
⑦ 경찰에 신고했다
⑧ 인권단체에 알리고 상담했다
⑨ 직장에서 도망갔다
⑩ 기타 (　　)

42-4. 당신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시오)

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일했다
②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
③ 다른 직장으로 동의 없이 이동되었다
④ 더 큰 폭언, 폭행을 당했다
⑤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불법체류)이 되었다.
⑥ 기타 (　　)

43. 다음은 성폭력의 유형을 정리한 표입니다. 당신은 한국 직장에서 일하면서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아래와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에 √표 하십시오.

항목	예	아니오
① 성적인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② 억지로 술을 권유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보여주는 행위		
④ 상대방이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⑤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 행위		
⑥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⑦ 가슴, 엉덩이, 성기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⑧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⑨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요구하는 행위		
⑩ 성폭행(강간) 행위		

※ 박스안의 질문은 위 질문에서 하나라도 “예”에 √표를 한 사람만 답하십시오.

43-1. 누가 위와 같은 일을 당신에게 했습니까?(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시오)

① 한국 프로모션 관리자 ② 일하는 근무지 사장이나 관리자
③ 직장의 한국인 노동자 ④ 직장의 외국인 노동자
⑤ 손님 ⑥ 기타 ( )

43-2. 당신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시오)

①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 ② 일을 잘 못해서
③ 강요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④ 고객이 만족하지 않아서
⑤ 외국인이라서 ⑥ 내가 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서
⑦ 잘 모르겠다 ⑧ 기타 ( )

43-3. 당신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시오)

① 그냥 참았다
② 말로 항의했다 ③ 같이 욕설과 폭언을 했다
④ 집단적으로 항의했다 ⑤ 한국 프로모션에 항의했다
⑥ 일하는 업체에 항의했다 ⑦ 경찰에 신고했다
⑧ 인권단체에 알리고 상담했다 ⑨ 직장에서 도망갔다
⑩ 기타 ( )

43-4. 당신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시오)

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일했다 ②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았다
③ 다른 직장으로 동의 없이 이동되었다 ④ 더 큰 폭언, 폭행을 당했다
⑤ 업체에서 나와 미등록(불법체류)이 되었다 ⑥ 기타 ( )

44. 당신은 한국의 업체에서 일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각 항목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 에 √표 하십시오.

항목	예	아니오
①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강제로 노동을 강요당했다		
②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외출을 금지 당했다		
③ 업무 시간이 아닌 시간이나 휴일에 개인적인 활동들을 감시당했다		
④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당했다.		
⑤ 강제로 업무지를 이동시키겠다고 협박을 당했다.		
⑥ 해고나 이탈신고에 대한 협박을 당했다.		
⑦ 약물 복용을 강요당했다.		
⑧ 폐쇄된 공간에 감금당했다.		

F. 산업재해 및 의료

45. 당신이 과거 또는 현재 예술흥행관련 일하는 곳에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다

46. 당신은 한국에 입국 한 후 직장에서 아프거나 다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7. 당신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8. 이 질문은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는 경우에만 답해주세요. 당신이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번호에 모두 √표 하십시오.
①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어떻게 가야하는지 몰라서
②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③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④ 고용주가 보내주지 않아서
⑤ 병원에 가도 의사소통이 안 될 것 같아서
⑥ 건강보험이 없어서
⑦ 강제출국의 우려가 있어서
⑧ 기타 (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KOR

49. 당신은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게 되었을 때 치료비는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

①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②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③ 고용주가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④ 고용주가 돈을 내고 급여에서 공제했다.
⑤ 친구나 아는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치료를 받았다
⑥ 기타 ( )
⑦ 해당사항 없음

G. 생활환경

50. 다음은 당신이 과거 또는 현재 예술흥행관련 일을 하는 곳에서의 숙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 에 √표 하십시오.

항목	예	아니오
① 욕실이나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실내에 있다		
② 욕실이나 씻을 수 있는 시설에 따뜻한 물이 나온다		
③ 화장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		
④ 부엌이나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		
⑤ 세탁기가 있다		
⑥ 난방시설이 있다		
⑦ 햇볕이 들어오고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창문이 있다		
⑧ 모기나 다른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모기장, 방충망 등이 있다		
⑨ 욕실과 침실에 안전한 잠금장치가 있다		
⑩ 외부로 출입을 통제하는 감금장치가 있다		
⑪ 남자와 여자의 숙소가 분리되어 있다		
⑫ 숙소에 근무지 사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든다		

51. 당신이 과거 또는 현재 예술흥행관련 일을 하는 곳에서의 식사해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에 √표 하십시오.

항목	예	아니오
① 근무지에서 식사를 제공 받는다		
② 근무지에서 식재료를 제공 받아 직접 요리해서 먹는다		
③ 근무지 사장에게 식비를 받는다		
④ 본인의 돈으로 해결한다		
⑤ 친한 손님에게 사달라고 한다		
⑥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다		
⑦ 식사 시간이 충분하다		
⑧ 음식의 양이 충분하다		
⑨ 음식이 입맛에 맞는다		
⑩ 음식재료와 조리과정이 위생적이다		
⑪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⑫ 기타( )		

52. 마지막으로 이 설문지에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당신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불편함, 불만 등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또, 앞으로 E-6 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유엔마약범죄국(UNODC)의 HUMAN TRAFFICKING INDICATORS

1. 인신매매의 일반적 지표

- 자신의 의지에 반하면서 노동의무가 있다는 믿음
- 노동환경에서 떠날 수 없는 상황
- 떠날 수 없다는 느낌
- 공포감 또는 근심 징후
-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구성원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폭력 또는 폭력 위협조건 상황
- 폭행의 결과로 나타난 상해 고통
- 일정 직업상의 손상 혹은 통제수단으로 받은 상해 고통
- 통제수단의 적용 결과 발생한 상해 고통
- 당국의 불신임 상황
- 당국에 이송된 이후 위협 상황
- 이주 지위 폭로에 대한 두려움
- 여권 또는 여행문서 또는 신분증의 박탈(인신매매 관련자의 보관)
- 위조 신분증 또는 위조 여행증명서
- 착취하는 사람과 지방기관의 연계 혹은 연대
- 익숙지 못한 지역 언어
- 집주소와 작업장 주소를 모르는 경우
- 주소를 직접 자신이 제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말하는 경우
- 어떤 사람의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
- 일정 조건 하에서 강제 노동하는 경우
- 처벌을 통해 훈련된 행동
- 노동조건에 대한 협상을 못하는 경우
- 임금을 적게 받거나 혹은 못 받는 경우
- 수입에 대해 접근을 못하는 경우
- 오랜 기간 극단적으로 장시간 노동 상황
- 휴일이 없는 경우
- 빈곤하게 사는 경우 또는 표준 이하의 숙박시설
-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제한되거나 또는 사회적 상호관계가 차단 된 경우
- 가족 또는 외부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되는 경우
- 자유롭게 제3자와 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
- 부채에 의해 올가미에 걸려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는 경우
- 종속적 지위
- 인신매매의 원천으로 알려진 장소로부터 온 사람

- 정착국까지 운송에 관련된 제비용이 든 사람(노동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비용을 갚아야만 함)
- 거짓 약속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행위

2. 미성년 인신매매 지표

- 부모 또는 보호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협박당하는 모습과 전형적인 어린이 연령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
- 작업장 외부에서 자신의 연령에 준하는 친구가 없는 경우
- 교육기관에 대한 접근이 없는 경우
- 놀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
- 기타 어린이들과 떨어져서 살고 있으며 표준 이하의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가족' 구성원과 별도로 식사하는 경우
- 남은 밥을 먹는 경우
-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을 종사하는 경우
-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여행을 하는 경우
- 친인척이 아닌 사람들과 그룹 여행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 어린이 인신매매로 추정 가능하다고 판단됨:
- 손 일 또는 섹스노동을 위해 전형적인 어린이 사이즈 의복을 입고 출현하는 경우
- 집창촌이나 공장에서 부적절한 장난감, 잠옷, 어린이 의복을 입고 출현하는 경우
- 동행자가 없는 어린이를 찾았다고 성인이 주장하는 경우
- 콜택시를 위해 전화번호를 걸면서 동행자가 없는 어린이를 찾았다고 하는 경우
- 불법 입양과 관련된 사례를 발표하는 경우

3. 인신매매의 가정 내 노예상황 지표

- 어떤 가정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 가정의 구성원과 함께 식사를 못하는 경우
- 사적 공간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
- 공유 공간 혹은 비적절한 공간에서 수면을 취하는 경우
- 고용주의 집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고용주가 실종신고를 한 경우
- 사회적 이유를 근거로 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적거나 또는 없는 경우
- 고용주 없이 외출할 수 없는 경우
- 남겨진 음식물을 먹어야만 하는 경우
- 모욕, 폭력 남용, 위협 또는 폭력에 처한 경우

4. 인신매매의 성적착취 지표

- 장소와 시장에 따라 연령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령
- 한 집창촌에서 다른 집창촌 또는 기타 장소에서 노동으로 이동하는 경우
- 작업장과 기타 외부 활동을 할 때마다 같이 동반하는 에스코트 업무 행위
- 착취자의 '소유물'이라는 문신 또는 징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장시간 노동 또는 휴일이 매우 적은 경우
- 작업장에서 잠자는 경우
- 그룹 내에서 거주하거나 또는 여행하는 경우(때대로 동일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여성과 함께)
- 매우 적은 아이템의 의복만을 소유하는 경우
- 섹스노동에 적합한 주로 전형적인 의복만을 소유하는 경우
- 섹스 관련 단어만을 해당 지역 언어로 구사하거나 또는 고객 그룹의 언어에서 섹스 관련 단어만을 구성하는 경우
- 자신 명의로 현금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 성적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추정 가능하다고 판단됨:
- 무방비 섹스나 혹은/그리고 성폭력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무방비 섹스나 혹은/그리고 성폭력을 거절할 수 없는 피해자로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통제 하에서 여성의 그룹에 속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 특별한 민족 또는 국적 여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한 장소 또는 집창촌을 위해 광고하는 경우
- 성매매 자들이 특별한 민족 또는 국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의 보도를 하는 경우

5. 인신매매의 노동력 착취 지표

- 작업하거나 구내에서 드물게 외출할 수 있는 동일 공간에서 그룹 내 거주
- 노후하고 비적절한 장소의 농장 혹은 공장에서 거주
- 작업장에서 적절하지 못한 작업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보호 장비 혹은 방한복 부재 등
- 남겨진 음식물을 먹어야만 하는 경우
- 수입에 대해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노동계약이 없는 경우
- 과도한 장시간 노동의 경우
- 작업, 운송 및 숙박을 포함한 수많은 서비스에 대한 고용주와의 종속관계 상황

- 숙소의 선택 가능성 부재의 경우
- 고용주 없이 노동 구역 내 외출이 불가능한 경우
- 벌금을 통해 징계 받는 경우
- 자유롭게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노동구역 내 출입금지로 인한 보안 조처가 있는 경우
- 모욕, 폭력 남용, 위협 또는 폭력에 처한 경우
- 주요한 트레이닝 및 전문 라이센스 부족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추정 가능하다고 판단됨:
- 해당 지역 언어보다 기타 언어로 공지하는 경우
- 건강 및 안전 공지사항이 부재하는 경우
- 고용주 또는 매니저가 다른 나라로부터 온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문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고용주 또는 매니저가 노동자에게 지불한 임금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건강 및 안전장비의 품질이 조악하거나 혹은 없는 경우
- 장비가 고의적 또는 변형되어 어린이들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경우
-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노동자들이 장비, 음식, 숙소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는 사실의 증명 또는 이 비용들을 임금으로부터 공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성매매 자들이 고객에게 웃지 않는다고 보도하는 경우

6. 인신매매의 구걸 및 경범죄 지표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주자들을 공공장소와 공공 교통수단에서 구걸하는 경우
- 어린이들에 불법마약을 운반하거나 또는/그리고 불법마약을 판매하는 경우
- 수족 절단으로 눈에 보이는 육체적 상해의 경우
- 몇 명의 성인들과 함께 움직이는 동일 민족 또는 국적의 어린이들
- 동일 민족 또는 국적의 성인에 의해 찾았다는 동반자가 없는 어린이들
- 공공 교통수단으로 여행하면서 그룹 내 이동, 예를 들면 기차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 조직범죄갱단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동일한 성인 보호자를 가진 대규모 어린이 그룹의 일부
- 충분하게 돈을 수집하지 못하거나 혹은 훔치지 못한 경우에 벌을 받는 경우
- 갱 조직원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갱 조직원과 정착국으로 함께 여행하는 경우
- 부모가 아닌 성인들과 함께 갱 조직원으로 사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매일 대규모 그룹이 상당한 거리로 이동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 구걸 및 경범죄 목적의 인신매매로 추정 가능하다고 판단됨:
- 새로운 형태의 갱 관련 범죄로 출현하는 경우
- 수많은 나라들을 거쳐 오랜 기간 이동했다는 혐의 피해자의 그룹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 다른 나라에서 구걸 또는 경범죄를 행했다는 혐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Report on survey of the human rights of entertainment visa holding migrants in Korea

1. Study Overview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ystematic conditions of human rights abuse against the migrants with entertainment visa (E-6) in Korea, and to seek both short and long term policy agenda for the improvement of their human rights condition. This study thus attempts to analyze such phenomena of the social complexity through an analysis of preceding research studies, questionnaire, in-depth interview with foreign entertainers, survey of the promotions and the state agencies, and expert opinion survey.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esent status of the migrants, the research studies and a gathering of expert opinion were conducted in the first order. This was to design the appropriate questionnaire. As it was difficult to access to the migrants, the snowball sampling, a non-probability sampling technique, was used as a methodology of this survey.

The research subjects are both E-6-1 visa holders and E-6-2 visa holders. The focus of this survey is the entertainers working in the theme parks where the human rights of these migrants are often violated, as compared with the E-6-2 visa holders from all types of establishments.

151 questionnaires, out of 156 questionnaires, found to be valid. The interviewers conducted the in-depth interview with 22 interviewees in order to supplement the limits of quantitative analysis. The interview with the state agencies helped highlight the difficulties they face dealing with the foreign entertainers, including the employment and the integration. A group of researchers also assess the entertainment visa policies of Japan and the U.S., and made suggestions to improve the system.

2. Entertainment visa policy and its current state

Domestic influx of foreign entertainers has started since 1960s under the state-permit system. In 1999, the system was eased into individual report system that enables the increase of influx of the foreign entertainers and the local businesses who need them. The number of the foreign entertainers who entered Korea in 2001 peaked up to 8,586. As of 2013, 4,368 are reported to stay. By nationality, Filipino has been the largest number since 2004 surpassing those from the former soviet countries who were th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biggest number by 2003. As of December in 2013, the entertainers from the Philippines amount to 60 % (2,609 out of 4,368 entertainers with E-6). In fact, these foreign entertainers have been made to work as hostesses as opposed to the purpose of their entry visa, which is accompanied by problems such as human rights abuses, forced prostitution, etc. This resulted in The US Department's Trafficking in Persons (TIP) Report in 2001 ranking Korea as a Tier 3 country. This in turn led to crackdown on entertainment visa process and foreign entertainment businesses, and suspension of visa issuance for the dancers.

In the meantime, E-6 visa category was suggested to departmentalize into specific categories: E-6-1 for art and entertainment; E-6-2 for hotel and entertainment; and E-6-3 for sports and game. It came into effect since 2004. As such, the high-profile artists are issued E-6-1 category visa with more advantages in terms of immigration procedure, whereas the others are granted E-6-2 put under the control and supervision.

The entry process for the migrants with both E-6-1 and E-6-2 visas has a lot in common. Mainly, it takes the recommendation of Korea Media Rating Board as well as the issue of visa from the embassies or consulates. When the E-6-1 visa holders and their employers sign the contracts after the local audition, for E-6-2 visa, both the local agency and Korean company is involved with the contract. While the former performs at the very place where the employers invited them for, the latter works or performs at any workplace where the Korean agency has contract with. This is to say that the E-6-1 visa holders are more likely to remain residents of their workplaces as opposed to the high likelihood of deployment for the E-6-2 visa holders. In addition, the E-6-1 visa holders work in the auditorium for art performance, whereas those with E-6-2 visa are more likely to work at the entertainment establishes accompanying food service and commercial.

Despite some changes of the entertainment visa policy, human rights abuse has continued. A number of reports on human rights abuse against the E-6-1 visa holders performing in the theme parks has been intermittently revealed by civil organizations, while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abuses against E-6-2 visa holders have been consistently raised through the advocate groups. In many cases, the migrant entertainers experience the violation of their labor contracts and a wide range of human rights abuse. The E-6-2 visa entertainers, in particular, have been subjected to the forced prostitution and labor that are not allowed according to their labor contract and legal status.

It would be fair to point out the fact that the state institutions such as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Media Rating Board, Ministry of Labor, local

governments, National Police Agency, who play major roles in entertainment visa policy and its practice, are largely dispersed, and the cooperation has not been well practiced. Though their roles are fixed from agency to agency, there is no consistent and comprehensive policy, which leads to the failure of cooperation and accountability between the agencies. This is thus to say that the systematic procedures have failed to address the problems with respect to the migrant entertainers in Korea. This has been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cause runaway of the entertainers. In fact, 11.6 % to 12.3 % of the migrants stay undocumented in Korea from 2011 to 2013, while the migrants with entertainment visa make up 30.4 percent to 34.1 percent, which is quiet high.

3. Analysis of survey result

1) Recruitment and more details

(1) Recruitment of non-entertainers and minors

Except for few entertainers in the theme parks, most of the migrants with entertainment visa appear to be non-entertainers in their own countries. 36.2% of the Filipino entertainers and 80% of the Mongolian entertainers who enter Korea are found to be not involved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back in their countries of origin. While the Mongolian entertainers tend to work in the theme parks (80%), the Filipino migrants, who have no work experience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in the past, are most likely to work in the cafes or 7080 clubs(57.1%)and these a man's clubs(46.2%), followed by the karaoke bars(37.5%), the night clubs(35.4%), the foreigners' clubs(33.3%), and the hotels(25%).

As for the Mongolian migrants, 8 out of 15 respondents have entered Korea and started working when they were still minors. Proportionally, in this case, the percentage of Mongolians (53.3%) is higher than that of Filipinos [(4.3 %), 5 out of 114]. As the minors cannot enjoy their basic rights such as the lack of education and care, there needs to be more care and support at the state level.

(2) Job information and labor contract

Most of the migrant entertainers responded that they learned about entertainment jobs in Korea through their friends and acquaintances. As for the Filipinos and Mongolian migrant entertainers, their acquaintances mostly introduce them to local agencies or managers. For the migrant women from Russia, Uzbekistan, and Ukraine, they ar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informed by their own senior students or friends who have the experience of working at theme parks as entertainers in Korea.

While Korean promoters and local agencies arrange for passport or visa applications, or both, as well as demo productions for Filipino migrants, the managers are the ones who visit the country and hire entertainers for theme parks through auditions. Either It is that the owners of the promotion agencies and the managers of the theme parks sign the contract after auditions, or the candidates who pass the criteria of selection, after sending their demo tapes, sign the contract with the promotion agencies. Few would make contract with a whole show program, rather than with individual performers.

(3) Charge of entry and reimbursement of entry expense

In the case of the women from Russia, Uzbekistan, and Ukraine at theme parks, the entry fee is covered by the promotion agency. The average of entry charge costs around 1,010,306 won for Philippine migrants and the maximum costs was 4,800,000 won, Also, one Mongolian respondents indicated their average entry charge would be 2,647,000 won., and the maximum costs was 5 million won.

The problem is that the entry fees for both Philippine and Mongolian migrants that their agencies and promoters covered are deducted from their salaries, while working in Korea. For instance, 84.5% of Philippine migrants didn't pay at all, and 85.4% of the total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had to compensate for the entry fee expense. 81% of respondents who had to refund the entry fee said that entry fee was already deducted from salary. Most of the cases indicated that the migrants did not receive any salary for 1~3 months with the justification that their salaries were used as deductions for the entry expense. These deductions generally occur without the women knowing beforehand the details of the entry cost.

(4) Issuance of OEC (Overseas Employment Certificate) and entry process

55.4 % of respondents(62 out of 112) stated that they did not receive OEC that is technically necessary for overseas employment. In terms of the business types, foreigners' club (71.4%) and nightclub (66.6%) are the places where migrant women are not required to obtain OEC.

There are three types of entry process by violating the official process of issuing OEC: OEC is issued when local agency has close ties with officials from Philipp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 (POEA); when officials at airport in close tie with local agency let migrants pass the inspection without OEC; when OEC label is taken off

upon departure in the Philippines and is sealed upon again upon arriving in Korea after stopover in other countries.

2) Labor contract and labor conditions

(1) Agreement in contract

Among the migrant entertainers, 96.7 %(145 out of 150) responded to have signed the contracts. Interestingly enough, 11.6 %(13 out or 112) of the Philippine migrants have signed the contracts after arriving in Korea, and 8.9 % of Philippine and 21.4 % of the Mongolian migrants appear to make the contracts both before departure and after arrival. In case of the Russian migrants, the contents of two contracts before and after arriving in Korea are reported to be the same.

23.9 % of Philippine migrants(26 out of 109) have contract papers written only in Korea, which they cannot understand. Even though there are 77 % of the respondents who have English contract papers, they do not understand them due to their lack of English proficiency. Moreover, there are some who are not allowed to read their own labor contracts and whose signature was inscribed in advance.

Most of the Mongolian migrants and migrants from Russia, Uzbekistan, and Ukraine working in the theme parks tend to have contract in their own languages, whereas two of the theme park entertainers responded that their contract was written in Korean.

On the other hand, 68.7%(77 out of 120) of Filipino migrants and 61.5%(8 out of 13) of Mongolians are reported not having obtained contract papers. In terms of business type, it is mostly the cafes or 7080 clubs (83.3%), the nightclubs (77.3%), the seaman's clubs (76.9%) where most of women are unable to obtain their contract papers.

(2) Labor conditions and contract compliance

Regarding the wages, the working hours, the off days, and the job descriptions, the contracts and real conditions are found to be strikingly different. As for the wages, 50.4%(65 out of 129) of total number of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 payment of wages is not well followed. By business types, nightclubs promise 1,095,625 won in the contracts and pay 551,613 won in reality. In case of seaman's clubs, the real wages are around 730,000 won, rather than 1,266,667 won on average in the contracts, In case of the karaoke, according to the contracts, 1,1 million won is the average amount of wages. Yet, the real wages are in average 575,000 won. Further, some contracts indicated the lower wages than the minimum wages. For example, the entertainers for the cafes or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7080 clubs agreed with the average amount of 730,000 won and received 441,666 won; as for the theme parks, 880,000 won according to the contracts, and 712,717 won in reality.

One of the reasons with respect to the decreasing wages is that the promotions deprive the deducted amount of the migrants' salaries. The average 53% of the salaries are taken by the promotions. The highest deduction rate is 80% of a monthly salary. In case of one Filipina migrant who used to receive 600,000 won per month, It is not until she was told that her business owner pay 1,3 million won per month to the promotion when she was made aware that 700,000 won is taken by the promotion.

49.6%(64 out of 129) responded that contractual provisions on their working hours are often broken. Though all of the employment sites conform to less than 8 hours, it is more than 8 hours in actuality. In particular, seaman's clubs have the longest working hours (the average of 12 hours), with 10.22 hours in the theme parks. Some responses indicated that employees in the cafes or 7080 clubs work for 15 hours per day. In the theme parks, the average is 8 hours, which can exceed to 12 hours on some occasions. Other working sites do not grant migrant entertainers any of overtime allowances.

As for the day offs, 45.0%(58 out of 129) of the total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are not complied. Some stated that the day offs were promised 4.1 times a month on average, which is once a week. However, the real numbers revealed that 2.2 days a month, with some responding none of day offs. The least day offs are once a month in the cafes or 7080 clubs, along with 1.4 days a month in the nightclubs and 1.6 days a month in the seaman's clubs.

Answering the question as to if the contents of contract are the same as in reality, 27.9%(36 out of 129) complained that the contracts are not complied. While hotel stages and theme parks produced a positive feedback on the contract compliances, seaman's clubs (69.3%) and foreigners' clubs (40.0%) are the ones where the contracts do not correspond to the duties of work. Both migrants in the nightclubs and in the foreigners' club said that they did not know much about the contents of their contracts, with 39.5% and 25.5% respectively.

In the karaoke bars, the performances take place 3 times in the contracts and 1.8 times in reality; 2.8 time and 1.8 times in the foreigners' clubs; 4 times and 2.8 times in the seaman's clubs. According to the in-depth interview, the respondents revealed that they were made to cater to the customers and sell the juices as juicy girls, and some were in prostitution.

(3) Payment of wages and types of wages

52.0% of the respondents(66 out of 127) are paid their wages by the Korean

promoters, whereas 32.3%(41) of the respondents are received by the owners in their working sites. The rate of which respondents are never paid their wages is 13.4%(17). There are few who responded that both the promoters and the owners pay their salaries. In this case, the promoters from the agencies pay the wages and the owners of bars and clubs pay tips and drink money.

Except for the hotels, the theme parks, and amusement parks, the rate of cash payment of wages is very high. 75.2%(76 out of 101) of the Filipina entertainers in bars or clubs indicated cash payment of their wages, with 93.3% of those in the karaoke bars. There are also responses of the forced savings and the employers sending money home.

Despite the cash payment of the wages, most of the foreign entertainers[(77.7%), 101 out of 130] did not receive any piece of paycheck during their employment. It is all of the entertainers in the cafes or 7080 clubs who did not receive the paychecks, followed by 93.3% of those in the karaoke, 91.5% in the nightclubs, and 83.3% in Seaman's clubs.

3) Human rights abuse

(1) Regarding the possession of the passports and alien cards

Many of the migrants with entertainer visa did not have their own passports and alien cards. As for the passports, 46%(63 out of 137) of them revealed that they did not have their passports with them. In case of the theme parks, none of women did not keep the passports, and more than half of the entertainers in the nightclubs, the cafes or 7080 clubs, and the seaman's clubs did not have their own passports. The passports are seized by either the Korean promoters or the club owners.

As for the alien cards, 41%(55 out of 134)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y did not possess with them. All of the entertainers in the theme parks did not have their alien cards, and 52.2% of those in the night clubs did not possess them. The alien cards are mostly seized by either the Korean promotions or the bar owners. There are few respondents who never get issued their alien cards.

(2) Regarding the various services and the forced services

In the case of the women from the Philippines, the percentage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in selling drinks by sitting with the customers or dancing is 65%(76 out of 117). By the business types, it is the cafes or 7080 clubs (85.7%), the nightclubs (70.8%), the seaman's clubs (69.2%), the karaoke bars (68.8%), the foreigners' clubs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53.3%) where the women are often made to offer the services. Also, Filipina entertainers reported having experienced in either prostitution (23.1%) or date out (17.9%). The nightclubs (25%), the foreigners' clubs (20.0%), seaman's clubs (23.1%) are the establishments that provide prostitutions at a high rate. The date outs are made in the nightclubs (25.0%), the foreigners' clubs (20.0%), seaman's clubs (23.1%). Most of responses indicated that the prostitutions and date outs with the customers are the forced services.

The respondents' main reasons are that the owners of the employment sites coerce them to do so, and they have to earn some money, since their wages are not properly paid. If the migrant entertainers cannot reach a certain level of records through drinks and prostitution, they are threatened to be sent to the other worse clubs.

4) Violence

(1) Verbal abuse

The migrant entertainers who have experienced verbal abuse amounts to 53%(80 out of 151). In particular, it is the seaman's clubs (92.3%) and the nightclubs (70.5%) where the percentage of verbal abuse is high, and more than a half of the migrant entertainers in the karaoke bars (62.5%) and the foreigners' clubs (60.0%) are verbally abused. The perpetrators of these verbal abuses are either the customers (57.5%) or the owners or managers (40%). Such abuse occurs: when the entertainers do not conduct the forced services (45%); when they do not understand Korean well (36.3%); when they complain about their jobs (30%). 75% of the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had to remain patient and continue to work. Instead, some (28.9%) chose to run away and to remain undocumented. The cases of reporting to the police (2.6%) and consulting with the human rights' organizations (10.5%) are so rare that it is hard to make the public exposed to their plights. The percentage of becoming undocumented after reacting to such abuse is 52.6%, which leads them to escape rather than solving the problems.

(2) Physical abuse

46.4%(70 out of 151) of the respondents have experienced physical abuse. The migrants in the seaman's clubs (84.6%), the nightclubs (62.5%), and the karaoke bars (50%) indicated their experiences in physical abuse. The respondents state that the perpetrators are the customers (60%) and the club owners or managers (41.4%). 39.1% of physical abuses occur when the customers are not satisfied, followed by when the

entertainers do not understand Korean (31.9%) and when they are not good at jobs (20.3%). 72.9% of the respondents state that they continue to work despite all odds, and 25.7% of them complain, and 18.6% become undocumented after their runaway. The rates of reports are very low, i.e.: human rights' organizations (5.7%) and police (2.9%). 45.7% of the respondents indicated that they became undocumented after runaway, when they complained about physical abuses. They have nothing but to run away. On the other hand, 50% of them continue to work.

(3) Sexual violence

In case of sexual violence, 55%(83 out of 151) revealed their experience as victims, while 69.1% out of total 120 women also experienced. It is mostly the seaman's clubs (92.3), the nightclubs (79.2%), the foreigners' clubs (73.3%), and the karaoke bars (62.5%) where the migrants experience sexual violence. In terms of acts of sexual abuse, there are many: the unwanted body contacts such as kiss, hug, back hug, etc. (88.0%); the nasty and lewd talks or jokes (80.7%); acts of touching the parts of body such as breasts, hips, sexual organs, etc. (75.9%). The sexual abuses the entertainers suffer include: the forced sexual relationship (30.1%); the request of the prostitution (28.9%); the rape.

It is found that, proportionately, the percentage of the forced sexual relationship and the request of the prostitutions is very high and some also experience in the seaman's clubs and the karaoke bars.

The perpetrators are the customers (30.5%), the owners or managers (52.4%), and the managers from the Korean promotion agencies (26.8%). The migrant entertainers suffer from sexual violence when their customers are not satisfied (23.5%) and when they cannot understand Korean (26.5%). Given that it is hard for the respondents to choose the reasons of sexual violence the experienced, 13.3% responded that they do not know the reason and 20.5% responded the others. In terms of action they take, 34.9% remain silent and continue to work and 30.1% run away and become undocumented. In terms of when the entertainers complain about sexual abuse, the percentage of becoming undocumented after runaway is higher (56.6%) than those of other abuses such as verbal and physical abuse. It clearly shows that they have nothing but to choose runaway.

Although we divide the types of violence into verbal,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it is found that three types of violence are interconnected. For instance, when a migrant worker complain about sexual violence, she might be subjected to other verbal and physical abuses.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5) Surveillance, coercion,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The experiences in surveillance and coercion is common to the respondents. During their day offs or when it is not business hour, 49.7% experienced the forced labor with 44.4% of prohibition of going out. Also, 51.7% indicated the surveillance over their privacy; 46.4% were held incommunicado; 37.7% experienced threat to be moved to the other working places; 28.5% experienced threat over runaway. 10.6% experienced confinement in a closed space. The surveillance over privacy, forced labor, and no-contact policy are in fact common across all the establishments. Further, the confinement occurs mostly in the karaoke bars, foreigners' clubs, and seaman's clubs. This partly explains why it is difficult for the migrants to report the abuses and why they have nothing but to run away, when various types of violence occur in their working places.

6) Issuance of OEC and labor rights

The process of issuing OEC can be falsified by the connection between agencies and POEA. In terms of whether contractual wages, working hours, and duties are followed, the percentage of those who receive OEC is higher than that of those without OEC. The migrants with OEC is less likely to experience violence than those without OEC.

7) Medical treatment

It is appeared that more than a half of the respondents (54.4%) are injured or sick, and yet, 22.4% of them cannot go to the hospital. The reasons are following: they do not know the location of hospital; they do not have money or time; they have problem in communication. When the treatment is possible, the way to resolve the issue of medical expenses is to solve by themselves, get helped by their acquaintances, get paid by the owners.

8) Living conditions

(1) Housing

According to the respondents, there are some housings that are not equipped with shower room or restroom. Moreover, for other cases, the owners or other people are able to come in and out at their will.

(2) Food

While food is well provided with the migrant entertainers in the theme parks, it is relatively inferior for those in the seaman's clubs.

9) Possibility of human trafficking according to the human trafficking general indicators by UNODC

24 indicators, out of 36 general indicators of human trafficking by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demonstrate that migrants with entertainment visa in Korea are situated with human trafficking conditions. The indicators as below refer to those who have been trafficked may:

- Be unable to leave their work environment
- Show signs that their movements are being controlled
- Feel that they cannot leave
- Show fear or anxiety
- Be subjected to violence or threats of violence against themselvesor against their family members and loved ones
- Suffer injuries that appear to be the result of an assault
- Suffer injuries or impairments typical of certain jobs or controlmeasures
- Not be in possession of their passports or other travel or identitydocuments, as those documents are being held by someone else
- Have false identity or travel documents
- Be unfamiliar with the local language
- Be forced to work under certain conditions
- Be unable to negotiate working conditions
- Receive little or no payment
- Have no access to their earnings
- Work excessively long hours over long periods
- Not have any days off
- Live in poor or substandard accommodations
- Have no access to medical care
- Have limited or no social interaction
- Have limited contact with their families or with people outside oftheir immediate environment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 Be unable to communicate freely with others
- Be in a situation of dependence
- Have had the fees for their transport to the country of destinationpaid for by facilitators, whom they must payback by working orproviding services in the destination
- Have acted on the basis of false promises

In comparison with the Korean standards of human trafficking, UNODC trafficking protocol that is specified and extended based on Palermo Protocol is widely acknowledged at international level. According to the protocol and its indicators, most of the entertainer migrants fall in the situation corresponding with that of human trafficking. However, there has been none of the indictment acknowledging human trafficking of migrants with entertainment visa.

4. Entertainment visa schemes in Japan and U.S.

Korea's entertainment visa scheme is operated in relation to some other countries' relevant schemes regarding foreign entertainers. Japan's entertainment visa policy used to have a lot in common with that of Korea and be notorious for "a breeding ground of human trafficking" until 2004. Due to the first step of measures (implemented in 2005) of Action Plan of Measures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adopted in 2004, one of the qualifications for the obtainments of entertainment visa - "the applicant who is qualified by a foreign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agency or an equivalent public or private organization" - was deleted. In fact, this reform leads that the number of Filipino entertainers who enter Japan after obtaining the credential documents issued by POEA have decreased. The second step of measures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took is stricter by announcing that the business establishments that want to hire foreign entertainers should prove the non-criminal records with respect to the trafficking of the night club operators or their staff members. Since then, it has been hardly observed that the business employers bring the migrant workers through entertainer visa for the purpose of hiring them as hostesses.

At the same time, the amendment of Penal Code in 2005 emphasized the crackdown, whereas the specific actions about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their human rights are less highlighted. There is also a lack of the official guidelines for a trafficking victims recognition system, which makes it possible for a police agency to make an arbitrary decisions. If women are not recognized as victims by the police crackdown, they can be

deported to their own countries based on the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 Yet, under the revised Immigration Act, once recognized as victims, women are allowed to choose either returning to their own countries or temporary stay in Japan. Although a variety of supports are provided for the victims such as service for the interpretation or transportation fee, shelter service, returning assistance, etc, there are still more incomplete measures, i.e., support for economic activity, residential status, etc.

As for the U.S., the entertainment visa scheme has become much stricter since 9/11. In terms of the eligibility of entertainment visa, a foreign entertainer is required to be of an international quality or be internationally recognized.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is therefore known for its thorough process of verification on the applicants. However, the purpose of temporary work visa for foreign entertainers is to meet a demand for the short period. When the foreign entertainers even including the undocumented ones enter the U.S., and their eligibility as workers is recognized, the employers are under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Wage and Hour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Labor. The U.S. government tries to provide the foreign entertainers with thorough supervision and protection before and after them entering the country in cooperation with other state agencies. Moreover, if a migrant is recognized as a victim of trafficking or other crime, he or she is granted a permanent residence status. It is worth noticing that the U.S. attempts to strengthen such visa grant scheme by allowing the victims to invite their families.

5.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s entertainment visa scheme

1)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1) Alternatives as short term and long term performance visa

Given that E-6-1 visa for the so-called 'high-profile' entertainers has more advantages than E-6-2 visa for the others under the control and supervision of the immigration, it is fair to argue that the current scheme is somehow discriminatory. To end such discriminatory practices, the current E-6-1 and E-6-2 visas should be changed into short performance visa and long term performance visa.

As for the short term performances, most of the cases are the well-recognized ones who can gain profits and costs over a few number of performances. It is thus necessary to make the verification process for them simpler. In the case of over 30 days of th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long term performances, we need to find how to apply the Labor Standards Act to the reality with more restrictions. That is, we need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the relevant certificates of the entertainers who apply for the entertainment visa and apply the Act with the recognition of them as workers in the case of the long term performance. This is intended to block the entry of the non trained entertainers with the entertainment visa.

(2) Strengthening the coordination of government agencies

(a) Korea Media Rating Board

KMRB has been a gate-keeper of recommending the foreign entertainers. We argue that KMRB's roles in visa approval be strengthened so as to filter the applications that are deemed not worthy of an entertainment visa. To do this, the inspection of documents and sites should be tightened. In other words, the recommendation process should require the followings: documents verifying the relevant activities from work or education; contracts between employer and host firm regarding the employment of temporary employee; performance standard contracts translated in the migrant's local language. Also, activities other than performance should be prohibited through the inspections of the performing sites.

(b)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Justice should build the cooperative system with KMRB,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order to review the issues such as performance recommendation of KMRB, temporary work permission of Ministry of Labor, criminal records in procuring the prostitutions of the host firm (the performing sites), human trafficking of the employer (the promotion agency), labor law violation, violation of immigration law.

(c)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case of granting permission of temporary employment of the promotion agenc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should review whether the promotion agency is capable of running the business based on the scale of the assets and facilities. Also, it should thoroughly screen the agencies' criminal records with respect to trafficking, prostitution, illegal employment, document forgery, etc. Further, there needs to be a

reform of the labor inspector duty provisions so that the labor inspectors are allowed to report to the investigation agency any case of labor law violations and trafficking or human rights abuses that happen in the employment sites that they inspect.

(d) Local authorit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valuation on the security of performance facilities when licensing the business of tourism. The cooperation with the local police agencies and the department of tourism or health of local authorities must be established.

(e) Embassies of the migrants' countries in Korea

The embassies of the countries from which the migrant entertainers come should build the plan to cooperate with KMRB when reviewing.

2) Labor law violations and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1) Application of the Labor Standard Act for the long term performers

As for the long term performers for more than 30 days, they are recognized as workers based on how many times it repeats and how long it lasts.

(2) Compliance of the standard contracts

The standard contracts (labor and performance) translated into their own local languages should be inclusive to the performance contracts of the migrants with E-6 visa.

(3) Putting a ceiling on the commission of the employers

The migrant entertainers' minimum cost of living is threatened by the extortion of excessive referral fee, which makes them surrender to forced labor. To end this practice, there should be upper line to prevent the employers from charging the excessive commission fee on the migrants.

(4) Entry expense bills and the principle of the employers' payment

The overcharged entry expense and payment in proxy of the agencies, as a means of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control and exploitation, put the migrants under the debt and therefore the forced prostitutions. In order to prevent this, the employers and their agencies should be charged their employees' entry expenses. Also, the paychecks of entry fees should be given.

(5)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the migrant children with entertainment visa

It is discovered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children is working in some of the theme parks. Given the fact that there are no standards with respect to the age of the entertainers, security of the performances, children protection, the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6) Obligation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working place health insurance

According to the Labor Standard Act, the theme parks are considered as business establishments. In this case,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working place health insurance should be made compulsory and be under supervision of management. The standard (labor and performance) contracts, mentioned above, should stipulate the healthcare measures such as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working place health insurance.

3) Issue of human trafficking and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1) Implementation of special act or penal code reform in accordance with the Palermo Protocol

Upon the request of incorporating the supplementary protocol of the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he Palermo Protocol) into the implementation of domestic law, the provisions on human trafficking were enacted. Yet, there is no specific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with simple description - "a person who buys or sells another." This simplicity of the act may rather narrow the scope of human trafficking. Further, there is no provisions regarding the children victims of trafficking. An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r reform of penal code is necessary to correspond to the Palermo Protocol.

(2) Development of human trafficking index and its implementation

The development of human trafficking index should be utilized to its full extent during the investigation so that the arbitrary decisions of the investigators can be minimized.

4) Human rights abuses and directions of the improvement of system

(1) Victim-oriented manual and support procedure

Though the percentage of human rights abuses against the migrant entertainers is higher than that of abuses against the other migrant workers, there is no concrete procedure to support the victims. Many of them working in the entertainment establishments is unable to report human rights abuses, since they themselves are forced to work as hostesses or juicy girls that is illegal under their visa status. Like the case of the U.S., there is a need for the set up of the measure that prioritizes the protection of the migrants' human rights than illegitimacy of their visa status or their working activities.

(2) Subdivision of visa status of victim

For a prompt and accurate investigation, the cooperation of the victims is significant. In case of the migrants with E-6 visa, Both the investigation agencies and immigrations offices' willingness of protecting the victims and their proactive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Based on the case of the U.S., there should be more diversified options of visa for the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 in order to ensure the visa status.

(3) Living security for the victims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justice-seeking procedure, the government should grant the victims temporary work permit in order for them to make a living. If getting a job is difficult for them, there should be means that guarantee their livelihood as alternatives.

(4) Healthcare for the victims

When a migrant falls victim to human rights abuses, it is most likely that the person needs medical support. Therefore, healthcare measures for the victims should be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strengthened.

(5) Protection of the rights to invite family

During the investigation, the right for the victims to invite their family in their home countries and unite with them should be protected for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7080 club refers to the club where Korean old music from 70s to 80s is mainly played. The respondents have the plural options to answer. The so-called Artist Record Book (ARB) and Artist Accreditation Certificate (AAC) issued by the Philippine government are no longer honored. human rights than illegitimacy of their visa status or their working activities.

(2) Subdivision of visa status of victim

For a prompt and accurate investigation, the cooperation of the victims is significant. In case of the migrants with E-6 visa, Both the investigation agencies and immigrations offices' willingness of protecting the victims and their proactive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Based on the case of the U.S., there should be more diversified options of visa for the victims of human rights abuse in order to ensure the visa status.

(3) Living security for the victims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justice-seeking procedure, the government should grant the victims temporary work permit in order for them to make a living. If getting a job is difficult for them, there should be means that guarantee their livelihood as alternatives.

(4) Healthcare for the victims

When a migrant falls victim to human rights abuses, it is most likely that the person needs medical support. Therefore, healthcare measures for the victims should be strengthened.

(5) Protection of the rights to invite family

During the investigation, the right for the victims to invite their family in their home countries and unite with them should be protected for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예술흥행비자 소지 이주민 인권상황 실태조사

| 인쇄일 | 2014년 12월 8일
| 발행일 | 2014년 12월 12일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침해조사과 02)2125-9936
| F A X | 02)2125-0922
| E-mail | research@humanrights.go.kr
| 제작 | 진명인쇄공사

ISBN : 978-89-6114-400-1 93360 비매품